

主 譯

壯勇營大節目

卷一

해 제

곽낙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번 역

김동근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나영훈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남옥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병유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교 정

김동근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류현지 | 수원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기 획

유현희 | 수원학연구센터 센터장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Tel. 031-220-8057

편집디자인·제작

신원커뮤니케이션

원문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ISBN 979-11-6819-019-1

979-11-6819-018-4 (세트)

비매품/무료



1. 본서는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전체 3권 중 권1에 해당하는 33개 항목에 대한 장용영 운영 관련 절목 내용이다.
2. 건치(建置)에 대한 내용은 항목에만 있고 본문 내용이 없어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3. 본서의 번역과 표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권1(K2-3369)을 저본으로 삼았다.
4. 원문에 나와있는 간지 표시는 '서력(왕대, 간지)'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5. 원문에 쓰여진 한자 표기 중 약자(略字)로 표기된 것은 표점본에 정자(正字)로 일관되게 표기하였다.
6. 표점본에 이두로 표현된 한자에는 별도로 밑줄(또는 글자 크기 및 글자체 변환)로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7. 원문의 세주는 표점본에 []로, 세주 내의 별도의 세주는 표점본에 < >로 단계를 나누어 표기하였다.
8. 원문 가운데 교감을 해야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표점본에 { }로 표기하고 각주로 설명을 하였다.

I. 『장용영대절목』 구성과 자료적 가치

1. 들어가며	9
2. 장용영 설치와 발전	11
3. 『장용영대절목』의 구성과 내용	20
4. 『장용영대절목』의 자료적 가치	38
5. 나가며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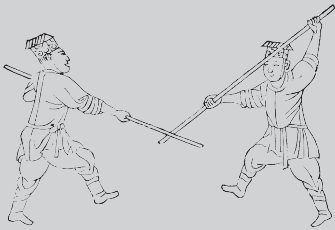
II. 『장용영대절목』 권1 역주

1. 관직(官職)	44
2. 장교(將校)	46
3. 차제(差除)	48
4. 원역(員役)	61
5. 천전(遷轉)	67
6. 군제(軍制)	76
7. 청사(廳舍)	85
8. 부신(符信)	92
9. 군호(軍號)	94
10. 초정(抄定)	96
11. 참알(參謁)	103
12. 의절(儀節)	108
13. 직장(職掌)	113



14. 겸찰(兼察)	119
15. 군적(軍籍)	122
16. 군기(軍器)	126
17. 형명(形名)	132
18. 입직(入直)	136
19. 번상(番上)	142
20. 배호(陪扈)	145
21. 징발(徵發)	151
22. 호궐(犒饋)	154
23. 이진(肄陣)	157
24. 강사(講射)	161
25. 시사(試射)	167
26. 중일(中日)	180
27. 사습(私習)	182
28. 취재(取才)	186
29. 마정(馬政)	193
30. 급사(給仕)	202
31. 급가(給暇)	205
32. 칙령(飭令)	209
33. 곤치(棍治)	218

Ⅲ. 『장용영대절목』 권1 원문 223



壯勇營大節目

卷一

구성과
자료적
가치

『장용영대절목』 구성과 자료적 가치

1. 들어가며

조선 후기 국왕 호위를 전담하는 군영으로는 금군청禁軍廳, 호위청扈衛廳, 별군직청別軍職廳, 용호영龍虎營, 장용영壯勇營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군영들은 시기에 따라 그 명칭이나 규모, 기능상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왕 호위 기구로서의 근본적인 역할은 동일하였다. 조선 후기의 국왕들은 왕위 계승 과정에서 정통성 시비와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들은 자신의 호위를 전담하는 군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¹

1 장필기, 「정조대 장용영의 창설과 운영」, 『조선후기 군사개혁과 장용영』, 수원화성박물관, 2012, 92쪽.

정조는 1776년(즉위년) 3월 경희궁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민산民産·인재人材·용정戎政·재용財用 등 국정개혁 4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용정戎政은 군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특히 정조는 1777년(정조 1) 7월 경희궁 존현각尊賢閣 자객 사건을 계기로 국왕 숙위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었다. 정조는 신변보호와 함께 군권장악을 위해 새로운 군영인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였다. 장용영은 1785년(정조 9년)에 창설되어 국왕의 호위를 전담하는 군영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다가 1802년(순조 2년)에 혁파되었다.

정조는 세손으로서 할아버지 영조英祖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지만,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가 1762년(영조 38)에 뒤주에 갇혀 죽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왕권의 정통성에 대한 부담이 즉위 후에도 늘 따라 다녔으며, 신변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정조는 무엇보다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척으로부터 독자적인 왕권확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세손시절부터 외척에 대한 폐단과 위협을 알고 있었기에 외척들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왕권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조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국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영조가 내세운 의리를 따르는 세력과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세력을 동시에 만족시켜 줌으로써 보다 안정된 정국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론老論, 소론少論, 남인南人을 바탕으로 탕평 정치에 힘을 기울였다.

정조는 의리탕평義理蕩平을 표방하여 국왕만이 진정한 의리를 밝히고 정할 수 있다고 하여 편당을 배제하고 봉당간의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일당전제를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왕권강화를 도모하였

다. 장용영은 그 연장선상에서 창설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조가 장용영을 왕권강화를 위한 친위 군영으로 설립한 목적을 간략하게 알 수 있었다.

이 글의 목적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1793년(정조 17)에 설치한 친위 군영인 장용영의 연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규칙 내용을 정리한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은 첫째, 정조대에 장용영이 어떻게 설치되고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시대적 개요를 살펴보고, 둘째, 『장용영대절목』 1권에 대한 구성과 내용을 34개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검토한 뒤, 셋째, 『장용영대절목』에 대한 자료적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장용영대절목』 2권과 3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2. 장용영 설치와 발전

1) 장용영의 설치

정조는 즉위 초부터 왕권의 확립과 더불어 그 기반으로서의 정국안정책을 추구하였다. 조선후기 오군영五軍營은 수도권 방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도성을 직접 방어한 것은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의 삼군문三軍門이었다. 삼군문 중심의 수도방어체계는 도성 방위와 함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방어를 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조는 삼군문 중심의 도성방어체계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신의 숙위체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정조는 송규빈宋奎斌이 제시한 도성방비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송규빈이 주장한 방안 중 하나가 오위군제五衛軍制의 복구였다. 즉 오위진법五衛陣法에 의한 도성의 5부 체제 편성과 그에 따른 방어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² 정조의 도성방어에 대한 인식 또한 오위체제의 복구였던 만큼, 송규빈의 도성방비책은 정조의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조는 삼군문을 중심으로 하는 도성방어체계인 오군영체제가 집권 노론이 장악하고 있어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순간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옛 군제를 회복하고 이들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 회복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군제개혁의 방향을 진관체제 복구와 오위체제의 환원으로 잡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는 곧 정조의 장용영 설치구상의 단초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 집권세력에 의하여 거의 장악된 삼군문 중심의 도성방어체계 속에서의 왕권 강화책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정조는 장용위의 설치를 통한 친군위체제의 정비를 진행시키면서 이 같은 여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보조에 주력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부 사도세자의 묘원인 영우원永祐園의 천장遷葬을 표방하였지만, 종국에는 화성건설의 계획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화성성역은 애초에 10년 계획을 잡았으나 공사를 시작한지 단 2년 10개월 만인 1796년(정조 20) 10월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

2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6월 임자.

은 공사 기간의 단축은 바로 정조의 결집된 왕권신장의 한 표상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정조는 새로운 정국운용을 위한 방향모색과 함께 친위체제의 구축에 힘쓰게 되었다. 이것이 장용위壯勇衛 창설의 계기이다.³

장용위의 설치에 이미 정조 즉위 초부터 계획되어져 온 것으로써 그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하여 은밀히 진행되었다. 장용영은 처음 장용위라는 이름으로 기존 무예청武藝廳의 무예출신을 바꾸어 부르게 된 것이 시초이다. 실제 금군이나 무예청이 친위부대로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장용위가 새롭게 설치되자 이에 대한 반대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장용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훈련도감 가운데 별기군別技軍과 난후초攔後哨,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 등을 감액하여 이속시키는 것이라고 하고,⁴ 여기에 경기 동쪽의 지평·양근·가평과 서쪽의 장단·마전·적성의 둔병屯兵을 더하여 장용영의 좌·우·후초를 만들었다.⁵ 이는 애초부터 장용영이 새로운 군사력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군영의 군병 중에서 일부를 이속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지금까지의 오군영 중심의 군문세력을 다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⁶ 이는 정조가 구상한 계획이었다.

또한 선전관청 소속의 황내취黃內吹:서울와 흑내취黑內吹:지방을 각각 원내취元內吹와 겸내취兼內吹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가운데 겸내

3 『정조실록』 권12, 정조 9년 7월 기유.

4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1월 을유.

5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7월 기묘.

6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6월 임진.

취를 장용영에 소속시키는 한편 훈련도감과 금위영의 겸내취도 아울러 장용영에 이관시켰다.⁷ 아울러 장용영은 그 사체事體가 특별하다고 하여 모든 군사의 신분이 확실한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훈련도감의 봉족을 전용하고, 장용영 장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 번에서 나이가 젊고 궁마에 익숙한 자를 취재하여 정예의 근시近侍 무사들을 만들고자 하였다.⁸ 장용영 군사들은 특별히 서울의 연화방蓮花坊에 거주하도록 하였다.⁹ 여기에 총책을 담당할 장용영 병방兵房과 그 아래에 경비출납과 관리를 맡을 군향색 낭청郎廳, 군사를 관할하는 파총把總을 두고 ‘장용壯勇’이라는 기호旗號를 정식으로 갖추게 되었다.

정조의 화성華城 건설은 1789년(정조 13) 영우원의 현릉원顯隆園 천장遷葬과 함께 계획되었다. 정조는 1789년 10월 현릉원의 공역이 완성되자 “나는 원을 옮기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오랫동안 경영하고 조치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비용을 덜 들이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¹⁰라고 하였듯이 화성 건설 사업을 위해 즉위 초부터 재용마련과 민심을 얻기 위한 여론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화성건설을 통한 수원 신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

7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7월 갑진.

8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5월 정사.

9 장필기, 「조선 후기 한성부 한 무관 집안의 가계이력과 사회 경제적 지위」, 『실학사상연구』 30, 무악실학회, 2006, 88~89쪽. 서울 동부 연화방(蓮花坊)은 지금의 종로 4가와 인의동, 원남동, 봉익동 일대이다. 본래 연화방은 궁성을 호위하기 위한 금군들의 집을 배치시킨 곳이다. 효종 때에는 훈련도감의 승호포수(陞戶砲手)들을 창경궁 동쪽에 나누어 배치하였고, 정조 때에는 선인문(宣仁門) 아래에서부터 이현(梨峴) 동구까지를 연화방계(蓮花坊契)라 하여 길동서쪽의 가옥들을 모두 장용영의 장교나 군사들을 입주시켜 별도로 통호(統戶)를 정하여 통솔하도록 하였다.

10 『정조실록』 권28, 13년 10월 무진. “予於遷園一事 積有所經營措設者 必欲不煩經用 不勞民力”

가 장용영체제를 보다 굳건하게 확보하고자 한 대책이었다.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하면서 늘 “뒷날을 기대한 것”¹¹이라든지 “본래 깊은 뜻이 있어서”¹²라고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볼 때 정조 자신이 즉위하면서부터 계획하여 온 사도세자의 영우원 천봉과 자신이 밝혀 온 의리탕평의 실현과정을 통하여 왕권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숙위체제의 정비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정조가 “수원부는 바로 나의 팔다리인 셈이고, 고을이 서울 부근의 큰 관방이 되는 데서야 더 말한 것이 있겠는가?”¹³, “조정에서 수원부를 도성의 5부처럼 보는 처지에 그 곳에 고통이 있다면 어찌 범연히 볼 수가 있겠는가 …비록 다른 고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급대를 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본부이겠는가.”¹⁴라고 하듯, 수원의 위상에 대한 정조의 생각은 도성 이상이였다.

이처럼 정조가 온 심혈을 기울여 축조한 화성성역은 현릉원의 조성 과 화성행궁을 호위하기 위한 명목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조의 왕권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불어 정조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장용영 내영 과 외영의 설치였다.¹⁵

11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5월 경자. “壯勇之設置 盖有待於後日”

12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6월 무신. “壯勇之新設 予自有深意”

13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병인. “本府卽吾股肱 郡爲畿輔大關防乎”

14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8월 병인. “朝廷之視水原府 如部內 凡有疾苦 豈可泛視乎…雖在他 邑猶當給其代 況本府乎”

15 정조, 『홍재전서』 권13, 서인(序引) 6.

2) 장용영의 발전

장용영은 정조 즉위 초 왕의 신변보호와 숙위체제의 정비를 통해 마련된 친위 군영으로 처음에는 장용위壯勇衛라 불리었다. 장용위는 오위五衛의 한 위를 본 딴 것으로 삼부三部를 두지 않고 오사五司를 설치하여 내영과 외영으로 나누었다. 이는 중국의 남방군제인 절강병법浙江兵法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이때 선발된 군사들은 내금위內禁衛의 국출신局出身 선발 예에 따른 취재取才 또는 출신出身, 무반가 자제武班家子弟, 선기자善騎者, 기예자技藝者들이 주로 충원되었다.¹⁶ 장용위는 마군馬軍과 보군步軍 3초哨 정도의 호위친병이었지만, 1785년(정조 9)에 장용청壯勇廳으로의 전환, 그리고 1788년(정조 12)에 초를 더하여 하나의 중앙 군영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장용영壯勇營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¹⁷

장용영 내영은 본래 도성 내의 전사와 중사 각각 5초와 고양, 파주, 지평, 양근(가평), 양주의 후사 5초 등 모두 3사 15초로 구성되었다. 이를 1795년(정조 19)에 수원 중심의 인근 8개 읍에 해당하는 진위, 양성, 용인, 광주, 안산, 과천, 시흥 등의 8초와 양주, 장단의 2초 등 10초를 더하여 5사 25초 체제로 1영을 구성하게 되었다.¹⁸

이때 더하여진 10초는 대개 경기의 향군鄉軍으로 남한산성을 지키는 수어청守禦廳과 북한산성을 방어하는 충용청悤戎廳의 기간 군사들이

16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병오.

17 박범, 「정조 중반 장용영의 군영화 과정」, 『사림』 70, 2019, 126쪽.

18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5월 을해.

었다. 이들 향군은 장용영 내영의 기반으로서 1788년(정조 12)부터 1793년(정조 17)까지 3사 15초의 편제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는 1영營을 만들 수 있는 25초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이에 금위영의 향군 125초에서 각 초마다 정군正軍 및 관보官保, 자보資保를 각각 몇 명씩 덜어내어 장용영에 보태는 동시에 나머지 10초를 채워서 1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한강 남·북쪽의 옛 대오와 새 대오를 골고루 배치하여 전후좌우로 고기비늘 형태의 초를 만들고 경군京軍 중사中司와 합쳐서 5사의 편제에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전·후·중·좌·우 5사 체제에 따라 전사는 소재의 5초를, 후사는 양근, 가평, 지평, 양주, 장단의 5초를, 중사는 경군의 5초를, 좌사는 광주, 용인, 진위, 양성의 5초를, 우사는 시흥, 과천, 안산, 고양, 파주의 5초를 각각 소속하도록 하여 이를 고리처럼 연결해 에워싸게 함으로써 서로 협수協守하는 형세가 되도록 하였다.¹⁹

이들이 장용영으로 이속됨에 따라 수어청과 총융청은 자연히 축소되었다. 수어청은 도성의 본청을 혁파하는 대신 광주유수廣州留守가 수어사守禦使를 겸하게 되었고, 총융청은 편제를 5초에서 4초로 축소 개편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는 경기 번상군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어청과 총융청의 군사와 재정을 장용영체제 확립에 이속시킴으로써 정조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조직체계를 확대 개편시킴으로써 도성

19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5월 을해.

중심의 내영內營과 화성 중심의 외영外營으로 구분하여 정조대 최대의 군영으로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

장용영 외영제는 1793년(정조 17)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장용영 내외영 신정절목壯勇營內外營新定節目에 따라 장용영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²⁰ 이로써 “장용영의 설치는 오로지 행궁을 위한 것이므로 외영이 주인이고, 내영은 부용附庸”²¹ 이라고 하듯, 장용영체제는 이제 외영체제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는 화성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본래 화성의 군대는 유수부 승격 당시의 별효사別驍士 2초, 마병馬兵 4초, 속오군束伍軍 26초, 각 읍 표하군標下軍 547명, 치중군輜重軍 200명 등 총 32초 747명에 불과하였다.²² 이러한 군대의 편성은 장용영 외영제의 확대 개편과 더불어 마군과 보군에 대한 개편작업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장별대壯別隊로 불리운 화성의 마병馬兵은 친군위체제로 재편되면서 좌열과 우열로 나뉘고 각각 100명씩의 마병이 소속되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제주마 1필과 관보官保, 자보資保 각 1명당 봉족 2명이 배정되었다.²³

또한 보병은 기존의 속오군 26초 중 정예한 13초의 양정良丁을 선발하여 정군正軍으로 삼고, 나머지 13초는 봉족으로 삼으며, 별효사는 별군관別軍官으로 그 명칭을 고쳐 200명의 정원 중 100명만 남겨서

20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계미.

21 『원행정려』傳敎, 병진 2월초 7일. “壯勇之設 專爲行宮 則外營爲主人 內營爲附庸”

22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기미.

23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9월 갑인.

좌·우열로 편성한 뒤 유수영에 직속시켜 뒤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²⁴

이와 같이 1793년에 일차적으로 정비되었던 화성방위체계는 다시 화성 협수군 제도華城協守軍制度로 재편된다.²⁵ 이 체제는 성지城池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송도, 강화의 예와 같이 협수군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화성에 가까운 용인, 진위, 안산을 포함시켜 각 고을의 수령들을 협수장으로 삼은 뒤, 위급 시 그 경내에 있는 수어청과 총융청의 속오군을 타졸操卒로 정하여 화성을 함께 방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용인현령을 동성東城, 진위현령을 남성南城, 안산군수를 서성西城의 협수초관協守哨官으로 각각 정하였다.

협수 군졸은 용인의 수어청 속오군 5초, 진위의 수어청 속오군 3초, 안산의 총융청 속오군 4초로 구성되며, 이 외에 성 부근의 사대부와 백성들에게도 평시의 조련 때에 신지信地를 알려 주어 위급할 때에는 즉시 입보入堡하도록 하였다. 협수체제는 1797년(정조 21) 화성유수 서유린徐有隣의 계청에 따라 총융청 남양방영에 소속되어 있던 시흥과 과천을 각각 북성협수장과 통구유병장通衢游兵將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화성방위체계는 비로소 5읍 군현에 의한 협수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화성 중심의 장용외영군은 42초의 대군영을 이루어 이제 최대의 군영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 군사적 위상도 삼군문 못지않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화성진군제 협수추절목 급수성절목華城進軍制協

24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8월 기축.

25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5월 을해.

守追節目及守城節目을 제정하여 화성협수체계를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²⁶

각 속읍의 군사 수에 따라 장정 7초를 만들고 여기에 화성 경내의 입방군 13초를 더하여 1영 4사를 만든 다음 이를 전·좌·우·후의 각 사마다 5초가 되게 하였다. 나머지 22초의 인원은 그 원근을 고려하여 협수군으로 삼되, 용인, 진위, 안산, 시흥은 각각 동·남·서·북문을 협수하고, 과천은 유병으로서 협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써 화성방위체계는 수원을 둘러싼 군현이 마치 ‘물고기 비늘 같고 머리 빗같이’²⁷ 되어 수원 중심의 환상협수체계環狀協守體系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1798년(정조 22)의 외영부근 오읍군병 합속절목五邑軍兵合屬節目²⁸에 의하여 오위五衛 속오위屬五衛 체제의 완성과 함께 정조대 화성방위체계로서의 장용영 체제를 완성시켰다.²⁹

3. 『장용영대절목』의 구성과 내용

1) 장서각에 소장된 장용영 관련 기록

조선후기 군영에 관한 기록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

26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2월 을축.

27 『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 4월 무술. “環華城四五郡縣之移管於外營 如鱗比而毛節 卽有周之盛典也”

28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10월 기유.

29 장필기, 「정조대 장용영의 창설과 운영」, 『조선후기 군사개혁과 장용영』, 수원화성박물관, 2012, 102~106쪽 재인용.

에 소장되어 있다. 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수어청의 오군영을 지칭한다. 이밖에 왕실 호위나 도성 방위를 위해 창설된 장용영, 호위청, 총어영, 순무영, 친군영 등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장용영에 관한 자료들은 4종 13책이 보관되어 있다.³⁰

장용영 관련 자료들은 유일본으로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군영이 폐지되면서 중앙 군영에 보관되었던 군영 기록들이 왕립도서관격인 장서각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5년 이왕직에서 발간한 「이왕가장서각 고도서목록 조선판李王家藏書閣古圖書目錄 朝鮮版」 범례에는 ‘장서각 소장 도서는 구한국시대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산성赤裳山城 사고史庫에 소장된 이조실록李朝實錄 및 각 영營에서 소장한 등록膽錄·의궤儀軌에다가 1911년 이후에 구입 또는 기증받은 서적이 더해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용영고사』는 원래 입수했을 1929년 당시에는 9책이었는데 현재는 8책만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장용영완의壯勇營完議』 1책, 『장용영절목壯勇營節目』 6책, 『장용영마안壯勇營馬案』 1책이 있었는데 1935년 이후부터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덕궁 후원에 있던 연경당延慶堂은 123칸의 목조 주택인데, 「연경당도서 인계목록延慶堂圖書引繼目錄」에 『장용영고사』를 비롯한 장용영 문헌이 여기에 서 인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¹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장용영 자료로는 장용위壯勇衛가 창설되는 1785년(정조 9) 7월부터 운영, 혁파되기 직전인 1800년(정조

30 정해은, 「軍營膽錄은 어떻게 장서각으로 왔을까?」, 『장서각』 30집, 2013, 405~406쪽.

31 정해은, 「藏書閣 소장 軍營膽錄類 자료에 관한 기초적 검토」, 『장서각』 4집, 2000, 137쪽.

24) 4월까지 17년 동안의 장용영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장용영고사』 8책, 장용영의 연혁과 운영을 정리한 『장용영대절목』 3책, 장용위 한산청閑散廳에 추천된 사람들을 기록한 『장용위한산청천 성책壯勇衛閑散廳薦成冊』 1책³², 장용청 절목 가운데 참고할 만한 것을 뽑아 기록한 『장용청절목초壯勇廳節目抄』 1책이 있다. 이에 대한 장서각 소장 장용영 관련 자료 변동사항은 <표 1>과 같다.³³

표 1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용영 관련 자료 변동사항

순번	제목	1929년	2020년
1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9	8
2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3책 3질	3
3	장용영완의(壯勇營完議)	1	
4	장용영절목(壯勇營節目)	6	
5	장용영마안(壯勇營馬案)	1	
6	장용영한산청천성책(壯勇營閑散廳薦成冊)		1
7	장용청절목초(壯勇廳節目抄)		1

32 정해은, 「藏書閣 소장 軍營謄錄류 자료에 관한 기초적 검토」, 『장서각』 4집, 2000, 137쪽에는 '장용위한산청천성책(壯勇衛閑散廳薦成冊)'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軍營謄錄은 어떻게 장서각으로 왔을까?」, 『장서각』 30집, 2013, 410쪽 <표 4. 1914~2013년 장서각 소장 군영등록의 변동사항>에는 '장용영한산청천성책(壯勇營閑散廳薦成冊)' 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는 후자인 「장용영한산청천성책」 표기로 통일하였다.

33 정해은, 「軍營謄錄은 어떻게 장서각으로 왔을까?」, 『장서각』 30집, 2013, 410쪽. <표 4. 1914~2013년 장서각 소장 군영등록의 변동사항> 참조.

위의 <표 1>을 통해 『장용영완의』 1책, 『장용영절목』 6책, 『장용영마안』 1책은 분실되고, 『장용영한산청천성책』 1책, 『장용청절목초』 1책이 추가되었으며, 『장용영고사』 9책이 8책으로 변동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장용영고사』, 『장용영대절목』, 『장용영한산청천성책』, 『장용청절목초』 등 4종 13책은 장용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이해를 위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필수적 군영기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장용영대절목』의 체재와 내용

① 서지사항

‘절목節目’은 시행령이나 운영규칙 등을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장용영대절목』에 대한 서지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장용영대절목』 3권 3책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1권에 실려 있는 34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장용영대절목』 서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정보와 형태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용영대절목』에 대한 기본정보이다. 사부吏部로 분류되며, 청구기호는 K2-3369이며, 마이크로필름 번호는 MF35-640이다. 소장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다. 기록 시기는 언제 편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1793년(정조 17) 이후로만 추정할 뿐이다. 작성주체는 장용영에서 편찬하였다. 다음은 『장용영대절목』에 대한 형태사항이다. 책의 크기는 41.3cm×25.5cm이며, 판본은 필사본筆寫本이다. 장정은 선장線裝이

며, 수량은 3권_卷 3책_冊이다. 판식은 반곽_{半郭} 27.7×18.9cm이며, 인장은 장서각인_{藏書閣印}이 찍혀있다.

책표지 서명은 ‘장용영대절목_{壯勇營大節目}’이며 서명은 권수제_{卷首題}를 근거로 하였다. 사격만자_{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표지에 서명이 묵서되었다. 서뇌_{書腦} 하단에 ‘공삼_{共三}’이라고 총 책 수가 표시되었다. 사주쌍변_{四周雙邊}에 상내향백어미_{上內向白魚尾}인 인찰공책지에 본문의 내용이 필사되었다. 본문에서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끝나면 1장을 건너뛰고 새로운 제목이 필사되었다. 행자수는 10행_行 24자_字이며 주쌍행이다. 본문의 종이는 장지_{壯紙}이다.

② 『장용영대절목』 목록 체재와 내용

『장용영대절목』의 간행경위는 언제 누구에 의해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장용영에서 편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장용영고사_{壯勇營故事}』의 간행경위처럼 다른 사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는 글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장용영이 해체된 이후 수원 화성에는 장용영 외영의 맥을 이어 총리영_{總理營}이란 소규모의 군영을 두었으니, 장용영 외영에 관한 자료를 대부분 넘겨받았을 총리영에서 이 책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³⁴ 다만, 『장용영대절목』은 장용영의 운영과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규칙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3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구성은 서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목차와 본문으로만 구성되

34 수원시, 『장용영고사_{壯勇營故事}』, 2005, 540쪽.

어 있다. 각 권별로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은 건치建置, 관직官職, 장교將校, 차제差除, 원역員役, 천전遷轉, 군제軍制, 청사廳舍, 부신표符信, 군호軍號, 초정抄定, 참알參謁, 의절儀節, 직장職掌, 겸찰兼察, 군적軍籍, 군기軍器, 형명形名, 입직入直, 번상番上, 배호陪扈, 징발徵發, 호궐稿饋, 이진肄陣, 강사講射, 시사試射, 중일中日, 사습私習, 취재取才, 마정馬政, 급사給仕, 급가給暇, 칙령飭令, 곤치棍治 등의 34개 항목이다.

제2권은 경용經用, 지방支放, 곡부穀簿, 회외會外, 포핍褒貶, 상견相見, 회좌會坐, 문첩文牒, 시상施賞, 회계會計, 반열反閱, 주홀周恤, 연한年限, 잡식雜式 등의 14개 항목이다.

제3권은 외영外營, 승유수陞留守, 제치制置, 분공分供, 친군위親軍衛, 보군步軍, 유방留防, 별군관別軍官, 도시都試, 배봉진拜峯鎭, 고성진古城鎭, 장별도시壯別都試, 갈마창葛麻倉, 노량진露梁鎭 등의 14개 항목이다. 이를 통해 『장용영대절목』은 총 6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권에서 장용영의 설치 연혁을 알 수 있는 건치建置는 목록에만 있고 항목 내용에는 누락되어 있다.

③ 『장용영대절목』 1권 33개 항목 주요 내용

제1권 목록에 제시된 34개 항목 가운데 건치建置를 제외한 33개 항목별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직官職은 관직의 창설 연도와 증감 등의 내력이다. 예를 들면, 도제조都提調 1명, 제조提調 2명, 사使 1명, 종사관從事官 1명, 별장別將 1명, 파총把摠 5명, 선기장善騎將 3명, 초관哨官 25명, 액외장용위額外壯勇衛 15명, 감관監官 4명, 별부료別付料 2명, 약방藥房 1명, 침의鍼醫

1명, 화원畫員 1명, 사자관寫字官 1명, 별중사파총別中司把總 1명, 별후사파총別後司把總 1명, 별아병장別牙兵將 1명 등에 대한 관직명과 인원수 그리고 1793년(정조 17, 계축)에 병방兵房을 장용사壯勇使로, 낭청郎廳을 종사관으로 고쳐 부른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둘째, 장교將校는 장교의 창설 연도와 인원의 증감 등의 내력이다. 예를 들면, 지구관知穀官 17명은 1787년(정조 11)에 11과를 창설 후, 1788년(정조 12)에 2과를 증설, 1790년(정조 14)에 2과 증설, 1792년(정조 16)에 2과를 증설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통장統長 2명, 제본사除本仕 7명, 교련관敎鍊官 20명, 장용위壯勇衛 102명, 패두牌頭 2명, 별무사別武士 36명, 부료무사付料武士 16명, 마의馬醫 1명 등에 대한 장관직명과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다.

셋째, 차제差除는 관리의 임명방법이다. 도제조, 향색제조, 사, 종사관, 별장, 파총, 선기장, 초관, 액외장용위, 감관, 별부료, 약방, 침의, 화원, 사자관, 별중사파총, 별후사파총, 별아병장, 지구관, 통장, 교련관 장용위, 별무사, 부료무사, 배봉진拜峯鎭의 아병장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넷째, 원역員役은 각종 원역들의 창설연도와 증설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서리書吏 16명으로 1790년(정조 14) 6명 창설하고, 1791년(정조 15)에 4명 증설, 1792년(정조 16) 4명 증설, 1793년(정조 17) 2명을 증설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형식으로 서사書寫 3명, 대령서리待令書吏 3명, 조보서리朝報書吏 1명, 서원書員 7명, 야소冶所 2명, 약방藥房 및 장관청將官廳 2명, 군기색軍器色 1명, 고직庫直 13명, 대청직大廳直 1명, 도방자都房子 4명, 사령使令 40명, 대령사령待令使令 15명, 구종驅從 14명, 제약군劑藥軍 2명, 방자房子 15명, 사환군使喚軍 20명 등이

실려 있다.

다섯째, 천전遷轉은 다른 관직으로 옮기는 승진방법이다. 훈련첨정, 훈련판관, 훈련주부 자리를 하나씩 더 설치해 초관을 만들고, 참외 초관은 근무 경력이 15개월이 되면 주부로 승진시키는 방법과 지구관 및 교련관 이하 관원들의 승진 방법의 내용이 실려 있다.

여섯째, 군제軍制는 각종 군병들의 창설 인원수와 증감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마보군馬步軍의 선기대善騎隊, 보군步軍, 각색 표하군標下軍은 839명, 선기대 345명, 경군 615명, 향군 2,540명, 사후군伺候軍 52명, 공장아병工匠牙兵 26명,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40명, 배봉 아병拜峯牙兵 245명, 고성 아병古城牙兵 439명, 노량 아병露梁牙兵 144명으로 총 5,215명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일곱째, 청사廳舍는 장용영 건물에 대한 내용이다. 장용영 청사는 1787년(정조 11)에 창설로 446칸, 직방直房은 1789년(정조 13)에 창건하였고 총 76칸, 야소冶所는 1790년(정조 14)에 창건하였고, 총 99칸 반, 북창北倉은 1788년(정조 12)에 창설하였고, 191칸 반의 내역이 실려 있다.

여덟째, 부신符信은 인신의 형태 및 사용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각 영의 대장은 명소命召를 착용하거나 또는 밀부密符를 착용하지만, 본영의 사使는 사체가 각별하므로 국초의 옛 제도를 본 따서 호부虎符와 전령패傳令牌를 착용한 것 등이 실려 있다.

아홉째, 군호軍號에 대한 내용이다. 매일 지구관은 준비된 군호軍號를 받아가서 대궐 안에 입직한 이들에게 반포한 후 외영에 내어주면, 외영에 입직한 초관은 궐문 밖으로 받아가서 입직한 당상장관堂上將官에게 전해준다. 그러면 장관은 4건을 필사하여 2건은 입직한 별무사

로 하여금 제조와 대장에게 나누어 보내주게 하고, 2건은 직방直房과 북창北倉 두 곳에 입직한 군사가 가져가길 기다렸다가 해당 장령의 이름이 새겨진 화살[名箭]과 서로 비교한 후 영중에 내어주면 구전口傳으로 반포할 것 등이 실려 있다.

열 번째, 초정抄定은 여럿 중에서 하나를 뽑아 정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매 식년마다 승호陞戶는 20명으로 1789년(정조 13)에 훈련도감 소관의 경기 각 읍의 20명을 본영에 이속시켰다. 7월에 경기 감영에 관문을 보내어 각 읍에 알리면 각 초哨와 색色으로 하여금 궐에 대기시켰다가 9월에 뽑아 올려 점검하여 충원할 것과 대년군待年軍, 사후군伺候軍, 제안군除案軍, 칠두군七斗軍, 능마아군能麼兒軍, 제태군除汰軍 등이 내용이 실려 있다.

열한 번째, 참알參謁은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사하여 포폄褒貶을 할 때에 각 관청의 관원이 그 책임자를 찾아뵙는 일이다. 도제조 이하 약방 침의에 이르기까지 새로 제수된 날에 국왕을 알현하는 방법, 동지·정조·탄신에 도제조·제조·대장 이하가 참알례參謁禮를 행하는 것과 참알 때의 행례절차와 매월 삭망 문안 때 대장·별장 이하 각 청의 장관들의 문안 절차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열두 번째, 의절儀節은 상호간의 예절에 대한 의식이다. 예를 들면, 제조는 대장과 자급이 서로 같다면 대등한 예인 항례抗禮를 하고, 길 위에서 서로 만난다면 대장이 길을 비켜준다. 관등에 차이가 난다면 대장이 먼저 인사하고, 길 위에서 만난다면 말을 돌린다. 대장이 비록 제조보다 관직이 높더라도 또한 항례 한다. 별장, 파총, 선기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하고, 초관, 지구관, 장용위 패두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앉아서 인사를 받는다. 교련관, 장용위, 별무사

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하인이 서서 말로써 인사에 답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열세 번째, 직장職掌은 직무담당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향색제조餉色提調는 전곡全曲을 관장한다. 각 소의 회계會計와 크고 작은 계목에 점련된 문서를 처리하고 검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각종 군수품의 형편, 여러 도에 있는 둔전의 상태 또한 처리하고 검사하며, 경외의 관문關文, 첩정牒呈, 초기草記, 회계回啓 등의 일도 주관하여 거행한다는 내용과 군색제조軍色提調는 군무와 병기兵器를 관장하고, 감관監官은 출납하는 문부文簿를 관장한다는 등이 실려 있다.

열네 번째, 겸찰兼察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향색제조가 결원이 있거나 혹은 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되었거나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갔을 때에는 군색제조가 겸찰할 것, 대장이 혹 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되었을 때 호부와 전령패는 승정원이 왕복하여 특지를 받아 거행하며, 인신, 군적 등의 거행은 각 영의 예대로 할 것 등의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열다섯 번째, 군적軍籍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군안軍案이라는 것은 한 군대의 판적版籍이어서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결코 소홀하게 책판으로 찍어 책으로 만들면 안 된다. 도장과 인장을 찍는 것은 그 일이 중대하기 때문이며, 각 소에 봉하여 두는 것은 간악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본영의 사체는 자별하니 수정할 때에는 한 글자 한 획에 혹시라도 글자를 문질러 지우는 곳이 없어야하고 부표付標할 때에는 하루 한시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되니, 군적의 지엄한 뜻을 지키도록 할 것 등과 향군안鄕軍案, 경군안京軍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열여섯 번째, 군기軍器는 군기의 제조관리와 파악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군기의 경우 무기의 필요성과 더불어 법대로 무기가 제작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제작자를 처벌한다는 것을 밝힌 다음, 마보군이 소지한 환도還刀와 총은 무게와 길이 그리고 제작 년·월일을 새기고 따라서 문안을 작성해 그 소재파악을 하게 하였다. 또한 관청으로부터 받는 무기는 마군의 경우, 조총·환도·화약·연환·장전·편전·통아 등이고, 보군의 경우 조총·화약·연환·충죽 등의 수령무기를 적고 있다. 또한, 『병학지남兵學指南』의 판板 63납, 『진도陣圖』의 판 81납, 『무예통지武藝通志』의 판 210납은 나무판에 새겨서 보관한 다음 책으로 찍어서 연습하는 근거로 삼을 것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열일곱 번째, 형명形名은 군대를 지휘하는 신호법이다. 대기치大旗幟, 초요기招搖旗, 이열기肄閱旗, 호령의 기치旗幟, 취고수吹鼓手의 대기치 등이 내용이 실려 있다. 예를 들면, 대기치는 사司, 초哨, 기대旗隊의 깃발 제도와 방위 색을 인지하고 모두 도식圖式대로 만들어서 쓸 것, 초요기는 가운데와 가장자리를 황색으로 하며 칠성七星과 구름을 그린다. 깃대의 높이는 1장 9척이며 영두纓頭, 주락朱駱, 치미雉尾로 꾸며서 행행할 때에나 진을 익힐 때에 대장이 부르기 위해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다.

열여덟 번째, 입직入直에 대한 내용이다. 감관, 서리, 고지기, 사령, 문서지기, 방자 각 1명, 통장 1명, 제본사 패장 3명, 지구관 2명, 뇌자 8명, 순령수 8명, 취고수 10명, 세악수 2명, 대기수 16명, 등룡군 4명, 아병 5명, 서패 각 1명, 장용위 패두 1명, 장용위 35명 등을 거느리고 숙직하고 입직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장용위 패두 1명은 장용위 35명을 거느리고 해당 청에 입직하고, 입마立馬는 매일 2필씩 돌아가며 단봉문丹鳳門과 선인문宣仁門 밖에 대기시킬 것 등이 내용이 실려 있다.

열아홉 번째, 번상番上은 지방의 군사를 골라 뽑아서 순차대로 서울의 군영에 보내어 역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향군鄉軍의 상번은 1초哨가 두 달 동안 하는 것을 규례로 삼고, 9월부터 번을 시작하여 2월에 번을 마치게 한다. 가을과 겨울 두 차례의 번은 우사右司와 후사後司에서 돌아가며 징번徵番하고, 봄의 한 차례의 번은 전사前司와 좌사左司에서 1달씩 돌아가며 징번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무 번째, 배호陪扈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성외로 거동할 때 제조, 종사관은 반차도班次圖대로 배호하고, 감관, 별부료는 창검군의 난후攔後 밖을 배호한다. 별수가 장관別隨駕將官 및 통장, 지구관, 각 차비, 교련관, 제본사 패장은 난후 안을 배호한다. 마보군은 장용위 미국尾局에서 오마대와 삼대로 나란히 행군하고, 각 해당 장령이 영솔하여 작행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한 번째, 징발徵發은 매년 원행 또는 능행 시 수가군隨駕軍, 경군, 향군 등 차출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매년 원행할 때에는 기일 전에 외사外使에게 관문을 보내고 전사군前司軍 몇 초哨를 조발調發할 지를 정하여 검색이 영솔해서 노량露梁 건너편에 와서 대기하게 한다. 해당 장령인 파총·초관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는데 그들로 하여금 군을 이끌게 한다. 군복과 기계는 지구관이 장부와 비교하여 검사해서 가져오고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지급하게 한 뒤 그대로 후상後廂으로 삼는다. 대가가 노량 행궁에 도로 이르면 영표令票가 나오기

를 기다렸다가 방송放送하고, 기계와 군복은 지구관이 뒤에 남아서 도로 거둘 것 등이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두 번째, 호궤犒餼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능원에 행행한 뒤에 수가하는 장교와 군병에게 호궤를 베푸는 것은 다른 영營의 예대로 음식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건호궤乾犒餼로 거행할 것, 호궤는 원員·인人·명名당 산적散炙 1꼬치, 흰떡 3개, 익은 콩 3홉, 소금 3작, 명태 1마리, 술 3잔으로 할 것, 건호궤는 원·인·명 당 각 전錢 2전 7푼, 궤죽은 각 전 5푼, 요기감은 전 3푼으로 할 것 등의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세 번째, 이진肄陣은 군사 조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이진은 사맹삭四孟朔의 10일에 설행하되, 만약 일이 생겨 서로 겹치게 되면 20일, 혹은 30일로 물려서 행한다. 만약 향군이 상변하면 모두 조련시키고 배봉拜峯, 노량露梁, 두 진鎭의 아병을 징발하여 연습시키는 것을 품지稟旨하여 거행할 것, 1일 전에 대장은 평철릭[平天翼]과 패검佩劍을 착용하고 군령軍令에 대해 여쭙 것, 군병이 한 달에 3번 행하는 조련과 야전 훈련을 함께 연습하고 나누어 연습하는 것은 각 영의 규정이 같다. 기병과 보병이 이미 한 영의 체제를 이루었고 병의 총수가 또한 5천명을 넘어서 군병을 합쳐 조련하는 법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때에 임하여 품지하여 거행하도록 할 것, 마군의 학익진鶴翼陣, 봉둔진蜂屯陣, 보군의 오행진五行陣, 현무진玄武陣, 육화진六花陣 등의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네 번째, 강사講射는 무관에게 무예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장관은 강사를 매월 세 차례씩 설행하고 지구관과 교련관은 강진을 매월 두 차례씩 설행하고 장용위는

강진을 매월 한 차례씩 설행한다는 것과 유엽전·편전으로 실기를 시험하고, 『병학지남』으로 면강 또는 배강을 시키는 등 무관에게 무예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중일에는 매 3일마다 입직하는 장관 및 장교, 마보군병에게 중일시사를 설행하는 것과 초관·지구관·통장·교련관은 유엽전 1순, 장용위선기대는 기추 1차 설행한다는 식으로 중일시사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스물다섯 번째, 시사試射는 활쏘기를 통하여 인재를 선발, 승진, 논상 하는 시험제도이다. 상시사賞試射, 대비교大比較, 요시사料試射, 시사방試射放, 부료시사付料試射, 습사習射 등의 시사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사 규정을 살펴보면, 장관, 장교, 장용위 폐두는 유엽전 1순巡, 한량 및 궁시인弓矢人은 소포 1순으로 시취한다. 장용위는 춘등에는 기추騎蓆 1차를, 추등에는 별기 1차를 시취하고, 하등과 동등에는 유엽전 3순, 기추 1차를 시취한다. 선기대는 하등에는 유엽전 1순, 기추 1차를 시취하고, 동등에는 마재 또는 별기 중에서 자원하는 1기에 따라 시취하되, 춘등과 추등은 때가 임하면 품지하여 거행한다. 각 초哨와 색色の 군병은 하등에는 기예 1차, 동등에는 조총 3방放을 시취한다. 순뢰巡率는 여름과 겨울의 원등元等 외에 춘등에는 기예 1차를 더 시험보게 한다. 초군 가운데 기예에 능한 자는 매달 20명씩 매 등등에 또한 1차를 더 시험보게 한다. 팔색군八色軍 가운데 활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포砲 대신 시험 볼 것을 허락해 준다. 십팔반十八般의 기예에 능한 자는 15명에 한하여 교관이 기일 전에 가려 뽑아서 춘등과 추등의 시사에 별도로 응시하게 할 것 등의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여섯 번째, 중일中日은 궁궐에 입직한 무신이나 군사들을 대상

으로 중일에 보던 무예시험이다.³⁵ 규정을 살펴보면, 초관, 지구관, 통장, 교련관은 유엽전 1순으로 한다. 장용위 선기대는 기추 1차, 별기 1차로 한다. 장용위는 2차를 하는 동안 별기 대신 단총으로 1차를 하고, 선기대 좌초는 2차를 하는 동안 별기 대신 마재로 1차를 한다. 궤내에 입번한 각색군은 기예 1차, 별입직 및 직방 초군은 조총 4방으로 시취하며, 외영 초군은 기예 1차로 입직한 당상 장관이 시취한다. 북창의 입직군은 기예 1차로 입직 초관이 시취한 후, 시기(試記)는 대장소에서 계목(啟目)에 점련(粘連)할 것, 이외에도 장관, 장교, 군병 중에서 기예를 다 갖춘 자와 기예가 월등한 자는 정식으로 시상할 것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일곱 번째, 사습(私習)에 대한 내용이다. 팔색군, 표하군, 향군, 아병, 마보군, 선기대, 보군, 능기군, 18기군 등을 대상으로 활쏘기 및 무예 훈련을 실시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기대는 매월 3차에 걸쳐 한 차례는 기(旗)가 돌아가며 실습하고, 한 차례는 해당 장령이 3기를 모아 실습하고, 한 차례는 별장이 3초(哨)를 모아 조련한다. 27일에 시행한다. 보군 각 초는 매월 3차에 걸쳐 두 차례는 각 초관이 통솔하여 실습하고, 한 차례는 파총이 5초를 규합하여 조련한다. 25일에 시행한다. 이외에도 사등(四等)시사(試射)는 전 2월, 5월, 8월 11월에 능기군과 18기군을 막론하고 합쳐서 실시한다. 능기군 중 포기하여 기세가 둔한 자는 18기군에 강등하여 붙이고, 18기군 중 능숙하여 가장 나은 자는 능기군으로 올린다. 그 나머지 조금

35 원창에 외 6인, 『조선시대 과거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206쪽.

우수한 자는 번의 차수를 감해 준다. 연습이 완전하지 않아 몸이 둔하고 솜씨가 서툰 자는 각별히 징계하여 다스림으로써 상벌하는 근간으로 삼을 것 등의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여덟 번째, 취재取才에 대한 내용이다. 액위장용위, 지구관의 취재과取才寮, 한산과閑散寮, 장용위의 향오과行伍寮, 장용위의 한산 취재 규정, 장용위의 취재과, 별무사의 취재 규정, 향무사 및 별무사의 취재과, 선기대 취재, 서자지[書字的]의 취재 규정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예를 들면, 액위장용위의 취재규정은 철전鐵箭, 유엽전柳葉箭, 소포小布, 기추騎蓐,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1서 선택 등 다섯 기예 중에서 품지하여 거행할 것, 지구관의 취재과는 본영과 다른 영을 막론하고 반드시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해당 청廳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병학지남兵學指南』 8편 가운데서 배강背講으로 시취하고 우수한 사람을 차정할 것 등의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스물아홉 번째, 마정馬政에 대한 내용이다. 납마納馬, 달마獐馬, 관마官馬, 사마私馬, 치중복마輜重卜馬, 제마濟馬 등이 사용되는 용도와 규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관, 지구관, 교련관, 장용위 별무사, 선기대의 납마는 반드시 수컷의 달마로 한다. 장용위의 말은 중일中日마다 시험을 감독하는 장관이 시험 삼아 달려보고 시간을 측정해 이에 준한 후에 전보轉報한다. 선기대의 말은 해당 장將과 별장이 먼저 간품하고 시험 삼아 달린 다음 일체 전보하면, 대장은 그대로 낙인을 청하되, 공무로 인해 쫓에 나아갈 때 거행한다. 장관, 장교의 납마는 1차 한도 20일, 장교는 30일이다. 2차 한도는 10일, 3차 한도는 8일로 정할 것, 선기대 납마는 1차 한도 40일, 2차 한도는 10일, 3차 한도는 7일로 정하고, 각 초와 색의 복마군의 납마 또한 이 예와 같게

할 것 등의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서른 번째, 급사給仕는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내용이다. 참하의 지구관과 교련관은 근무일수 600일을 채운 뒤 병조에 보고하여 사과司果를 붙여 줄 것, 장용위 가운데 각 군문으로 천전한 자가 만일 특교로 인하여 환속還屬되면 전의 근무일 수를 계산해 줄 것, 장관, 장교가 죄를 짓고 태거되어 스스로 물러났다가 다시 소속되려는 자는 비록 수사首仕를 맡게 되더라도 부사副仕로 시행할 것과 교련관, 한산 체본사閑散除本仕와 한산 장용위閑散壯勇衛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서른한 번째, 급가給假는 휴가를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도제조, 제조, 대장, 종사관 및 당상, 당하장관, 승호군, 장교, 군병, 마보 군병, 배봉·노량 별장 등의 직급에 대한 휴가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예를 들면, 장관, 장교는 자신의 병과 부모의 병으로 1개월을 기한으로 하고, 기한이 찼는데도 병으로 차임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정사를 올린다. 장교는 수본手本을 올린다. 그리고 부모를 찾아 뵈는 경우는 원도는 30일, 중도는 20일, 근도는 10일로 하고, 소분掃墳 등 각 항목의 휴가 기간은 왕복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게 한다. 만약 탈이 없는데도 기한이 지나면 해당 청의 우두머리가 품지하여 죄를 논할 것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서른두 번째, 칙령勅令에 대한 내용이다. 경군의 계령 10조, 향군의 계령 11조 등 군사들의 훈령에 대한 시행규칙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예를 들면, 장교와 군졸을 막론하고 본영에 편입된 자가 만일 모처에서 도군逃軍을 보았는데 고하거나 잡지 않는 자는 도군과 같은 죄를 주되 곤장을 치는 경우에는 10도를 줄여줄 것, 갑주甲冑와 관련하여 신건新件 가운데 10년 내에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20도를 치고, 구건舊件 가운데 7년 내에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15도를 치고, 혹 잃어버린 자는 군안에서 제외시키고 물어내게 한다.

조총을 습진 시 사용 또는 시사試射할 때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해당 장령·차지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로 하여금 환급해 주도록 한다. 환도環刀 가운데 7년 내에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10도를 친다. 편곤鞭棍 가운데 5년 내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10도를 칠 것, 군병 가운데 요패腰牌를 잃어버린 자는 곤장 10도를 치고,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20도를 치고, 바꾸어 착용한 자는 곤장 30도를 치고 군안에서 제외시킬 것 등의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서른세 번째, 곤치棍治는 곤장을 쳐서 다스리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다. 도제조, 제조, 대장, 종사관, 각색 차지, 지구관, 장관, 장교, 장용위패두, 부료 패두, 각 초·색 기대총, 감관, 차관·별무사, 군병, 마보군병 등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도제조, 제조는 장관, 장교에 대해서 작은 경우에는 벌번罰番을, 큰 경우에는 품지하여 죄를 청한다. 군병, 원역은 작은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큰 경우에는 점련하여 아뢴다. 제조는 원역, 구관句管이 아닌 자에 대해서 말을 전해서 죄를 다스릴 것, 장용위 패두, 부료 패두가 거느리는 부하에 대해서 작은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해서 벌번을 주고, 큰 경우에는 전보하여 품처할 것, 합동하여 조련할 때 당일의 절차와 제도는 마땅히 주관하는 장령에게 위임하여 비록 다른 색의 군병일 지라도 스스로 결정해서 곤장을 칠 것, 진陣으로 거동하는 것 및 조련할 때 장령 가운데 절도를 어기는 자는 대장이 경중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여 곤장을 치되 모두 먼저 행한 뒤에 아릴 것 등의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4. 『장용영대절목』의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정조대 편찬된 장용영 관련 군영기록은 현존하는 『장용영고사』 8책, 『장용영대절목』 3책, 『장용영한산청천성책』 1책, 『장용영청절목초』 1책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장용영대절목』은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고 수원 화성華城을 중심으로 새로운 친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장용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동안 장용영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으나 『장용영고사』, 『장용영대절목』, 『장용영한산청천성책』, 『장용영청절목초』와 같은 기초적 1차 자료를 대폭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화성의 축조, 현릉원의 조성 및 능행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 장용영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장용영 창설 배경에 있어 장용위의 설치부터 장용영으로 전환하게 된 현상에만 주목했을 뿐, 절목, 고사와 같은 기초적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장용영 군제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 국가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절목節目들은 당대 사회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에 번역한 『장용영대절목』을 통해 조선후기 군영 절목節目에 대한 하나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장용영 운영에 관한 유일한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기에 국가에서 장용영을 창설하고 운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자료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장용영대절목』은 정조대 장용영 연구에 필수적인 1차 자료

이다. 장용영 군제의 운영과 시기별 사안들을 건치^{建置}부터 노량진^{露梁津}까지 62개 항목으로 제시하여 장용영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장용영이 중앙 군영으로써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조의 장용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엿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장용영대절목』은 장용영 군제 전반에 대한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6년에 번역된 『장용영고사』와 함께 살펴본다면, 장용영 군영 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1793년(정조 17)에 설치한 친위 군영인 장용영의 연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규칙 내용을 정리한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장용영 관련 기록은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8책,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3책, 『장용영한산청천성책^{壯勇營閑散廳薦成冊}』 1책, 『장용청절목초^{壯勇廳節目抄}』 1책 등 4종 13책이다.

둘째, 『장용영대절목』은 3권 3책 총 6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건치^{建置}, 관직^{官職}, 장교^{將校}, 차제^{差除}, 원역^{員役}, 천전^{遷轉}, 군제^{軍制}, 청사^{廳舍}, 부신^{符信}, 군호^{軍號}, 초정^{抄定}, 참알^{參謁}, 의절^{儀節},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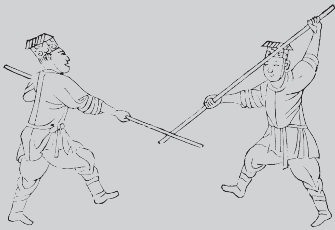
장職掌, 겸찰兼察, 군적軍籍, 군기軍器, 형명形名, 입직入直, 번상番上, 배호陪扈, 징발徵發, 호궐犒饋, 이진肆陣, 강사講射, 시사試射, 중일中日, 사습私習, 취재取才, 마정馬政, 급사給仕, 급기給暇, 칙령飭令, 곤치棍治 등의 34개 항목이다.

2권은 경용經用, 지방支放, 곡부穀簿, 회외會外, 포폄褒貶, 상견相見, 회좌會坐, 문첩文牒, 시상施賞, 회계會計, 반열反閱, 주홀周恤, 연한年限, 잡식雜式 등의 14개, 3권은 외영外營, 승유수陞留守, 제치制置, 분공分供, 친군위親軍衛, 보군步軍, 유방留防, 별군관別軍官, 도시都試, 배봉진拜峯鎭, 고성진古城鎭, 장별도시壯別都試, 갈마창葛麻倉, 노량진露梁鎭 등의 14개 항목이다. 그러나 제1권에서 장용영의 설치 연혁을 알 수 있는 건치建置는 목록에만 나와 있고, 실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셋째, 『장용영대절목』의 자료적 특징은 장용영 연구에 필수적 자료라는 점이다. 장용영 군제의 운영과 시기별 사안들을 구체적인 시행규칙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은 장용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정조의 장용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책은 장용영이 중앙 군영으로써 운영되었던 체제와 면모를 일목요연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넷째, 본 해제에서는 금번에 역주 사업에 착수한 『장용영대절목』의 1권에만 집중하여 33개 항목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었다. 장용영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와 운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수원부의 외영과 관련된 제도 및 유수부로의 승격 등 아직 보충해야 할 것들이 많다. 따라서 기존에 번역된 『장용영고사』와 이번에 번역된 『장용영대절목』 1권에 이어 향후 『장용영대절목』 2권과 3권 그리고 『장용

청절목초』 등이 함께 번역된다면 장용영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조대의 왕권강화와 정국운영을 함께 이해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壯勇營大節目

卷一

역주

1. 관직(官職)¹

관직

도제조都提調 1원員[1793년(정조 17, 계축)에 창설하였다]. 제조提調 2원[1788년(정조 12, 무신)에 창설하였다. ○1원은 사使가 예겸例兼² 한다]. 사使 1원[1785년(정조 9, 을사)에 창설하였다. 병방兵房을 1793년에 장용사壯勇使로 고쳐 부른 것이다]. 종사관從事官 1원[1791년(정조 15, 신해)에 창설하였다. 낭청郎廳을 1793년에 고쳐 부른 것이다]. 별장別將 1원[1791년에 창설하였다]. 파총把總 5원[1788년에 2자리를 창설하였다. ○1789년(정조 13, 기유)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1793년에 2자리를 증설하였는데, 한 곳은 수원水原 사람 자리이다]. 선기장善騎將 3원[1787년(정조 11, 정미)에 1자리를 창설하였다. ○1791년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1793년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초관哨官 25원[1787년에 1자리를 창설하였다. ○1788년에 5자리를 증설하였다. ○1789년에 7자리를 증설하였다. ○1793년에 12자리를 증설하였는데, 다섯 곳은 수원 사람 자리이다].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 15원[1791년에 창설하였다. ○때에 따라 증감하였다]. 감관監官 4원[1785년에 1자리를 창설하였다. ○1786년(정조 10, 병

1 『장용영대절목』의 목록에는 '건치(建置)'부터 시작하지만 본문에는 누락되어 있고, '관직(官職)'부터 시작한다.

2 예겸(例兼): 한 사람이 으레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직제이다.

3 별부료(別付料):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의 줄임말이다. 주로 평안도·함경도에서 뽑아 온 군관인데, 경상비가 아닌 다른 비목(費目)에서 급료를 주게 되므로 이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4 자백(自辟): 관직을 맡은 자가 자신이 데리고 있을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말한다.



오)에 3자리를 증설하였다]. 별부료別付料³ 2원[1787년에 1자리를 창설하였다. ○1788년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약방藥房 1원[1789년에 창설하였다]. 침의鍼醫 1원[1792년(정조 16, 임자)에 창설하였다]. 화원畫員 1원[1787년에 창설하였다]. 사자관寫字官 1원[1788년에 창설하였다]. 별중사 파총別中司把總 1원[고성 첨사古城僉使가 겸임한다. ○1792년에 본영本營으로 이속(移屬)하였다. 자벽自辟⁴ 한다]. 별후사 파총別後司把總 1원[배봉 별장拜峯別將이 겸한다. ○1790년(정조 14, 경술)에 창설하였다. 본영에 두었다. 자벽한다]. 별아병장別牙兵將 1원[노량 별장露梁別將이 겸한다. ○1793년에 본영으로 이속하였다. 자벽한다].

官職

都提調一員[癸丑朔]. 提調二員[戊申朔. ○一員使例兼]. 使一員[乙巳朔. 兵房癸丑改號壯勇使]. 從事官一員[辛亥朔. 郎廳癸丑改號]. 別將一員[辛亥朔]. 把總五員[戊申朔二窠. ○己酉增一窠. ○癸丑增二窠, 一水原窠]. 善騎將三員[丁未朔一窠. ○辛亥增一窠. ○癸丑增一窠]. 哨官二十五員[丁未朔一窠. ○戊申增五窠. ○己酉增七窠. ○癸丑增十二窠, 五水原窠]. 額外壯勇衛十五員[辛亥朔. ○隨時增減]. 監官四員[乙巳朔一窠. ○丙午增三窠]. 別付料二員[丁未朔一窠. ○戊申增一窠]. 藥房一員[己酉朔]. 鍼醫一員[壬子朔]. 畫員一員[丁未朔]. 寫字官一員[戊申朔]. 別中司把總一員[古城僉使兼. ○壬子移屬本營. 自辟]. 別後司把總一員[拜峯別將兼. ○庚戌朔. 置本營. 自辟]. 別牙兵將一員[露梁別將兼. ○癸丑移屬本營. 自辟].

2. 장교(將校)⁵

장교

지구관知穀官 17원[1787년(정조 11, 정미)에 11자리를 창설하였다. ○1788년(정조 12, 무신)에 2자리를 증설하였다. ○1790년(정조 14, 경술)에 2자리를 증설하였다. ○1792년(정조 16, 임자)에 2자리를 증설하였다]. 통장統長 2원[1785년(정조 9, 을사)에 창설하였다]. 제본사除本仕⁶ 7원[1785년에 4자리를 창설하였다. ○1788년에 2자리를 증설하였다. ○1792년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교련관敎鍊官 20원[1788년에 7자리를 창설하였다. ○1789년(정조 13, 기유)에 5자리를 증설하였다. ○1790년에 8자리를 증설하였다]. 장용위壯勇衛 102인은 좌열左列과 우열右列 각 50인과 패두牌頭 2인이다[1782년(정조 6, 임인)에 30자리를 창설하였다. ○1786년(정조 10, 병오)에 4자리를 증설하였다. ○1789년에 16자리를 증설하였다. ○1791년(정조 15, 신해)에 52자리를 증설하였다]. 별무사別武士 36인[1788년에 2자리를 창설하였다. ○1789년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1791년에 12자리를 증설하였다. ○1792년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1793년(정조 17, 계축)에 20자리를 증설하였다]. 부료 무사付料武士 16인[1785년에 2

5 장교(將校) : 각 군영에 속한 근무 군관(勸武軍官)·별무관(別武官)·지구관(地穀官)·기패관(旗牌官)·별무사(別武士)·패교련관(牌敎鍊官)·별기위(別旗衛) 등과 지방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던 속역(屬役)의 총칭이다.

6 제본사(除本仕) : 관원이 어떤 직무를 겸임하게 되었을 때, 잠시 본직의 사무를 보지 않도록 면제하여 주던 일을 말한다.



자리를 창설하였다. ○1787년에 8자리를 증설하였다. ○1791년에 5자리를 증설하였다. ○1792년에 1자리를 증설하였다]. 마의馬醫 1인 [1792년에 창설하였다].

將校

知穀官十七員[丁未卍十一窠. ○戊申增二窠. ○庚戌增二窠. ○壬子增二窠]. 統長二員[乙巳卍]. 除本仕七員[乙巳卍四窠. ○戊申增二窠. ○壬子增一窠]. 敎鍊官二十員[戊申卍七窠. ○己酉增五窠. ○庚戌增八窠]. 壯勇衛一百二人, 左·右列各五十人, 牌頭二人[壬寅卍三十窠. ○丙午增四窠. ○己酉增十六窠. ○辛亥增五十二窠]. 別武士三十六人[戊申卍二窠. ○己酉增一窠. ○辛亥增十二窠. ○壬子增一窠. ○癸丑增二十窠]. 付料武士十六人[乙巳卍二窠. ○丁未增八窠. ○辛亥增五窠. ○壬子增一窠]. 馬醫一人[壬子卍].

3. 차제(差除)⁷

차제

1. 도제조都提調는 대신大臣 중에서 현재 호위대장扈衛大將을 겸임하는 사람이 예겸例兼하되, 이조에서 단부單付⁸하여 계하啓下 받는다.
1. 향색 제조餉色提調[군수색軍需色과 향군색鄉軍色을 예겸例兼한다]는 현직 호조·선혜청의 당상 가운데 이조에서 비의備擬⁹하여 낙점落點을 받되, 만약 3원을 채우지 못하면 이전에 호조·선혜청의 당상을 역임한 사람을 계청啓請하여 통의通擬¹⁰ 한다.
1. 사使는 일찍이 장신將臣 이상을 역임한 사람을 차제差除하되, 호위대장을 차출하는 규정대로 한다. 종사관從事官이 승정원에 가서 고하면 승정원에서 입품入稟한 다음 특지特旨를 받들어 거행한다. 그리고 어영사御營使를 대장大將으로 칭하던 구례舊例대로 군영의 문첩文牒에는 대장으로 호칭하고, 그대로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하게 하며 또한 비변사 당상을 예겸하게 한다. 새로 제수한다는 전령傳令에 어보를 찍은 뒤에 지구관知穀官이 가져다준다.
1. 종사관은 음관蔭官 중에서 일찍이 군수郡守 이상을 역임한 지위와

7 차제(差除): 관리의 임용을 말한다.

8 단부(單付): 관리를 임명할 때 한 사람의 후보자만 올리는 것을 말한다.

9 비의(備擬): 관리를 임명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가리킨다. 비망(備望), 혹은 의망(擬望)이라고도 한다.

10 통의(通擬): 관원을 뽑을 때 물망에 오른 사람의 명단을 한곳에 모아 놓고 뽑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여 적임자를 뽑는 일을 말한다.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영本營에서 비의備擬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그리고 군향색 종사관軍餉色從事官으로 이름을 칭한다.

1. 별장別將은 일찍이 포도대장捕盜大將 및 훈련도감訓鍊都監 중군中軍 · 금군別將禁軍別將을 역임한 사람으로 본영本營에서 천거薦舉를 받아 [대장이 천거한다] 입계入啓한 다음 단부單付로 차하差下한다. 전령傳令에 내인內印¹¹을 찍고 교련관敎鍊官이 가져다준다.

1. 파총把總은 가선대부嘉善大夫¹² 병마절도사부터 일찍이 방어사防禦使를 역임한 사람까지 본영本營에서 천거薦舉를 받아 [대장부터 파총까지 천거한다] 입계한 다음 단부單付로 차하한다. 비록 변지邊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가 있다면 특교特敎로 제수除授하여서 이러한 규칙에 구애받지 말고 그대로 등용한다. 그리고 방어사防禦使의 경력을 가진 자는 곧바로 절도사의 직임에 의망擬望¹³한다. 1자리는 수원에 거주하는 당상 무변堂上武弁 가운데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의 예대로 차출한다. 전령에 내인을 찍고 교련관이 가져다준다.

1. 선기장善騎將은 일찍이 변지 및 내 · 외장內外將을 역임한 사람으로

11 내인(內印) : 장용영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을 말한다.

12 가선대부(嘉善大夫) : 종2품인 문무관의 품계의 하나로, 가의대부(嘉義大夫)의 다음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친은 중의(中義) · 정의(正義) · 소의대부(昭義大夫)로 하였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이를 통합하여 가의대부 · 가선대부로 하였다.

13 의망(擬望) : 관원을 임명할 때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으로 주의(注擬)라고도 한다.

본영本營에서 천거薦舉를 받아[대장부터 선기장까지 천거한다] 입계한 다음 단부로 차하한다. 차첩差帖에 내인을 찍고 순령수巡令手가 가져다준다.

1. 초관哨官은 일찍이 당하堂下의 정3품正三品 이하를 역임한 사람 및 천거를 받은 무과 출신出身¹⁴을 본영本營에서 천거를 받아[대장부터 초관까지 천거한다] 입계한 다음 단부로 차하한다. 전사前司 5자리는 수원에 거주하는 자 가운데 천거를 받은 전임 참상參上·참하參下의 조관朝官과 무과 출신을 통틀어 차출한다. 차첩에 내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는 금군의 액외와 삼군영三軍營의 권무군관勸武軍官의 예례대로 장신가將臣家の 자손과 지위地位와 벌열閥閥이 현저한 자 및 체격과 용력이 뛰어난 사람을 별장別將이 가려 뽑아 대장이 의논하게 한다. 대장이 가려 뽑으면 점련粘連¹⁵하여 아뢴 다음 본사本司의 사무를 면제해주고 일을 수행하도록 한다.[만약 직부 전시直赴殿試¹⁶ 또는 유고有故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감하減下¹⁷한다] 차첩에 내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4 천거를 받은 무과 출신(出身): 선전관청·부장천·수문장천을 받은 무과 급제자를 말한다.

15 점련(粘連): 관아에 제출하는 서면에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16 직부 전시(直赴殿試): 전시(殿試)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을 말한다. 전시는 임금(親臨)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의 등급을 정했다.

17 감하(減下):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1. 감관監官은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자급資級에 구애받지 말고 해당 관청에서 천거를 받아 입계한 다음 차하한다. 차첩에 내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별부료別付料는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사람으로 자급資級에 구애받지 말고 해당 관청 및 감관청監官廳에서 천거를 받아 입계한 다음 차하한다. 봉교차첩奉敎差帖에 향색 제조인餉色提調印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약방藥房 및 침의鍼醫는 국방局方¹⁸과 지방을 막론하고 기술이 정묘한 사람으로 품지稟旨하여 차출한다. 봉교차첩에 향색 제조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주되, 약방은 비록 내의원으로 옮겨 차출되더라도 그대로 겸대兼帶한다.
1. 화원畵員과 사자관寫字官은 차비 대령인差備待令人 가운데서 품지稟旨하여 겸차兼差하도록 한다. 봉교차첩에 향색 제조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별중사 파총別中司把總은 감관과 별부료를 번갈아서 차송差送하되[감관은 두 차례, 별부료는 한 차례 번갈아 한다], 본영本營에서 근무한 순서에 따라 삼망三望을 갖추어 병조로 보내어 입계한 다음 낙점을 받는다. 차첩에 내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8 국방(局方):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을 맡은 관청인 내의원(內醫院)으로 내국(內局)이라고도 한다.

19 부장천: 부장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천거해두는 제도이다. 부천(副薦)이라고도 한다. 1772년에 선천(宣薦)의 사례에 따라 「유천기사절목(有薦騎士節目)」을 만들어 금위영·어영청의 기사(騎士) 1번을 부장천·수문장천 자리로 만들어 이들을 취재해 소속시켰다.

1. 별후사 파총別後司把總은 전임 및 무과 출신·한량閑良 가운데서 응당 부장전¹⁹과 수문장전²⁰이 될 자를 본영에서 삼망을 갖추어 병조로 이송하여 입계한 다음 낙점을 받는다. 차첩에 내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별아병장別牙兵將은 장교將校 중에서 매우 정밀하게 가려서 합당한 사람을 본영에서 삼망을 갖추어 병조로 이송하여 입계한 다음 낙점을 받는다. 봉교차첩에 대장인大將印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종사관 및 당상 장관將官이 새로 제수된 뒤에 만약 직명職名이 없다면 본영에서 감결甘結²¹을 보내어 병조에서 군직軍職을 부치도록 한다.
1. 각 영營에 중군中軍을 설치하는 것은 대개 호령號令을 받기 위해서이다. 국초國初에는 대장이 직접 받아서 거행하였고, 금위영을 설치한 초기에는 별장別將이 또한 받아서 거행하였으므로 별도로 중군을 설치하지 않았다. 본영의 군제軍制는 대부분 국초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으므로 중군을 설치하지 않는다.
1. 본영의 군제는 이미 남군의 영사營司 제도를 따르고 북군의 부사部司 법을 쓰지 않으므로 천총千摠은 설치하지 않는다.

20 수문장전 : 수문장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천거해두는 제도이다. 말천(末薦)이라고도 한다. 1772년에 선천(宣薦)의 사례에 따라 「유천기사절목(有薦騎士節目)」을 만들어 금위영·어영청의 기사(騎士) 1번을 부장전·수문장전 자리로 만들어 이들을 취재해 소속시켰다.

21 감결(甘結)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을 이른다.



1. 지구관은 한산²² 7자리, 취재²³ 5자리, 향오²³ 5자리로 해당 관청에서 품지하여 차출한다. 봉교차첩에 대장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통장은 본영의 향오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차출하여 지구관의 액외²⁴에 부쳐 주고 본사의 사무를 면제해준다. 한산과 향오를 막론하고 또한 합당한 사람을 차출하여 교련관의 액외에 부쳐 주고 모두 해당 관청에서 품지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봉교차첩에 대장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교련관은 한산 3자리, 취재 3자리, 향오 취재 10자리, 별정²⁵ 4자리로 해당 관청에서 품지하여 차출하고, 대장소²⁶에서 전령²⁷傳令[전령패²⁸傳令牌를 찬다]한다.
1. 장용위²⁹장勇衛는 한산 20자리, 취재 30자리, 향오 무과 출신 취재 50자리[무예별감의 무과 출신 40자리, 마병·보병의 무과 출신 10자리]를 해당 관청에서 품지하여 차출한다. 패두³⁰牌頭는 별도로 차출하여 총원 이외로 소속시킨다[패두는 비록 한산으로 차출할지라도 향오로 시행한다]. 한산과³¹閑散寨는 지위와 별열이 있고 체격과 용력이 합당한 사람으로 하며, 취재 자리는 외방인 중에 병서³²兵書와 궁마³³弓馬를 단련해 숙달된 자 및 현직 금군³⁴禁軍 가운데서 연소한

22 한산(閑散) : 한량(閑良)과 산관(散官)을 말한다.

23 향오(行伍) : 군대의 대열 편성 단위로, 다섯 명을 오(伍)라 하고 다섯 오(伍) 즉 25명을 행(行)이라 한다.

자로 자원한 사람을 모두 해당 관청에서 천거 받아 취재한다. 향오 자리는 무예별감의 무과 출신 및 본영의 마병·보병의 무과 출신으로 취재하여 차정差定한다. 봉교차첩에 대장인을 찍고 순령수가 가져다준다.

1. 별무사別武士는 향오의 취재 22자리, 무예청武藝廳 8자리, 미부료 무사 대상 취재 3자리, 지방의 미부료 2자리, 마의馬醫 1자리로 품지하여 차정한다. 대장소에서 전령하고, 장패將牌는 교련관의 예대로 거행한다.
1. 부료 무사付料武士 3자리는 원래 요료를 지급하는 자리에 소속시키고, 패두牌頭를 담당하는 10자리는 장용위에서 이전에 근무한 사람 및 한산·납마納馬·미부료 무과 출신·향오 무과 출신 모두 활쏘기 시험의 응시를 허락한다. 1자리는 철전鐵箭을 멀리 쏜 사람으로 응시를 허락하고, 2자리는 향무사鄉武士에게 활쏘기 시험의 응시를 허락한다. 대장소에서 전령하고, 장패는 별무사의 예대로 거행한다.
1. 배봉진拜峯鎭²⁴의 아병장牙兵將은 본진에서 후보자를 뽑아서 보고하

24 배봉진(拜峯鎭) : 1789년(정조 13)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침인 영우원(永祐園)을 수원의 현릉원(顯陵園)으로 옮기고 난 자리에 설치한 진이다. 1793년에는 사복시가 관할하던 마장면(馬場面) 목리(目里)의 전답을 배봉진에 옮겨 소속시켜서 구호할 비용에 보태게 하였다. (『일성록』 정조 13년 11월 27일; 17년 2월 15일)

25 고성진(古城鎭) : 평안도 박천군(博川郡)에 위치한 진영이다. 청천강의 하류지역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고 대장소에서 차정하여 전령한다. 고성진古城鎭²⁵의 아병장은 본진에서 차출한 뒤 첩보牒報한다.

1. 평안도의 박천군博川郡은 본영의 둔전屯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 고성 아병古城牙兵도 가지고 있어 일이 서로 많이 관계된다. 다른 군문의 예대로 본영에 자벽과自辟窠²⁶를 만들어 전적으로 잘 살 펴서 단속하되, 초관 중에서 품지하여 차송한다.

1. 당상과 당하의 장관을 막론하고 전령 및 차첩을 공손히 받은 뒤에 와서 알현하되, 만약 전달한 자가 그 사람이 아니거나 혹 받은 자가 먼저 앞질러 와서 대령하면 해당 관청에서 이 일을 맡은 자를 논감論勘²⁷한다.

1. 당상과 당하의 장관으로 새로 차임된 뒤 성명과 천거한 사람의 이름 및 계하 받은 월·일을 감결을 보내고 병조에서 관안官案을 수정한다.

1. 종사관을 만약 파산인罷散人²⁸으로 차하差下했다면 선혜청 낭청의 예대로 관대冠帶 차림으로 상시 출근하라는 뜻으로 초기草記를 올리고, 산료散料는 본영에서 지급한다.

1. 당상 장관을 만약 파산인으로 의망擬望하였다면 그 이름 아래 ‘파산罷散’으로 주註를 달아 입계하고, 만약 삭직削職된 사람을 특교特

26 자벽과(自辟窠): 해당 관서의 우두머리가 자의(自意)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벼슬을 말한다.

27 논감(論勘): 죄를 따져 벌하는 것을 말한다.

28 파산인(罷散人): 관직이 해면(解免)된 한산(閑散)한 사람을 말한다.

敎로 차하하였다면 또한 ‘삭직削職’으로 주를 달아 입계한다. 만약 서용叙用하라는 명이 없었지만 예에 따라 계하 받았다면 ‘새로 차정差定할 장관으로 아무개가 현재 파산[혹은 삭직]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초기를 올린다. 현직 장관이 만약 본직으로 인하여 연좌되어 파직[혹은 삭직]되었는데, 단지 장관은 그대로 유임하라는 명이 있다면 일체 초기를 올려 품지한다.



差除

- 一. 都提調, 以大臣中時帶扈衛大將人例兼, 而自吏曹單付啓下爲白齊.
- 一. 餉色提調[軍需色・鄉軍色例兼] 以時任戶惠堂, 自吏曹備擬受點, 而如未滿三員, 則以曾經戶惠堂人, 啓請通擬爲白齊.
- 一. 使, 以曾經將臣以上人差除, 而倣扈衛大將差出之規. 從事官往告政院, 自政院入稟奉特旨舉行. 而依御營使稱大將之舊例, 營中文牒以大將稱號, 仍兼軍色提調, 亦爲例兼備堂. 而新除傳令, 安寶後, 知穀官資傳爲白齊.
- 一. 從事官, 以蔭官曾經郡守以上, 有地處履歷人, 自本營備擬受點. 以軍餉色從事官稱號爲白齊.
- 一. 別將, 以曾經捕將及都監中軍・禁軍別將人, 自本營受薦[大將薦舉], 入啓差下單付. 而傳令, 踏內印, 教鍊官資傳爲白齊.
- 一. 把摠, 以嘉善兵使至曾經防禦使人, 自本營受薦[自大將至把摠薦舉], 入啓差下單付. 而雖邊地履歷人中, 如有地望者, 特教除拜, 則不拘此式仍用. 防禦使履歷, 直擬闕任. 一窠, 以水原居堂上武弁, 有履歷之人, 依右例差出. 而傳令, 踏內印, 教鍊官資傳爲白齊.
- 一. 善騎將, 以曾經邊地及內外將履歷人, 自本營受薦[自大將至善騎將薦舉], 入啓差下單付. 而差帖, 踏內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哨官, 以曾經堂下正三品以下, 及有薦出身人, 自本營受薦[自大將以下至哨官薦舉], 入啓差下單付. 前司五窠, 以水原居, 有薦前卿朝官・參上・參下・出身, 通融差出. 而差帖, 踏內印, 巡令手資

傳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 依禁軍額外·三營勸武軍官例, 將家子枝, 與地閣表著者, 及如有身手膂力出類之人, 別將抄擇, 就議大將. 大將擇取, 粘啓除本仕隨行. 而[若直赴, 或有故者, 隨卽減下] 差帖, 踏內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監官, 以幹事人, 勿拘資級, 自該廳, 受薦入啓差下. 而差帖, 踏內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別付料, 以幹事解籌人, 勿拘資級, 該廳及監官廳受薦, 入啓差下. 奉教差帖, 踏餉色提調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藥房及鍼醫, 毋論局方與方外, 以術業精明人, 稟旨差出. 奉教差帖, 踏餉色提調印, 巡令手資傳爲白乎矣, 藥房, 則雖移差內局, 仍爲兼帶爲白齊.
- 一. 畫員·寫字官, 以差備待令人中稟旨兼差. 奉教差帖, 踏餉色提調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別中司把摠, 以監官·別付料輪回差送, 而[監官二次, 別付料一次, 以此輪回] 自本營, 從入仕次第, 備三望, 移送兵曹, 入啓受點. 而差帖, 踏內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別後司把摠, 以前啣及出身·閑良中, 應爲副·末薦人, 自本營備三望, 移送兵曹, 入啓受點. 而差帖, 踏內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別牙兵將, 以將校中極擇可合人, 自本營備三望, 移送兵曹, 入啓受點. 而奉教差帖, 踏大將印, 巡令手資傳爲白齊.
- 一. 從事官及堂上將官, 新除後, 如無職名, 自本營捧甘, 兵曹付軍職



爲白齊.

- 一. 各營中軍之設置, 盖爲承接號令. 而國初, 則大將直爲承接舉行, 禁營初設時, 別將亦爲承接舉行, 而不爲別設中軍是白如乎, 本營軍制, 多倣國初之制, 中軍不爲設置爲白齊.
- 一. 本營軍制, 既倣南軍營司之制, 不用北軍部司之法, 千總不爲設置爲白齊.
- 一. 知穀官, 以閑散七窠 · 取才五窠 · 行伍五窠, 自該廳, 稟旨差出. 而奉教差帖, 踏大將印, 巡令手賚傳爲白齊.
- 一. 統長, 以本營行伍中可合人差出, 付諸知穀官額外, 除本仕. 毋論閑散 · 行伍, 亦以可合人差出, 付諸教鍊官額外, 而竝自該廳, 稟旨舉行. 奉教差帖, 踏大將印, 巡令手賚傳爲白齊.
- 一. 教鍊官, 以閑散三窠 · 取才三窠 · 行伍取才十窠 · 別定四窠. 自該廳, 稟旨差出. 自大將所傳令[佩傳令牌]爲白齊.
- 一. 壯勇衛, 以閑散二十窠 · 取才三十窠 · 行伍出身取才五十窠[武藝出身四十窠, 馬步出身十窠], 自該廳, 稟旨差出. 而牌頭, 別爲差出, 屬之摠外[牌頭, 雖以閑散差出, 以行伍施行]爲白乎矣. 閑散窠, 則以有地閭身手膂力可合人, 取才窠, 則以方外人中兵書弓馬鍊熟者, 及時仕禁軍之年少自願者, 竝自該廳, 受薦取才. 行伍窠, 則以武藝出身, 及本營馬步出身, 取才差定. 奉教差帖, 踏大將印, 巡令手賚傳爲白齊.
- 一. 別武士, 以行伍取才二十二窠 · 武藝廳八窠 · 未付武士取才三窠 · 鄉未付二窠 · 馬醫一窠, 稟旨差定. 自大將所傳令, 將牌, 依

敎鍊官例, 舉行爲白齊.

- 一. 付料武士三窠, 以元料窠屬之, 牌頭所任十窠, 以壯勇衛前仕, 及閑散・納馬・未付出身・行伍出身, 竝試射許赴. 一窠, 以鐵箭遠射人, 許赴, 二窠, 以鄉武士試射, 許赴. 自大將所, 傳令, 將牌, 依別武士例, 舉行爲白齊.
- 一. 拜峯鎮牙兵將, 自本鎮, 望報, 大將所, 差定傳令. 古城鎮牙兵將, 自本鎮, 差出後, 牒報爲白齊.
- 一. 關西博川郡, 多有本營屯田, 又有古城牙兵, 事多相關. 依他軍門例, 作爲本營自辟窠, 使之專意照檢爲白乎矣. 哨官中稟旨差送爲白齊.
- 一. 毋論堂上・堂下將官, 傳令及差帖, 祇受來現. 而若傳者非其人, 又或受者徑先來待, 則該廳所任, 論勘爲白齊.
- 一. 堂上・堂下將官, 新差後, 姓名・薦名及啓下月日, 捧甘, 兵曹修正官案爲白齊.
- 一. 從事官, 若以罷散人差下, 則依惠廳郎廳例, 冠帶常仕之意, 草記. 散料, 自本營上下爲白齊.
- 一. 堂上將官, 若以罷散人擬望, 則其名下, 以罷散懸注入啓. 若以削職人, 特敎差下, 則亦以削職, 懸注入啓. 如無叙用之命, 而循例啓下, 則以‘新差將官, 某方在罷散[或削職]中, 何以爲之?’之意, 草記. 時任將官, 若因本職坐罷[或削職], 而只有將官仍任之命, 則一體草記稟旨爲白齊.



4. 원역(員役)²⁹

원역

1. 서리書吏 16인(人)[1790년(정조 14, 경술)에 6인을 창설함. ○1791년(정조 15, 신해)에 4인을 증설함. ○1792년(정조 16, 임자)에 4인을 증설함. ○1793년(정조 17, 계축)에 2인을 증설함]은 문필이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천거를 받아 가려 차정差定하되, 향색餉色 3인, 군수색軍需色 3인, 별고別庫 2인, 향군색鄉軍色 1인, 군색軍色 7인으로 한다.
1. 서사書寫 3인[1791년에 2인을 창설함. ○1792년에 1인을 증설함]은 글을 잘 쓰고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천거를 받아 가려 차정하고 서리의 예례와 같이 하되, 향색 2인, 군색 1인으로 한다.
1. 대령 서리待令書吏 3인, 조보 서리朝報書吏 1인[1789년(정조 13, 기유)에 창설함]은 승정원의 서사 및 대령 서리 중에서 겸임하여 차정하는 것으로 거행한다.
1. 서원書員 7인[1789년에 1인을 창설함. ○1790년에 1인을 증설함. ○1791년에 2인을 증설함. ○1792년에 1인을 증설함. ○1793년에 2인을 증설함]은 확실한 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려 차정하되, 야소冶所 2인[한산 자리], 약방藥房과 장관청將官廳 각 2인, 군기색軍器色 1인[군병 자리]으로 한다.

²⁹ 원역(員役) : 원(員)은 관원, 역(役)은 실무를 맡은 서리 등을 말한다.

1. 고지기[庫直] 13명[1787년(정조 11, 정미)에 1명을 창설함. ○1788년(정조 12, 무신)에 2명을 증설함. ○1789년에 2명을 증설함. ○1790년에 1명을 증설함. ○1791년에 1명을 증설함. ○1792년에 2명을 증설함. ○1793년에 4명을 증설함]은 확실한 내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정하되, 향색 3명[1명은 선혜청 고지기가 겸함], 별고別庫와 야소 각 2명, 군수색·향군색·시탄고柴炭庫 각 1명[이상 한산閑散], 군기색·기계색器械色·화차고火車庫 각 1명[이상 군병 자리]으로 한다.
1. 대청지기[大廳直] 1명, 도방자都房子 4명[1793년에 창설함. ○한산자리], 장용위청 서기書記 2명[1782년(정조 6, 임인)에 1명 창설함. ○1787년에 1명 증설함. 군병 자리]은 확실한 내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정한다.
1. 궁시인弓矢人 2인[1789년에 창설함], 공장 도편수工匠都邊首 2명[1788년에 1명을 창설함. ○1793년에 1명을 증설함. ○군병과 양인에 구애받지 않고 차정함]은 궁시弓矢와 무기를 정밀하게 만드는 자로 차정한다.
1. 사령使令 40명[1787년에 7명을 창설함. ○1788년에 3명을 증설함. ○1789년에 3명을 증설함. ○1790년에 2명을 증설함. ○1791년에 3명을 증설함. ○1792년에 2명을 증설함. ○1793년에 20명을 증설함]은 확실한 내력이 있는 사람으로 차정한다[대령 사령待令使令 15명. ○제조배提調陪 2명. ○대장배大將陪 5명. ○종사관배從事官陪 2명. ○별장배別將陪 2명. ○향색 유사餉色留司 7명. ○군색 유



사軍色留司 2명. ○당상소 유사堂上所留司 1명. ○별고 · 군수색 · 향군색 · 야소 각 1명].

1. 구종驅從 14명[대령 구종待令驅從 10명. ○향색 · 군색 각 2명], 우장지기雨裝直 2명[별장 · 종사관 각 1명], 다모茶母 2명[향색 · 군색 각 1명], 의막지기依幕直 1명[군향색의 의막依幕 등과 관련한 절차를 전담하여 거행한다]은 확실한 내력이 있는 사람을 차정한다.

1. 제약군劑藥軍 2명, 문서지기[文書直] 12명[향색 5명. ○별고 2명. ○군색 5명]은 각 해당 색에서 차정한다.

1. 방자房子 15명, 군사軍士 25명, 사환군使喚軍 20명[당상소堂上所)방자 · 군사 각 1명. ○선기장소善騎將所 방자 1명. ○장관청將官廳 방자 · 군사 각 2명. ○별부료청別付料廳 방자 1명. ○통장청統長廳 방자 · 군사 각 1명. ○지구관청知穀官廳 방자 2명. ○교련관청敎鍊官廳 방자 1명 · 군사 2명. ○제본사청除本仕廳 군사 1명. ○액외 장용위청額外壯勇衛廳 군사 1명. ○장용위청 방자 3명 · 군사 2명. ○별무사청別武士廳 방자 · 군사 각 2명. ○부료 무사청付料武士廳 방자 1명. ○향색 군사 2명. ○군수색 · 향군색 · 군기색 · 약방 · 기계색 · 직방直房 · 분발分撥³⁰ · 조보 · 대령 군사 각 1명. ○광정문光政門 군사 2명. ○별고 · 야소 · 사환군 각 10명]은 해당 관청과 해당 색에서 차정한다.

30 분발(分撥) : 왕의 전교나 거행 조건이 나올 때마다 그 당일에 뽑아내어 반포하던 것을 말한다. 소보(小報)라고도 하였다. 매일 아침에 그 전날의 일을 기록하여 반포하던 조보와 구별되었다.

1. 경기 감영의 겸감색兼監色은 해당 영營의 교련관 2인 · 영리營吏 2인으로 차정하고, 수원부의 겸감색의 고지기는 해당 부府의 장교 1인 · 서리 4인 · 관노官奴 1명 · 군사 1명으로 거행한다.



員役

- 一. 書吏十六人[庚戌朔六人. ○辛亥增四人. ○壬子增四人. ○癸丑增二人], 以有文筆勤幹人, 受薦擇差爲白乎矣, 餉色三人·軍需色三人·別庫二人·鄉軍色一人·軍色七人爲白齊.
- 一. 書寫三人[辛亥朔二人. ○壬子增一人], 以善寫解文人, 受薦擇差, 如書吏例爲白乎矣, 餉色二人·軍色一人爲白齊.
- 一. 待令書吏三人, 朝報書吏一人[己酉朔], 以政院書寫及待令書吏中兼差舉行爲白齊.
- 一. 書員七人[己酉朔一人. ○庚戌增一人. ○辛亥增二人. ○壬子增一人. ○癸丑增二人], 以有根着人, 擇差爲白乎矣, 治所二人[閑散窠], 藥房·將官廳各二人, 軍器色一人[軍兵窠]爲白齊.
- 一. 庫直十三名[丁未朔一名. ○戊申增二名. ○己酉增二名. ○庚戌增一名. ○辛亥增一名. ○壬子增二名. ○癸丑增四名], 以有根着人, 差定爲白乎矣, 餉色三名[一名惠廳庫直兼], 別庫·治所各二名, 軍需色·鄉軍色·柴炭庫各一名[以上閑散], 軍器色·器械色·火車庫各一名[以上軍兵窠]爲白齊.
- 一. 大廳直一名, 都房子四名[癸丑朔. ○閑散窠], 壯勇衛廳書記二名[壬寅朔一名. ○丁未增一名. 軍兵窠], 以有根着人, 差定爲白齊.
- 一. 弓矢人二人[己酉朔], 工匠都邊首二名[戊申朔一名. ○癸丑增一名. ○軍兵·良人勿拘差定], 以弓矢·器械精造者, 差定爲白齊.
- 一. 使令四十名[丁未朔七名. ○戊申增三名. ○己酉增三名. ○庚戌增

二名, ○辛亥增三名, ○壬子增二名, ○癸丑增二十名], 以有根着人, 差定[待令使令十五名, ○提調陪二名, ○大將陪五名, ○從事官陪二名, ○別將陪二名, ○餉色留司七名, ○軍色留司二名, ○堂上所留司一名, ○別庫・軍需色・鄉軍色・治所各一名]爲白齊.

一, 驅從十四名[待令驅從十名, ○餉色・軍色各二名], 雨裝直二名[別將・從事官各一名], 茶母二名[餉色・軍色各一名], 依幕直一名[軍餉色依幕等節, 專當舉行], 以有根着人, 差定爲白齊.

一, 齊藥軍二名, 文書直十二名[餉色五名, ○別庫二名, ○軍色五名], 自各該色, 差定爲白齊.

一, 房子十五名, 軍士二十五名, 使喚軍二十名[堂上所房子・軍士各一名, ○善騎將所房子一名, ○將官廳房子・軍士各二名, ○別付料廳房子一名, ○統長廳房子・軍士各一名, ○知穀官廳房子二名, ○教鍊官廳房子一名・軍士二名, ○除本仕廳軍士一名, ○額外壯勇衛廳軍士一名, ○壯勇衛廳房子三名・軍士二名, ○別武士廳房子・軍士各二名, ○付料武士廳房子一名, ○餉色軍士二名, ○軍需色・鄉軍色・軍器色・藥房・器械色・直房・分撥・朝報・待令軍士各一名, ○光政門軍士二名, ○別庫・治所・使喚軍各十名], 自該廳該色, 差定爲白齊.

一, 畿營兼監色, 以該營教鍊官二人・營吏二人差定, 水原府兼監色庫子, 以該府將校一人・書吏四人・官奴一名・軍士一名, 舉行爲白齊.



5. 천전(遷轉)³¹

천전

1. 훈련원 첨정僉正 · 판관判官 · 주부主簿 각 1자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초관의 체아 자리³²를 만든다. 처음으로 출륙出六³³하는 자는 주부에 의망擬望하고, 이미 주부를 역임한 자는 판관에 의망하고, 이미 판관을 역임한 자는 첨정에 의망한다. 그런데 첨정 자리는 선전관 천³⁴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의망하지 말라고 비록 법문에 있을지라도, 1777년(정조 1, 정유)의 선천 절목³⁵ 이후에 부장천³⁶으로 첨정이 된 예례가 이미 많다. 본영의 사체가 각별하니 선전관천과 부장천을 막론하고 통틀어 의망한다.
1. 참하의 초관은 임기가 만료되는 15개월 뒤에 비변사 낭청이 승륙陞六³⁷ 되는 예대로 본영에서 초기를 올려 등급을 올려 주부에 의망

31 천전(遷轉): 다른 관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32 체아 자리: 한 자리의 녹봉을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씩 번갈아가면서 받는 관직이다. 조선 후기 서반 체아직 규모는 『속대전』에서 1,511자리였다.

33 출륙(出六): 참외(參外) 즉 7품 이하의 품위(品位)에서 6품의 계(階)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승륙(陞六)이라고도 한다.

34 선전관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신분이 좋은 사람으로 선전관(宣傳官)이 될 만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35 선천 절목: 1777년(정조 1)에 공표한 「선천내금위사목(宣薦內禁衛事目)」을 말한다. 선천내금위 제도란 내금위 3번 가운데 1번(100명)을 선천(宣薦)의 자리로 만들어 선천을 받은 사람을 취재해 왕의 낙점을 받아 소속시키고 6개월간 근무하면 조사직에 의망하는 제도였다.

36 부장천: 부장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천거해두는 제도이다. 부천(副薦)이라고도 한다. 1772년에 선천(宣薦)의 사례에 따라 「유천기사절목(有薦騎士節目)」을 만들어 금위영 · 어영청의 기사(騎士) 1번을 부장천 · 수문장천 자리로 만들어 이들을 취재해 소속시켰다.

한다. 참상관의 경우 첨정·판관·주부 자리는 그 경력에 따라 만
들어 보고한다.

1. 이조의 말사末仕³⁸ 1자리는 초관의 구근久勤 자리로 만든다. 이미 출
륙한 사람 및 임기를 다한 사람은 통틀어 개월 수를 계산해준다.
수사인首仕人은 내삼청內三廳³⁹의 말사의 예대로 단망으로 성책을 정
리하여 보낸다.
1. 지구관·교련관의 구근 각 1자리는 도목都目⁴⁰마다 차례대로 각각
3망望으로 정리하여 병조에 보내되, 만일 45개월의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보사報仕⁴¹하지 않는다.
1. 장용위의 구근 2자리는 도목마다 차례대로 3망을 갖추어 병조에
정리해서 보낸다. 한강 별장漢江別將 또한 구근의 차례에 따라 3망
을 갖추어 병조에 정리해서 보내되, 체직당하고 돌아온 뒤에는 도
로 장용위의 말사에 붙인다.

37 승록(陞六): 7품직에 있는 관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고 성적이 좋은 경우에 6품으로 승급(陞級)하여
다른 직으로 전임(轉任)하는 것을 말한다.

38 말사(末仕): 무관 초사(初仕)로 6품에 오를 때에 벼슬한 날짜가 가장 적은 자를 병비(兵批)가 이비
(吏批)에게로 넘겨 직책을 준 것을 말사라고 한다. (『正祖實錄』 卷21, 정조 10년 1월 22일, “武初
仕之陸六品也, 以其仕日之最淺者, 兵批送吏批付職者, 謂之末仕.”)

39 내삼청(內三廳): ①조선시대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의 총칭이다. ②선
전관청·부장청·수문장청의 총칭이다. 여기서는 ②번을 말한다.

40 도목(都目):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말한다. 정기적인 인사 행정으로 1년에 6월·12월 두 차례 실
시하는 경우에는 양도목(兩都目), 3월·6월·9월·12월 네 차례 실시하는 경우는 사도목(四都目)
이라고 하였다. 관리의 성적을 고새(考査)하여 임면과 승진 또는 좌천을 실시하는 일을 말한다.

41 보사(報仕): 근무성적을 이조나 병조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장용위 한산 자리의 구군은 금위영 기사騎士 구군 가운데서 부장천과 수문장천 내 1자리를 본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고 도목마다 1인씩을 차례에 따라 천전시키되, 철전鐵箭 100보步에 입격하지 못한 자는 보사報仕하지 않는다.

1.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가 6개월의 임기를 다 마쳤다면[천거한 사람은 보사한다], 비록 금군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취재하는 자와 선전관천은 내금위內禁衛 및 액외 내금위를 통틀어서 병조에서 초사初仕에 의망한다. 그러나 철전 100보를 채우지 못했다면 비록 6개월이 지나더라도 병조에 보고하지 않는다.

1 별무사의 구군은 감액된 3번 내금위 1번番의 정령正領 구군 자리를 옮겨 소속시켜서 현재 정령과 통틀어 천전시켰다. 그런데 지금 별무사는 처음 설치했을 때보다 갑절로 증가하였고 정령은 7번七番⁴²으로 할 때보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구군은 전에 비해 조금 짧아졌다. 그래서 옮겨 소속시킨 3번 내금위의 구군을 해당 번의 정령으로 도로 소속시키고, 그 대신 전에 근무한 일수를 모두 계산해 준다. 구군 1자리는 별무사로 옮겨 소속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도목마다 천전시키게 한다.

1. 감관과 별부료는 차례에 따라[윤회와 관련해서는 관직조를 볼 것]

42 7번(七番) : 7번 금군(七番禁軍)의 줄임말이다. 조선시대 내금위(內禁衛) · 겸사복(兼司僕) · 우림위(羽林衛)의 군사를 합하여 만든 금군 700명을 일곱으로 나눈 번(番)이다. 내금위는 일내(一內) · 이내(二內) · 삼내(三內)의 3번, 겸사복은 일겸(一兼) · 이겸(二兼)의 2번, 우림위는 일우(一羽) · 이우(二羽)의 2번으로 각각 번갈아 번을 들었다.

고성 첨사에게 차송差送하되, 24개월의 기한을 채운다[기한 3개월 전에 과만瓜滿을 보고한다].

1.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3영의 교련관 각 1자리는 장용위 가운데서 구군의 차례에 따라 15인에 한해[혹은 10인이다]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품지하여 차송한다. 수어청·총융청 2영의 교련관 각 1자리는 각 청의 장교 가운데 전 근무 일수를 대령 무예청待令武藝廳에 모두 품지하여 차송한다.
1. 절목 사지節目事知⁴³ 2자리는 본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고, 장용위 가운데서 점입하여 차정하되, 사지는 본사의 근무를 면제해 준다.
1.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3영의 별무사 각 1자리는 비록 장용위에서 차송하는 자리이지만 대부분 부료청으로 옮겨 소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번은 무과방목武科榜目的 차례에 따르고, 한 번은 부료의 구군에 따라서 차송한다. 전직 장교와 변장邊將에서 돌아온 자는 원래 본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니 환사還仕 일자를 계산해서 차송한다. 만약 아직 부료되지 않았거나 상을 당한 자는 전 근무 일수를 통틀어 계산한다.
1.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⁴⁴ 중 화포 금군火砲禁軍 6자리 내 2자리

43 절목 사지(節目事知) : 절목의 임무는 곧 도로에서 부정을 적발하는 것인데, 창시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652년(효종 3, 임진)에 처음으로 금군에 예속시킨 것으로 장기 근무자 가운데서 간간이 채용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 2, 「附 龍虎營」「軍額」, “節目卽道路摘奸之任也, 初始未知何年, 而孝宗壬辰, 始屬禁旅, 久勤, 間間收用.”)

44 별파진(別破陣) : 군기시와 각 군영 등에 편제된 군사 조직으로, 포(砲)와 같은 화기(火器)를 다루었다.



는 본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고, 당보수⁴⁵를 취재하여 차송한다.

1. 경기 감영의 교련관 한산 2자리[경기읍 100리 내의 무사 가운데 병서·기사^{騎射}·체격이 합당한 자로 시재^{試才}하여 승차^{陞差}⁴⁶한다] 가운데 1자리를 덜어 내어, 향무사^{鄕武士} 1자리를 만들고[향무사는 모두 100리 내외에 있다], 감영에서 함께 시취하여 승차한다.

1. 도제조가 이미 호위대장을 겸하였으니, 군관 또한 해당 청의 군관을 옮겨 차정하고, 전령패^{傳令牌}를 찬다. 구근과 관련한 성책을 정리하여 보고할 때 장용영의 도제조와 군관도 성책을 만들어서 해당 조췌에 보낸다.

1. 수원의 향무사 가운데 장교의 자손으로 내력이 분명한 자는 경군문의 향오를 문벌에 따라 천거하는 예대로 수문장천과 부장천 두 천거에 구애받지 말고, 월천^{越薦}한다. 도목정사마다 혹은 간도목^{間都目}⁴⁷에 수원 사람 자리에 1인을 거두어 쓰는 일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한다.

1. 본영의 사체는 각별하니 당상·당하 장관을 막론하고 다른 영으로 옮기지 않는다.

45 당보수(塘報手): 척후병(斥候兵)이다. 전투상황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정세를 살피고 당보기(塘報旗)로 신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군사이다.

46 승차(陞差): 벼슬을 높이어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7 간도목(間都目):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도목 정사(都目政事) 이외에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하급 관원에 대한 인사 행정을 이른다.

1. 액외 장용위 및 한산 장용위는 당초에 입속하여 취재할 때 만약 100보를 넘는 자가 있으면 다시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는다. 액외는 6개월 근무 일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한산은 구근하여 거수居首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정리하여 보고한다.
1. 액외 장용위의 별취재別取才에 입격한 자 가운데 만일 월천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비록 근무 일수가 차서 월천을 기다릴지라도 규례대로 보사報仕한다.
1. 장용위의 한산과 액외를 막론하고 본영에 입속한 자는 장귀 취재將鬼取才⁴⁸에 응시하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액외는 취재에 입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등과인은 비록 이미 감하된 뒤 일지라도 본영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보사하는 한 가지 조항은 액외 내금위의 예대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보사한다.
1. 액외 장용위에서 이미 취재를 하였는데 미처 보사하지 못하여 태거된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본영에 정소呈訴하게 하고, 제사題辭⁴⁹를 받은 다음 병조에 부치게 한다. 그리하여 취재를 면제받아 곧바로 내금위에 응시하게 한다. 그리고 혹 근무 일수를 다 채웠으나 취재에 응시하지 않아 태거된 자는 논하지 않는다.

48 장귀 취재(將鬼取才) : 무과 출신으로서 장차 대장(大將)이 될 만한 사람이 추천을 받아 취재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조대 이후로는 선전관천을 통과한 사람들은 내금위(內禁衛) 취재를 따로 받아 관직에 나아갔고, 부장천과 수문장천을 통과한 사람들만 대장으로서의 추천을 받은 다음 취재를 받았다.

49 제사(題辭) : 보내온 공문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회신하는 문서이다.



遷轉

- 一. 訓練僉正·判官·主簿各一窠，加設，作爲哨官違兒窠。初出六者，擬主簿，已經主簿者，擬判官，已經判官者，擬僉正。而僉正窠，則宣薦外，毋得差擬。雖有法文，丁酉節目以後，副薦僉正，已多其例。本營事體自別，毋論宣·副薦，通融擬望爲白齊。
- 一. 叅外哨官，仕滿十五朔後，依備邊郎陞六例，自本營草記，陞擬主簿。叅上則僉正·判官·主簿窠，隨其履歷，修報爲白齊。
- 一. 吏批末仕一窠，作爲哨官久勤。以已出六人及准朔人，通融計朔。以首仕人，依內三廳末仕例，單望修成冊，以送爲白齊。
- 一. 知穀官·教鍊官久勤各一窠，每都目，從次第，各以三望修送兵曹爲白乎矣，如未滿四十五朔之限，則勿許報仕爲白齊。
- 一. 壯勇衛久勤二窠，每都目，從次第，備三望修送兵曹。漢江別將，亦從久勤次第，備三望修送兵曹爲白乎矣，遞來後，還付壯勇衛末仕爲白齊。
- 一. 壯勇衛閑散窠久勤，則禁御營騎士久勤中，副·末薦二窠內一窠，移屬本營，每都目，一人式，從次第，遷轉爲白乎矣，鐵箭百步未入格者，勿許報仕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仕滿六朔，則[有薦人報仕] 雖未經禁軍，取才者與宣薦，內禁衛及額外內禁衛通融，自兵曹，擬望於初仕爲白乎矣，鐵箭如未滿百步，則雖過六朔，勿許報兵曹爲白齊。
- 一. 別武士久勤，以減額三內禁軍一番，正領久勤窠移屬，與時存正領

通漚遷轉，而今則別武士倍增於設始之初，正領有減於七番之時。其久勤，比前稍近。三內移屬之久勤，段還屬於該番正領，其代前仕通計之。久勤一窠，移屬於別武士，使之每都目，遷轉爲白齊。

- 一. 監官・別付料，從次第[輪回見官職條]，差送古城僉使爲白乎矣，瓜期以二十四朔爲限[前期三朔報瓜]爲白齊。
- 一. 訓・禁・御三營教鍊官各一窠，壯勇衛中，從久勤次第，限十五人[或十人]，以可堪者稟旨差送。守・摠兩營教鍊官各一窠，以各廳將校中前仕，待令武藝廳，一體稟旨差送爲白齊。
- 一. 節目事知二窠，移屬本營，以壯勇衛中兼差爲白乎矣，事知則除本仕爲白齊。
- 一. 訓・禁・御三營別武士各一窠，雖是壯勇衛差送之窠，舉皆不願移屬付料廳。一次從科榜次第，一次從付料久勤，差送爲白乎矣，前脚將校・邊將遞來之人，元無本廳勤勞，計其還仕日子差送。若未付而遭故者，通計前仕爲白齊。
- 一. 軍器寺別破陣中，火砲禁軍六窠內二窠，移屬本營，以塘報手，取才差送爲白齊。
- 一. 畿營教鍊官閑散二窠[畿邑百里內武士中，兵書・騎射・身手可合者，試才陞差]，中除出一窠，作爲鄉武士取才窠[鄉武士，皆在百里內外]，自監營通同試取，以爲陞差爲白齊。
- 一. 都提調既兼扈衛大將，軍官亦以該廳軍官移差，佩傳令牌。久勤成冊修報時，以壯勇營都提調・軍官，成送該曹爲白齊。
- 一. 水原鄉武士中將校子枝來歷分明者，依京軍門行伍之隨地閤薦剡例，



守部兩薦無碍越薦。每都政，或間政，水原窠一人收用事，定式施行爲白齊。

- 一. 本營事體自別，毋論堂上・堂下將官，他營毋得移擬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及閑散壯勇衛，當初入屬取才時，若有越百步之人，更勿別取才。額外則待六朔仕滿，閑散則待久勤居首，直爲修報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之別取才入格人中，如有未越薦者，雖仕滿待其越薦，依例報仕爲白齊。
- 一. 毋論壯勇衛之閑散・額外，入屬本營者，勿赴將鬼取才，已有定式，額外之未入格於取才。而登科人，雖已減下之後，許令應試於本營，而報仕一款，依額外內禁衛例，待六朔報仕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之，已越取才，未及報仕，而見汰者，使之呈訴本營，受題往付於兵曹。以爲除取才直赴內禁，雖或仕滿未越取才而見汰者，勿論爲白齊。

b. 군제(軍制)

군제

1. 마보군은 선기대善騎隊⁵⁰ 좌·중·우 3초哨, 보군은 5사司 각 5초, 아병 6초로 합 34초로 만들고, 각색 표하군標下軍⁵¹은 839명으로 만든다. 선기대 345명, 경군 615명, 향군 2,540명, 사후군伺候軍 52명, 공장 아병工匠牙兵 26명, 치중 복마군輜重卜馬軍⁵² 40명, 배봉 아병拜峯牙兵 245명, 고성 아병古城牙兵 439명, 노량 아병露梁牙兵 144명으로 병사의 총합은 5,215명으로 한다.
1. 뇌자牢子⁵³ 180명[1782년(정조 6, 임인)에 훈련도감 기예군技藝軍 15명을 옮겨 소속시켜 창설하였다. ○1785년(정조 9, 을사)에 15명을 추가하였다. ○1788년(정조 12, 무신)에 22명을 추가하였다. ○1789년(정조 13, 기유)에 5명을 추가하였다. ○1790년(정조 14, 경술)에 9명을 추가하였다. ○1791년(정조 15, 신해)에 5명을 추가하였다. ○1792년(정조 16, 임자)에 9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정조 17, 계축)에 38명을 추가하였다], 내입번內入番 46명, 대장소大將所 43명, 도제조소都提調所 10명, 향색 제조

50 선기대(善騎隊) : 장용영의 기병으로 말을 잘 타고 특별한 기예를 가진 자로 선발했다. 국왕 행차 시 전·후방에서 어가를 호위하고, 왕이 머무는 사방에서 왕을 시위했다. 장용영 내영의 선기대는 1787년(정조 11) 27명이었으며, 1793년에는 3초(哨) 345명의 조직을 갖추었다.

51 표하군(標下軍) : 대장(大將)이나 각 장관(將官)의 수하에 있는 군병이다.

52 치중 복마군(輜重卜馬軍) : 군수품을 말에 실어 운반하는 군사를 말한다.

53 뇌자(牢子) : 군노(軍牢)라고도 하는데, 군대에서 죄인을 취급하는 병졸이다.



소餉色提調所 7명, 종사관소從事官所 5명, 서패書牌 2명, 복마군卜馬軍 5명으로 한다.

1. 순령수巡令手⁵⁴ 115명[1782년에 훈련도감 기예군 15명을 옮겨 소속시켜 창설하였다. ○1785년에 15명을 추가하였다. ○1788년에 18명을 추가하였다. ○1789년에 5명을 추가하였다. ○1790년에 9명을 추가하였다. ○1791년에 5명을 추가하였다. ○1792년에 10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38명을 추가하였다], 내입번 46명, 대장소 39명, 도제조소 10명, 향색 제조소 8명, 종사관소 5명, 서패 2명, 복마군 5명으로 한다.

1. 취고수吹鼓手⁵⁵ 95명[1787년(정조 11, 정미)에 21명을 창설하였다. ○1790년에 25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49명을 추가하였다], 내입번 88명, 서패 2명, 복마군 5명으로 한다.

1. 대기수大旗手⁵⁶ 100명[정미년에 28명을 창설하였다. ○1790년에 23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49명을 추가하였다], 내입번 93명, 서패 2명, 복마군 5명으로 한다.

1. 당보수塘報手⁵⁷ 66명[1788년에 16명을 창설하였다. ○1791년에 7

54 순령수(巡令手): 대장의 전령과 호위를 맡으며, 또한 순시기(巡視旗)·영기(令旗)를 드는 군사이며, 기수(旗手)라고도 한다.

55 취고수(吹鼓手): 군대의 취타수(吹打手)와 세악수(細樂手)를 합하여 이르기고 하고, 취타수(吹打手)의 별칭으로 쓰기도 한다.

56 대기수(大旗手): 대기치(大旗幟)를 받쳐 드는 군사이다.

57 당보수(塘報手): 척후병(斥候兵)으로, 전투상황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정세를 살피고 당보기(塘報旗)로 신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군사이다.

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43명을 추가하였다], 화전군^{火箭軍} 10명, 검별파진^{兼別破陣} 23명, 대장소 배기수^{大將所陪旗手} 20명, 원역 겸차^{員役兼差} 9명, 서패 2명, 복마군 2명으로 한다.

1. 등룡군^{燈籠軍}⁵⁸ 60명[1788년에 16명을 창설하였다. ○1790년에 9명을 추가하였다. ○1791년에 6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29명을 추가하였다], 내입번 26명, 도제조소 10명, 향색 제조소 5명, 대장소 15명, 서패 2명, 복마군 2명으로 한다.
1. 장막군^{帳幕軍} 50명[1787년에 13명을 창설하였다. ○1788년에 4명을 추가하였다. ○1790년에 6명을 추가하였다. ○1792년에 2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25명을 추가하였다], 서패 2명, 복마군 7명으로 한다.
1. 아병 57명[1787년에 20명을 창설하였다. ○1788년에 7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30명을 추가하였다], 내입번 32명, 대장소 20명, 서패 2명, 복마군 3명으로 한다.
1. 별장 표하군^{別將標下軍} 40명[1791년에 31명을 창설하였다. ○1793년에 9명을 추가하였다], 서패 3명, 복마군 2명으로 한다.
1. 4사^{四司}의 파총 표하군^{把總標下軍} 120명[1788년에 12명을 창설하였다. ○1789년에 52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56명을 추가하였다], 매 사^司마다 각각 30명으로 한다. 서패 2명, 복마군 1명[중

58 등룡군(燈籠軍) :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설치되어 밤에 등룡(燈籠)을 들고 왕이 타는 가마, 국장(國葬) 때 상여 등을 호위하던 군사이다.



사中司의 서자지[書字的]⁵⁹ 1명을 추가하였다], 전사前司의 표하는 수
원군 가운데서 가려 정한다.

1. 선기장 표하군善騎將標下軍 18명[1788년에 10명을 창설하였다. ○1791
년에 2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6명을 추가하였다], 매 초哨
마다 각각 6명으로 한다.
1. 선기대는 3초 345명이고 매 초에 115명이고, 서패 각 1명이다. 좌
초는 마재馬才로써 가려 정하고, 중초와 우초는 기예技藝로써 가려
정할 것[1787년에 27명을 창설하였다. ○1788년에 88명을 추가
하였다. ○1791년에 115명을 추가하였다. ○1793년에 115명을
추가하였다].
1. 중사中司는 5초 615명이고, 매 초마다 123명[1787년에 전前 1초
를 창설하였다. ○1788년에 중中·후後 2초를 추가하였다. ○1793
년에 좌左·우右 2초를 추가하였다], 서패 각 1명, 복마군 9명이고
경군京軍 자손 및 대년군待年軍으로 가려 뽑는다.
1. 전사前司·좌사左司·우사右司·후사後司는 20초 2,540명이고, 매
초마다 127명[1788년에 1초를 창설하였다. ○1789년에 1초를 추
가하였다. ○1790년에 8초를 추가하였다. ○1793년에 10초를 추
가하였다], 서기와 능마아能磨兒⁶⁰ 각 1명, 복마군 9명, 주역廚役⁶¹

59 서자지[書字的]: 하급 군졸로 군안(軍案), 통안(統案), 마안(馬案) 등 문서기록을 담당하였다.

60 능마아(能磨兒): 병학에 능한 사람을 지칭한다.

61 주역(廚役): 부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명은 경기 각 읍에 나누어 있게 하고[전사 5초는 수원에 있다. ○좌사는 5초이다. ○전초前哨, 좌초左哨, 중초中哨, 우초右哨, 후초後哨이다. ○우사는 5초이다. ○전초는 양주楊州, 좌초는 지평砥平, 중초는 2읍에 나누어 있다. <64명은 양근楊根, 63명은 가평加平>, 우초는 고양高陽, 후초는 파주坡州이다. ○후사는 5초이다. ○전초, 좌초, 중초, 우초, 후초이다] 정식으로 번갈아서 상번上番하게 한다.

1. 사후군伺候軍 52명은 장정을 가려 뽑아 역을 세우고, 초관청哨官廳 19명, 지구관청知穀官廳 9명, 통장청統長廳 2명, 교련관청敎鍊官廳 20명, 장용위청壯勇衛廳 2명으로 하되 원군에 결원이 생기면 차례에 따라 올린다.
1. 공장 아병工匠牙兵 26명을 소속시키고, 야소治所의 도편수都邊首⁶² 1명은 검솔檢率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택하여 차임한다.
1. 치중 복마군輜重卜馬軍 40명은 확실한 내력이 있는 한정閑丁⁶³으로 가려 정하고, 입마立馬⁶⁴의 값을 보태준다[마정조馬政條를 볼 것]. 기패 1명은 그 가운데서 택하여 차임하고, 패두牌頭 1명은 칠색 패두七色牌頭 가운데서 겸임하여 차정한다.

62 도편수(都邊首) : 조선 후기 건축공사를 담당하던 기술자의 호칭으로, 각 분야의 책임자인 편수(邊首)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63 한정(閑丁) : 국가의 부역(賦役)에 나가지 않는 장정(壯丁)을 말한다.

64 입마(立馬) : 말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1. 별중사別中司[관직조官職條를 볼 것] 표하군標下軍 58명은 진鎭 근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려 정하고, 아병 3초 381명은 또한 부근의 둔민 가운데서 가려 정한다.
1. 별후사別後司[관직조를 볼 것] 표하군 23명은 진 근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려 정하고, 아병 2초 222명은 또한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가려 정한다.
1. 별아병장別牙兵將[관직조를 볼 것] 표하군 23명은 진 근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려 정하고, 아병 1초 120명은 또한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가려 정한다.

軍制

- 一. 馬步軍, 以善騎隊左·中·右三哨, 步軍五司各五哨, 牙兵六哨, 合三十四哨, 各色標下軍, 八百三十九名爲制. 善騎隊三百四十五名, 京軍六百十五名, 鄉軍二千五百四十名, 伺候軍五十二名, 工匠牙兵二十六名, 輜重卜馬軍四十名, 拜峯牙兵二百四十五名, 古城牙兵四百三十九名, 露梁牙兵一百四十四名, 兵總共五千二百四十五名爲白齊.
- 一. 牢子一百十八名[壬寅以訓局技藝軍十五名, 移屬勑設. ○乙巳加十五名. ○戊申加二十二名. ○己酉加五名. ○庚戌加九名. ○辛亥加五名. ○壬子加九名. ○癸丑加三十八名], 內入番四十六名, 大將所四十三名, 都提調所十名, 餉色提調所七名, 從事官所五名, 書牌二名, 卜馬軍五名爲白齊.
- 一. 巡令手一百十五名[壬寅以訓局技藝軍十五名, 移屬勑設. ○乙巳加十五名. ○戊申加十八名. ○己酉加五名. ○庚戌加九名. ○辛亥加五名. ○壬子加十名. ○癸丑加三十八名], 內入番四十六名, 大將所三十九名, 都提調所十名, 餉色提調所八名, 從事官所五名, 書牌二名, 卜馬軍五名爲白齊.
- 一. 吹鼓手九十五名[丁未勑二十一. ○庚戌加二十五名. ○癸丑加四十九名], 內入番八十八名, 書牌二名, 卜馬軍五名爲白齊.
- 一. 大旗手一百名[丁未勑二十八名. ○庚戌加二十三名. ○癸丑加四十九名], 內入番九十三名, 書牌二名, 卜馬軍五名爲白齊.



- 一. 塘報手六十六名[戊申卅十六名. ○辛亥加七名. ○癸丑加四十三名], 火箭軍十名, 兼別破陣二十三名, 大將所陪旗手二十名, 負役兼差九名, 書牌二名, 卜馬軍二名爲白齊.
- 一. 燈籠軍六十名[戊申卅十六名. ○庚戌加九名. ○辛亥加六名. ○癸丑加二十九名], 內入番二十六名, 都提調所十名, 餉色提調所五名, 大將所十五名, 書牌二名, 卜馬軍二名爲白齊.
- 一. 帳幕軍五十名[丁未卅十三名. ○戊申加四名. ○庚戌加六名. ○壬子加二名. ○癸丑加二十五名], 書牌二名, 卜馬軍七名爲白齊.
- 一. 牙兵五十七名[丁未卅二十名. ○戊申加七名. ○癸丑加三十名], 內入番三十二名, 大將所二十名, 書牌二名, 卜馬軍三名爲白齊.
- 一. 別將標下軍四十名[辛亥卅三十一名. ○癸丑加九名], 書牌三名, 卜馬軍二名爲白齊.
- 一. 四司把總標下軍一百二十名[戊申卅十二名. ○己酉加五十二名. ○癸丑加五十六名], 每司各三十名. 書牌二名, 卜馬軍一名[中司書字的加一名], 前司標下, 以水原軍抄定爲白齊.
- 一. 善騎將標下軍十八名[戊申卅十名. ○辛亥加二名. ○癸丑加六名], 每哨各六名爲白齊.
- 一. 善騎隊三哨三百四十五名, 每哨一百十五名, 書牌各一名. 左哨以馬才抄定, 中·右哨以技藝抄定[丁未卅二十七名. ○戊申加八十八名. ○辛亥加一百十五名. ○癸丑加一百十五名]爲白齊.
- 一. 中司五哨六百十五名, 每哨一百二十三名[丁未卅前一哨. ○戊申加中·後二哨. ○癸丑加左·右二哨], 書牌各一名, 卜馬軍九名, 以

京軍子技, 及待年軍抄定爲白齊.

一. 前·左·右·後司二十哨二千五百四十名, 每哨一百二十七名[戊申勑一哨. ○己酉加一哨. ○庚戌加八哨. ○癸丑加十哨], 書記·能麼兒各一名, 卜馬軍九名, 廚役一名, 分在京畿各邑[前司五哨水原. ○左司五哨. ○前哨, 左哨, 中哨, 右哨, 後哨. ○右司五哨. ○前哨楊州, 左哨砥平, 中哨分在兩邑<六十四名楊根, 六十三名加平>, 右哨高陽, 後哨坡州. ○後司五哨. ○前哨, 左哨, 中哨, 右哨, 後哨], 依定式, 輪回上番爲白齊.

一. 伺候軍五十二名, 以壯抄立役, 哨官廳十九名, 知穀官廳九名, 統長廳二名, 教鍊官廳二十名, 壯勇衛廳二名, 而元軍有闕, 則從次第, 陞付爲白齊.

一. 工匠牙兵二十六名屬之, 冶所都邊首一名, 以可堪檢率者, 擇差爲白齊.

一. 輜重卜馬軍四十名, 以有根着閑丁抄定, 添價立馬[見馬政條]. 旗摠一名, 自其中擇差, 牌頭一名, 七色牌頭中兼差爲白齊.

一. 別中司[見官職條]標下軍五十八名, 以鎮底民抄定, 牙兵三哨三百八十一名, 亦以附近屯民抄定爲白齊.

一. 別後司[見官職條]標下軍二十三名, 以鎮底民抄定, 牙兵二哨二百二十二名, 亦以附近居民抄定爲白齊.

一. 別牙兵將[見官職條]標下軍二十三名, 以鎮底民抄定, 牙兵一哨一百二十名, 亦以附近居民抄定爲白齊.



7. 청사(廳舍)

청사

1. 장용영[1787년(정조 11, 정미)에 창설하였다. ○이현梨峴에 있는 옛 궁궐을 수축하고 옮겨 들어갔다] 내대청 24칸[동방東房 2칸 협방 반칸. ○서방西房 2칸. ○청 12칸 반. ○뒷간 7칸. ○제조와 대장이 좌기하는 처소이다], 외대청 12칸[방 2칸. ○청 10칸], 동대청 6칸[방 1칸 반. ○청 3칸. ○뒷간 3칸. ○종사관이 좌기하는 처소이다], 군기 대청軍器大廳 8칸 반[동방 1칸 반. ○서방 1칸. ○청 4칸 반. ○주방 1칸 반. ○군기 감동軍器監董의 처소이다], 사정射亭 6칸[방 1칸 반. ○청 3칸. ○뒷간 3칸], 육우정六隅亭 1칸[초가草家] 당상 장관 직소直所 13칸 반[동방 2칸. ○서방 2칸. ○청 3칸. ○뒷간 4칸. ○주방 반칸. ○마방 1칸. ○마구간 2칸. ○측간 1칸<초가>], 초관 직소 10칸[방 2칸. ○청 2칸. ○뒷간 2칸. ○주방 1칸. ○마구간 2칸<초가>], ○방자고房子庫 1칸. ○측간 1칸<초가>], 지구관청知穀官廳 16칸[서방 1칸. ○동방 2칸. ○청 7칸. ○누각 1칸. ○주방 1칸. ○마구간 3칸. ○측간 1칸], 별무사청別武士廳 17칸[방 2칸. ○청 2칸. ○뒷간 4칸. ○주방 1칸. ○문 1칸. ○헛간 4칸. ○마방 2칸. ○마구간 2칸. ○측간 1칸], 서패書牌 번소番所 8칸[당상소堂上所의 서패 번소방書牌番所房 2칸. ○뒷간 2칸. ○초관의 서패 번소방 2칸. ○청 2칸. ○뒷간 2칸], 초군 번소 23칸[청 6칸. ○헛간 17칸], 장막군 번소 2칸[방 1칸. ○청 1칸], 향군이 입접하는 곳 48칸 반[방 24칸. ○주방 11칸 반. ○헛간 2칸. ○창고 2칸. ○마구간 9

칸], 군기와 서고의 번소 4칸 반[방 2칸. ○청 2칸 반], 궁시인간弓矢人間 10칸[궁방弓房 1칸 반. ○주방 1칸<누각 2칸>. ○청 6칸. ○전방箭房 1칸. ○청 반칸] 고지기[庫直] 번소 4칸[방 2칸. ○청 1칸. ○주방 1칸], 곳집庫舍 184칸[동변의 미고米庫 30칸. ○남변의 전목포고錢木布庫 10칸<누각 위는 목면과 포布, 누각 아래는 전錢이다.> ○서행각西行閣 미고 6칸. ○남행각南行閣 미고 42칸. ○군기고軍器庫 30칸. ○궁자고弓子庫 7칸 반. ○전고錢庫 3칸. ○북행각北行閣 장막고帳幕庫 15칸. ○화차고火車庫 32칸. ○별하고別下庫 1칸 반. ○별장소고別將所庫 1칸 반. ○삼사고三司庫 각 1칸. ○금화고禁火庫 1칸. ○취고수고吹鼓手庫 1칸 반], 공장간工匠間 35칸[도편수방都邊首房 1칸. ○청 반칸. ○측간 1칸. ○야장冶匠⁶⁵ 11칸. ○두석장豆錫匠⁶⁶ 3칸. ○주장注匠⁶⁷ 3칸. ○조가장造家匠⁶⁸ 3칸. ○연마장鍊磨匠⁶⁹ 2칸. ○나사정장羅絲釘匠⁷⁰ 2칸. ○천혈장穿穴匠⁷¹ 2칸. ○찬혈장鑽穴匠⁷² 2칸. ○내집장內執匠 1칸. ○적이장炙伊匠 1칸 반. ○장가장粧

65 야장(冶匠) : 대장장이로서 주로 풀무를 차려놓고 시우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담금질하여 각종 도구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장인을 말한다.

66 두석장(豆錫匠) : 구리와 아연 등을 합금하여 두석으로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67 주장(注匠) : 가죽줄 · 낫줄 · 밧줄 · 쇠줄 따위를 만드는 장인으로 줄장(漣匠)이라고도 한다.

68 조가장(造家匠) : 악기 · 베틀 · 칼 등의 집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69 연마장(鍊磨匠) : 도구를 갈아 날을 세우거나 모양을 다듬는 장인을 말한다.

70 나사정장(羅絲釘匠) : 나사못(羅絲釘)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71 천혈장(穿穴匠) : 구멍을 뚫는 일에 종사하는 장인을 말한다.

72 찬혈장(鑽穴匠) : 찬혈(鑽穴)은 총알이 나가게 구멍을 뚫어 놓은 총신(銃身)을 이르는 말로써, 이러한 찬혈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家匠 2칸], 구류칸_{狗留間} 3칸, 문 10칸 반[대문_{大門} 1칸<2칸은 통로이다.>이고 2칸은 통로이다. ○동문_{東門} 1칸. ○북문_{北門} 1칸. ○중문_{中門} 1칸. ○좌우협문_{左右挾門} 각 1칸. ○향군 번소 문 1칸. ○서쪽 담장 소문_{小門} 1칸. ○공장간문_{工匠間門} 1칸<칸의 반은 통로이다>, 합하여 446칸 반이다.

1. 직방_{直房}[1789년(정조 13, 기유)에 창건하였다] 대청 17칸 반[방 1칸 반. ○청 1칸 반. ○누각 2칸. ○마구간 2칸. ○헛간 2칸 반. ○마방 1칸. ○청 2칸. ○장관의 직소_{直所}이다. ○제조나 대장이 간혹 개좌한다], 사정_{射亭} 6칸[방 1칸 반. ○청 4칸 반], 교련관청_{敎鍊官廳} 4칸[방 2칸. ○청 1칸. ○주방 1칸], 별무사청_{別武士廳} 2칸[방 1칸. ○청 1칸], 부료 무사청_{付料武士廳} 3칸[방 2칸. ○청 1칸], 서패 번소 4칸[방 2칸. ○청 1칸. ○주방 1칸], 마보군 번소 21칸 반[마군 번소방 4칸. ○청 3칸 반. ○주방 3칸. ○마구간 6칸. ○헛간 1칸. ○보군 번소청 2칸. ○헛간 2칸], 곳집_{庫舍} 15칸 반[선기대고_{善騎隊庫} 2칸. ○선기대 북직고_{善騎隊卜直庫} 3칸. ○취고수고_{吹鼓手庫} 2칸. ○대기자고_{大旗子庫} 3칸. ○기계색고_{器械色庫} 3칸. ○장관청 방자고_{將官廳房子庫} 1칸 반. ○금화고_{禁火庫} 1칸], 문 3칸[대문 1칸. ○동산문_{東山門} 1칸. ○후문_{後門} 1칸], 합하여 76칸 반이다.

1. 야소_{冶所}[1790년(정조 14, 경술)에 창건하였다] 대청 7칸 반[방 2칸. ○청 4칸. ○주방 반칸. ○측간 1칸. ○해당 차지가 거점하는 장소이다], 서고 번소_{書庫番所} 6칸[방 2칸. ○청 2칸. ○주방 2칸], 군사 번소_{軍士番所} 1칸[방_房], 공장간_{工匠間} 18칸[야장간_{冶匠間} 7칸.

○목수간木手間 4칸. ○주장간鑪匠間 4칸〈방 2칸〉, 칠장간漆匠間 3칸〈방 2칸〉, 곳집庫舍 66칸[미태고米太庫 20칸 반. ○철물고鐵物庫 6칸. ○목물고木物庫 33칸 반. ○회고灰庫 3칸. ○사고私庫 3칸], 대문 1칸, 합하여 99칸 반이다.

1. 북창北倉[1788년(정조 12, 무신)에 창설하였다. ○선혜청의 옛 창고를 수축하여 옮겨 들어갔다] 대청 15칸[방 2칸. ○청 13칸. ○종사관이 좌기하는 처소이다], 협대청挾大廳 7칸 반[방 2칸. ○청 2칸. ○뒷간 3칸. ○주방 반칸. ○월방越房 1칸. ○뒷간 반칸], 초관 직소 8칸 반[방 1칸 반. ○청 4칸 반. ○주방 1칸 반. ○측간 1칸], 연당蓮堂 7칸 반, 신당神堂 1칸 반, 군병 번소 5칸[방 2칸. ○청 1칸. ○주방 2칸], 곳집庫舍 118칸 반[미고米庫 93칸 반. ○사고私庫 19칸. ○화전火箭을 만드는 칸 6칸], 원역 가사員役家舍 22칸[고직가庫直家 16칸. ○군사가軍士家 6칸], 월랑月廊 3칸, 문 3칸[3문三門] 합하여 191칸 반이다.



廳舍

一. 壯勇營[丁未勑. ○以梨峴舊宮, 移屬添建] 內大廳二十四間[東方二間, 挾房半間. ○西房二間. ○廳十二間半. ○退七間. ○提調·大將坐起之所], 外大廳十二間[房二間. ○廳十間], 東大廳六間[房一間半. ○廳三間. ○退三間. ○從事官坐起之所], 軍器大廳八間半[東房一間半. ○西房一間. ○廳四間半. ○廚一間半. ○軍器監董之所], 射亭六間[房一間半. ○廳三間. ○退三間], 六隅亭一間[草家], 堂上將官直所十三間半[東房二間. ○西房二間. ○廳三間. ○退四間. ○廚半間. ○馬房一間. ○馬廄二間. ○廁間一間<草家>], 哨官直所十間[房二間. ○廳二間. ○退二間. ○廚一間. ○馬廄二間<草家>]. ○房子庫一間. ○廁間一間<草家>], 知穀官廳十六間[西房一間. ○東房二間. ○廳七間. ○樓一間. ○廚一間. ○馬廄三間. ○廁間一間], 別武士廳十七間[房二間. ○廳二間. ○退四間. ○廚一間. ○門一間. ○虛間四間. ○馬房二間. ○馬廄二間. ○廁間一間], 書牌番所八間[堂上所書牌番所房二間. ○退二間. ○哨書牌番所房二間. ○廳二間. ○退二間], 哨軍番所二十三間[廳六間. ○虛間十七間], 帳幕軍番所二間[房一間. ○廳一間], 鄉軍入接處四十八間半[房二十四間. ○廚十一間半. ○虛間二間. ○庫二間. ○馬廄九間], 軍器·書庫番所四間半[房二間. ○廳二間半] 弓矢人間十間[弓房一間半. ○廚一間<樓二間>. ○廳六間. ○箭房一間. ○廳半間], 庫直番所四間[房二間. ○廳一間. ○廚一間], 庫舍一百八十四間[東邊米

庫三十間. ○南邊錢木布庫十間(樓上木布, 樓下錢.) ○西行閣米庫六間. ○南行閣米庫四十二間. ○軍器庫三十間. ○弓子庫七間半. ○錢庫三間. ○北行閣帳幕庫十五間. ○火車庫三十二間. ○別下庫一間半. ○別將所庫一間半. ○三司庫各一間. ○禁火庫一間. ○吹鼓手庫一間半], 工匠間三十五間[都邊首房一間. ○廳半間. ○廁間一間. ○冶匠十一間. ○豆錫匠三間. ○注匠三間. ○造家匠三間. ○鍊磨匠二間. ○羅絲釘匠二間. ○穿穴匠二間. ○鑽穴匠二間. ○內執匠一間. ○炙伊匠一間半. ○粧家匠二間], 狗留間三間・門十間半[大門一間<二間通>. ○東門一間. ○北門一間. ○中門一間. ○左右挾門, 各一間. ○鄉軍番所門一間. ○西牆小門一間. ○工匠間門一間<間半通>], 共四百四十六間半.

- 一. 直房[己酉剋], 大廳十七間半[房一間半. ○廳六間半. ○樓二間. ○馬廄二間. ○虛間二間半. ○馬房一間. ○廳二間. ○將官直所. 提調・大將, 時或開坐], 射亭六間[房一間半. ○廳四間半] 敎鍊官廳四間[房二間. ○廳一間. ○廚一間], 別武士廳二間[房一間. ○廳一間] 付料武士廳三間[房二間. ○廳一間] 書牌番所四間[房二間. ○廳一間. ○廚一間], 馬步軍番所二十一間半[馬軍番所房四間. ○廳三間半. ○廚三間. ○馬廄六間. ○虛間一間. ○步軍番所廳二間. ○虛間二間], 庫舍十五間半[善騎隊庫二間. ○善騎隊卜直庫三間. ○吹鼓手庫二間. ○大旗子庫三間. ○器械色庫三間. ○將官廳房子庫一間半. ○禁火庫一間], 門三間[大門一間. ○東山門一間. ○後門一間], 共七十六間半.



一. 治所[庚戌勑], 大廳七間半[房二間. ○廳四間. ○廚半間. ○廁間一間. ○該次知居接之所], 書庫番所六間[房二間. ○廳二間. ○廚二間], 軍士番所一間[房], 工匠間十八間[治匠間七間. ○木手間四間. ○鑄匠間四間<房二間>, 漆匠間三間<房二間>] 庫舍六十六間[米太庫二十間半. ○鐵物庫六間. ○木物庫三十三間半. ○灰庫三間. ○私庫三間], 大門一間, 共九十九間半.

一. 北倉[戊申勑. ○以宣惠廳舊倉, 移屬添建], 大廳十五間[房二間. ○廳十三間. ○從事官坐起之所], 挾大廳七間半[房二間. ○廳二間. ○退三間. ○廚半間. ○越房一間. ○退半間], 哨官直所八間半[房一間半. ○廳四間半. ○廚一間半. ○廁間一間], 蓮堂七間半, 神堂一間半, 軍兵番所五間[房二間. ○廳一間. ○廚二間] 庫舍一百十八間半[米庫九十三間半. ○私庫十九間. ○火箭打造間六間], 員役家舍二十二間[庫直家十六間. ○軍士家六間], 月廊三間, 門三間[三門], 共一百九十一間半.

8. 부신(符信)⁷³

부신

1. 각 영의 대장은 혹은 명소命召⁷⁴를 착용하거나 혹은 밀부密符⁷⁵를 착용하지만, 본영의 사使는 사체가 각별하므로 국초의 옛 제도를 본따서 호부虎符⁷⁶와 전령패傳令牌⁷⁷를 착용한다.
1. 인신印信 4과類 가운데 1과는 ‘장용영壯勇營’ 3글자를 새겨서 판하判下받는 문서에 사용하고, 1과는 ‘장용영 향색 제조지인壯勇營餉色提調之印’ 이라고 새겨서 제조가 사용하며, 1과는 ‘장용영인壯勇營印’ 이라고 새겨서 대장이 사용하며, 1과는 ‘장용영종사관인壯勇營從事官印’ 이라고 새겨서 종사관이 사용한다.
1. 영표令票⁷⁸는 대내太內에 보관하였다가 도성의 안과 밖에 거동할 때, 군병이 물러가고 나아가거나 그 밖에 입직한 장관 이하가 중일

73 부신(符信) : 조선시대에 병조에서 특정인의 신분을 밝히고 중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확인을 위해 여러 가지 증명표를 말한다. 발병부(發兵符), 밀부(密符), 개문좌부(開門左符), 한부(漢符), 신부(信符), 통부(通符), 명패(命牌) 등이 있었다.

74 명소(命召) : 왕이 주요 관원들을 부를 때 승정원에서 명패(命牌)를 주어 부르는 일이다. 패로써 부른다 하여 패초(牌召)라고도 하였다.

75 밀부(密符) : 병력 동원과 비상사태에 사용하기 위해 수어청과 총융청의 대장, 관찰사, 통제사, 강화·개성의 유수, 절도사, 방어사 등 고위 책임자에게 내린 부신이다.

76 호부(虎符) : 1403년(태종 3)에 처음 제작한 부신이며, 1457년(세조 3)에 발병부를 제작하여 사용한 뒤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나무쪽에 호랑이를 새기고 ‘음양(陰陽)’ 두 글자를 좌우에 새겼다. 여기서는 이 제도를 본따서 호부를 제작하라는 의미이다.

77 전령패(傳令牌) : 조선시대 좌우포도대장이 명령을 전달할 때 쓰던 패이다.

78 영표(令票) : 각 영문(營門)에 주장(主將)의 명령을 전하는 표로 쓰던 것이다.



中日 시험을 치러갈 때[사강射講도 동일하다], 외영이 대신 숙직할 때[군병이 나가서 쓸 때도 동일하다] 지구관이 임금께 청하여 꺼내다 쓰고 공손히 받은 이후 즉시 반납한다.

1. 도성의 안과 밖에 거동할 때 영표를 담당하는 지구관은 각기 차비기差備記 가운데 힘을 쓰고 모두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符信

- 一. 各營大將, 或佩命召, 或佩密符, 而本營使, 事面自別, 倣用國初古制, 佩虎符·傳令牌爲白齊.
- 一. 印信四顆段, 一顆刻以壯勇營三字, 用於判下文書, 一顆刻以壯勇營餉色提調之印, 提调用之, 一顆刻以壯勇營印, 大將用之, 一顆刻以壯勇營從事官印, 從事官用之爲白齊.
- 一. 令票藏于大內, 城內外動駕時, 軍兵去就, 其他入直將官以下, 中日赴試時[射講時同], 外營代直時[軍兵出用時司], 知穀官啓請出用祇受後, 登時還納爲白齊.
- 一. 城內外動駕時, 令票次知知穀官, 各務差備記中, 一體磨鍊舉行爲白齊.

9. 군호(軍號)⁷⁹

군호

1. 매일 지구관은 준비된 군호(軍號)를 받아 가서, 대궐 안에 입직한 이들에게 반포한 후 외영에 내어주면, 외영에 입직한 초관은 궐문 밖에서 받아가서 입직한 당상 장관(堂上將官)에게 전해준다. 그러면 장관은 4건을 베껴내어 2건은 입직한 별무사로 하여금 제조와 대장에게 나누어 보내주게 하고, 2건은 직방(直房)과 북창(北倉) 두 곳에 입직한 군사가 가져가길 기다렸다가, 해당 장령의 이름이 새겨진 화살[名箭]과 서로 비교한 후 영중에 내어주면 구전(口傳)으로 반포한다.
1. 도제조가 이미 호위청의 군호를 가지고 있다면 거행하지 않는다.
1. 군호를 가져갈 때, 외영에 입직한 초관이 혹 공고(公故)⁸⁰가 서로 겹치게 되면 입직한 별무사가 대신 행한다.
1. 성내에 거동하여 밤을 지새울 때에는 외영에 입직한 초관이 작문(作門) 밖에 와서 기다렸다가 받아가고, 능행으로 밤을 지새울 때에는 교련관이 받아가서 대장에게 전해주면 대장이 베껴서 진중에 반포한다[영에 머물고 있으면 외영에 입직한 초관이 받은 다음 준비된 군호를 반포하는 것을 규례와 같이 한다].

79 군호(軍號) : 군대의 순찰이나 도성의 순라(巡邏)에 미리 약속해 두었다가 자기편의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해 쓰는 암호나 신호를 말한다. 매일 밤 신시(申時)에 입직한 병조의 당상관이 3자 이내의 군호를 만들어 밀봉하여 임금께 드리고 재가를 받은 다음 병조를 거쳐 경수소(警守所)에 내려 보내 시행하게 한다.

80 공고(公故) : 관원으로서 조회(朝會) · 진하(進賀) · 거동(舉動) 등 제반 궁중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軍號

- 一. 每日知穀官受出差備軍號, 頒布內入直後, 出給外營, 則外營入直哨官, 自闕門外受去, 傳于入直堂上將官. 則將官謄出四件, 二件使入直別武士, 分送于提調大將, 二件則待直房・北倉兩處入直軍之持來, 該將領刻名箭相考後, 出給營中, 則口傳頒布爲白齊.
- 一. 都提調既有扈衛廳軍號, 勿爲舉行爲白齊.
- 一. 軍號受去時, 外營入直哨官, 或有公故相值, 則入直別武士代行為白齊.
- 一. 城內動駕經宿時, 外營入直哨官, 來待作門外受去, 陵行經宿時, 敎鍊官受去, 傳于大將, 則大將謄書, 頒布陣中[留營則外營入直哨官受, 差備軍號頒布, 如例]爲白齊.

10. 초정(抄定)

초정

1. 매 식년마다 승호陞戶⁸¹는 20명이다[1789년(정조 13, 기유)에 훈련도감의 소관이었던 경기 각 읍의 20명을 본영에 이속시켰다]. 7월에 경기 감영에 관문을 보내어 각 읍에 알리면 각 초哨와 색色으로 하여금 곁에 대기시켰다가 9월에 뽑아 올려 점검하여 충원한다.
1. 승호를 뽑아 올릴 때 만일 거행이 잘 되지 않아 탈이 나는 지경에 이르면 점퇴點退⁸²하고 다시 뽑게 한다. 사안이 무거우면 관찰사를 추고하고 해당 수령을 나처拿處하며 담당 좌수座首와 감색監色은 유배를 보내며, 사안이 가벼우면 단지 감색만 곤장을 쳐서 다스린다.
1. 대년군待年軍⁸³은 본영의 군병과 각 영의 군병 자손 가운데 확실한 내력이 있는 건실한 자이거나 양민 가운데 체격이 좋고 확실한 내력이 있어 합당한 자는 모두 입록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입록된 이후에 만일 공사천公私賤으로 적발되는 폐해가 생긴다면, 해당 장령將領과 차지, 보증한 기대총旗隊摠 모두에게 죄를 준다[칙령조를 볼 것]. 별도의 대년은 장교의 자손 및 무예청武藝廳의 족속 가운데서

81 승호(陞戶): 식년마다 각 지방에서 군역을 지지 않은 채 노는 사람이나 보인 중에서 군인을 선발하여 서울로 보내어 훈련도감의 정군(正軍)으로 삼는데, 이들을 승호군(陞戶軍) 또는 승호 포수(陞戶砲手)라고 부른다.

82 점퇴(點退): 반을 물건을 조사하여 규격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수령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83 대년군(待年軍): 정규군의 아들이나 손자로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사내아이를 이른다.



비록 나이가 차지 않았어도 입록을 허락한다.

1. 군병에 결원이 생기면 사후군伺候軍으로 입역한 차례가 연달아 6번인 자를 올려붙이고, 그 다음으로 제안군除案軍⁸⁴으로 별도로 기록된 자를 올리며, 그 다음으로 또 사후군으로 연달아 6번한 자를 올리고, 그 다음으로 복마卜馬가 두 번 죽게 된 군사를 올려서 이를 계속 순환하여 시행한다.

1. 각 초哨와 색色의 서자지[書字的]⁸⁵에 결원이 생기면 해당 장령과 차지는 마보군병 가운데서 문필이 있고 병서에 통달한 자를 취재로 가려 뽑는다. 이어 대장소大將所에 보고하면 대장이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하여 차정한다[초의 서자지는 실차와 예차를 막론하고 대장이 다시 고강考講으로 시취한다].

1. 새로 붙인 7두군七斗軍은 6개월을 한도로 기예技藝를 훈련하여, 중일中日과 고시考試 등 두 기예에 입격한 자를 영구히 붙여주고,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곤장을 치고 군안軍案에서 제외한다. 만일 체격과 용력, 재능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가 있다면 6개월이란 한도에 구애받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을 허가하여서 그로 하여금 거듭 훈련받게 한다. 별도의 대년은 기예 대신 병서兵書로 하여 책 전체로 한정하여 시취한다. 능마아군能魔兒軍은 6개월 내에

84 제안군(除案軍): 허물로 인해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진 군병이다.

85 서자지[書字的]: 하급 군졸로 군안(軍案), 통안(統案), 마안(馬案) 등 문서기록을 담당하였다.

역시 중일과 고강에서 약略 이상을 받은 자를 영구히 붙여주고,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한 자는 또한 곤장을 치고 군안에서 제외한다.

1. 제태군除汰軍은 매 월말에 그 죄를 범한 경중을 조사하여 그 제태除汰⁸⁶의 월일을 헤아려서 등급을 나누어 계목에 점련한다. ‘대과전충질待窠填充秩: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충원되는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는 각 초와 색에서 빠져있는 것을 때때로 환속시킨 것이다. ‘출송각영질出送各營秩: 각 영으로 보내는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보군은 매년 봄과 가을에 뽑아내어 감결을 보내어 각 영에 소속시킨 것과, 마군은 해당 영에서 취재하여 때에 맞춰 감결을 보내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발거질拔去秩: 빼버리는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는 2년마다 연말에 해당 장령과 차지가 대장소에 뽑아 보고하면 대장이 다시 헤아려서 그대로 분간하고 구별해서 계목에 점련한다.

1. 군병의 요패腰牌는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지며 3군데에 낙인烙印을 한다.[‘장莊’자는 전서로 써서 ‘품品’자 모양으로 낙인한다] 현족懸族⁸⁷은 모두 각 영의 예대로 하되 현족이 만일 본영의 안부案付⁸⁸와 같지 않다면, 또한 본영 군사 가운데 현보인懸保人⁸⁹을 세우고 동일하게 새겨서 알게 한다.

86 제태(除汰) : 군인(軍人) · 하리(下吏) · 하례(下隸) 따위의 칠반 천역(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실을 떼는 것을 말한다.

87 현족 : 현보(懸保)와 같이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88 안부 : 문서나 장부를 뜻한다.

89 현보인(懸保人) : 보증을 선 사람을 말한다.



1. 군병 등이 입속하기 전에 반호班戶에 출입하여 양반의 여자종을 첩으로 맞이했다가,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보증 선 자에게 곤장을 치고 군안에서 제외한다. 입속한 뒤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논하지 않는다.
1. 대년이 장성하여 군사로 뽑을 때에는 대장이 군사를 거느리는 장령將領[선기 별장善騎別將, 선기 좌우장善騎左右將, 4사 파총四司把總, 5초 초관五哨哨官, 8색 차지八色次知, 지구관知穀官은 모두 참여한다]과 함께 시취하여 선발하되,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팽배彭排를 충정하는 예⁹⁰에 따라 주走는 3주 이상으로, 역力은 3력 이상으로 하되, 두 가지 기예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주에 사용하는 동호銅壺⁹¹와, 역에 사용하는 철환鐵環을 별도로 두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 외에 확실한 내력이 있고 체격이 좋은 자와 병서에 통달하고 문필이 있는 자는 두 가지 기예 이외에 별도로 시취해서 군사를 선발하는 성책成冊에 각각의 기술로 뽑혔음을 기록하고 입계入啓한다. 마군의 대년은 파적위破敵衛⁹² 및 착호 갑사捉虎甲士를 취

90 『경국대전(經國大典)』의 …… 예 : 팽배(彭排)는 원래 방패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중앙군으로서 오위(五衛) 가운데 호분위(虎賁衛)에 소속되었던 잡종 군직이다.(『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試取 隊卒 · 彭排)

91 동호(銅壺) : 휴대용 물시계이다. 군진(軍陣)과 같이 이동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행루(行漏)의 일종이다.

92 파적위(破敵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한 군대이다. 정원은 2천 5백 명으로, 목전(木箭) · 편전(片箭) · 주(走) · 역(力) 등 시험에 2가지 이상을 합격한 사람으로 편성한 특별 부대를 말한다.

재하는 규정을 사용하여서 기추騎蓐 · 편추鞭蓐 · 기창旗槍 · 마재馬才 · 주走 · 역力の 여섯 가지 기예 가운데 한 가지 기예를 택하여 선발하나, 확실한 내력이 있고 체격이 좋은 자는 이러한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다.

1. 장초壯抄 및 제색諸色 대년군 가운데 담력이 있고 포를 잘 쏘는 자는 아병의 대년으로 가려 정하되, 공적 · 사적의 사냥을 막론하고 능히 사나운 호랑이를 잡아들인 자는 처음과 두 번째는 시상하고 [시상조施賞條를 볼 것] 세 번째는 해당 색色에 꺾원이 있으면 승진시킨다.
1. 사취수司吹手는 일반 군병과 다르고 또 어려우니 차례대로 승진시킨다. 장초와 대년군을 막론하고 준비되어 잘 부는 자를 가려 뽑아서 빈자리에 충당시킨다.



抄定

- 一. 每式年陞戶二十名[己酉訓局所管, 京畿各邑二十名, 移屬本營]. 七月行關畿營知委各邑, 仍令各哨色儲闕待, 九月抄上點考充額爲白齊.
- 一. 陞戶抄上時, 若不善舉行, 致有生頤, 則點退更抄. 重則道臣推考, 該倅拿處, 次知座首與監色刑配, 輕則只監色決棍懲治爲白齊.
- 一. 待年軍, 則本營軍兵與各營軍兵子枝中, 有根着健實者, 良族中身手根着可合者, 竝令許入, 而錄置之後, 若有公私賤現發之弊, 則該將領·次知·懸保旗隊摠, 竝科罪[見飭令條]. 別待年, 則將校子枝, 及武藝廳族屬中, 雖未長成, 亦爲許入爲白齊.
- 一. 軍兵有闕, 則以伺候軍立役次第, 連六次陞付, 次以除案軍之入於別錄者陞付, 次又以伺候軍連六次陞付, 次以下馬再次致斃軍陞付, 周而復始爲白齊.
- 一. 各哨色書字的有闕, 則該將領·次知, 以馬步軍兵中, 有文筆通兵書者, 取才抄擇. 報于大將所, 則大將粘目差定[哨書字的, 則毋論實·預差, 大將更爲考講試取]爲白齊.
- 一. 新付七斗軍, 限六朔肄習技藝, 中日·考試兩技入格者, 仍令永付, 全不成樣者, 決棍除案爲白乎矣, 若有身手臂力才藝之可用者, 則勿拘六朔之限, 許令仍置, 使之申飭肄習爲白乎旆, 別待年, 則技藝代以兵書, 限沒卷試取. 能魔兒軍, 則六朔之內, 亦於中日·考講, 而略以上者, 仍令永付, 全不成樣者, 亦爲決棍除案爲白齊.
- 一. 除汰軍, 每於月終, 查其罪犯輕重, 考其除汰月日, 分等粘啓. 入於

待窠填充秩者，各哨色有關，間間還屬。入於出送各營秩者，步軍則每於春秋抄出捧甘，許屬各營，馬軍則該營取才臨時捧甘，許赴。入於拔去秩者，間年歲末，該將領·次知，抄報大將所，大將更爲斟量，仍與分揀區別粘啓爲白齊。

- 一、軍兵腰牌，上圓下方，三處烙印[壯字以篆字書之，如品字形烙印]。懸族，一依各營例，而懸族如非本營案付，又以本營軍中懸保人，同爲刻識爲白齊。
- 一、軍兵等入屬之前，出入班戶，作妾班婢者，從後現發，則懸保者，決棍除案。入屬後冒犯者，保人勿論爲白齊。
- 一、待年壯抄時，大將與領軍將領[善騎別將，善騎左右將，四司把總，五哨哨官，八色次知，知穀官，竝進參]，試取抄擇爲白乎矣，規矩依『經國大典』彭排充定之例，走之三走以上，力之三力以上，兩技中取一技，而走之銅壺，力之鐵環，別爲措處，使之行用爲白乎跡，外此有根着好身手者，通兵書有文筆者，兩技外，別爲試取，壯抄成冊中，各技入格，懸錄入啓。馬軍待年，則參用破敵衛，及捉虎甲士取才之規，騎薊·鞭薊·旗槍·馬才·走·力六技中取一技，而有根着身手者，不拘此限爲白齊。
- 一、壯抄及諸色待年軍中，有膽氣善砲放者，抄定牙兵待年爲白乎矣，無論公私獵，有能捉納猛虎者，初再次施賞[見施賞條]，三次該色有關陞付爲白齊。
- 一、司吹手與凡軍有異有難，從次第陞付。毋論壯抄與待年軍，抄擇其差備善吹者，填充爲白齊。



11. 참알(參謁)⁹³

참알

1. 도제조 · 제조 · 종사관은 첫 제수일에 시복時服으로 차비문 밖에 나아가 단자를 올려 문안하고 비답批答을 받으면 물러날 것.
1. 대장 · 별장 · 파총은 첫 제수일에 모두 용복戎服을 입고 와서 알현하는데, 대장은 기둥 안에서 알현하고 별장과 파총은 기둥 밖에서 알현한다.
1. 선기장 · 감관 · 초관 ·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 · 별부료別付料는 첫 제수일에 모두 용복을 입고 와서 알현하는데, 선기장 · 감관은 처마 밑의 계단에서 알현하며 초관 · 액외 장용위 · 별부료는 월대에서 알현한다.
1. 지구관 · 교련관 · 장용위 패두牌頭 · 화원 · 사자관 · 약방 침의藥房鍼醫는 첫 차출일에 모두 평철릭[平天翼] · 패검佩劍을 하고 월대 아래에서 참알하며, 장용위 · 별무사 · 부료 패두는 또한 평철릭 · 패검을 하고 뜰의 가운데에서 참알한다.
1. 동지 · 정조 · 제석除夕⁹⁴ · 탄신일에는 도제조 · 제조 · 대장 이하가 모두 참알하는 예를 행한다. 제조 · 종사관은 시복時服을, 대장 · 별장 이하의 장관 · 장교는 용복戎服을 입고, 동서로 나누어 정해진 반열에 차례로 도열한 후[향색餉色은 동쪽에, 군색軍色은 서쪽에

93 참알(參謁): 각 관청의 관원이 상관을 뵈는 일이다.

94 제석(除夕): 음력 설날 그믐날 밤을 가리키는데 세제(歲除) ·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선다] 곧 문안단자를 올린다[각 청의 단자는 기일 전에 수정修正한다]. 참알할 때에 이르러 제조·대장 이하 각 반열이 차례로 참알하는데, 제조·대장은 기둥 안에서, 종사관·별장·파총은 기둥 밖에서, 선기장·배봉 별장拜峯別將·감관은 처마 밑의 계단에서, 초관·별부료別付料·통장統長은 월대에서, 지구관·교련관·약방침의·화원·사자관은 계단 아래에서, 장용위·별무사 이하는 뜰의 가운데에서 한다.

1. 참알할 때의 예를 행하는 절차는 도제조·종사관 이하 감관·별부료·화원·사자관이 차례로 그 순차에 따라 먼저 들어가고, 대장·별장 이하 각 청의 장관·장교가 순차대로 행한다.
1. 매달 삭망에 문안할 때에 대장·별장 이하 각 청의 장관·장교는 [제조·종사관은 참석하는 예가 없다] 단지 평철릭을 입고 먼저 반열을 정한 후에 단자로 문안하고 비답을 받으면 물러난다.
1. 장용위는 매 번의 첫날에 차비문 밖에서 참알하기를 한결같이 금군이 참알했던 구례舊例대로 하며, 선전관이 전품轉稟⁹⁵하면 승인을 기다렸다가 직소直所로 물러갈 것.
1. 문안 하루 전에 대장에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여쭙는 다음 거행한다. 만일 경하할 일과 별도의 문안이 겹칠 때에는 도제조·제조·대장에게 다녀온 다음에 또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여쭙어서

95 전품(轉稟):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임금께 여쭙는 것을 말한다.



거행한다.

1. 제조 · 대장 이하 장관 · 장교는 현임과 전임을 막론하고 자급이 오르거나 혹은 천전遷轉하면 숙배한 후에 또한 본영에 단자를 올려 문안한다. 그리고 혹 명을 받아서 지방으로 나가거나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갈 때면 하직 인사를 하는 의리로서 도로 가서 모두 단자를 올려 문안하고 비답을 받은 다음 물러난다.

參謁

- 一. 都提調・提調・從事官，新除日，以時服進詣差備門外，單子問安，承批而退爲白齊。
- 一. 大將・別將・把摠，新除日，竝以戎服來現，而大將現於楹內，別將・把摠現於楹外爲白齊。
- 一. 善騎將・監官・哨官・額外壯勇衛・別付料，新除日，竝以戎服來現，而善騎將・監官，現於簷階，哨官・額外壯勇衛・別付料，現於月臺爲白齊。
- 一. 知穀官・教鍊官・壯勇衛牌頭・畫員・寫字官・藥房鍼醫，新差日，竝以平天翼・佩劍，參謁於月臺下，壯勇衛・別武士・付料牌頭，亦以平天翼・佩劍，參謁於庭中爲白齊。
- 一. 冬至・正朝・除夕・誕辰，都提調・提調・大將以下，皆行參謁之禮。而提調・從事官時服，大將・別將以下將官・將校戎服，分東西定班次後[餉色在東，軍色在西]，卽呈問安單子[各廳單子，前期修正]。參謁臨時提調・大將以下，各班以次參謁，而提調・大將於楹內，從事官・別將・把摠於楹外，善騎將・拜峯別將・監官於簷階，哨官・別付料・統長於月臺，知穀官・教鍊官・藥房鍼醫・畫員・寫字官於階下，壯勇衛・別武士以下，於庭中爲之爲白齊。
- 一. 參謁時，行禮節次段，提調・從事官以下，監官・別付料・畫員・寫字官，以次先入其次，大將・別將以下，各廳將官・將校，以次行之爲白齊。



- 一. 每朔朔望問安時, 大將・別將以下, 各廳將官・將校[提調・從事官, 無進參之例], 只平天翼, 先定班次後, 單子問安, 承批而退爲白齊.
- 一. 壯勇衛, 每番初日, 差備門外參謁, 一依禁軍參謁舊例, 宣傳官轉稟, 待發落退歸直所爲白齊.
- 一. 問安前一日, 大將微稟舉行. 若值慶賀別問安之時, 則都提調・提調・大將, 往復停當後, 亦爲微稟舉行爲白齊.
- 一. 提調・大將以下, 將官・將校, 母論時・前啣, 陞資或遷轉, 則肅拜後, 又自本營單子問安. 或奉命出外・受由下鄉之時, 則以辭陞反面之義還往, 皆以單子問安, 承批而退爲白齊.

12. 의절(儀節)

의절

1. 제조는 대장과 자급이 서로 같다면 항례⁹⁶하고, 길 위에서 서로 만난다면 대장이 길을 비켜준다. 관등에 차이가 난다면 대장이 먼저 인사하고, 길 위에서 만난다면 말을 돌린다. 대장이 비록 제조보다 관질이 높더라도 또한 항례한다. 별장·파총·선기장^{善騎}將이 앞으로 나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하고, 초관·지구관·장용위 패두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앉아서 인사를 받는다. 교련관·장용위·별무사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하청^{下廳}⁹⁷이 서서 말로써 호여^{呼汝}⁹⁸한다.
1. 대장은 별장·파총·선기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하며, 초관·지구관·장용위 패두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앉아서 받으며, 교련관·장용위 각소의 별무사 이하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하청이 서서 말로써 호여한다.
1. 종사관은 제조·대장에게는 각사의 당상과 낭청의 예를 사용하며, 별장·파총·초관에게는 상호 간에 항례한다. 지구관·교련관·장용위가 앞으로 나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하며, 각소의 별무사 이하가 앞으로 나와 인사하면 앉아서 받는데, 길 위에서 서로 만나면 말을 돌린다.

96 항례(抗禮): 대등한 예(禮)를 갖추는 것이다.

97 하청(下廳): 뒷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제조나 대장을 모시는 사람이다.

98 호여(呼汝): 너라고 부르며 인사에 답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장 · 파총[파총이 별장보다 만일 관등에 차이가 나서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하면, 별장이 답배한다]은 상호간에 항례하며, 초관은 별장이 비록 해당 관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하고, 길 위에서 서로 만나면, 말에서 내린다. 선기장은 파총에게 앞으로 나아가 인사하면 답배하고 길 위에서 서로 만나면 말을 돌린다. 지구관 · 교련관 · 장용위 · 대장소의 별무사가 앞으로 나아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하며, 각소의 별무사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앉아서 받고, 길 위에서 서로 만나면 말에서 내린다. 해당 소의 무사가 기둥 밖에서 인사하면 하청이 서서 말로써 호여한다.
1. 선기장은 초관이 먼저 인사하면 답배하고, 지구관이 먼저 인사하면 답배하며, 길 위에서 서로 만나면 말을 돌린다.
1. 초관은 각 청 장교와 별도로 서로 관련이 없더라도 상호간에 공경하여 대한다.
1. 지구관 · 약방 침의는 교련관 · 장용위가 먼저 인사하면 답배하고, 각소의 별무사 이하가 먼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한다.
1. 장용위 패두 · 부료 패두는 각기 그 솔하들이 앞으로 나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한다.
1. 교련관은 각소의 별무사에게, 지구관이 교련관에게 하는 예를 사용한다.
1. 감관 · 별부료는 도제조 · 제조에게 단지 첫 제수일에만 자현⁹⁹

99 자현(刺現) : 극진히 뵈고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며, 대장에게는 이미 그 속관이 아니더라도 첫 제수 후에는 가서 뵙는다. 당상 장관 이하에게는 자급을 보고 상호 간에 공경하게 대우하며, 지구관·교련관·장용위가 먼저 인사하면 답배하고, 별무사 이하가 먼저 인사하면 앉아서 답한다.



儀節

- 一、提調之於大將資級相等，則抗禮，路上相逢，則大將讓路。隔等則大將先拜，路上相逢，則回馬。大將雖秩高於提調，亦爲抗禮。別將・把總・善騎將進前拜，則坐答，哨官・知穀官・壯勇衛牌頭楹外拜，則坐受。教鍊官・壯勇衛・別武士楹外拜，下廳立言語呼汝爲白齊。
- 一、大將之於別將・把總・善騎將進前拜，則坐答，哨官・知穀官・壯勇衛牌頭楹外拜，則坐受，教鍊官・壯勇衛各所別武士以下楹外拜，下廳立言語呼汝爲白齊。
- 一、從事官之於提調・大將，用各司堂郎例，別將・把總・哨官，互相抗禮。知穀官・教鍊官・壯勇衛進前拜，則坐答，各所別武士以下進前拜，則坐受，路上相逢，則回馬爲白齊。
- 一、別將・把總[把總於別將，若隔等進前拜，則別將答拜] 互相抗禮，哨官於別將，雖非該司進前拜，則坐答，路上相逢，則下馬。善騎將於把總進前拜，則答拜，路上相逢，則回馬。知穀官・教鍊官・壯勇衛・大將所別武士進前拜，則坐答，各所別武士楹外拜，則坐受，路上相逢，則下馬。該所武士楹外拜，下廳立言語呼汝爲白齊。
- 一、善騎將之於哨官先拜，則答拜，於知穀官先拜，則答拜，路上相逢，則回馬爲白齊。
- 一、哨官之於各廳將校，別無相關，互相敬待爲白齊。
- 一、知穀官・藥房鍼醫之於教鍊官・壯勇衛先拜，則答拜，於各所別武士以下先拜，則坐答爲白齊。

- 一. 壯勇衛牌頭・付料牌頭之於各其率下進前拜, 則坐答爲白齊.
- 一. 教鍊官之於各所別武士, 用知穀官之於教鍊官例爲白齊.
- 一. 監官・別付料之於都提調・提調, 只新除日刺現, 於大將, 旣非屬官, 新除後往現. 於堂上將官以下, 視資級互相敬待, 於知穀官・教鍊官・壯勇衛先拜, 則答拜, 於別武士以下先拜, 則坐答爲白齊.



13. 직장(職掌)

직장

1. 향색 제조餉色提調는 전곡錢穀을 관장한다. 각소의 회계會計와 크고 작은 계목에 점련된 문서를 처리하고 검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각종 군수품의 형편, 여러 도에 있는 둔전의 상태 또한 처리하고 검사하며, 경외의 관문關文·첩정牒呈·초기草記·회계回啓 등의 일도 주관하여 거행한다.
1. 군색 제조軍色提調는 군무와 병기兵器를 관장한다. 각종 받고 내어준 것들의 회계會計, 본색이 관장하는 크고 작은 계목에 점련된 문서, 경외 관문·첩정·초기·회계回啓 등의 일은 한결같이 향색의 예대로 처리하고 검사하여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한다.
1. 종사관은 군색·향색을 겸하여 전곡을 받고 내어주는 일, 군수품의 마련을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고, 무릇 마련하는 문서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만일 의견이 있으면 종이 끝에 논열하며, 군물軍物·무기·기치旗幟·군복軍服을 새로 만드는 것도 일일이 간품한 뒤에 표식을 새기고 살펴서 증빙하는 근거로 삼으며, 각 초와 색에 신칙하고 즉시 문서로 기록하여서 유실되는 폐해가 없도록 한다.
1. 감관은 문부文簿의 출납을 관장한다. 전하는 명령, 계품啓稟과 관련된 문서를 검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물품을 거두어들일 때에 당일 낮에 근무하는 감관은 ‘모색某色[향색, 군색, 군수색, 향군색 등], 모일日, 모시時’라고 종이 끝자락에 쓴 후에 서명을 하고, 판

하判下 받은 뒤에 또한 서명을 한 뒤쪽 가장자리에 ‘사체가 중하다
以重事面’라고 쓰며, 각 창고를 나누어 매년 돌아가며 관장한다. 양
향색糧餉色은 전곡의 오고 감, 크고 작은 문부文簿를 전적으로 거행
하고, 향군색은 향군의 살림살이, 자보資保¹⁰⁰의 식례式例를 전적으
로 거행하며, 회계색은 각소의 회계와 도록都錄, 초부抄簿를 전적으
로 거행하고, 군색은 군안軍案 및 각종 군물과 무기, 복색 등의 문
서를 전적으로 거행하며, 이 외에 각 창고는 겹직에 따라서 모두
검사한다.

1. 별부료는 각소에서 받아들이고 내어주는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각 초와 색의 물력을 회계하며 주관하는 문서를 모두 증빙한다.
1. 액외 장용위는 전명傳命과 신전信箭¹⁰¹을 준비하는 일을 관장한다.
본영에서 시사試射할 때나 전좌殿座할 때[본영의 일로 전좌할 때이
다] 전명 차비傳命差備는 2인, 신전 차비信箭差備는 2인으로 장망長望¹⁰²
으로 뽑아서 전적으로 거행하게 한다.
1. 지구관은 군무를 담당하는 군병들 중 크고 작은 계품啓稟이나 대
위에서 잡고 놓는 등의 일을 관장하여 전적으로 거행한다.
1. 약방 침의는 군교軍校의 간병과 구료의 일을 관장한다. 군교 가운
데 약재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비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하나 지급

100 자보(資保):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을 돕는 보인을 말한다.

101 신전(信箭): 임금이 교외에 거동할 때 선전관을 시켜서 각 영에 군령을 전하는데 쓰던 화살이다.

102 장망(長望): 벼슬아치를 천거할 때에 네 명 이상의 후보자 가운데에서 골라 정하던 일이다.



하는데, 반드시 대장소大將所에서 제급題給하는 문적文蹟을 기다려서
거행하며, 조치하는 약물 외에 모든 환약과 관계된 시급한 경우에
는 문적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지급한다.

1. 화원·사자관은 선사繕寫¹⁰³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을 관장한다.
무릇 입계에 관계된 책자에 정간井間을 그리는 일, 기치旗幟에 채색
하는 등의 일을 전적으로 거행한다.

1. 감관의 관장[매년 납월에 임무를 바꾼다], 초관의 영군領軍, 지구관
의 차지, 교련관의 차관差官은 모두 6월과 납월臘月¹⁰⁴에 임무를 바
꾼다[감관은 장망으로 써서 들이고 초관·지구관·교련관은 장망
판長望板으로 획출한다].

1. 서리는 문서를 관장한다. 향색은 각각 그 담당하는 봉하捧下·회계
會計·경외의 문첩文牒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 고찰이 가능한
것은 일일이 책자에 나누어 베껴 쓰고, 그 외에 연한이 지난 식례
는 전례를 참고한 후에 근거를 고찰할 것은 모두 상고하여 거행한
다. 군색은 군정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부, 시사방試射放할 때 시책
試冊·시단試單·군안軍案·마안馬案·통안統案 및 요준料准하는 성
책 등 각종 문서를 전적으로 거행한다. 회계색은 향색 서리 가운데
2인을 획출하여 1년 6개월씩 번갈아가며 거행하게 한다.

1. 향색 서리와 고지기庫直의 임무를 교환하는 일은 매년 7월 1일에

103 선사(繕寫): 글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 정서(淨書)하는 것이다.

104 납월(臘月): 음력으로 12월을 말한다.

각기 소장 업무를 열거하여 향색 제조에게 제출하고, 군색 서리는 각 창고의 분장이 없으므로 단지 군안·요준料準·방료救療 등의 담당만 군색 제조에게 제출하여 번갈아가며 거행하게 한다.

1. 서리 2인, 고지기 1명은 선혜청을 겸대한다. 본영의 전곡 가운데 해당 청에 있는 것을 담당하여 거행하게 한다.



職掌

- 一. 餉色提調, 掌錢穀. 各所會計, 大小粘目, 無不句檢爲白乎旅, 各樣軍需之拮据, 謠道屯田之察飭, 亦爲句檢, 京外關・牒・草記・回啓等事, 主管舉行爲白齊.
- 一. 軍色提調, 掌軍務戎器. 各種之捧下會計, 本色所管大小粘目, 京外關・牒・草記・回啓等事, 一依餉色例, 無不句檢舉行爲白齊.
- 一. 從事官段, 兼軍・餉色, 錢穀捧下, 軍物磨鍊, 無不專管舉行是白如乎, 凡係磨鍊文書, 酌量多寡, 如有意見, 紙尾論列, 軍物・器械・旗幟・軍服之新造者, 一一看品後, 使之刻識踏條, 以爲憑信之地爲白乎旅, 申飭各哨色, 卽爲會錄, 俾無遺瀾之弊爲白齊.
- 一. 監官, 掌出納文簿. 傳通命令, 凡係啓稟文書, 無不照檢爲白乎矣, 捧納時, 當日晝仕監官, 書某色[餉色・軍色・軍需色・鄉軍色等]某日某時, 於紙邊後着署, 判下後, 亦爲着署後邊, 以重事面爲白乎旅, 分掌各庫每年輪回. 而糧餉色, 則錢穀去來, 大小文簿, 專管舉行, 鄉軍色則鄉軍接濟, 資保式例, 專管舉行, 會計色則各所會計・都錄・抄簿, 專管舉行, 軍色則軍案及各樣軍物・器械・服色等文書, 專管舉行爲白乎旅, 此外各庫隨其兼帶, 一體照檢爲白齊.
- 一. 別付料, 掌叩籌各所捧下, 會計各哨色物力, 所管文書, 無不考准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 掌傳命信箭差備. 本營試射時, 殿座時[因本營事殿座時], 傳命差備二人, 信箭差備二人, 長望劃出, 專當舉行爲白齊.
- 一. 知穀官段, 軍務次知軍中, 所管大小啓稟, 臺上執操等事, 專當舉行

爲白齊。

- 一. 藥房鍼醫，掌軍校看病救療之事。軍校中藥料之不能自力辦備者，這這製給，必待大將所題給文蹟舉行爲白乎矣，調治藥物外，凡係丸劑之事係時急者，不待文蹟，卽爲上下爲白齊。
- 一. 畫員·寫字官，掌繕寫圖畫之事。凡係入啓冊子，印札繕寫之役，旗幟施彩等事，專當舉行爲白齊。
- 一. 監官之所掌[每年臘月換掌]，哨官之領軍，知穀官之次知，教鍊官之差官，竝以六臘月換掌[監官長望書入，哨官·知穀官·教鍊官長望板劃出]爲白齊。
- 一. 書吏，掌文書。餉色則各其所掌捧下·會計·京外文牒，無不句管。而可考者，一一分膳於冊子，其他年限式例，前例之憑後，考據者，一體詳考舉行爲白乎旂，軍色則軍政所管大小文簿，試射放時，試冊·試單·軍案·馬案·統案，及料准成冊等，各項文書，專當舉行。會計色則餉色書吏中，劃出二人，一年六朔式，輪回舉行爲白齊。
- 一. 餉色書吏·庫直換掌段，每年七月初一日，列書各所掌，劃出於餉色提調，軍色書吏段，無各庫分掌，只軍案·料準·救療等色，劃出於軍色提調，輪回舉行爲白齊。
- 一. 書吏二人，庫直一各，兼差患廳。本營錢穀之在該廳者，句管舉行爲白齊。



14. 겸찰(兼察)

겸찰

1. 향색 제조가 결원이 있거나 혹은 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되었거나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갔을 때에는 군색 제조가 겸찰한다.
1. 대장이 결원이 있을 때 호부¹⁰⁵와 전령패¹⁰⁶는 천전^{遷轉}하면 승정원에 친히 납부하고, 파직이나 삭직된 것이면 입직한 장교가 즉시 받아서 봉납^{封納}한다. 수기^{手旗}·영전^{令箭}¹⁰⁷·인신^{印信}·군적^{軍籍}은 각 영의 예례대로 교련관이 거행한다.
1. 대장이 혹 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되었을 때 호부와 전령패는 승정원이 왕복하여 특지를 받아 거행하며, 인신·군적 등의 거행은 각 영의 예대로 한다.
1. 종사관이 결원이 있거나 혹은 명을 받아 지방에 가거나 휴가를 받아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는 임시 담당을 당하 장관 가운데 장망^{長望}으로 품지를 받아 차출한다.
1. 당상 장관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대장에게 품지하여 거행하고 당하 장관은 해당 청의 소임에게 가서 고하며, 감관은 전품^{轉稟}을 한

¹⁰⁵ 호부(虎符) : 1403년(태종 3)에 처음 제작한 부신이며, 1457년(세조 3)에 발병부를 제작하여 사용 한 뒤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나무쪽에 호랑이를 새기고 '음양(陰陽)' 두 글자를 좌우에 새겼다. 여기서는 이 제도를 본따서 호부를 제작하라는 의미이다.

¹⁰⁶ 전령패(傳令牌) : 조선시대 좌우포도대장이 명령을 전달할 때 쓰던 패이다.

¹⁰⁷ 영전(令箭) : 화살촉이 넓은데, 한쪽에는 '모영대장(某營大將)' 이라 쓰고, 한쪽에는 '영(令)' 자를 쓴다. 군중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또는 비밀 명령을 내리는 데 쓴다.

다. 각 청의 장교가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청에 품지하여 거행한다.

1. 감관이 결원이 있는데 아직 차출되지 않았을 때, 혹은 공무로 다른 지역으로 출타하였거나 휴가를 받았을 때에는 임시 감관을 해당 청에서 장망^{長望}으로 차출한다. 별부료는 감관 가운데 품지하여 겸찰하게 하고 지구관은 역시 해당 청에서 장망판^{長望板}으로 품지하여 차출한다.
1. 약방 침의가 결원이 있는데 아직 차출되지 않았을 때에 거동이 겹치게 되면 내의원의 의관 가운데 품지하여 겸직하도록 한다. 화원과 사자관은 규장각^{奎章閣}의 차비 대령 가운데서 또한 겸직하도록 한다.
1. 배봉 별장^{拜峯別將}과 노량 별장^{露梁別將}이 휴가를 갔을 때에는 임시 별장을 차출해 보내고 대장소에서 품지하여 거행한다.



兼察

- 一. 餉色提調有闕, 或奉命在外, 受由下鄉之時, 則軍色提調兼察爲白齊.
- 一. 大將有闕, 則虎符・傳令牌段, 遷轉則親納于政院, 罷削則使入直將校登時封納. 手旗・令箭・印信・軍籍, 依各營例, 教鍊官舉行爲白齊.
- 一. 大將, 或奉命在外之時, 則虎符・傳令牌段, 往復政院, 奉特旨舉行, 印信・軍籍等舉行, 依各營例爲之爲白齊.
- 一. 從事官有闕, 或奉命在外, 受由下鄉之時, 則假任以堂下將官中, 長望稟旨差出爲白齊.
- 一. 堂上將官有闕, 則大將稟旨舉行, 堂下將官, 則該廳所任來告, 監官卽爲轉稟. 各廳將校有闕, 則該廳稟旨舉行爲白齊.
- 一. 監官有闕, 未差之時, 或因公出他, 受由之時, 則假監自該廳長望差出. 別付料, 則監官中, 稟旨兼察, 知穀官, 則亦自該廳長望板, 稟旨差出爲白齊.
- 一. 藥房錢醫有闕, 未差之時, 動駕相值, 則內局醫官中, 稟旨兼差. 畫員・寫字官, 則內閣差備待令中, 亦爲兼差爲白齊.
- 一. 拜峯・露梁別將, 受由之時, 則假將差送, 自大將所稟旨舉行爲白齊.

15. 군적(軍籍)¹⁰⁸

군적

1. 군안(軍案)이라는 것은 한 군대의 판적(版籍)이어서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결코 소홀하게 책판으로 찍어 책으로 만들면 안 된다. 도장과 인장을 찍는 것은 그 일이 중대하기 때문이며, 각소에 봉하여 두는 것은 간악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본영의 사체는 자별하니 수정(修正)할 때에는 한 글자 한 획에 혹시라도 글자를 문질러 지우는 곳이 없어야하고 부표(付標)¹⁰⁹할 때에는 하루 한시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되니, 군적의 지엄한 뜻을 지키도록 한다.
1. 군안·통안(統案)·마안(馬案)은 각 4건이며, 2건은 대내에 들고[번갈아가며 수정하여 입계한다], 1건은 대장소에서 보관하고 1건은 지구관청(知穀官廳)에서 보관한다. 내입하는 건은 대장소에서 매달 한 차례 수정하여 입계하고, 또 1건을 곧바로 내어주기를 청하여 차례로 수정하여 오면, 군색 감관이 살펴서 입계한다. 대장소건 및 지구관청건은 각각 초와 색의 서패(書牌)가 하나하나 수정하고 지구관·교련관이 담당하여 간검(看檢)한다.
1. 군적 및 요패(腰牌)는 모두 나이, 용모파기(容貌疤記)¹¹⁰ 및 보족인(保族人)

108 군적(軍籍): 군정(軍丁)을 등록한 적부(籍簿)를 말한다. 군적은 해마다 부족을 보충하고 6년마다 크게 정리하여 고쳐 만들며, 매 6년의 성적(成籍)은 경중(京中)에서는 오부(五部)가, 외방(外方)에 사는 절도사가, 제주에서는 절제사가 관장하였다.

109 부표(付標): 문서 가운데 특별히 유념하거나 후일 참고할 사항에 표지(標紙)를 붙이는 것이다.

110 용모파기(容貌疤記): 어떤 인물의 용모와 신체상의 특징을 적은 기록을 말한다.



의 성명, 입속한 연월을 써서 혹시라도 서로 틀린 것이 없도록 하며[요패에는 부의 성명이 없다] 노제¹¹¹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 군적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삼는다.

1. 군안은 장관 · 장교 · 마보군병 및 각색 대년군을 아울러 기록하고, 통안은 장용위의 미부료 무사^{未付料武士} · 마보군병을 아울러 기록하며, 마안은 초관 이하 장교 · 전복마를 아울러 기록한다. 그런데 수정을 잘하지 못하여 탈이 나는데 이르게 된다면, 각 해당 서자지[書字的]는 가벼운 경우에는 곤장을 때리고, 무거운 경우에는 곤장을 때리고 군안에서 제거한다. 그리고 해당 감관 · 지구관 · 교련관 · 군색 서리 또한 죄의 경중을 분별하여 다스린다. 매 식년마다 모두 고쳐서 수정한다.
1. 향군안^{鄕軍案}은 모두 경군안^{京軍案}의 예대로 해당 읍에서 수정하여 한 건은 해당 읍에 남겨두고 한 건은 경기 감영에 보고한다. 경기 감영에서는 다시 수정하여 본영에 올려 보낸 다음 경군안과 함께 입계하며, 식년에 도안^{都案}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이 예대로 거행한다.
1. 경군과 향군을 막론하고 탈이 있어서 대정^{代定}¹¹²하는 경우는 식년의 일한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부표하여 수정한다.

111 노제(老除): 국역을 진 장남(丁男)의 나이가 60이 되면 노(老)라 하여 군역 등의 신역을 면제시키는 것이다.

112 대정(代定): 군대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투입해 정원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1. 군안과 마안은 매번 사등 시사^{四等試射}할 때에 모두 대령하여서 군과 말을 그것으로 증빙할 수 있게 한다.
1. 향군이 무과에 급제한 후에는 아직 부기되지 않은 안^案을 수정하되, 고을에서는 ‘미부^{未付}’라고 쓴다.

軍籍

- 一. 軍案者, 一軍之版籍, 所係至重, 不可疎忽印出作冊. 踏印套署者, 重其事也, 封置各所者, 防其奸也. 況本營事體, 與他自別, 修正時, 一字一劃, 無或^或擦改, 付標時, 一日一時, 毋或差遲, 以存軍籍至嚴之意爲白齊.
- 一. 軍案·統案·馬案, 各以四件, 二件內入[輪回修正入啓], 一件大將所上, 一件知穀官廳上爲白乎矣, 內入件, 則自大將所, 每朔一次修正入啓, 又一件, 仍卽請出, 次次修正以來, 則軍色監官, 考準入啓. 大將所件, 及知穀官廳件, 各哨色書牌, 這這修正, 而知穀·敎鍊官次知看檢爲白齊.
- 一. 軍籍及腰牌, 竝書年歲, 容貌疤記, 及保族人姓名, 入屬年月, 毋或相左爲白乎^左旡[腰牌無父名], 老除時, 以此相準, 以爲除籍之地爲白齊.
- 一. 軍案, 則將官·將校·馬步軍兵, 及各色待年軍竝錄, 統案, 則壯勇衛未付[料]武士·馬步軍兵竝錄, 馬案, 則哨官以下將校·戰卜馬竝錄爲白乎矣, 不善修正, 致有執頃, 則各該書字的, 輕則決棍, 重則決棍除案. 當該監官·知穀官·敎鍊官·軍色書吏, 亦爲分輕重



論勘爲白乎旆，每式年一竝改修正爲白齊。

- 一. 鄉軍案，一依京軍案例，自該邑修正，一件留置該邑，一件報于畿營。則自畿營，更爲修正上送本營，與京軍案，同爲入啓爲白乎旆，式年改都案時，亦依此例舉行爲白齊。
- 一. 毋論京鄉軍，有頃代定，不待式年之限，隨即付標修正爲白齊。
- 一. 軍案・馬案，每於四等試射時，竝爲待令，軍與馬，使之憑驗爲白齊。
- 一. 鄉軍登科後，修正未付案爲白乎矣，以鄉未付書之爲白齊。

1b. 군기(軍器)¹¹³

군기

1. 군대는 무기가 없을 수 없고, 무기는 단단하고 날카롭지 않을 수 없다. 무릇 군기의 제작이 법규에 미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그 죄가 있으니, 각 해당 공장의 성명을 책자에 기록해 두고[무기도 역시 기록해둔다] 해당 색에 보관한다. 내어 쓰는 때에 탈이 난다면 그 연대를 고증하여 해당 장인을 조사해서 무거운 것을 따라 엄히 다스려서 군물軍物을 중히 여기는 것을 보이는 뜻으로 삼는다.
1. 마보군이 소지한 총과 칼은 별도로 안책案冊을 만들어서, 1건은 대내에 들이고 1건은 대장소에 보관하고, 1건은 해당 창고에 보관하여서 빠진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하나 수정하되, 환도環刀¹¹⁴는 ‘장卣’자¹¹⁵ 및 무게가 몇 근인지, 날의 길이가 몇 척인지 새기고, 총은 ‘장’자 및 무게가 몇 근인지, 길이가 몇 척인지, 제조월일과 자호字號의 차례를 새겨서 바뀌는 폐단을 막도록 한다.
1. 마군관에게 주는 군물軍物은 짧은 조총·환도·화약[7냥 5전]·연

113 군기(軍器) : 군인이 관에서 관급(關給), 즉 관문(關文)으로 지급받아 행군이나 숙위에 쓰는 도구로 예컨대 의복, 휘장, 창, 칼에서부터 사람이나 말의 갑옷, 방패, 화통(火筒), 화포(火砲), 의식용 깃발인 기독(旗纛), 깃대에 매달아 군졸을 부르는 띠인 호대(號帶) 따위이다.[軍所關給於官 以爲行軍宿衛具者 有軍器焉 如衣幟鎗刀以 至人馬甲傍牌火筒火砲旗纛號帶之類是已] 『大明律集說附例』 권6 12장.

114 환도(環刀) : 허리에 차는 둥근 모양의 패검(佩劍)을 말한다. 검은 철을 하고 황동(黃銅)으로 장식하고 홍조수아(紅條穗兒)를 드리웠다.

115 ‘장(卣)’자 : 장(卣)자를 새기는 것은 장용영의 군기라는 것을 표기한 것이다.



환鉛丸¹¹⁶[30개] · 장전長箭[15개] · 편전片箭¹¹⁷[15개] · 통아筒兒¹¹⁸ · 편곤鞭棍¹¹⁹ · 유삼油衫¹²⁰이다. 보군관에게 주는 군물은 조총 · 화약[15냥 5전] · 연환[50개] · 충죽衝竹 · 환낭丸囊 · 이약통耳藥筒¹²¹ · 세승細繩 · 석침席針¹²² · 유삼이다. 화병은 각이角耳 · 편담扁擔¹²³을 더 주고, 각색 표하군은 단지 총, 칼, 약환, 충죽만 준다[유삼은 보군과 동일하게 준다]. 아병은 산행도山行刀 · 자족철藉足鐵을 더 준다. 취고수吹鼓手 · 각소의 취수는 취타吹打를 더 주며, 차비 세악수差備細樂手는 악기를 더 주되, 마보군과 각색군을 막론하고 받은 군물을 차례로 전해 주는데, 만일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면 즉시 물어내게 해서 지급한다.

1. 당상과 당하 장관에게 관에서 주는 군물은 편곤鞭棍 · 주락朱絡 · 『병학지남兵學指南』¹²⁴이며, 지구관 · 교련관 · 별무사에게 관에서

116 연환(鉛丸): 납으로 만든 탄환이다.

117 편전(片箭): 작고 짧은 화살인데, 이를 총통이나 다른 병기에 넣어 쏜다. 편전의 화살촉은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갑옷이나 투구도 뚫을 수 있다.

118 통아(筒兒):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메고 다니는 통이다.

119 편곤(鞭棍): 편은 길이 8척 9촌의 단단한 막대 끝에 쇠사슬로 이어 길이 2척 2촌 5푼의 자편을 달은 무기이고, 곤은 자편이 없고 길이 10척 2촌 5푼인데, 모두 붉은 칠을 하였다. 또는 이 무기를 쓰는 무예를 가리키기도 한다.

120 유삼(油衫): 비나 눈을 막기 위하여 옷 위에 끼입는 기름에 절은 옷이다.

121 이약통(耳藥筒): 귀약을 담아두는 통이다.

122 석침(席針): 돛바늘이다.

123 편담(扁擔): 물건을 한쪽 어깨로 메고 다니도록 되어 있는 막대로, 흡사 천칭 모양으로 생겼다. '멜데' 라고도 한다.

주는 군물은 편곤 · 주락 · 패영¹²⁵[지구관, 교련관은 없다] · 『병학지남』을 차례로 전해주되, 잃어버린 자는 모두 물어내게 한다.

1. 장용위에게 관에서 지급하는 군물은 갑주^{甲冑} · 교자궁^{校子弓} · 장전^{長箭}[15개] · 편전^{片箭}[15개] · 통아 · 짧은 조총 · 화약[7냥 5전] · 연환[30개] · 편곤 · 주락 · 유삼 · 패영이며 전해주는 등의 절차는 장관의 예대로 시행한다.
1. 새로 만든 갑주는 10년을 기한으로, 예전에 만든 것은 7년을 기한으로 하는데, 기한 전에 파괴된 경우에는 죄를 주고[칙령조를 볼 것] 물어내게 하며, 기한이 지났으면 다른 것으로 교환해 준다.
1. 궁전^{弓箭} · 총 · 칼 · 창^槍 · 곤^棍 등의 군기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공적인 요인으로 파괴된 경우와 집에서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 장령이 보고하여 바꾸어 지급해주고, 적을 만나 잃어버린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잃어버린 경우에는 모두 죄를 주고[칙령조를 볼 것] 물어내게 한다.
1. 향군은 매 대^隊마다 조총 2자루씩을 주어서 그것으로 연습하게 하고 상변할 때에는 그대로 가지고 오게 한다.

124 『병학지남(兵學指南)』: 명(明) 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 중에서 조련법(操鍊法)을 간추려 편찬한 책이다. 원래 선조(宣祖) 때에 간행되어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 군사 훈련 교범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정조(正祖) 때 왕명에 의해 이상징(李象鼎)이 수정하고 주석을 첨부하여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를 만들었다.

125 패영(貝纓): 산호(珊瑚) · 호박 · 밀화(蜜華) · 대모(玳瑁) 등으로 만든 갓끈을 말한다.



1. 『병학지남』의 판板[63넙立], 『팔진도八陣圖』¹²⁶의 판[81넙], 『무예통지武藝通志』¹²⁷의 판[210넙]은 나무판에 새겨서 보관한 다음 책으로 찍어서 연습하는 근거로 삼는다.

126 『팔진도(八陣圖)』 : 제갈량이 설치한 진형으로 『진서(晉書)』 환온열전(桓溫列傳)에 “어복(魚腹) 평사(平沙) 아래에 돌을 쌓아 팔행(八行)을 만들었는데 각 항 사이의 거리는 두 길이다.”라고 하였고, 『이위공문대 중(李衛公問對中)』에 “공명의 팔진은 동당(洞堂), 중황(中黃), 용등(龍騰), 조비(鳥飛), 호익(虎翼), 절충(折衝), 연형(連衡), 악기(握機)이다.”라고 한 기록 등이 보인다.

127 『무예통지(武藝通志)』 : 원래의 서명(書名)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이다.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의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백동수(白東綏) 등이 1790년(정조14)에 간행한 종합 무예서로, 장졸들의 실지 연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보(圖譜)를 중심으로 해설을 붙인 책이다.

軍器

- 一. 有軍不可無器械，有器不可無犀利。凡軍器製造之不如法者，自有其罪，各該工匠姓名，錄置冊子[器械亦有刻識]，藏于該色。當其出用之時，隨其有頃，考其年條，查得該匠，從重嚴治，以示重軍物之意爲白齊。
- 一. 馬步軍所持銃刀，別成案冊，一件內入，一件留上大將所，一件留上該庫，有闕卽時這這修正爲白乎矣，環刀則刻壯字及重幾斤·刃長幾尺，銃則刻壯字及重幾斤·長幾尺·製造月日·字號第次，俾杜換易之弊爲白齊。
- 一. 馬軍官授軍物，短鳥銃·環刀·火藥[七兩五錢]·鉛丸[三十箇]·長箭[十五箇]·片箭[十五箇]·筒兒·鞭棍·油衫。步軍官授軍物段，鳥銃·火藥[十二兩五錢]·鉛丸[五十箇]·衝竹·丸囊·耳藥筒·細繩·席針·油衫。火兵則加授角耳·扁擔，各色標下軍則只授銃·刀·藥丸·衝竹[油衫，則與步軍同]。牙兵則加授山行刀·藉足鐵。吹鼓手·各所吹手則加授吹打，差備細樂手則加授樂器爲白乎矣，毋論馬步·各色軍，所受軍物，次次傳授，如有闕失者，卽爲徵出，以給爲白齊。
- 一. 堂上·堂下將官，官授軍物段，鞭棍·朱絡·『兵學指南』，知穀官·教鍊官·別武士，官授軍物段，鞭棍·朱絡·貝纓[知穀·教鍊官則無]·『兵學指南』，次次傳授爲白乎矣，闕失者，竝徵出爲白齊。
- 一. 壯勇衛，官授軍物段，甲冑·校子弓·長箭[十五箇]·片箭[十五



箇] · 筒兒 · 短鳥銃 · 火藥[七兩五錢] · 鉛丸[三十箇] · 鞭棍 · 朱絡 · 油衫 · 貝纓, 傳授等節, 依將官例, 施行爲白齊.

- 一. 新件甲冑, 限十年, 舊件限七年, 而限前破傷者, 科罪[見飭令條]徵出, 限外則以他件換給爲白齊.
- 一. 弓箭 · 銃 · 刀 · 槍 · 棍等器, 姑無定限, 而因公破傷者, 陣上破傷者, 待該將領轉報換給, 爲賊見失者, 借人闕失者, 竝科罪[見飭令條]徵出爲白齊.
- 一. 鄉軍每隊, 鳥銃二柄式逢授, 使之習放, 上番時, 仍爲持來爲白齊.
- 一. 『兵學指南』板[六十三立], 『陣圖』板[八十一立], 『武藝通志』板[二百十立板], 剗刷藏峙, 以爲印冊肄習之地爲白齊.

17. 형명(形名)¹²⁸

형명

1. 대기치(大旗幟)¹²⁹는 사司 · 초哨 · 기대(旗隊)의 깃발 제도와 방위 색을 인지하고 모두 도식圖式대로 만들어서 쓴다.
1. 초요기(招搖旗)¹³⁰는 가운데와 가장자리를 황색으로 하며 칠성(七星)과 구름을 그린다. 깃대의 높이는 1장(丈) 9척(尺)이며 영두(纓頭)¹³¹ · 주락(朱絡) · 치미(雉尾)¹³²로 꾸며서 행행할 때에나 진을 익힐 때에 대장이 부르기 위해 사용한다.
1. 이열기(肄閱旗)는 가운데를 황색으로 가장자리를 홍색으로 하며 크게 ‘이열(肄閱)’ 두 글자를 쓴다. 교예기(較藝旗)는 가운데를 황색으로 가장자리를 홍색으로 하며 크게 ‘교예(較藝)’ 두 글자를 쓴다. 매번 임금께서 본영에 앉아서 거행할 때에 꺼내서 쓴다.
1. 장용영 내사(內使)의 인기(認旗)¹³³는 가운데를 황색으로 가장자리를 홍색으로 하며 두 개의 누런 띠를 한다. 수기(手旗)는 가운데를 황색으로 하

128 형명(形名) : 군대를 지휘하는 신호법으로, 정(旌)과 기(旗)를 ‘형(形)’이라고 하고 금(金)과 고(鼓)를 ‘명(名)’이라고 한다.

129 대기치(大旗幟) : 조선시대 각 군영에서 의장 및 군사 신호용으로 사용했던 사방 4자 이상의 대형 기치의 총칭이다.

130 초요기(招搖旗) : 군사가 싸울 때나 행진할 때 대장이 장수를 부르거나 지휘하고 호령하던 기(旗)이다.

131 영두(纓頭) : 실이나 털을 묶어서 깃대 따위에 꽂는 꾸밈새이다.

132 치미(雉尾) : 꿩의 꼬지깃을 모아 묶어서 깃대 따위의 끝에 꽂는 장식이다.

133 인기(認旗) : 조선시대 각 군영의 지휘관이 사용하던 신호용 기이다. 지휘용인 사명기(司命旗)에 응답하는 회신용 기를 말한다.



고 오색의 연결된 띠를 하며, ‘장용내군사명(壯勇內軍司命)’이라 쓴다.

1. 통장(統長)의 인기는 한 면은 가운데와 가장자리 및 띠를 황색으로 하는데 단지 진을 익힐 때에만 꺼내 쓴다. 장용위 좌우열의 기 두면[좌측은 가운데를 남색으로 가장자리를 황색으로 하며, 우측은 가운데를 백색으로 가장자리를 황색으로 한다]은 행행할 때에나 대비교(大比較)¹³⁴할 때에나 진을 익힐 때에나 상시사(賞試射)¹³⁵할 때에 꺼내서 사용한다.
1. 호령의 기치(旗幟)는 진을 익힐 때나 대비교할 때나 하등(夏等)·동등(冬等) 시사 때에는 38면(面)의 모든 수효를 꺼내서 쓰고, 행행할 때나 춘등(春等)·추등(秋等) 시사 때에는 28면을 꺼내서 쓰며, 장용위의 취재 때에는 입번군 16명을 내어 쓴다.
1. 취고수(吹鼓手)의 대기치를 모두 꺼내서 사용할 때에는 40명으로 거행하며 그 외에는 절반인 20명으로 거행한다.
1. 본영의 군제는 국초의 제도 및 금위영을 처음 창설할 당시 별장(別將)이 승접(承接)한 예를 모방하여 사용해서 중군(中軍)은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만일 대장이 합동 조련을 하게 되면 별장이 응당 중군의

134 대비교(大比較) : 1739년(정조 17)부터 1799년(정조 23)까지 장용영 소속 향군에게 한 해 걸러 시행한 시사(試射)를 말한다.

135 상시사(賞試射) : 각 군문의 군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무예 시험을 치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성적이 부진한 자에게는 벌번(罰番)을 내리는 제도이다. 척계광(戚繼光)이 절강(浙江)의 군사를 매월 6회씩 조련시키고 월중(月中)에 무예를 겨루게 한 것을 취하여 ‘중순(中旬)’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을 행한다. 수기는 용호장龍虎將과 좌우장左右將 때의 예대로 순환
색에 자호가 없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관이貫耳 · 영전令箭 또한 만
들어 지급하고 영전촉令箭鍬에는 단지 영호營號만 새긴다.



形名

- 一. 大旗幟, 司·哨·旗隊, 認旗之制度·方色, 竝依圖式造用爲白齊.
- 一. 招搖旗, 黃心黃邊, 畫七星雲氣, 桿高一丈九尺, 飾纓頭·朱絡·雉尾, 行幸時, 肄陣時, 用以召大將爲白齊.
- 一. 肄閱旗, 黃心紅邊, 大書肄閱二字. 較藝旗, 黃心紅邊, 大書較藝二字. 每於大殿座本營舉行時, 出用爲白齊.
- 一. 內使認旗, 黃心紅邊雙黃帶. 手旗, 黃心五色聯帶, 書壯勇內軍司命爲白齊.
- 一. 統長認旗, 一面黃心黃邊黃帶, 只肄陣時出用. 壯勇衛左右列旗, 二面[左藍心黃邊, 右白心黃邊], 行幸時, 大比較時, 肄陣時, 賞試射時, 出用爲白齊.
- 一. 號令旗幟, 肄陣時, 大比較時, 夏冬等試射時, 三十八面, 盡數出用, 行幸時, 春秋等試射時, 以二十面出用, 壯勇衛取才時, 以入番軍十六名, 出用爲白齊.
- 一. 吹鼓手大旗幟, 全數出用時, 以四十二名舉行, 其外以折半二十名舉行爲白齊.
- 一. 本營軍制, 倣用國初之制, 及禁營初設時別將承接之例, 中軍不爲設置是白如乎, 若值大將合操之時, 別將當行中軍之事. 手旗段, 依龍虎將·左右將時例, 以純黃色無字號定式. 貫耳·令箭亦爲造給, 而令箭鏃, 只刻營號爲白齊.

18. 입직(入直)¹³⁶

입직

1. 감관監官 1원은 서리書吏 1인, 고지기[庫直] 1명, 사령使令 · 문서지기[文書直] · 방자房子 각 1명을 거느리고 해당 청廳에 입직한다. 매일 아침 일찍 각 소所의 문서를 거두어서 품지稟旨하여 판하判下 받고, 그대로 직임을 살피며 낮에 근무한다.
1. 통장統長 1원, 제본사 패장除本仕牌將 3원은 해당 청에 입직하여 응당 행해야 할 사무의 출납을 거행한다.
1. 지구관知穀官 2원은 뇌자牢子 8명, 순령수巡令手 8명, 취고수吹鼓手 10명, 세악수細樂手 2명, 대기수大旗手 16명, 등룡군燈籠軍 4명, 아병牙兵 5명, 서패書牌 각 1명을 거느리고 해당 청에 입직한다. 낮에 근무하는 지구관 1원은 매일 문이 열리면 들어와서 당일의 공무를 입직하는 지구관과 함께 거행한다. 교련관敎鍊官 2원[1원은 직방直房에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숙직한다], 별무사別武士 1인도 또한 대령하면서 전령을 가져다 전해주는 등의 일을 전담하여 거행하되, 별무사는 낮에는 숙직하고 밤에 근무한다.
1. 장용위 패두壯勇衛牌頭 1인은 장용위 35인을 거느리고 해당 청에 입직하고, 입마立馬¹³⁷는 매일 2필씩 돌아가며 단봉문丹鳳門¹³⁸과 선인

136 입직(入直) : 장수와 군사가 궁궐 안에 들어가 직속하는 제도이며, 출직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직속의 교대는 3일이 대부분이며 병조만 매일 교대하였다.

137 입마(立馬) : 말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문宣仁門¹³⁹ 밖에 대기시킨다.

1. 별무사 2인은 궐내에 입직하는 금위군禁衛軍 10명을 거느리고 건양문建陽門¹⁴⁰에 입직하고, 문을 파수하는 등의 절차는 절목대로 거행한다.
1. 초관哨官 1원은 초군哨軍 20명을 거느리고[향군鄉軍이 상변上番하면 향군 5명, 경군京軍 15명으로 한다] 집례문集禮門¹⁴¹에 입직하고 파수하는 등의 절차를 전담하여 거행한다.
1. 별장別將과 파총把總 중 1원[돌아가며 입직한다], 초관 1원, 지구관 1원, 별무사 1인은 초군 30명[향군이 상변하면 향군 1기旗, 경군 10명으로 한다], 서패 각 1명, 장막군帳幕軍 6명[별장이 입직하면 해당 소所의 표하군標下軍 4명으로 한다. ○파총이 입직하면 해당 소의 표하군 3명으로 한다], 고직 1명, 군사 1명을 거느리고 외영外營에 입직한다.
1. 선기장善騎將은 군병을 거느리고 초관 중 1원[돌아가며 입직한다], 부료 무사付料武士 2인은 선기대善騎隊 20명[입마는 중일中日¹⁴²에 8

138 단봉문(丹鳳門) : 창덕궁의 남문인 돈화문(敦化門) 동쪽 문의 이름이다. 본래는 남장문(南牆門)이라 했는데 1475년(성종 6)에 대궐의 각 이름을 고칠 때에 단봉문이라 하였다.

139 선인문(宣仁門) :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 남쪽에 설치한 문이다.

140 건양문(建陽門) : 태종대에 건립된 창덕궁의 동쪽 담장에 있는 문이었으나, 성종대에 창경궁이 조성되면서 두 궁의 경계 영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공식적으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꼭 이 문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건양문 옆에는 숙위소(宿衛所)를 두어 지키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141 집례문(集禮門) : 창경궁의 명정문(明政門) 밖 남쪽 행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이다.

142 중일(中日) : 날을 육십갑자로 헤아릴 때, 한 달을 셋으로 나누어 십이지의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드는 날을 이르는 말이다.

필, 초일(初日)과 종일(終日)¹⁴³에 6필이다], 초군 10명을 거느리고 직방에 입직한다[향군이 상변하면 향군 5명, 경군 5명으로 한다. ○선기장이 입직하면 해당 소의 표하군 1명을 추가로 들인다]. 궁궐의 담장을 순찰하게 되면 입직하는 초관 및 부료 무사 2인은 분경(分更)¹⁴⁴을 거행한다. 만일 선기장이 입직하게 되면 외영에 입직하는 초관이 대신 행한다.

1. 무군 초관(無軍哨官) 1원은 당보수(塘報手)¹⁴⁵ 5명, 초군 6명을 거느리고 북창(北倉)에 입직하는데, 수직하고 순찰하는 것을 더욱 엄히 신칙한다.
1. 도제조 배기수(都提調陪旗手)[순뢰(巡率)와 등룡군(燈籠軍)을 함께 마련한다]는 3일마다 6명이 돌아가며 해당 소에 입번한다.
1. 제조 배기수(提調陪旗手)[순뢰와 등룡군을 함께 마련한다]는 3일마다 4명이 해당 소에 입번한다.
1. 대장소(大將所)의 교련관 2원, 별무사 2인, 부료 무사 1인은 순뢰 각 7명, 등룡군 2명, 아병 3명, 배기수 4명을 거느리고 3일마다 해당 소에 입번한다.
1. 종사관 배기수(從事官陪旗手)[순뢰도 함께 마련한다]는 3일마다 2명이

143 초일(初日)과 종일(終日): 한 달을 셋으로 나누어 십이지의 인(寅)·신(申)·사(巳)·해(亥)가 드는 날을 초일(初日), 진(辰)·술(戌)·축(丑)·미(未)가 드는 날을 종일(終日)이라 한다.

144 분경(分更): 야간의 순찰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밤 시간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145 당보수(塘報手): 척후병(斥候兵)을 말한다. 전투상황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정세를 살피고 당보기(塘報旗)로 신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군사이다.



해당 소에 입번한다.

1. 각 처에 입직하는 장관 · 장교 · 군병 등의 생기省記¹⁴⁶를 각 해당 장령將領 및 차지次知가 수정修正하고 착함着啣¹⁴⁷하여 대장소에 보고하면, 대장소에서 점련粘連하여 아뢴다.
1. 각 처의 직속하는 곳[외영 · 직방 · 북창]에서 일의 유무를 3일마다 전보轉報하는 것은 대장이 점련하여 아뢴다. 건양문에서 매일 전보하는 것은 월말에 모두 점련하여 아뢴다.

146 생기(省記) : 관아에서 숙직하는 사람의 성명 따위를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숙직 일지를 이른다. 병조에 입직하는 낭관이 매일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 궁궐의 각처에 입직하는 관원, 하례(下隸), 각 영과 각 문에 입직하는 장사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을 거쳐 임금에게 올렸다.

147 착함(着啣) : 문서에 성함을 적거나 수결을 두는 것을 말한다.

入直

- 一. 監官一員, 率書吏一人, 庫直一名, 使令・文書直・房子各一名, 入直該廳. 每日早朝, 收捧各所文書, 稟旨判下, 仍察晝仕爲白齊.
- 一. 統長一員, 除本仕牌將三員, 入直該廳, 應行事務出納, 舉行爲白齊.
- 一. 知穀官二員, 率牢子八名, 巡令手八名, 吹鼓手十名, 細樂手二名, 大旗手十六名, 燈籠軍四名, 牙兵五名, 書牌各一名, 入直該廳. 晝仕知穀官一員, 每日待開門入來, 當日公務, 與入直知穀官, 同爲舉行. 教鍊官二員[一員直房晝出夜直], 別武士一人, 亦爲待令, 傳令資傳等事, 專管舉行爲白乎矣, 別武士, 則晝直夜出爲白齊.
- 一. 壯勇衛牌頭一人, 率壯勇衛三十五人, 入直該廳, 立馬則每日二匹, 輪回立待於丹鳳門・宣仁門外爲白齊.
- 一. 別武士二人, 率內入直禁衛軍十名, 入直於建陽門, 把門等節, 依節目舉行爲白齊.
- 一. 哨官一員, 率哨軍二十名[鄉軍上番, 則鄉軍五名, 京軍十五名], 入直於集禮門, 把守等節, 專當舉行爲白齊.
- 一. 別將・把摠中一員[輪回入直], 哨官一員, 知穀官一員, 別武士一人, 率哨軍三十名[鄉軍上番, 則鄉軍一旗, 京軍十名], 書牌各一名, 帳幕軍六名[別將入直, 則該所標下軍四名. ○把摠入直, 則該所標下軍三名] 庫直一名, 軍士一名, 入直於外營爲白齊.
- 一. 善騎將領軍, 哨官中一員[輪回入直], 付料武士二人, 率善騎隊二十名[立馬, 中日八匹, 初・終日六匹], 哨軍十名, 入直於直房[鄉軍



上番，則卿軍五名，京軍五名。○善騎將入直，則該所標下軍一名加入]爲白乎矣。宮牆巡綽，則入直哨官及付料武士二人，分更舉行。若善騎將入直，則以外營入直哨官，替行爲白齊。

- 一、無軍哨官一員，率塘報手五名，哨軍六名，入直於北倉，守直·警巡，另加嚴飭爲白齊。
- 一、都提調陪旗手[巡牢·燈籠軍，通同磨鍊]，每三日六名，輪回入番該所爲白齊。
- 一、提調陪旗手[巡牢·燈籠軍，通同磨鍊]，每三日四名，入番該所爲白齊。
- 一、大將所教鍊官二員，別武士二人，付料武士一人，率巡牢各七名·燈籠軍二名·牙兵三名·陪旗手四名，每三日入番該所爲白齊。
- 一、從事官陪旗手[巡牢，通同磨鍊]，每三日二名，入番該所爲白齊。
- 一、各處入直，將官·將校·軍兵等省記，各該將領及次知，修正着啣，報于大將所，則自大將所粘啓爲白齊。
- 一、各處直所[外營·直房·北倉]，有無事，每三日轉報，則大將粘啓。建陽門，每日轉報，則月終都粘啓爲白齊。

19. 번상(番上)¹⁴⁸

번상

1. 향군(鄕軍)의 상번은 1초(哨)가 두 달 동안 하는 것을 규례로 삼고, 9월부터 번을 시작하여 2월에 번을 마치게 한다. 가을과 겨울 두 차례의 번은 우사(右司)와 후사(後司)에서 돌아가며 징번(徵番)하고, 봄의 한 차례의 번은 전사(前司)와 좌사(左司)에서 1달씩 돌아가며 징번하게 한다.
1. 징번은 매번 기일의 3달 전 마다 1일에 군색(軍色)에서 경기 감영에 관문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해당 읍에 통지하게 한다. 그리고 한 달 전 그믐에 경중(京中)에서 점고(點考)를 받게 하고, 당월 1일에 입번하게 한다.
1. 전사(前司)는 수원(水原)이 이미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고,¹⁴⁹ 또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감영에서 관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외사에 직접 관문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직접 점고를 한 뒤에 종사관이 거느리고 가게 한다.
1. 상번하는 두 달 동안에 부모의 상으로 탈이 난 자가 있으면 즉시 관문을 보내어 통지하고 대정(代定)으로 상번하게 한다. 만약 상번의 마지막 초하루나 보름 이후인 경우에는 상번하지 말도록 한다.

148 번상(番上): 지방의 군사를 골라 뽑아서 차례로 서울의 군영에 보내어 역을 치르게 하는 일이다.

149 수원(水原)이 …… 승격되었고: 이전의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가 1793년(정조 17) 수원 유수부(水原留守府)로 승격되었고, 수원 유수는 장용외사 행궁정리사(壯勇外使行宮整理使)를 겸직하였다.



1. 상변군이 외영의 공해公廨¹⁵⁰에 들어가 거처하면 땀나му와 음식 등 여러 물종은 해당 색色에서 지급한다.
1. 상변군이 착용하는 군복과 전립戰笠, 일체 무기는 모두 본영에서 준비하였다가 번을 설 때에 내어 주고, 하변할 때에 도로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하변하는 그 달의 1일에는 각각 군병을 거느리고 초관이 함께 교외로 나가서[남쪽으로는 강두江頭까지, 동쪽으로는 제기현祭基峴까지, 서쪽으로는 모화관慕華館까지이다] 점고한 다음 보낸다.
1. 상변할 때 기대총旗隊總은 점고를 받은 뒤에 차비문差備門¹⁵¹ 밖에 와서 대기하였다가 단자를 올리고 문안한다. 하변할 때도 이 규례와 같이 한다.
1. 향군을 뽑아 정할 때 잘 거행하지 못하여 만일 공사천公私賤이 함부로 포함되는 일이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 이하의 죄를 논하여 다스리되, 한결같이 승호군陞戶軍을 뽑아 올릴 때의 규례대로 본영에서 초기를 올려 죄를 청한다.
1. 향군이 상변하고 하변할 때 무기와 복색은 종사관과 해당 색色의 감관 및 해당 차지次知가 함께 추생 적간抽牲摘奸¹⁵²하여 탈이 있고 없는 여부를 대장소에 점련하여 아뢴다.

150 공해(公廨): 관아의 건물로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만을 가리키기도 하며, 청사 이외의 부속 건물은 물론 관에서 건설한 창고, 누정 등을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151 차비문(差備門): 편전, 중궁전 등 왕과 왕비가 머무는 주된 공간의 앞에 놓인 문을 말한다.

152 추생 적간(抽牲摘奸):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으므로 제비를 뽑아 정해진 곳만 조사하여 적발하는 것을 말한다.

番上

- 一. 鄉軍上番, 以一哨兩朔爲例, 自九月始番, 至二月終番爲白乎矣. 秋冬二番, 以右·後司, 輪回徵番, 春一番, 以前·左司一朔式, 輪回徵番爲白齊.
- 一. 徵番, 則每前期三朔, 初一日, 自軍色行關畿營, 使之知委該邑. 前一月晦日, 京中逢點, 當月初一日, 立番爲白齊.
- 一. 前司, 則水原既陞留府, 且兼外使, 不爲管轄於畿營. 直關外使, 使之親執點考後, 以從事官, 領付爲白齊.
- 一. 上番兩朔之間, 遭故有頃者, 登時發關知委, 代定仍爲上番. 若至終朔望後, 則勿爲上番爲白齊.
- 一. 上番軍, 入接於外營公廨, 柴·饌各種, 自該色上下爲白齊.
- 一. 上番軍所着, 軍服·戰笠, 一應器械, 竝自本營措備, 當番時出給, 下番時還納. 而下番當朔初一日, 各其領軍, 哨官同出郊外[南至江頭, 東至祭基峴, 西至慕華館], 點考以送爲白齊.
- 一. 上番時, 旗隊摠逢點後, 來待差備門外, 單子問安. 下番時, 亦同此例爲白齊.
- 一. 鄉軍抄定時, 不善舉行, 如有公私賤冒入之事, 則道臣·守令以下論勘, 一依陞戶抄上時例, 自本營草記, 請勘爲白齊.
- 一. 鄉軍上下番時, 器械·服色, 從事官與該色監官及該次知, 眼同抽牒摘奸, 有無頃, 自大將所粘啓爲白齊.



20. 배호(陪扈)¹⁵³

배호

1. 성내로 거동할 때 제조·대장·종사관은 백관의 반열에 참여하고, 지구관·교련관·제본사 패장은 위내衛內에서 배호한다. 장용위 100인[만약 수가 다 차지 않으면 전일에 근무한 일수로 천전遷轉한 자와 납마인納馬人 가운데서 수를 충원한다. ○부료 무사付料武士·미부료 무사 가운데 만일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수를 충원한다]을 별도로 뽑아 두국頭局에서 좌우로 나누어 작행作行하게 한다. 성외의 경우에는 창검군槍劍軍이 미국尾局에서 오마대五馬隊¹⁵⁴로 작행하게 한다. 대장이 영솔하여 배호하는 기고旗鼓는 때에 임하여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게 한다.
1. 성외로 거동할 때 제조·종사관은 반차도班次圖대로 배호하고, 감관·별부료는 창검군의 난후攔後¹⁵⁵ 밖을 배호한다. 별수가 장관別隨駕將官 및 통장·지구관·각 차비·교련관·제본사 패장은 난후안을 배호한다. 마보군은 장용위 미국尾局에서 오마대와 삼대로 나란히 행군하고, 각 해당 장령이 영솔하여 작행하게 한다.
1. 거동할 때 창검군[초군 가운데서 30명, 혹은 60명이 돌아가며 하

153 배호(陪扈): 임금의 곁에서 모시고 따르는 것을 말한다.

154 오마대(五馬隊): 마병이 행군할 때 5열 종대로 편성하는 작대의 명칭으로, 오마작대(五馬作隊)의 준말이다.

155 난후(攔後): 후방 경비를 말한다.

는데 때가 임하면 품지한다], 난후군_{攔後軍}[전좌_{殿座}¹⁵⁶할 때와 같다] 이 만약 모두 거행할 때는 다만 창검 초관_{槍劍哨官}만을 품지하여 장망_{長望}¹⁵⁷으로 차출하고, 교련관 1원과 함께 일체 검척하게 한다. 난후는 해당 차지와 지구관이 영솔하여 신척하게 하는데 단지 난후만 거행할 때에는 초관 1원을 장망으로 차출하고 지구관·교련관은 거행하게 하지 않는다.

1. 도성의 안과 밖에 거동할 때 별수가 장관을 품지하여 장망으로 차출한다.
1. 도성의 밖으로 거동할 때의 반차_{班次}는 창검 장관_{檢飭將官} 1원, 지구관 1원, 교련관 1원을 품지하여 장망으로 차출하고, 장용위 2인을 또한 가려 정해서 일체 검척하도록 한다. 땀감과 마초를 담당하는 장관 1원, 군량을 담당하는 지구관 1원[원행_{園行}할 때만 한다] 또한 장망으로 차출한다.
1. 경숙 행행_{經宿行幸}¹⁵⁸할 때 궁을 지키는 파총 1원은 품지하여 차출하고[만일 없을 때에는 전합_{前啣} 가운데서 임명한다] 별무사 2인, 서자지_{書字的} 1명, 표하군 6명[전배_{前排}를 거행하기 위한 것이다]을

156 전좌(殿座): 임금이 친정(親政)·조하(朝賀)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와 앉는 것 또는 그 자리를 말한다.

157 장망(長望): 관원을 추천할 때 다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58 경숙 행행(經宿行幸): 임금이 능에 대한 참배나 전쟁 따위의 이유로 대궐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을 말한다.



거느리게 하여 낮에는 장용위청, 밤에는 통화문¹⁵⁹ 안에서 머물러 대기하게 하고 건양문^{建陽門}의 동쪽을 관할하게 한다.

1. 도성의 안과 밖에 거동할 때에는 궁을 지키는 감관 1원을 품지하여 장망으로 차출하고, 지구관 1원은 해당 청에서 분배하여 모두 궁을 지키게 한다[경숙^{經宿}할 때도 같다]. 부료 패두^{付料牌頭}가 부료 무사를 거느리고 장용위청에 대신 숙직하게 한다.
1. 도성의 밖으로 거동하여 경숙할 때에는 각 처에 대신 숙직하는 것과 각 차비[땀감과 마초를 담당하고, 기찰장^{機察將}은 문에서 대령한다]는 모두 전일에 근무한 일수로 천전한 자 및 납마인^{納馬人} 가운데서 장망으로 품지하여 차출한다[당일에 환궁할 때도 같다]. 외영에 대신 숙직하는 파총·초관 각 1원, 별무사·무사 각 1인은 각 소소에 교대로 숙직하고[무사는 지구관청에 대신 숙직한다], 수가 하는 군병 외에 늙고 병든 군병은 모두 영營에 남게 한다. 만일 부족하면 장초군^{壯抄軍}을 헤아려 더 정하게 한다.
1. 거동할 때 장관·장교·군병 등이 도착하고 도착하지 않은 실수를 각 해당 장령이 대장소에 전보하여 입계하도록 한다.
1. 행행할 때 배봉 별장^{拜峯別將}은 아병^{牙兵} 2기^旗를 거느리고 본진^{本鎭}에 남아 대기하되 만약 동교^{東郊}에 거동하는 때와 겹치게 되면 별

159 통화문(通化門) : 창경궁의 동쪽 궁장에 있는 문이다. 흥화문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선인문이며, 그 대칭이 되는 위치에 통화문이 있는데 선인문보다 쓰임이나 권위가 낮은 문으로 판단된다. 선인문을 왕세자의 정문으로 여겼던 것에 비해 통화문은 죄인을 압송하거나 데려갈 때 출입하는 문으로 지정되곤 하였다.

장은 기고旗鼓를 거느리고 공손히 맞이한다[사아리沙阿里 근처이다]. 사아리 큰 길에 복병하는 한 곳과 뒷 봉우리에 척후斥候하는 한 곳은 아병장이 영솔하여 거행한다[해당 진조鎭條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가駕가 지방을 지나간 뒤에는 모두 영표令票¹⁶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해산시켜 보낸다. 만약 서교西郊에 동가하여 당일에 환군할 때에는 진에 남아 척후하고 복병하는 것을 모두 그만두게 한다.

1. 도성의 안과 밖에 거동할 때 참진參陣하는 실수 단자 및 군향색軍餉色の 원역 성책을 위내와 위외로 구별하여 수정修正하여 계하 받은 뒤 만일 더하고 줄인 것이 있으면 즉시 부표付標하고, 귀죽饋粥할 때와 호궐稿饋할 때 이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한다.
1. 궁성을 호위할 때 각 영은 모두 신지信地¹⁶¹가 있는데 본영은 원래 정해진 신지가 없으니 때에 임하여 품지하여 거행한다.

160 영표(令票) : 각 영문(營門)에 주장(主將)의 명령을 전하는 표로 쓰던 것이다. 나무로 둥글고 납작하게 만들어 그 위에 영표(令票)라 썼다.

161 신지(信地) : 군대가 주둔하고 관할하는 지역, 또는 담당 구역을 말한다.



陪扈

- 一. 城內動駕時, 提調·大將·從事官, 進叅於百官班, 知穀官·教鍊官·除本仕牌將, 衛內陪扈. 壯勇衛百人[若未滿數, 則前仕遷轉·納馬人中充數. ○付料武士·未付{料}武士¹⁶²中, 如有自願者, 一體充數], 別抄, 頭局分左右作行. 城外, 則槍劍軍, 尾局以五馬隊作行爲白乎矣, 大將率領陪扈旗鼓段, 臨時稟旨舉行爲白齊.
- 一. 城外動駕時, 提調·從事官, 依班次圖陪扈, 監官·別付料段, 槍劍軍攔後外陪扈. 別隨駕將官及統長·知穀官·各差備·教鍊官·除本仕牌將段, 攔後內陪扈. 馬步軍段, 壯勇衛尾局, 以五馬隊·三隊平行, 各該將領率領作行爲白齊.
- 一. 動駕時, 槍劍軍[以哨軍中, 輪回三十名, 或六十名, 臨時稟旨], 攔後軍[殿座時同], 若竝爲舉行時, 只槍劍哨官稟旨, 長望差出, 與教鍊官一員, 一體檢飭. 攔後則以該次知·知穀官率領申飭, 只攔後舉行之時, 則哨官一員, 長望差出, 知穀官·教鍊官, 不爲舉行爲白齊.
- 一. 城內外動駕時, 別隨駕將官稟旨, 長望差出爲白齊.
- 一. 城外動駕時班次, 檢飭將官一員, 知穀官一員, 教鍊官一員, 稟旨長望差出, 壯勇衛二人, 亦爲擇定, 一體檢飭爲白乎旅, 柴·馬草次知

162 문맥을 살펴 원문의 '未付武士'에 글자를 추가하여 '未付料武士'로 교감한다.

將官一員，軍糧次知知穀官一員[園行時岔]，亦爲長望差出爲白齊。

一. 經宿行幸時，守宮把摠一員，稟旨差出[如無時，任前啣爲之]，率別武士二人·書字的一名·標下軍六名[前排舉行次]，晝則壯勇衛廳，夜則通化門內留待，管轄建陽以東爲白齊。

一. 城內外動駕時，則守宮監官一員，稟旨長望差出，知穀官一員，自該廳分排，竝守宮[經宿時司]，付料牌頭率付料武士，代直於壯勇衛廳爲白齊。

一. 城外動駕經宿時，則各處代直，與各差備[柴·馬草次知，譏察將門待令]，竝以前仕遷轉，及納馬人中，長望稟旨差出[當日還宮時同]爲白乎矣，外營代直，以把摠·哨官各一員，別武士·武士各一人，替直各所[武士則知穀官廳代直]，隨駕外老殘軍兵，竝留營。如不足，則以壯抄軍，量宣加定爲白齊。

一. 動駕時，將官·將校·軍兵等，到未到實數，各該將領轉報大將所，以爲入啓爲白齊。

一. 行幸時，拜峯別將率牙兵二旗，留待于本鎮爲白乎矣，若值東郊動駕時，則別將率旗鼓祇迎[沙阿里近處]。沙阿里通衢伏兵一處，後峰斥堠一處，以牙兵將率領舉行[詳見該鎮條]。駕過地方後，竝待令票，罷送爲白乎旅，若西郊動駕當日還宮時，則留鎮斥堠·伏兵，竝置之爲白齊。

一. 城內外動駕時，參陣實數單子，及軍餉色員役成冊，區別衛內外，修正啓下後，如有加減之事，卽爲付標，饋粥與犒饋時，照此磨鍊，上下爲白齊。

一. 宮城扈衛時，各營皆有信地，而本營則無元定信地，臨時稟旨舉行為白齊。



21. 징발(徵發)

징발

1. 매년 원행(園行)할 때에는 기일 전에 외사(外使)에게 관문을 보내고 전사군(前司軍) 및 초哨(哨)때에 임하여 품지한다[를 조발(調發)할 지를 정하여] 감색이 영솔해서 노량(露梁) 건너편에 와서 대기하게 한다. 해당 장령(將令·파총·초관)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는데 그들로 하여금 군을 이끌게 한다. 군복과 무기는 지구관이 장부와 비교하여 검사해서 가져오고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지급하게 한 뒤 그대로 후상(後廂)으로 삼는다. 대가가 노량 행궁(露梁行宮)에 도로 이르면 영표(令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방송(放送)하고, 무기와 군복은 지구관이 뒤에 남아서 도로 거둔다.
1. 외사(外使)가 관장하는 외영은 한 사司의 군을 매년 원행할 때에 외사가 품지하여 기일 전에 조발해서 대령하고 수가군(隨駕軍)과 함께 수원 행궁(水原行宮)을 환위(環衛)하게 한다. 환궁하는 것은 영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해엄(解嚴)¹⁶³하게 한다.
1. 능행할 때에 가駕가 지나가는 지방 소재 향군은 때에 임하여 품지한다. 그리고 경기 감영에 관문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해당 장령을 조발하게 하며, 또한 기일 전에 군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려 보낸다[혹은 주정소(晝停所), 혹은 모읍 모처이다]. 무기와 군복은

163 해엄(解嚴) : 경계 태세를 해제한다는 말이다. 나라의 큰 의식이나 행사에 임금이 거동할 때 이에 참여하는 관원이나 시위(侍衛) 군사에게 준비를 서두르도록 복을 쳐 알리는 일이다.

지구관이 또한 장부와 비교하여 검사해서 가져오고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지급하게 한다[배호陪扈·환위環衛 등의 절차 및 모처에서 해엄解嚴·방송放送 등의 일은 모두 품지하여 거행한다]. 방송할 때에 무기와 군복은 규례대로 도로 거둔다.

1. 이진陣할 때에 배봉 아병拜峯牙兵과 노량 아병露梁牙兵을 징발하여 연습시키는 것은 때에 임하여 품지하고, 각 해당 진장鎭將에게 관문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거느리고 와서 참여시키게 한다.
1. 외영에 입직하는 군병이 영표를 제거하고 군물軍物이 없이 해산하여 들어올 때 10명 이상이면 입직하는 초관은 영營이 무사하다는 전보를 보내고, 그때에 해산하여 들어오는 명수 및 시일을 적어서 증거로 삼도록 한다.



徵發

- 一. 每年園行時，前期行關於外使，以前司軍幾哨[臨時稟旨]，調發定，監色率領，來待于露梁越邊。該將領[把摠·哨官]，自京下送，使之領軍爲白乎矣。軍服·器械，則知穀官，照檢領往，使之分給後，仍爲後廂。大駕還至露梁行宮，待令票放送，器械·軍服，知穀官落後，還收爲白齊。
- 一. 外使所管外營，一司軍，每年園行時，外使稟旨，調發前期待令，與隨駕軍，合竝環衛於水原行宮。待回鑾以令票，仍卽解嚴爲白齊。
- 一. 陵行時，駕過地方所在鄉軍，臨時稟旨，行關畿營，使之調發該將領，亦令前期，下送于聚軍處爲白乎矣[或晝停所，或某邑某處]，器械·軍服，則知穀官，亦爲照檢領往，使之分給[陪扈·環衛等節，及自某處解嚴·放送等事，竝稟旨舉行]。放送時，器械·軍服，依例還收爲白齊。
- 一. 肄陣時，拜峯牙兵·露梁牙兵，徵發赴操，臨時稟旨，行關各該鎮將，使之率領來赴爲白齊。
- 一. 外營入直軍，除令票無軍物解入時，十名以上，則入直哨官，營無事轉報時，解入名數，及時日措語添入，以爲憑信之地爲白齊。

22. 호궐(稿饋)¹⁶⁴

호궐

1. 새해 첫 날 궐내에 입직하는 군병을 호궐할 때 본영의 내입직 및 외영에 입직하는 장교와 군병 가운데 단지 당일에 출입번하는 자들만 일체 호궐한다.
1. 능원에 행행行幸한 뒤에 수가하는 장교와 군병에게 호궐을 베푸는 것은 다른 영營의 예대로 건호궐乾稿饋¹⁶⁵로 거행한다.
1. 도성의 안과 밖에 거동할 때 수가하는 장교와 군병에게 특교特敎가 있으면 요기饒氣감을 지급하고, 경숙할 때 특교가 있으면 궐죽饋粥하거나 혹은 건가乾價¹⁶⁶를 지급한다.
1. 호궐은 원員·인인·명名 당 산적散炙 1꼬치[무게는 5근斤 5량兩이 다], 흰 떡 3개箇[쌀 1말[斗]로 7개를 만든다], 익은 콩 3홉[勺], 소금 3작勺, 명태明太 1마리[尾], 술 3잔[盞]으로 한다.
1. 건호궐은 원·인·명 당 각 전錢 2전 7푼[分], 궐죽은 각 전 5푼, 요기감은 전 3푼으로 한다.
1. 호궐은 제조·대장 이하 장관·장교·원역·군병에게 모두 마련하고, 궐죽과 요기감은 호궐와는 차이가 있으니 장관은 논하지 않는다.

164 호궐(稿饋):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는 것을 가리킨다.

165 건호궐(乾稿饋): 호궐은 군사를 위로하는 뜻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먹이는 일인데, 건호궐은 음식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66 건가(乾價): 일꾼에게 술을 먹일 때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신 주는 돈인데, 여기서는 바로 식대(食代)인 듯하다.



1. 수가하는 군교軍校와 원역의 궤죽과 요기감은 위내와 위외를 구별하여 마련해서 지급하되[궤죽은 위내 5푼, 위외 3푼, 요기감은 위내 3푼, 위외는 논하지 말 것], 비록 위외에 속한 자일지라도 결진結陣한 진에 있는 것과 같이 하고 위내와 위외의 군병에게 일체 궤죽하라는 명이 있었다. 만일 능행할 때나 원행할 때에는 진 밖에 대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내의 예대로 지급한다. 모든 진 밖에 대령하는 무리들에게는 도성의 안과 밖으로의 거동과 궤죽, 요기와 관계없이 비록 위내와 위외에 모두 하라는 명이 있을지라도 거론하지 않는다. 장용위는 시위하는 장교와 관계되니, 비록 위외에 있더라도 위내의 예로 시행한다. 마땅히 위내로 들어와야 할 사람이 혹 위외로 나가거나, 위외의 사람이 혹 위내로 들어오더라도 모두 실제를 따라 시행한다.

犒饋

- 一. 歲首，則闕內入直軍兵犒饋時，本營內入直，及外營入直將校·軍兵，只當日出入番，一體犒饋爲白齊。
- 一. 陵園行幸後，隨駕將校·軍兵，設犒饋，而依他營例，以乾犒饋舉行爲白齊。
- 一. 城內外動駕時，隨駕將校·軍兵有特教，則給饒氣次，經宿時有特教，則饋粥，而或以乾價上下爲白齊。
- 一. 犒饋，每員人名，散炙一串[重五斤五兩]，白餅三箇[米一斗，造七箇]，熟太三合，鹽三勺，明太一尾，酒三盃爲白齊。
- 一. 乾犒饋，每員人名，各錢二錢七分，饋粥，各錢五分，饒氣次，錢三分爲白齊。
- 一. 犒饋則提調·大將以下，將官·將校·員役·軍兵，竝爲磨鍊，饋粥·饒氣次，與犒饋有異，將官勿論爲白齊。
- 一. 隨駕軍校·員役，饋粥·饒氣次，區別衛內外，磨鍊上下[饋粥衛內五分·衛外三分，饒氣次衛內三分·衛外勿論]爲白乎矣，雖屬衛外者，如在結陣陣上，而有衛內外軍兵，一體饋粥之命。如陵行·園行之時，則除非陣外待令者，竝以衛內例上下。凡係陣外待令之類，無論城內外舉動，又無論饋粥與饒氣，雖有衛內外竝爲之命，勿爲舉論爲白乎旅，壯勇衛則係是侍衛之將校，雖在衛外，以衛內施行。當入衛內之人，或出衛外，衛外之人，或入衛內，竝從實施行爲白齊。



23. 이진(肄陣)

이진

1. 이진은 사맹삭¹⁶⁷四孟朔의 10일에 설행하되, 만약 일이 생겨 서로 겹치게 되면 20일, 혹은 30일로 물려서 행한다. 만약 향군이 상번 하면 모두 조련시키고 배봉^{拜峯}·노량^{露梁} 두 진^鎭의 아병을 징발하여 연습시키는 것은 품지^{稟旨}하여 거행한다.
1. 1일 전에 대장은 평철릭[平天翼]과 패검^{佩劍}을 착용하고 군령^{軍令}에 대해 여쭈다[시사^{試射}와 같다].
1. 복색은 제조·종사관·감관·별부로는 용복^{戎服}을 갖춘다. 대장 이하 장관·장교에 이르기까지는 군복을 갖춘다, 통장·장용위·선기대는 봄과 겨울에는 갑주^{甲冑}를 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군복으로 한다.
1. 전배^{前排}는 연생문^{延生門} 밖에서 대령하고, 기고^{旗鼓}는 청도도^{淸道圖}로써 명광문^{明光門} 안에 배열한다. 마보 군병은 청양문^{淸陽門} 안에서 머물고 대장과 종사관은 전배를 거느리고 단^壇 아래 좌변에 꿇어 앉아 맞이하며, 제조·감관·별부로는 단 아래 우변에서 공손히 맞이한다. 전함^{前脚} 장관이 만약 참석하게 되면 대장의 뒤에 있게 한다.
1. 대가^{大駕}가 군문에 들어가 단^壇에 오른 뒤에 제조·종사관·감

¹⁶⁷ 사맹삭(四孟朔)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첫 달인 음력의 1월, 4월, 7월, 10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관·별부료는 먼저 참알參謁을 행한다[곡배曲拜를 올린다]. 지구관이 소취타小吹打를 올릴 것을 계품하고 문이 열린 뒤 대장·지구관·교련관은 참현參現한다[군례軍禮로 한다]. 장전帳殿에 오르는 일[升帳], 깃발을 올리는 일[升旗], 관기를 불러 모으는 일[聚官旗], 명령을 하달 받는 일[聽發放], 숙정패肅靜牌를 세우는 일, 호적號笛을 부는 일[掌號], 방영方營을 설치하는 일[下營] 등은 모두 대장이 계품한다. 행영行營 이하는 지구관이 계품하여 거행한다.

1. 행영의 분로分路·첩진疊陣·방진方陣·수영收營·산조散操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장조 정식場操程式」¹⁶⁸ 대로 연습하여 익히게 한다[마군의 학익진鶴翼陣¹⁶⁹·봉둔진蜂屯陣¹⁷⁰, 보군의 오행진五行陣¹⁷¹·현무진玄武陣¹⁷²·육화진六花陣¹⁷³이고, 마군과 보군이 서로 추격하는

168 「장조 정식(場操程式)」: 『병학지남(兵學指南)』의 편명으로 성조장식(城操程式)과 수조장식(水操程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169 학익진(鶴翼陣): 학이 날개를 벌리는 형상으로 진을 치는 것이다.

170 봉둔진(蜂屯陣): 벌들이 사는 벌집의 형상처럼 치는 진이다.

171 오행진(五行陣):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오행에서 뜻을 취하여 만든 진법이다. 오색(五色)과 오방(五方)에 따라 금은 백색으로 서방에, 목은 청색으로 동방에, 수는 흑색으로 북방에, 화는 홍색으로 남방에, 토는 황색으로 중앙에 각각 위치시키며, 모양에 따라 금은 원진(圓陣)으로, 목은 직진(直陣)으로, 수는 곡진(曲陣)으로, 화는 예진(銳陣)으로, 토는 방진(方陣)으로 각각 배치하되, 오행의 상생상극의 이치에 따라 대처하게 한다.

172 현무진(玄武陣): 현무의 형상대로 치는 진을 말한다.

173 육화진(六花陣): 제갈량(諸葛亮)의 팔진법(八陣法)에 기초하여 당(唐)의 이정(李靖)이 만든 진법이다. 군사가 적어 9군(軍)을 만들기 곤란한 경우, 주위에 6진(陣)을 만들고 가운데에 중군(中軍)이 들어가는 형태의 7군(軍)으로 만든 것이다. 이때 주위의 6진은 정병(正兵)으로, 가운데의 중군은 기병(奇兵)으로 배치한다.



것은 또한 흘기^勿記대로 연습하여 익히게 한다.

1. 군병이 한 달에 3번 행하는 조련과 야전 훈련을 함께 연습하고 나누어 연습하는 것은 각 영의 규정이 같다. 본영에서 매달 열흘에 하는 연습은 초순에는 윤기^{輪旗}를, 중순에는 윤초^{輪哨}를, 종순에는 함께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바를 각 영과 비교하면 넓게 하지만 정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기병과 보병이 이미 한 영의 체제를 이루었고 병의 총수가 또한 5,000을 넘어서 군병을 합쳐 조련하는 법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때에 임하여 품지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肄陣

- 一. 肄陣, 以四孟朔初十日設行爲白乎矣, 若有事相值, 則以二十日, 或三十日退行. 若鄉軍上番, 則一體叅操, 拜峯·露梁兩鎮牙兵段, 徵發赴操, 稟旨舉行爲白齊.
- 一. 前一日, 大將以平天翼·佩劍, 稟軍令[試射司]爲白齊.
- 一. 服色段, 提調·從事官·監官·別付料, 具戎服. 大將以下至將官·將校, 具軍服. 統長·壯勇衛·善騎隊, 春冬則甲冑, 夏秋則軍服爲白齊.
- 一. 前排待令于延生門外, 旗鼓以清道圖, 擺列于明光門內. 馬步軍兵, 札駐于青陽門內, 大將·從事官率前排, 跪迎于壇下左邊, 提調·監官·別付料, 祇迎于壇下右邊. 前啣將官若進叅, 則在大將之後

爲白齊.

- 一. 大駕入軍門陞壇後, 提調·從事官·監官·別付料, 先行參謁[曲拜]. 知穀官, 稟小吹打, 開門後, 大將·知穀官·教鍊官, 參現[軍禮]. 升帳·升旗·聚官旗·聽發放·肅靜·掌號·下營等事, 竝大將啓稟. 行營以下, 知穀官啓稟舉行爲白齊.
- 一. 行營分路·疊陣·方陣·收營·散操等節, 一依場操程式肄習[馬軍之鶴翼·蜂屯陣, 步軍之五行陣·玄武·六花陣, 馬步軍互相追擊, 亦依笏記肄習]爲白齊.
- 一. 軍兵之月三行操·場操之合鍊分鍊, 乃是各營同規. 而本營之每月旬習, 初以輪旗, 中以輪哨, 終以合鍊, 則其所鍊習, 非比各營之博而不精. 而今則騎步, 已成一營之制, 兵摠亦過五千之數, 則不可不行合軍操場之法, 臨時稟旨舉行爲白齊.



24. 강사(講射)¹⁷⁴

강사

1. 여러 장관들의 강사는 매달 3차례[한 겨울과 한 여름에는 매달 2차례 한다] 설행하되, 유엽전(柳葉箭)¹⁷⁵은 10순(巡)·편전(片箭)은 3순을 하고 [2·3·4·8·9·10월에는 편전 1순 대신 기추(騎莠)를 1차례 한다],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면강(面講)과 배진(背陣)[당상은 50세, 당하는 60세면 강진(講陣)을 면제해주고, 활쏘기는 상은 있지만 벌은 없다]을 한다. 소포(小布)와 관혁(貫革)은 간차(間次)로 돌아가면서 행하게 하되, 별장(別將)이 시험을 주관하고, 대장이 주관할 때에는 시험을 감독하게 한다.
1. 지구관과 교련관의 강진은 매달 2차례 설행하되 대장이 시험을 주관하고, 『병학지남』 8편 중에서 추첨하여 배강(背講)¹⁷⁶하게 하는데 [미처 익히지 못한 자는 면강과 배진을 한다], 흘기(笏記)에는 진을 펼치는 것도 시강(試講)하도록 하였다. 통장(統長)과 제본사(제장(除本仕)牌將은 단지 면강과 배진만 하고 활쏘기는 소포 10순으로 하여 각 해당 청의 우두머리가 시험을 감독하게 한다.
1. 장용위의 강진은 매달 1차례 설행하되 취재인(取才人) 외에 면강과

174 강사(講射): 조선시대 병조의 주관하에 각 군영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관에게 매월 두 차례씩 병서와 활쏘기를 시험하던 일이다.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한 차례만 행하였다.

175 유엽전(柳葉箭): 화살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서 조선시대에는 무과시험에서 사용되었던 화살이다.

176 배강(背講): 시험 방법의 하나로 책을 보지 않고 외우는 구술시험이다. 배송(背誦)이라고도 한다.

배진은 대장이 시험을 주관하고 활쏘기는 입번할 때에는 소포 10순으로 매일 설행하고 출번할 때에는 기추 1차례, 별기別技 1차례, 포방砲放 1차례를 단지 중일에만 설행한다. 연말에 등급을 매겨서 [활쏘기와 강講을 각각 등급을 매긴다] 수석에게 상을 주고 말단에 게 벌을 준다.

1. 별무사의 활쏘기 모임은 매달 2차례 설행하되 소포 10순으로 하고 외영에 입직하는 당상이 시험을 감독하게 한다.
1. 장관의 강사는 연말에 등급을 매겨서 거수 별단居首別單을 서계書啓한다. 지구관과 교련관의 강진은 계삭季朔¹⁷⁷마다 수석에게 상을 주고 말단은 논별 한다[차수에 맞지 않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 연말에 모두 등급을 매겨서 수석에게 별도로 상을 주고 말단은 논별 한다.
1. 선기대善騎隊의 활쏘기 모임은 한겨울과 한 여름[겨울은 음력 11월과 12월이고 여름은 6월과 7월이다] 외에는 유엽전 3순, 기추 1차례, 마재(馬才) 1차례, 별기 1차례를 달마다 한다. 교관이 시험을 감독하여 봄과 가을에 각각 뽑는데 사기射技에 수석을 한 자 1인에게는 상을 준다.
1. 각 초哨의 서패書牌와 능마아能麼兒[『병학지남』을 한다]는 매 달 2차례, 기대총旗隊總[진법을 묻고 답하거나 진을 펼치는 것을 한다]은 사맹삭四孟朔에 각 1차례 설행하되 원군元軍 및 대년군待年軍 중에서

177 계삭(季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에서 마지막 달, 곧 3 · 6 · 9 · 12월을 이른다.



병서兵書에 능통한 자를 가려 뽑아서 매번 서패를 고강하는 날에 함께 시취試取하게 한다. 대년군은 6월과 12월 두 차례 각각 뽑고 수석인 자 1명은 바로 원군으로 승격시킨다. 원군과 서패는 통틀어서 등급을 매겨 상을 준다.

1. 기대충, 능마아, 행수 소임行首所任은 지구관이 주관하여 거행한다[지구관이 일제히 모인다]. 서패 및 원군, 대년군의 강회講會는 훈련대장과 지구관이 주관하여 거행한다[지구관은 3원員을 갖춘다]. 연말에 등급을 매겨 수석에게는 번을 감해주고, 말단에게는 별로 번을 준다.

1. 각 청의 활쏘기 모임은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예대로 하고 재일齊日에 구애되지 않는다.

1. 강사와 관련된 규정은 다른 영齎의 예를 다 쓸 필요가 없다. 본영에서는 비록 당하 장관일지라도 나이가 차면 강을 면제해 준다.

1. 능마아군은 비록 양인이더라도 만일 확실한 내력이 있고 풍채가 좋으며 강진에 능통한 자가 있어 지구관·교련관·별무사·서패 가운데서 보증인을 세워 천거한다면, 대장과 파총이 함께 가려 뽑고 대년군의 예대로 정액을 기록하여 둔다. 매번 능마아가 강講을 할 때마다 신척하여 고강해서 권장하고 널리 뽑는 뜻을 보존하도록 한다.

1. 별무사의 강진은 매 달 해당 청에서 활쏘기 하는 날에 함께 실행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등급을 매기되, 상벌은 지구관·교련관의 예대로 한다.

1. 장관의 활쏘기 모임과 관련하여 매번 한 여름마다 대장 가운데 연

로한 자들을 성상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비록 처서處暑 전에 잠시 정지한다는 명이 있더라도 각 청에서는 규례와 같이 설행한다. 대장과 별장이 모두 연로하지 않다면 장관의 활쏘기 모임은 규식대로 한다.



講射

- 一. 諸將官講射, 每朔三次[隆冬・盛暑, 每朔二次]設行, 而柳葉箭十巡・片箭三巡[二・三・四・八・九・十月, 片箭一巡代騎莧一次], 『兵學指南』面講・背陣[堂上年五十, 堂下年六十除講陣, 射則有賞無罰]. 小布・貫革, 間次輪行爲白乎矣, 別將主試, 大將時, 或監試爲白齊.
- 一. 知穀官・教鍊官講陣, 每朔兩次設行, 而大將主試, 『兵學指南』八編中, 抽性背講[未及肄習者, 面講・背陣], 笏記, 布陣亦爲試講. 統長・除本仕牌將, 只面講・背陣, 射則以小布十巡, 各該廳首監試爲白齊.
- 一. 壯勇衛講陣, 每朔一次設行, 而取才人外, 面講・背陣, 大將主試, 而射則入番時, 以小布十巡, 每日設行, 出番時, 以騎莧一次・別技一次・砲放一次, 只中日設行. 年終計劃[射講各爲計劃], 居首施賞, 居末施罰爲白齊.
- 一. 別武士射會, 每朔兩次設行, 而以小布十巡, 外營入直堂上, 監試爲白齊.
- 一. 將官講射, 則年終計劃, 居首別單書啓. 知穀官・教鍊官講陣, 則每季朔計劃, 居首施賞, 居末論罰[未准次, 則勿論]. 年終都計劃, 居首別爲施賞, 居末論罰爲白齊.
- 一. 善騎隊射會, 隆冬・盛暑[冬而至臘月, 夏而六七月]外, 以柳葉箭三巡・騎莧一次・馬才一次・別技一次, 逐朔爲之. 教官監試, 春秋

各抄, 射技居首一人, 施賞爲白齊.

- 一. 各哨書牌·能麼兒[『兵學指南』], 每朔兩次, 旗隊摠[陣法問答, 或布陣], 四孟朔各一次設行, 而元軍及待年軍中, 能通兵書者抄擇, 每於書牌考講日, 同爲試取. 待年軍, 則六臘兩等各抄, 居首一名, 直陞元軍爲白乎旂, 元軍與書牌, 通同計劃, 施賞爲白齊.
- 一. 旗隊摠·能麼兒·行首所任, 知穀官主管舉行[知穀官齊會]. 書牌及元軍·待年軍講會, 訓長[將]¹⁷⁸·知穀官主管舉行[知穀官, 備三員]. 年終計劃, 居首減番, 居末罰番爲白齊.
- 一. 各廳射會, 依宣傳官廳例, 勿拘齊日爲白齊.
- 一. 射講之規, 不必盡用他營之例. 本營, 則雖堂下將官, 年滿除講爲白齊.
- 一. 能麼兒軍, 雖良人, 如有有根着好身手能通講陣者, 知穀官·教鍊官·別武士·書牌中, 具保族薦舉, 則大將·把摠, 眼同抄擇, 依待年軍例, 定額錄置. 每於能麼兒講時, 申飭考講, 俾存勸獎廣選之意爲白齊.
- 一. 別武士講陣, 每朔該廳射會日, 同爲設行, 每年六臘月計劃, 而賞罰段, 依知穀·教鍊官例爲之爲白齊.
- 一. 將官射會, 每當盛暑, 特軫大將之年老, 雖有處暑前姑停之命, 各廳則如例設行. 大將·別將, 俱非年老, 則將官射會, 依式爲之爲白齊.

178 '訓將'은 훈련대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원문의 '訓長'은 문맥상 오기로 판단되어 교감한 것이다.



25. 시사(試射)¹⁷⁹

시사

1. 사등^{四等}에 하는 상시사^{賞試射}¹⁸⁰는 사계삭^{四季朔}¹⁸¹마다 1일에 대장이 등시사^{等試射}의 해당 달에 하겠다는 뜻으로 품지한다. 기일^{期日}이 정해진 뒤 하루 전에 군령을 여쭙다[복색과 관련해서는 이진^陣陣조를 볼 것].
1. 제조 · 대장 이하 장관 · 장교는 용복을 갖추고, 장용위는 군복을 입는다. 장용위는 추등에 별기^{別技}를 할 때, 선기대는 동등에 별기를 할 때 모두 갑주를 착용한다.
1. 대전배^{大前排}는 연생문^{延生門} 밖에서 대령하고, 기고^{旗鼓}는 명광문^{明光門} 밖에서 대령한다[춘등과 추등은 단영^{單營}의 예로써 때가 임하면 품지하거나 혹은 먼저 들어가 시위한다]. 난후^{欄後}는 아병^{牙兵} 전체가 거행하고 마보 군병은 청양문^{靑陽門} 안에서 주둔한다. 대장이 대전배를 거느리고 진두^{陣頭}에서 꿰어 앉아 맞이하고 종사관은 뒤를 따른다. 군병이 없는 장령 및 전함 장관은 대장 뒤에서 공손히 맞이하고,

179 시사(試射) : 활쏘기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사는 시취(試取)의 하나로, 문신 당하(文臣堂下), 무신 당상(武臣堂上堂下), 각영 장관(各營將官)에게 시험보이는 것인데, 성적에 따라 분수(分數)를 주고, 가자(加資) · 파직(罷職) · 사마(賜馬) 등의 상벌이 있다.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시취(試取)

180 상시사(賞試射) : 각 군문의 군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무예 시험을 치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성적이 부진한 자에게는 벌금(罰金)을 내리는 제도이다. 척계광(戚繼光)이 절강(浙江)의 군사를 매월 6회씩 조련시키고 월중(月中)에 무예를 겨루게 한 것을 취하여 '중순(中旬)'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81 사계삭(四季朔) : 네 계절의 마지막 달, 즉 음력 3 · 6 · 9 · 12월을 말한다.

제조·감관·별부료는 단壇 아래에서 공손히 맞이한다.

1. 시관試官은 제조·대장·종사관이 때가 되면 전함 당상·당하 장관 가운데서 낙점을 받아 시험에 참여하도록 한다.
1. 규정은 장관·장교·장용위 패두壯勇衛牌頭는 유엽전 1순巡, 한량閑良 및 궁시인弓矢人은 소포 1순으로 시취한다[무과 출신出身·궁시인은 유엽전으로 한다]. 장용위는 춘등에는 기추騎芻 1차례를, 추등에는 별기 1차례를 시취하고, 하등과 동등에는 유엽전 3순, 기추 1차례를 시취한다[등급을 매긴다]. 선기대는 하등에는 유엽전 1순, 기추 1차례를 시취하고[등급을 매긴다], 동등에는 마재 혹은 별기 중에서 자원하는 1기에 따라 시취하되 춘등과 추등은 때가 임하면 품지하여 거행한다. 각 초哨와 색色の 군병은 하등에는 기예 1차례, 동등에는 조총 3방放을 시취한다. 순뢰巡率는 여름과 겨울의 원등元等 외에 춘등에는 기예 1차례를 더 시험 보게 한다. 초군 가운데 기예에 능한 자는 매 달 20명씩 매 등등에 또한 1차례를 더 시험 보게 한다. 팔색군八色軍 가운데 활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포 대신 시험 볼 것을 허락해 준다. 십팔반十八般의 기예에 능한 자는 15명에 한하여 교관이 기일 전에 가려 뽑아서 춘등과 추등의 시사에 별도로 응시하게 한다.
1. 감획監劃·감적監的·집고執鼓·집쟁執鉦과 관련한 각 차비는 장용위·별무사·부료 무사가 거행하고, 내외에 호명하는 것은 훈련원에서 거행한다. 위장소의 서원 10명·군사 20명·야장冶匠 9명은 모두 군색軍色에서 감결을 보내어 대령하도록 한다.



1. 도제조 배기수都提調陪旗手는 각 색 군병의 예대로 하등과 동등 양 등에 응시를 허락한다.

1. 상격은 가자加資, 직부 전시直赴殿試, 승서陞叙, 변장邊將으로 제직除職, 호군護軍 · 사과司果 · 겸사복兼司僕의 제수, 마첩馬帖 등으로 별단으로 올려 제하 받는다. 승정원에 분부하여 각 해당 관서의 녹과祿稟를 응당 받아야 할 사람을 병조에 감결을 보낸다[녹미祿米는 본영에서 지급한다]. 통개筒箇와 궁전弓箭은 내궁방內弓房에 있는 것으로 품지하여 가져다 쓰고, 목포木布와 전죽箭竹은 향색餉色과 군기색軍器色에 있는 것으로 가져다 쓴다.

1.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의 철전鐵箭과 관련하여 100보를 채우지 못한 자는 소포를 하되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대비교大比較¹⁸²와 같다]. 만일 능히 120~130보를 쏘는 자가 있다면 상격을 품지하여 거행하도록 한다[한산 장용위閑散壯勇衛와 같다].

1. 대비교는 한 해 걸러 3월 또는 9월에 설행하되 대장이 품지하여 거행하고, 해당하는 등등의 상시사는 그대로 겸하여 행한다[입적인의 녹과는 그대로 둔다]. 군령의 거행 및 제조 · 대장 이하의 복색, 시관을 낙점 받는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사등 시사의 예대로 거행하며, 차비관 및 서원 · 야장 · 위군은 숫자를 넉넉하게 하여 대령하도록 한다.

182 대비교(大比較): 1739년(정조 17)부터 1799년(정조 23)까지 장용영 소속 향군에게 한 해 걸러 시행한 시사(試射)를 말한다.

1. 대비교 할 때의 규정은 장관·장교는 유엽전 1순, 기추 1차례, 별기 1차례[장관 10, 장교 20, 장용위는 좌우열에 각각 20, 자원한 자는 4기四技¹⁸³에 분배한다]이고, 마군은 유엽전 1순, 기추 1차례[배획倍晷¹⁸⁴한다], 편추鞭薊 1차례[3개를 적중하면 시행하지 않는다]를 시취하고 등급을 매긴다. 별기는 매 초哨에 30명, 월도月刀는 40, 쌍검雙劍·기창旗槍은 각 5, 교전交戰은 3쌍을 기준으로 한다. 마재馬才는 좌우초를 통틀어서 일정한 숫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보군은 조총 3방放, 기예 1차례, 권법拳法 1차례를 시취하고 등급을 매긴다. 별기는 매 초에 45명, 왜검倭劍은 10, 교전은 10쌍, 예도鉞刀·신검新劍·협도挾刀는 각 5[팔색군八色軍 및 각 소의 표하군標下軍·능기군能技軍은 5기五技를 시취하고, 매 색마다 3분의 1을 분배한다]이다. 장관·장교·마보군·별교예別較藝 및 아직 입격하지 않은 군병의 추가 시험은 특교特敎가 있으면 거행한다[별교예는 철전 150보 이상, 유엽전은 은관혁銀貫革, 조총은 은관혁, 입추立芻는 100보이고, 마기馬技 가운데서 월도·쌍검·교전·기창·곤방을, 보기步技 가운데서 월도·쌍검·교전 등 각 기예 중에서 품지하여 거안을 거둔다].

1. 대비교 할 때 향군은 각 지방에서 설행하되 유엽전 1순, 조총 3방,

183 4기(四技) : 조선시대, 무과(武科) 시험에서 행하던 열한 가지 기예 가운데서, 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蹴)의 네 가지 기예를 말한다.

184 배획(倍晷) : 획은 성적을 표시하는 단위이고, 배획이라는 것은 다른 강(講)의 획수의 배로 한다는 뜻이다.



기에 1차례를 시취한다. 시험을 감독하는 장관 1원[별장 이하 현직·전직 당상과 장관 가운데서 장망長望으로 낙점을 받고, 인신 1과顯·부마夫馬의 입파入把·연로沿路에서의 지공支供 등과 관련한 절차는 경시관京試官의 예대로 거행한다], 지구관 1원은 기일 전에 내려 보내어 지방관과 함께 거행하도록 한다. 향무사鄉武士는 유엽전 1순, 기추 1차례를 지방관 및 해당 읍에서 거행하도록 한다. 장교는 유엽전 1순을 시취한다[수원의 경우 외탕고外帑庫의 검색도 일체 시취한다]. 양근楊根과 가평加平 두 읍은 1초哨의 군이 두 읍에 나뉘어 있는데 양근에서 모두 설행하게 한다.

1. 대비교 할 때 상격[가자加資 이하는 사등 시사四等試射와 같고, 또 승두첩陞斗帖이 있다]은 계목啓目を 수정하여 승정원이 계하 받은 다음 각 해당 관서에 분부하며[향군의 상격 중에 궁전弓箭·목포木布는 본영에서 내려 보내고, 쌀은 해당 읍의 둔세屯稅 중에서 돈으로 바뀌어서 지급한다], 궁전·목포는 본영에서 지급하며, 승두첩은 본영에서 만들어 지급한다.

1. 부료 무사의 요시사料試射는 매 사계삭四季朔의 10일 마다 파총·초관 각 1원을 장망으로 차출하여 시험을 감독하게 하고 외영에서 설행하되, 해당 달의 1일에 대장이 품지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1. 요시사의 규정은 유엽전 5순에 3점[分], 육량六兩 3발에 130보 이상인 자 13인을 뽑는다[패두 소임牌頭所任의 자리 3<원래 요료를 주는 자리이다>, 향무사 자리 2 ○육량 자리 1 ○유엽전 자리 10 ○화살 수가 같으면 비교한다]. 만약 원 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품

지하여 다시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를 채우게 한다. 향무사는 해당 달의 1일에 경기 감영에 관문을 보내어 각 읍에 통지한 다음 시험에 응시하게 한다.

1. 하번下番하는 향군의 시사방試射放은 해당 번의 마지막 달 25일에 설행하되 대장이 기일 전에 품지한다. 참시參試는 당상·당하의 장관 각 1원을 낙점 받아 거행한다. 시험 범위는 군병을 영솔하는 장령은 유엽전·편전 1순, 기대총旗隊總[12명]은 유엽전 1순, 원군元軍[19명]은 조총 3방, 용검군用劍軍[30명]은 기예 1차례, 능마아군能麼兒軍[1명]은 강진講陣하고, 초哨의 표하군標下軍[6명]·화병火兵[9명]·복마군卜馬軍[9명]은 사방射放 중에서 자원하는 것을 시험 보는 것을 허락한다. 군병을 영솔하는 교사는 강진과 방포를 모두 시취한다. 상격은 규례대로 거행한다.
1. 서충대瑞慈臺¹⁸⁵에서 시사를 할 때 선기대善騎隊가 유엽전으로 시취를 하면 입격하지 못한 부류는 다시 기추 1차례를 해야 하는 명단에 포함시켜 거안을 거두고, 기추로 시취를 하면 입격하지 못한 부

185 서충대(瑞慈臺): 조선 시대에 임금이 무관의 활 쏘는 것을 점검하던 대(臺)인데, 지금의 창덕궁 춘당대 동편에 있었다고 한다. 성종때 후원(後苑)에 한 줄기에 아홉 가지나 되는 파(薔)가 났는데 이것을 서충(瑞慈)이라 불렀다. 여기에 돌을 쌓아 파를 재배하다가, 1505년(연산군 11)에 와서 전국적으로 인력을 징발하여 높이 1백여 척이나 되는 누대를 쌓고 음란한 연회를 여는 장소로 만들고 그 명칭을 서충대(瑞慈臺)라 하였다. 이 때문에 1507년(중종 2)에 철거하였다. 이후 1560년(명종 15) 무렵에 이르러 유생의 제술 시험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583년(선조 16)에 무신의 활쏘기 시험과 문신의 제술 시험을 이곳에서 실시하였다. 이후로 서충대는 주로 문무신의 시사(試士) 또는 열무(閱武) 행사를 하는 곳으로 성격이 굳어졌다.



류는 다시 유엽전 1순을 해야 하는 명단에 포함시켜 거안을 거둔 다음 시험을 보게 한다. 좌초左哨는 마재를 하고, 우초右哨는 별기를 하는데, 특교가 있는 뒤에야 거안을 거두도록 한다.

1. 장관 · 장교 · 마보 군병을 물론하고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하는 부류는 증광시增廣試 · 식년시式年試 · 전시殿試 전에 때에 임하여 품지하고 날짜가 정해진 뒤에는 써 내려준 규정대로 별도로 시취한다. 그리고 [정과 정시慶科庭試는 시험 범위가 가볍고 수월하므로 이 규례를 쓸 필요가 없다] 입격하게 되면 전시에 응시하도록 병조에 분부하여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고, 입격하지 못하면 현납現納한 초시 첩문初試帖文의 기록을 효주效周한 다음 병조에 보내어서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1. 모든 시사와 관련한 때에 시기試記 및 입격 별단은 모두 군색軍色에서 거행한다.

1. 별도로 설치한 군직은 녹을 받는 자리가 2자리이고, 장용위 사등 시사 때에 입격한 제2인에게는 호군護軍을 부여하고, 제3인에게는 사과司果를 부여한다.

1. 모든 대소 시사와 관련하여 시험을 마친 뒤에는 시기를 군색에서 점련粘連하여 답인踏印하고 계하 받은 뒤 지통紙筒에 보관한다. 만일 지체하게 되면 해당 감관 및 해당 서리는 각별히 엄중하게 처벌한다.

1. 한 해 걸러 대비교를 할 때 향군이 있는 읍에는 장관을 내려 보내어 지방관과 함께 시취하게 한다. 그런데 수원은 유수留守가 대신大臣은 아니지만 품계가 높고 중신重臣인 무장이며, 본영의 장관은 봉

명奉命한 사람으로 그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면 서로 방해되고 불편한 단서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수원부의 중군 판관과 함께 거행하도록 한다.

1. 부로 시사付料試射할 때 만일 철전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업전의 화살 수를 통계通計한 것으로 요를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인 遠射人을 각별히 구하고 제류除留¹⁸⁶한 요미로 철전의 원사인을 시상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1. 액외 장용위의 습사習射는 별장이 이미 주관하고 권과勸課하고 있는데, 철전 100보를 쏠 수 있는 자를 별장이 직접 시취한 뒤에 대장소에 보고하고, 보수步數를 군안軍案 및 시기에 기록하여 사등 시사를 할 때에 근거할 만한 바탕으로 삼는다. 그 가운데 만일 여러 해 동안 연습하였는데 끝내 성취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철전 대신 기추로 3중中 이상 입격한 자에 한하여 소포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186 제류(除留): 세미(稅米)를 조운(漕運)하는 비용으로 세미 중에서 제(除)하여 해당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試射

- 一. 四等賞試射, 每四季朔初一日, 大將以等試射當朔之意, 稟旨. 期日定下後, 前一日稟軍令[服色見肄陣條]爲白齊.
- 一. 提調·大將以下, 將官·將校具戎服, 壯勇衛軍服爲白乎矣, 壯勇衛之秋等別技時, 善騎隊之冬等別技時, 俱爲甲冑爲白齊.
- 一. 大前排, 待令于延生門外, 旗鼓, 待候於明光門外[春秋等, 以單營例, 臨時稟旨, 或先入侍衛]. 攔後, 以牙兵全數舉行, 馬步軍兵, 青陽門內札駐. 大將率大前排, 陣頭跪迎, 從事官隨後. 無軍將領及前啣將官, 在大將後祇迎, 提調·監官·別付料, 壇下祇迎爲白齊.
- 一. 試官則提調·大將·從事官, 及時前啣堂上·堂下將官受點, 叅試爲白齊.
- 一. 規矩則將官·將校·壯勇衛牌頭, 柳葉箭一巡, 閑良及弓矢人, 小布一巡試取[出身·弓矢人, 柳葉箭]. 壯勇衛段, 春等騎藝一次, 秋等別技一次試取, 夏冬等柳葉箭三巡, 騎藝一次試取[計劃]. 善騎隊段, 夏等柳葉箭一巡, 騎藝一次試取[計劃], 冬等馬才或別技, 從自願一技試取爲白乎矣, 春秋等臨時稟旨舉行. 各哨色軍兵段, 夏等技藝一次, 冬等鳥銃三放試取. 巡牢則夏冬元等外, 春等加試技藝一次. 哨軍能技者, 每哨二十名式, 每等亦爲加試一次. 八色軍中有願射者, 砲代許試. 十八般能技者, 限十五名, 教官前期擇, 春秋等試射, 別爲應試爲白齊.
- 一. 監劃·監的·執鼓·執鉦各差備, 以壯勇衛·別武士·付料武士舉

行，內外呼名，訓練院舉行。衛將所書員十名・軍士二十名・冶匠九名，竝自軍色捧甘待令爲白齊。

- 一. 都提調陪旗手段，依各色軍例，夏冬兩等，許令赴試爲白齊。
- 一. 賞格則加資・直赴・陞叙，除職邊將，除授護軍・司果・兼司僕，馬帖等，別單啓下。政院分付，各該司祿窠，以應受人，捧甘兵曹[祿米自本營上下]，筒箇・弓箭，以內弓房所在，稟旨取用，木布・箭竹，以餉色・軍器色所在，取用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鐵箭，未滿百步者小布，勿許赴試[大比較同]。如有能射一百二十步者，賞格稟旨舉行[閑散壯勇衛同]爲白齊。
- 一. 大比較間年設行，於三月，或九月爲白乎矣，大將稟旨舉行，當等賞試射，仍爲兼行[入格人祿窠仍等]。軍令舉行，及提調・大將以下服色，試官受點等節，一依四等試射例舉行為白乎旅，差備官及書員・冶匠・衛軍，優數待令爲白齊。
- 一. 大比較時規矩，則將官・將校，柳葉箭一巡，騎芻一次，別技一次[將官十，將校二十，壯勇衛左右列各二十，從自願以四技分排]，馬軍則柳葉箭一巡，騎芻一次[倍畫]，鞭芻一次[三中勿施]，試取計劃。別技每哨三十名，月刀十四，雙劍・旗槍各五，交戰三雙爲準。馬才通左右哨，勿拘定數。步軍則鳥銃三放，技藝一次，拳法一次，試取計劃。別技每哨四十五名，倭劍十，交戰十雙，銳刀・新劍・挾刀各五[八色軍及各所標下・能技軍，以五技試取，每色三分一分排]。將官・將校・馬步軍・別較藝，及未入格軍追試，有特教舉行[別較藝，則鐵箭一百五十步以上，柳葉箭銀貫



皮{革}¹⁸⁷ · 鳥銃銀貫皮{革} · 立芻一百步, 馬技中, 月刀 · 雙劍 · 交戰 · 旗槍 · 棍棒, 步技中, 月刀 · 雙劍 · 交戰等, 各技中稟旨捧舉案]爲白齊.

- 一. 大比較時鄉軍, 則各其地方設行, 而柳葉箭一巡, 鳥銃三放, 技藝一次試取爲白乎矣, 監試將官一員[別將以下, 時 · 前御堂上 · 將官中, 長望受點, 印信一顆 · 夫馬入把 · 沿路支供等節, 依京試官例舉行], 知穀官一員, 前期下送, 與地方官眼同舉行. 鄉武士, 則柳葉箭一巡, 騎芻一次, 地方官及該邑舉行. 將校, 柳葉箭一巡試取[水原則外帑庫監色, 一體試取]. 楊根 · 加平兩邑段, 一哨之軍, 分在兩邑, 合設於楊根爲白齊.
- 一. 大比較時賞格, 則[加資以下, 與四等試射同, 又有陞斗帖]修正啓目, 啓下政院, 自政院分付各該司爲白乎旆[鄉軍賞格, 弓箭 · 木布, 本營下送, 米則以該邑屯稅中, 代錢上下], 弓箭 · 木布, 自本營上下, 陞斗帖, 亦自本營成給爲白齊.
- 一. 付料武士料試射, 每四季朔初十日, 把摠 · 哨官各一員, 長望差出監試, 設行於外營, 而當朔初一日, 大將稟旨舉行爲白齊.
- 一. 料試射規矩段, 以柳葉箭五巡三分, 六兩三矢一百三十步以上, 取十三人[牌頭所任窠三<元料窠>, 鄉武士窠二 ○六兩窠一 ○柳葉箭窠十 ○矢數同則比較]. 而若未滿原數, 則稟旨更試, 使之充數爲白乎旆, 鄉武

187 문맥을 살펴 '銀貫皮'는 '銀貫革'의 오키로 판단하여 교감하였다. (『일성록(日省錄)』 정조 21년 8월 27일 기사 참조)

士，則當朔初一日，發關畿營，知委各邑，使之赴試爲白齊。

一、下番鄉軍試射放，設行於當番終朔二十五日爲白乎矣，大將前期稟旨，叅試段，堂上·堂下·將官各一員，受點舉行。而規矩，則領軍將領，柳葉箭·片箭一巡，旗隊摠[十二名]柳葉箭一巡，元軍[九十名]鳥銃三放，用劍軍[三十名]技藝一次，能麼兒軍[一名]講陣，哨標下軍[六名]·火兵[九名]·卜馬軍[九名]射放中，從自願許試。領軍教師段，講陣·砲放，一體試取。賞格依例舉行爲白齊。

一、瑞蔥臺時，善騎隊，以柳葉箭試取，則未入格之類，更捧騎莧一次舉案，以騎莧試取，則未入格之類，更捧柳葉箭一巡舉案，以試爲白乎矣，左哨之馬才，右哨之別技，有特教，然後捧舉案爲白齊。

一、毋論將官·將校·馬步軍兵，直赴會試之類，增·式·殿試前，臨時稟旨，定日子後，依書下規矩，別爲試取。而[慶科庭試，則規矩輕歇，不必用此例]入格則付殿試，分付兵曹捧承傳，不入格，則初試帖文現納爰周，送于兵曹，以爲相考舉行之地爲白齊。

一、凡試射時，試記及入格別單，竝自軍色舉行爲白齊。

一、別設軍職祿二窠，壯勇衛四等試射時，入格第二人付護軍，第三人付司果爲白齊。

一、凡大小試射，畢試後，試記自軍色粘連，踏印啓下，紙筒上爲白乎矣，如或遲滯，則當該監官及該吏，各別重勘爲白齊。

一、間年大比較時，鄉軍所在邑，下送將官，與地方官眼同試取。而水原則留守非大臣，卽崇品重臣武將，本營將官，以奉命之人，與之同坐，自多相妨難便之端。與本府中軍判官舉行爲白齊。



- 一. 付料試射時，如無鐵箭應試人，則勿以柳葉箭矢數通計付料。遠射人，各別求得，而除留料米，以爲鐵箭遠射人施賞之資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之習射，別將旣已主管勸課，鐵箭之能射百步者，別將親自試取後，報于大將所，懸錄步數於軍案及試記，以爲四等試射時，憑考之地爲白乎矣，其中如有屢年肄習，終未成就者，鐵箭代騎筭，限三中以上入格，許赴小布爲白齊。

2b. 중일(中日)¹⁸⁸

중일

- 3일마다 입직하는 장관·장교 및 마보 군병은 중일 시사¹⁸⁹를
설행할 때, 별장^{別將}이 시험을 주관하고, 외영에 입직하는 파총^{把總}
은 시험을 참관한다. 별도로 입직하는 초관, 직방에 입직하는 초관
은 또한 돌아가면서 시험에 참관한다.
- 규정은, 초관·지구관·통장·교련관은 유엽전^{柳葉箭}¹⁹⁰ 1순^巡으로
한다. 장용위 선기대는 기추^{騎蓊}¹⁹¹ 1차례, 별기^{別技} 1차례로 한다
[장용위는 2차례를 하는 동안 별기 대신 단총으로 1차례를 하고,
선기대 좌초는 2차례를 하는 동안 별기 대신 마재로 1차례를 한
다]. 궐내에 입번한 각색군은 기예^{技藝} 1차례, 별입직 및 직방 초군
은 조총 3방^方으로 시취하며, 외영 초군은 기예 1차례로 입직한 당
상 장관이 시취한다. 북창의 입직군은 기예 1차례로 입직 초관이

188 중일(中日) : 매월 자(子)·오(午)·묘(卯)·유(酉)일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여러 군사들의 습사(習射), 습포(習砲) 등의 기예를 이 때 시험한다.

189 시사(試射) : 관리나 군사를 대상으로 활이나 총 쏘는 것을 시험하던 일을 말한다.

190 유엽전(柳葉箭) : 조선시대에 무과와 교습 등에 사용했던 화살로 화살촉이 버드나무 잎(柳葉)처럼 생겼다.

191 기추(騎蓊) :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으로 무과 및 군사를 시험하는 주요 종목 중 하나였다.

192 영제(榮祭) : 오랜 장마로 수해(水害)가 심할 때에 날이 개기를 빌던 제사이다. 기청제(祈晴祭)라고도 한다.

193 탈품(頤稟) : 사고나 뜻밖의 사정(頃)으로 인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상사에게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여쭙는 일이다.



시취한 후, 시기試記는 대장소에서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다.

1. 장관 · 장교 · 군병 중에서 기예를 다 갖춘 자와 기예가 월등한 자는 정식으로 시상한다[시상조를 볼 것].
1. 중일을 설행하는 때가 비록 영제崇祭¹⁹²와 겹치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설행한다.
1. 중일의 설행과 탈품頓擧¹⁹³은 모두 문서로 거행한다.

中日

- 一. 每三日, 入直將官 · 將校及馬步軍兵, 中日試射設行時, 別將主試, 外營入直把摠參試. 別入直哨官, 直房入直哨官, 亦爲輪回參試爲白齊.
- 一. 規矩段, 哨官 · 知穀官 · 統長 · 敎鍊官, 柳葉箭一巡. 壯勇衛善騎隊, 騎筭一次, 別技一次.[壯勇衛間二次, 別技代短銃一次, 善騎隊左哨間二次, 別技代馬才一次] 內入番各色軍, 技藝一次, 別入直及直房哨軍, 鳥銃三放試取爲白乎旆, 外營哨軍, 技藝一次, 入直堂上將官試取. 北倉入直軍, 技藝一次, 入直哨官試取後, 試記自大將所粘啓爲白齊.
- 一. 將官 · 將校 · 軍兵之沒技者, 技藝超等者, 依定式施賞[見施賞條]爲白齊.
- 一. 凡中日時, 雖祭相值, 勿拘設行爲白齊.
- 一. 中日設行與頓擧, 皆以文蹟舉行爲白齊.

27. 사습(私習)¹⁹⁴

사습

1. 선기대善騎隊¹⁹⁵는 매월 3차례에 걸쳐 1차례는 기旗가 돌아가며 실습하고, 1차례는 해당 장령이 3기를 모아 실습하고, 1차례는 별장이 3초哨를 모아 조련한다.[27일에 한다]
1. 보군 각 초는 매월 3차례에 걸쳐 2차례는 각 초관이 통솔하여 실습하고, 1차례는 파총把總이 5초를 규합하여 조련한다.[25일에 한다]
1. 8색군 및 각 소의 표하군標下軍¹⁹⁶은 매월 3차례 날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각자 그 기예를 익힌다.
1. 한겨울의 3개월[동짓달 · 선달 · 정월]과 한여름의 2개월[6 · 7월]은 마보군의 사습私習을 모두 규례대로 정지한다.
1. 상번하는 향군은 3일중에 첫날과 둘째 날마다 시방試放¹⁹⁷하고 연미정燕尾亭에 진을 펼치는데 해당 초관이 영솔하여 거행한다.
1. 아병牙兵¹⁹⁸은 매달 한 차례 성 밖에서 조총으로 시방하되, 사습을

194 사습(私習): 시험이나 평가가 아닌 평소의 활쓰기 및 무예 연습을 말한다.

195 선기대(善騎隊): 장용영의 기병으로 말을 잘 타고 특별한 기예를 가진 자로 선발했다. 국왕 행차 시 전 · 후방에서 여가를 호위하고, 왕이 머무는 사방에서 왕을 시위했다. 장용영 내영의 선기대는 1787년(정조 11) 27명이었으며, 1793년에는 3초(哨) 345명의 조직을 갖추었다.

196 표하군(標下軍): 대장(大將)이나 각 장관(將官)의 수하에 있는 군병이다.

197 시방(試放): 총이나 대포를 사격하여 시험해 보고, 아울러 사격기술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198 아병(牙兵): 대장을 뒤따르며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이다. 이(牙)는 대장기(大將旗)를 의미한다.



정지할 때는 모두 정지한다.

1. 마보군이 합동으로 조련할 때, 해당 장령은 그 하루 전에 품지하고 거행하여 조련을 집행하게 한다. 교련관 1원은 장망¹⁹⁹으로 차출하여 조련을 감독하게 한다. 지구관 2원은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여쭙어 정해 보낸다. 별무사는 본소 밖에 매 1사^司씩 돌아가며 참진^{參陳}하게 하되 대장소는 논하지 않는다. 복색은 별장·파총은 평철릭^{平天翼}·패검^{佩劍}을 착용하고, 장관·장교는 모두 군복에 패검만 착용한다.

1. 선기대의 좌초는 마재, 우초는 별기를 전적으로 연습시키는데, 우초의 마재와 좌초의 별기도 흔히 있으니, 6·12월에 등급을 매길 때 좌우초에서 마재·별기의 수석 각 1인을 뽑아 시상하고, 유엽전^{柳葉箭}·기추^{騎蓐}도 일체 실습하여 또한 시상한다.

1. 마보군의 기예는 사계삭^{四季朔}²⁰⁰마다 각 해당 장령이 각별히 시험한 뒤에 더욱 훈련시켜야 할 기예의 수를 기록한 다음 안책^{案冊}을 수정^{修正}해서 보고한다.

1. 보군 3초는 매 초마다 교사^{教師} 1명, 신련군^{新鍊軍} 5명을 가려 정하여 번番을 면제해준다. 날마다 실습하고, 한겨울과 한여름 4개월은 매월 10차례 실습한다. 나머지 8개월은 날마다 연습하며, 교졸

199 장망(長望) : 관리를 추천할 때 후보자 여러 사람을 써서 올리는 것이다. 보통 3명을 올리는 삼망(三望)이 일반적이었다.

200 사계삭(四季朔) : 네 계절의 마지막 달, 즉 음력 3·6·9·12월을 말한다.

[교관 3인, 교사 3명, 신련군 15명이다]의 점심^{點心}米는 향색^{餽色}에서 식례^{式例}대로 지급해 준다.

1. 사등 시사^{四等試射} 전 중삭^{仲朔}²⁰¹에 능기군^{能技軍}과 18기군^{十八技軍}²⁰²을 막론하고 합쳐서 각 기예를 시험한다. 능기군 중 포기하여 기세가 둔한 자는 18기군에 강등하여 붙이고, 18기군 중 능숙하여 가장 나은 자는 능기군으로 올린다. 그 나머지 조금 우수한 자는 번의 차수를 감해 준다. 연습이 완전하지 않아 몸이 둔하고 숨씨가 서툰 자는 각별히 징계하여 다스림으로써 상별하는 근간으로 삼는다.

私習

- 一. 善騎隊, 每朔三次內, 一次輪旗肄習, 一次該將領合三旗肄習, 一次別將合三哨操練[二十七日]爲白齊.
- 一. 步軍各哨, 每朔三次內, 二次哨官各自率領肄習, 一次把總合五哨操練[二十五日]爲白齊.
- 一. 八色軍及各所標下軍, 每朔三次排日, 各習其藝爲白齊.

201 중삭(仲朔): 음력 2·5·8·11월이다.

202 18기군(十八技軍): 18기를 수련한 장용영의 보병이다. 18기는 장창(長槍), 당파(鎗鈹), 낭선(狼筈), 쌍수도(雙手刀), 등패(藤牌), 곤방(棍棒), 죽장창(竹長槍), 기창(旗槍), 예도(銳刀), 왜검(倭劍), 교전(交戰), 권법(拳法), 편곤(鞭棍), 월도(月刀), 협도(挾刀), 쌍검(雙劍),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으로 구성되어 있다.



- 一. 隆冬三朔[至·臘·正月], 盛暑兩朔[六·七月], 馬步軍私習, 竝依例停止爲白齊.
- 一. 上番鄉軍, 每三日初中日試放, 布陣設行於燕尾亭, 而該哨官領率舉行爲白齊.
- 一. 牙兵則每朔一次, 以鳥銃試放於城外爲白乎矣, 私習停止時, 一體停止爲白齊.
- 一. 馬步軍合操時, 該將領前期一日, 稟旨舉行執操. 教鍊官一員, 長望差出監操. 知穀官二員, 微稟定送. 別武士段, 本所外, 每一司式, 輪回參陣爲白乎矣, 大將所則勿論. 服色則別將·把總, 平天翼·佩劍, 將官·將校, 竝以軍服, 只佩劍爲白齊.
- 一. 善騎隊, 左哨馬才, 右哨別技, 使之全習, 而右哨之馬才, 左哨之別技, 間多有之, 六·臘月計劃時, 左右哨馬才·別技, 居首各一人, 抄出施賞, 柳葉箭·騎葛一體肄習, 亦爲施賞爲白齊.
- 一. 馬步軍技藝, 每於四季朔, 各該將領, 各別考試後, 加鍊技數列錄, 報來修正案冊爲白齊.
- 一. 步軍三哨, 每哨教師一名, 新鍊軍五名, 抄定除番, 逐日肄習, 祈寒盛暑四朔段, 每朔十次爲之. 其餘八朔, 課日鍊習爲白乎矣, 校卒[教官三人, 教師三名, 新鍊軍十五名], 點心米段, 自餉色, 依式例上下爲白齊.
- 一. 四等試射前仲朔, 毋論能技·十八技軍, 合試各技. 能技軍中, 拋棄勢鈍者, 降付十八技軍, 十八技軍中, 慣熟最勝者, 陞付能技軍. 其餘稍優者, 減給其番次. 全不肄習, 身鈍手生者, 各別懲治, 以爲賞罰之地爲白齊.

28. 취재(取才)

취재

1.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의 취재 규정은, 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소포(小布)·기추(騎蓐)·무경칠서(武經七書)²⁰³[자원하는 1서(書)를 따른다] 다섯 기예 중에서 품지하여 거행한다.
1. 지구관의 취재 자리는 본영과 다른 영을 막론하고 반드시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해당 청廳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병학지남(兵學指南)』 8편 가운데서 배강(背講)²⁰⁴으로 시취하고 우수한 사람을 차정한 다[교련관도 같다].
1. 지구관의 한산 자리는 반드시 문벌과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되 만일 적합한 자가 없으면 중복해서 추천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교련관도 같다].
1. 장용위의 향오 자리 취재 규정은, 목전(木箭) 3시(矢) 240보(步) 대신 소포(小布) 1순(巡)으로, 주(走)는 1주(走) 대신 기추(騎蓐) 1차레로, 역(力)은 1력(力) 대신 청룡도(淸龍刀)·유엽전(柳葉箭) 1순으로[1중(中) 이상이다], 『병학지남』의 강진(講陳)은 조(粗) 이상인데, 다섯 기예 중 세 가지 기예를 취하여 차정한다.
1. 장용위의 한산 취재 규정은, 철전(鐵箭) 3시(矢) 100보[간혹 청룡도로 대신한다] 목전(木箭) 3시 240보 대신 소포(小布) 1순으로, 유엽전(柳葉箭) 1순, 기추(騎蓐) 1차레, 무

203 무경칠서(武經七書) : 중국의 병법(兵法)에 관한 일곱 가지 책이다. 곧 『육도(六韜)』·『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위료자(尉繚子)』·『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의 총칭이다.

204 배강(背講) : 시험 방법의 하나로 책을 보지 않고 외우는 구술시험이다. 배송(背誦)이라고도 한다.



경찰서 가운데 원하는 1서, 다섯 기예 중 세 가지 기예를 취하여 차정한다[비록 세 가지 기예가 기준에 맞더라도 강講에서 입격하지 못하면 세 가지 기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자리는 적은데 사람이 많으면 납마納馬에 따라 차례를 정하는데, 만일 먼저 납마한 자가 있으면 품지하여 응시를 허락한다]. 해당 관청은 추천을 받을 때 반드시 문벌이 있고 체격이 좋으며 기예가 적합한 자로 하며, 세 사람의 보증인을 갖추 단자를 올리고 대장의 서경暑經²⁰⁵ 후에 응시한다.

1. 장용위의 취재 자리 규정은, 철전 3시 110보, 유엽전 1순巡 1중中, 편전 1순 1중, 기추 1차례 1중, 『병학지남』의 강진은 조 이상, 다섯 가지 기예 중 세 가지 기예를 취하여 차정한다[비록 세 가지 기예가 기준에 맞더라도 강에서 입격하지 못하면, 세 가지 기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청에서 추천을 받을 때, 금군 각 번 중에 만일 나이가 어리고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세 사람의 보증인을 갖추 단자를 올리고[각 기예는 단자에 열거하여 기록한다], 대장의 서경 후에 응시하는데, 한산 자리를 취재하는 예대로 시행한다.

1. 별무사의 취재 규정은, 유엽전 · 편전 각 1순, 기추 1차례, 『병학지남』 강진으로 시취하는데[육량전六兩箭²⁰⁶을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허락한다] 우수한 자를 취하여 차정한다. 1차례는 무예를

205 서경(暑經) : 원래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령을 제정할 때 대간의 서명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중간 관리자의 확인과 보증을 의미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

206 육량전(六兩箭) : 무게가 6냥인 쇠로 만든 화살로 육량철전(六兩鐵箭), 육량시(六兩矢)라고도 한다.

위주로 하고, 2차례는 강을 위주로 한다[무예 위주는 강진만 시험하고, 강을 위주로 하는 것은 8편 가운데서 시취한다].

1. 향무사^{향武士} 중 병서에 능통한 자는 별무사의 취재 자리를 취재할 때 또한 응시를 허락한다.
1. 선기대를 취재할 때, 마재는 상하^{上下} 이상인 사람의 납마^{納馬}로 정원을 채우고, 별기는 유엽전 1순 2중, 기추 1차례 1중, 별기 1차례 [자원하는 한 가지 기예를 따른다] 상하 이상, 편추 6중, 네 가지 기예 중에서 두 가지 기예를 취하여 납마로 정원을 채운다. 본영의 군병 가운데 요^料가 있는 자는 원하는 대로 응시를 허락하고[순뢰^{巡牢}²⁰⁷는 응시할 수 없다], 유엽전 1순 2중, 기추 1차례 1중, 교전^{交戰} · 월도 · 쌍검 · 기창 상하 이상, 여섯 가지 기예 중에서 세 가지 기예를 취한다[비록 세 가지 기예가 기준에 맞더라도 교전에 입격하지 못하면, 세 가지 기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1. 각소 각초의 서자지^{書字的}²⁰⁸의 취재는, 해당 장령 가운데 병서에 능하고 문필이 있는 사람을 시취하고[초의 서자지는 파총 · 초관이 함께 시취한다], 실차와 예차를 갖추어 대장소에 전보^{轉報}하면, 대장은 계목에 점련한다[패두^{牌頭}는 합당한 자를 가려 택하는데, 해당 소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여쭙 다음 차정한다].

207 순뢰(巡牢) : 순령수(巡令手)와 군뢰(軍牢)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순령수는 대장의 호위와 전령을 담당하며 순시기(巡視旗) · 영기(令旗)를 받들었고, 군뢰는 군영 안에서 죄인을 구금하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했다.

208 서자지(書字的) : 하급 군졸로 군안(軍案), 통안(統案), 마안(馬案) 등 문서기록을 담당하였다.



1. 8색^{八色}의 서패^{書牌}는, 해당 차지·지구관이 문필로 시취하는데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여쭙 다음 차정한다.
1. 향무사가 있는 각 읍에 병서를 내려 보내어 그로 하여금 권장하고 실습하도록 하며 다 읽게 한 뒤 본영에 보고하고 교련관 자리를 취재하여 차정한다.
1. 사후군^{伺候軍}²⁰⁹을 원군^{元軍}으로 승급하는 망단자^{望單子}를 보고할 때 해당 차지의 성명을 이름 위에 기록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1. 액외 장용위 및 한산 장용위를 보사^{報仕}²¹⁰할 때 별도의 취재는 매년 5월·11월 혹은 6월·12월 2차로 나누어 설행한다. 시관^{試官}은, 대장이 시험을 주관하고 참시관 2원, 종사관 및 당상·당하 장관을 열서^{列書}하여 낙점 받아 3원^員을 갖추어 시취한 뒤 한산 입격자는 구근^{久勤}의 차례에 따라 수보^{修報}한다. 액외로 입격하고 6개월의 근무 일수를 채운 자는 모두 성책하여 병조로 이송한다.
1. 액외 장용위에 새로 임명된 자 중에서 만일 이미 초사^{初仕}를 경험한 자, 이미 장귀 취재^{將鬼取才}를 경험한 자가 있으면 다시 별도로 취재하지 않는다. 4등 시사를 할 때, 철전을 120~130보 이상 쏠 수 있는 자는 상격^{賞格}을 품지하고, 만약 직^職을 제수 받는 승전^{承傳}을 입었으면 또한 별도의 취재에 응시하지 말도록 한다[한산 장용위도 같다].

209 사후군(伺候軍) : 적의 동정을 살피고 경계를 담당하거나 장수의 시종 역할을 맡던 군사이다.

210 보사(報仕) : 근무성적을 이조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取才

- 一. 額外壯勇衛取才規矩段，鐵箭·柳葉箭·小布·騎葛·武經七書[從自願一書]五技中，稟旨舉行爲白齊。
- 一. 知穀官取才窠，則無論本營與他營，必以可合人。自該廳各薦一人，兵學指南八編，背講試取，以優等人差定[教鍊官同]爲白齊。
- 一. 知穀官閑散窠，則必以有地閥履歷人，受薦爲白乎矣，如無可合者，勿拘疊薦[教鍊官同]爲白齊。
- 一. 壯勇衛行伍窠取才規矩，則木箭三矢二百四十步代小布一巡，走一走代騎葛一次，力一力代青龍刀·柳葉箭一巡[一中以上]，『兵學指南』講陣粗以上，五技取三技，差定爲白齊。
- 一. 壯勇衛閑散窠取才規矩，則鐵箭三矢一百步[或代青龍刀]，木箭三矢二百四十步代小布一巡，柳葉箭一巡，騎葛一次，武經七書中自願一書，五技取三技，差定[雖準三技，講未入格，則勿以三技許施。○若窠少人多，則從納馬次第，如有先納馬者，稟旨許赴]爲白乎矣。該廳受薦時，必以有地閥身手才藝可合者，具三保捧單，署經大將後，應試爲白齊。
- 一. 壯勇衛取才窠規矩，則鐵箭三矢一百十步，柳葉箭一巡一中，片箭一巡一中，騎葛一次一中，『兵學指南』講陣粗以上，五技取三技，差定[雖準三技，鐵箭未入格，則勿以三技許施]爲白乎矣。自該廳受薦時，禁軍各番中，如有年淺自願者，具三保捧單[各技列錄於單子]，署經大將後應試，依閑散窠取才例施行爲白齊。



- 一. 別武士取才規矩, 則柳葉箭·片箭各一巡, 騎莧一次, 『兵學指南』講陣試取[有自願六兩者, 亦爲許施], 取優等差定爲白乎矣. 一次以武藝爲主, 二次以講爲主[武藝爲主, 則只試講陣, 以講爲主, 則八編試取]爲白齊.
- 一. 鄉武士能通兵書者, 別武士取才窠取才時, 亦爲許赴爲白齊.
- 一. 善騎隊取才時, 馬才則以上下以上人納馬填充, 別技則柳葉箭一巡二中, 騎莧一次一中, 別技一次[從自願一技]上下以上, 鞭莧六中, 四技取二技, 納馬填充爲白乎矣. 本營軍有料者, 從願許試[巡牢不爲許赴], 柳葉箭一巡二中, 騎莧一次一中, 交戰·月刀·雙劍·旗槍上下以上, 六技取三技[雖準三技, 交戰未入格, 則勿以三技許施]爲白齊.
- 一. 各所各哨書字的取才, 則該將領, 以能兵書有文筆人試取[哨書字的, 則把摠·哨官眼同試取], 備實預差, 轉報大將所, 則大將粘啓[牌頭則以可合者抄擇, 自該所微稟差定]爲白齊.
- 一. 八色書牌, 則該次知·知穀官, 以文筆試取, 微稟差定爲白齊.
- 一. 鄉武士, 所在各邑, 下送兵書, 使之勸獎肄習沒卷後, 卽報本營, 敎鍊官窠取才差定爲白齊.
- 一. 伺候軍陞元軍望報時, 該次知姓名, 載錄於名上, 以爲憑考之地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及閑散壯勇衛報仕時, 別取才, 每年五·至或六·臘月, 分兩次設行. 而試官則大將主試, 參試官二員, 從事官及堂上·堂下將官中, 列書受點, 備三員試取後, 閑散之入格者, 從久勤次第修

報. 額外之入格, 而滿六朔仕者, 一體修成冊, 移送兵曹爲白齊.

- 一. 額外壯勇衛新差中, 如有已經初仕者, 已越將鬼取才者, 更勿別取才. 四等試射時, 能射鐵箭一百二十步以上者, 賞格稟旨, 若蒙除職承傳, 則亦勿赴試於別取才[閑散壯勇衛司]爲白齊.



29. 마정(馬政)²¹¹

마정

1. 초관 · 지구관 · 교련관 · 장용위 별무사 · 선기대의 납마는 반드시 수컷의 달마(獋馬)²¹²로 하고[개마(改馬)도 같다. ○토산마 가운데 몸이 크고 건실한 것은 또한 봉납을 허락한다. ○초관 · 지구관 · 교련관은 비록 낭마(閼馬)라도 일체 봉납을 허락한다] 대장이 간품하여 가려 거두되, 장용위의 말은 중일(中日)마다 시험을 감독하는 장관이 시험 삼아 달려보고 시간을 측정해 이에 준(準)한 후에 전보(轉報)한다. 선기대의 말은 해당 장(將)과 별장이 먼저 간품하고 시험 삼아 달린 다음 일체 전보하면, 대장은 그대로 낙인을 청한다[공무로 인해 쫓아 나아갈 때 거행한다].
1. 장관 · 장교 · 군병을 막론하고 새로 차임된 뒤에 납마 일자를 3차에 걸쳐 정해 주는데, 1차에 봉납하지 않으면 납마 후 벌번(罰番)으로 2, 3일을 주고, 2차에 봉납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3차에 봉납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요(料)를 제한한 다음 정해진 기한을 헤아려 납부를 독촉하는데 또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엄히 곤장으로 다스리고 태거(汰去)시킨다.
1. 장관 · 장교의 납마[개마도 같다]는 1차 한도 20일[장교는 30일이

211 마정(馬政) : 말의 사양(飼養), 품종 개량, 번식(蕃殖), 수출입 등에 관한 국가의 행정을 통칭하여 마정이라고 한다.

212 달마(獋馬) : 두만강 건너 청(淸)에서 온 말로 조선에서 주로 어승마(御乘馬), 전마(戰馬), 역마(驛馬) 등으로 쓰였다. 청마(淸馬), 호마(胡馬)라고도 한다.

다] 2차 한도는 10일, 3차 한도는 7일로 정한다.

1. 선기대 납마[개마도 같다]는 1차 한도 40일, 2차 한도는 10일, 3차 한도는 7일로 정하고, 각 초와 색의 복마군의 납마 또한 이 예와 같게 한다.
1. 장교 및 선기대 말 값은 100냥 내외로 정하되, 이것을 정식으로 삼은 뒤 만약 혹 넉넉한 수로 더 주거나, 속여서 와서 납부하면, 범한 자는 엄히 곤장을 쳐 태거하고, 해당 장령 및 패두牌頭는 특별히 더욱 징계하여 다스린다.
1. 군마를 시험 삼아 달려보고 택하여 거두는 것은 오로지 그 달리는 능력만을 취할 뿐이니, 비록 혹 말이 건실하여 달려서 돌진하기 적합할지라도 속칭 ‘보재지마步才之馬²¹³’는 일체 받지 말고, 시험 삼아 달릴 때에 길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만 앞으로 말을 길들이고 제어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 참작하여 봉납을 허락한다.
1. 각종 시사試射 및 취재할 때 다른 말로 바뀌 탈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규식이 있는데 말에 탈이 있으면 미리 시기試記에 주註를 달아서 증거 삼을 수 있도록 한다.
1. 미처 납마를 하기 전에 아예 숫자가 빠지게 되면 일이 소홀하게 되니 비록 말을 빌려 우선 세울지라도 트집 잡아 죄를 논하는 데 이

213 보재지마(步才之馬): 앞만 보고 달리지만 잘 하는 말로, 여기서는 말 위에 올라탄 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말을 말한다.

214 마점(馬點): 말의 수효와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을 말한다.



르지 말도록 한다.

1. 봄과 가을의 마점^{馬點}²¹⁴은 대장이 주관하여 설행하고, 말이 하나같이 살찌고 잘 달리게 한 자는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고[상격은 시상조를 볼 것], 짐 진 흔적이 있거나 수척하게 한 자는 벌번 혹은 곤장을 치되, 모두 품지하여 거행한다. 정일^{定日}에 사육한 뒤에 가져와서 간심한 다음 만일 살지고 윤기가 나지 않으면 특별하게 죄를 논한다.
1. 선기대의 관마^{官馬}는 초^哨마다 30필을 넘지 말고 8년을 한도로 하는데, 한도 내에 치폐^{致弊}된 것은 물어내게 하여 다시 세우되, 공무로 인해 치폐^{致弊}되거나[그 노정을 계산하여 50리 이내면 첨가^{添價}하지 않는다], 진상^{陣上} 또는 번소에서 치폐된 것, 한도가 차서 치폐된 것은 모두 첨가로 전^錢 50냥을 주어 그로 하여금 다시 세우게 한 다음 그대로 관마로 만든다.
1. 사마^{私馬}가 공무로 인해 치폐되는 것 및 재차 치폐되는 경우 첨가로 전 50냥을 주어 그로 하여금 다시 세우도록 하고[관마를 다시 세우는 예대로 시행한다], 한도는 4년으로 하되 한도 내에 혹 천전하거나 태거되면, 본영에 말을 도로 납부하게 하고 한도 후에 그대로 사마로 만든다.
1. 선기대의 관마가 병이 있어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첨가로 전 40냥을 주어 그로 하여금 다시 세우도록 하고, 1차로 값을 받은 후 만일 공무가 아닌 일로 치폐되면, 다시 첨가를 지급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책임지고 세우게 한 다음 그대로 관마로 시행한다. 첨

가를 받은 후 만약 재차 다시 세우면 사마로 시행하되, 이미 사마로 시행했으면 마안馬案에서 제외시켜주거나 혹은 천전할 때에 전해 주지 않는다. 병든 말을 도로 납부할 때에는 사복시司僕寺에 환납하는 예대로 하고, 외영外營의 대문을 한도로 삼는다.

1. 관마가 만약 수척하고 체구가 작아 내다팔고 스스로 첨가를 마련해 다시 세운 자는, 60개월을 한도로 하는데 한도 안에 만일 천전하거나 혹 태거되는 자가 있으면, 스스로 마련한 첨가 외 내다판 본전을 도로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 및 한도 후에는 거론하지 않는다.
1. 군마 · 복마를 막론하고 새롭게 납부한 후에는 말 주인에게 말 값을 지급하는 날을 정하여 각 해당 장령 및 차지를 별도로 기록하여 두고, 정한 날이 되면 말 주인을 불러 제값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일 제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여 처벌한 후 다시 날을 정하여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한다.
1. 군마가 치폐된 경우, 먼저 해당 장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대장소에 보고하면, 대장은 장교로 하여금 즉시 적간摘奸하고 털의 색을 상세히 기록하게 한 다음 마안馬案에 준하는지 서로 비교한 후 다시 세우게 하는데, 관마의 경우에는 피장皮張을 직접 가지고 와서 납부하게 한다.
1. 선기대에서 사마私馬가 치폐된 자 가운데 혹 재능이 출중하나 가난하여 말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자가 있으면, 2차의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비록 1차라도 대장이 특별히 조사한 뒤 품지하여 관마를 준다. 마재馬才로 초哨의 납마군을 취재할 때 수석과 최고 등급에 있



는 자는 모두 관마를 주어서 격려하는 바탕으로 삼는다.

1. 별무사의 사마는 각기 첨가로 전 20냥을 주되, 천전하거나 혹 태거되면 본전은 차례대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서 입마立馬의 재원으로 삼는다[만약 가계가 조금 넉넉하여 사마를 바치길 원하는 자에게는 본전을 도로 납부하게 한다].
1. 각 초와 색의 복마는, 월말마다 각 해당 장령 및 차지가 하나하나 검사한 뒤 탈의 유무를 대장소에 보고한 다음 점련하여 아뢴다.
1. 장용위가 가지고 있는 사마는, 새로 봉납한 것과 다시 세운 것을 막론하고 대장이 간품하고 한도를 정하여[한도는 마땅함을 헤아려 정해 준다] 외양간에서 길들이게 하여 살찌고 달리는 것에 기한을 두는데, 만일 기한 후에 수척한 폐단이 있으면 담당자는 곤장을 친 다음 태거하고, 패두는 곤장을 친다.
1. 치중 복마輜重²¹⁵ 40필은, 필匹마다 관전官錢 20냥을 더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책임지고 세우도록 하는데, 1차례 지급한 뒤에 비록 치폐되더라도 그로 하여금 다시 담당하여 마련하도록 하며, 1년 내 6차례는 대가 없이 사역하고 6차례 이후에는 정식으로 요료를 지급한다[지방조支放條를 볼 것].
1. 별무사와 선기대의 치중 복마는, 관의 첨가조添價條와 구별하여 1건을 성책하여 각 해당 소所에 나누어 두고, 1건은 본색本色에 남겨

215 치중 복마(輜重卜馬): 치중(輜重), 즉 군대의 여러 군수품과 짐을 싣는 복마(卜馬)를 말한다.

두어서 낱낱이 수정修正할 수 있도록 한다.

1. 장관·장교를 막론하고 새로 납부한 말을 간품할 때 복색은, 군복을 갖추고 거행한다[개마改馬할 때도 동일하다].
1. 선기대 가운데서 가난한데도 여러 번 개마한 자에게는 제마濟馬를 특별히 지급하라는 명命이 있으니 대장소에서 별장에게 분부하여 해당 장수로 하여금 공론을 모아 살피게 한다. 해당 초의 기대총에게 보인保人을 붙여준 뒤 대장소에 전보하면, 대장소는 별도로 조사하고 그 허실을 상고한 다음 점련하여 아뢴다. 만일 혹 사사로운 것을 쫓은 폐단이 뒤에 드러나면, 해당 장령은 계문啓聞하고 엄하게 처리한다.



馬政

- 一. 哨官·知穀官·教鍊官·壯勇衛別武士·善騎隊, 納馬則必以有閭獫馬[改馬同 ○土產馬體大健實者, 亦爲許捧. ○哨官·知穀官·教鍊官, 雖無閭馬, 一體許捧], 大將看品擇捧爲白乎矣. 壯勇衛馬, 則每於中日, 監試將官試馳, 准於漏水後轉報. 善騎隊馬, 則該將與別將, 先爲看品試馳, 一體轉報, 則大將仍請烙印[因公詣闕時舉行]爲白齊.
- 一. 毋論將官·將校·軍兵, 新差後, 納馬日子, 定給三次, 而初次不納, 則納馬後, 罰番二三日, 再次不納, 則決棍, 三次不納, 則決棍除料. 量宜定限督納, 又爲過限, 則嚴棍汰去爲白齊.
- 一. 將官·將校納馬[改馬同], 初限二十日[將校三十日], 再限十日, 三限七日爲定爲白齊.
- 一. 善騎隊納馬[改馬同], 初限四十日, 再限十日, 三限七日爲定, 各哨色卜馬軍納馬, 亦同此例爲白齊.
- 一. 將校及善騎隊馬價, 以百兩內外爲定爲白乎矣, 如是定式之後, 若或優數加給, 欺瞞來納, 則犯者嚴棍汰去, 當該將領及牌頭, 另加懲治爲白齊.
- 一. 軍馬試馳擇捧, 專取其能走而已, 雖或健實可合馳突是白良置, 俗稱步才之馬, 一切勿捧, 至於馳試時, 不入於筭[趨]路者, 惟在來頭馴制之能否, 參酌許捧爲白齊.
- 一. 各樣試射及試取時, 毋得換騎他馬, 自有定式, 馬匹之有頃, 預爲懸

註於試記，以爲憑考之地爲白齊。

- 一. 未及納馬之前，全然闕立，事係疎虞，雖借馬姑立，毋至執項論罪爲白齊。
- 一. 春秋馬點，大將主管設行，馬之一肥能走者，分等施賞[賞格見施賞條]，有卜痕瘦瘠者，罰番或決棍爲白乎矣，竝稟旨舉行。定日喂養後，取來看審，如不肥澤，則別般論罪爲白齊。
- 一. 善騎隊官馬，每哨毋過三十匹，以八年爲限，限內致斃者，徵出改立爲白乎矣，因公致斃[計其程道，五十里內，則勿爲添價]，陣上致斃，番所致斃者，限滿致斃者，竝給添價錢五十兩，使之改立，仍作官馬爲白齊。
- 一. 私馬因公致斃，及再次致斃者，給添價錢五十兩，使之改立[依官馬改立例施行]，限以四年爲白乎矣，限內或遷轉・汰去，則本馬還納限後，仍作私馬爲白齊。
- 一. 善騎隊官馬，有病還納者，給添價錢四十兩，使之改立，而一次受價後，如非因公致斃，則更勿添給，使渠責立，仍以官馬施行。受價後，若再次改立，則以私馬施行爲白乎矣，旣以私馬施行則除案，或遷轉時，勿爲傳授爲白乎旂，病馬還納時，依還司僕例，以外營大門爲限爲白齊。
- 一. 官馬若瘦瘠體少，發賣而自備添價改立者，以六十朔爲限，限內如有遷轉或汰去者，自備添價外，發賣本錢還納，身故者及限後，勿論爲白齊。
- 一. 勿論軍馬・卜馬，新納後，馬主處給價定日，各該將領及次知，別爲錄置，當其定日，招致馬主，問其準捧與否。如未準給，從輕重勘罪後，更爲定日準給爲白齊。



- 一. 軍馬致斃者, 先告該將領, 次告大將所, 則大將使將校, 登時摘奸, 詳錄毛色, 相準於馬案後, 使之改立爲白乎矣, 官馬則皮張現納爲白齊.
- 一. 善騎隊私馬致斃人中, 或有才藝出類, 而貧不能改立者, 不待再次之限, 雖初次, 大將別般廉探後, 稟旨給官馬. 馬才哨納馬軍取才時, 居首·最高等者, 一體給官馬, 以爲激勸之地爲白齊.
- 一. 別武士私馬段, 各給添價錢二十兩爲白乎矣, 遷轉或汰去, 則本錢次次傳掌, 以爲立馬之資[若家計稍裕, 願納私馬者, 本錢還納]爲白齊.
- 一. 各哨色卜馬, 則每於朔末, 各該將領及次知點視後, 有無頃報于大將所, 以爲粘啓爲白齊.
- 一. 壯勇衛所持私馬, 無論新納與改立, 大將看品定限[限則量宜定給], 使之喂養調馴, 期於肥走, 而萬一有限後·瘦瘠之弊, 當者棍汰, 牌頭決棍爲白齊.
- 一. 輜重卜馬四十匹, 每匹添給官錢二十兩, 使之責立, 而一次上下之後, 雖致斃, 使渠擔當改立爲白乎跡, 一年內, 六次則無價使役, 六次外則依定式給料[見支放條]爲白齊.
- 一. 別武士·善騎隊輜重卜馬, 官添價條區別, 修成冊一件, 分置各該所, 一件留上本色, 以爲這這修正之地爲白齊.
- 一. 毋論將官·將校, 新納馬看品時, 服色段, 具軍服舉行[改馬時司]爲白齊.
- 一. 善騎隊中, 貧殘屢改馬匹者, 有濟馬特給之命, 自大將所分付別將, 令該將探察公論, 該哨旗隊摠着保後, 轉報大將所, 則大將別爲廉探, 考其虛實, 粘啓爲白乎矣, 如或循私之弊, 從後現發, 則該將領啓聞嚴處爲白齊.

30. 급사(給仕)²¹⁶

급사

1. 참하의 지구관과 교련관은 근무 일수 600일을 채운 뒤 병조에 보고하여 사과司果를 붙여준다.
1. 장용위 가운데 각 군문으로 천전한 자가 만일 특교로 인하여 환속還屬되면 전의 근무 일수를 계산해 준다.
1. 장관·장교가 죄를 짓고 태거되어 스스로 물러났다가 다시 소속되려는 자와 삼년상을 마치고 다시 소속되려는 자는 모두 전의 근무 일수를 아울러 계산해 준다.
1. 각 청廳에서 오래 근무한 자 중 삼년상을 마치고 다시 소속되려는 자는 비록 수사首仕를 맡게 되더라도 부사副仕로 시행한다.
1. 장교 가운데 부자가 같은 청廳에 있으면 다른 청으로 옮겨 차임하는데 만일 혹 도로 차임되면 전의 근무 일수를 계산해 준다.
1. 병조 및 삼영三營의 교련관을 지구관으로 환차換差²¹⁷하면 본사의 근무를 반으로 줄여주고, 교련관·장용위로 환차하면 본사의 근무를 모두 더한다. 수어청·총용청 두 영의 교련관 및 병조의 당상 군관, 가전駕前·가후駕後·삼영의 별군관을 지구관으로 환차하면 본사의 근무 3분의 2를 덜어주고, 교련관·장용위로 환차하면 3분의 1을 덜어준다. 삼영의 별무사를 지구관으로 환차하면 본사

216 급사(給仕):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주는 것이다.

217 환차(換差): 관직을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다.



는 논하지 않고, 교련관·장용위로 환차하면 3분의 2를 덜어주고, 교련관·장용위를 지구관으로 환차하면 본사의 근무를 반으로 줄여준다. 장용위와 교련관을 서로 바꾸면 근무 일수를 통틀어 계산해주고, 장용위 가운데서 자원하여 교련관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본사의 근무 3분의 1을 덜어 준다.

1. 한산 제본사閑散除本仕와 한산 장용위閑散壯勇衛는 근무 일수를 통틀어 계산해 주되, 제본사除本仕는 장용위와 비교하여 일하는 것이 구별되니,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 3분의 1을 추가로 계산해 준다[가령 한산 장용위가 15개월에 천전한다면 제본사는 10개월 뒤에 천전한다].

給仕

- 一. 叅下知穀官・教鍊官, 仕滿六百日後, 報兵曹付司果爲白齊.
- 一. 壯勇衛中, 各軍門遷轉人, 若因特教還屬, 則前仕通計爲白齊.
- 一. 將官・將校之罪汰, 自闕復屬者, 服闋還屬者, 竝前仕通計爲白齊.
- 一. 各廳久勤中, 服闋還屬者, 雖當首仕, 以副仕施行爲白齊.
- 一. 將校中, 以父子同廳移差他廳, 如或還差, 則前仕通計爲白齊.
- 一. 兵曹及三營教鍊官, 換差知穀官, 則就本仕半減, 換差教鍊官・壯勇衛, 則竝給本仕. 守・摠兩營教鍊官, 及兵曹堂上軍官, 駕前・駕後・三營別軍官, 換差知穀官, 則就本仕減三分之二, 換差教鍊官・壯勇衛, 則減三分之一. 三營別武士, 換差知穀官, 則本仕勿論, 換差教鍊官・壯勇衛, 則減三分之二, 教鍊官・壯勇衛, 換差知穀官, 則就本仕半減. 壯勇衛・教鍊官相換, 則通同計仕, 壯勇衛中, 自願移差教鍊官者, 就本仕減三分之一爲白齊.
- 一. 閑散除本仕, 與閑散壯勇衛, 通同計仕, 而除本仕, 比壯勇衛, 勤勞自別, 計仕時, 三分一加計[假令, 閑散壯勇衛十五朔遷轉, 則除本仕十朔後遷轉]爲白齊.



31. 급가(給暇)²¹⁸

급가

1. 도제조·제조·대장이 청에 사신으로 가거나 혹은 명을 받아 지방에 있거나 정사²¹⁹를 제출하여 휴가를 얻을 때에는 하직 인사를 하는 것과 들어와서 숙배하는 단지를 규장각의 예대로 본영에서 써서 올린다.
1. 종사관 및 당상·당하 장관의 휴가는 모두 정사를 제출하여 입계한다.
1. 장관·장교는 자신의 병과 부모의 병으로는 1개월을 기한으로 하고 기한이 찼는데도 병으로 차임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정사를 올린다 [장교는 수본²²⁰을 올린다]. 그리고 부모를 찾아뵙는 경우 원도는 30일, 중도는 20일, 근도는 10일로 하고, 소분²²⁰ 등 각 항목의 휴가 기간은 왕복을 제외하고 7일을 머무르게 한다. 만약 탈이 없는데도 기한이 지나게 되면 해당 청의 우두머리가 품지하여 죄를 논한다.
1. 승호군²²⁰이 귀성하는 휴가는 한 해 걸러 허락해주되 왕복을 제외하고 원도는 18일, 중도는 15일, 근도는 10일로 한다. 그런데 만약 휴가 기간이 지나 20일 기한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관문을 보내어 나타나기를 재촉하고, 돌아온 뒤에는 넘긴 날짜를 계산해

218 급가(給暇): 조선시대에 관리에게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219 정사(呈辭): 사직(辭職)과 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에 제출하는 일이다.

220 소분(掃墳):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지내는 것이다.

서 3일 이내는 논하지 말고 4일 이후는 매 3일마다 벌번(罰番) 2·3일, 10일 이후는 매 1일마다 곤장 1도(度)를 치고 기한을 넘긴 요포는 또한 거두어들인다.

1. 서울에 있는 장관은 명절과 평상시를 막론하고, 혹 소분을 가게 되면 일사(一舍)²²¹ 밖은 휴가를 신청하여 나가고, 일사 이내는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여쭙고 나간다[전임 장관은 이 예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교·군병이 경숙(經宿)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에 말을 하고[전임 장교는 이 예를 사용하지 않고, 군병은 해당 청의 장령 및 차지에게 고한다] 편의를 좇아 왕래한다.
1. 마보 군병 가운데 만일 시업(市業)에 종사하거나 혹은 손재주가 있는 자에게는 방번(防番)²²²을 허락하되, 방번할 때에는 먼저 장령에게 고한 뒤 대장에게 정장(呈狀)을 올려서 점련하여 아뢰도록 한다. 3개월 내에 1차례 입번하게 하며 엄히 단속한다.
1. 군병 등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얻는 휴가는 100일을 기한으로 하고, 병으로 얻는 휴가는 15일을 기한으로 하되 병으로 차임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10일을 더 준다. 이것이 10차례에 이르러 4개월이 차게 되면 군안에서 제외한다[전염병의 경우에는 비록 4개월이 차더라도 군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21 일사(一舍): 군사가 하루에 삼십 리를 걷고 하룻밤을 묵는다는 뜻으로, 삼십 리를 말한다.

222 방번(防番): 군역 의무자가 번(番)을 서지 않는 대신 대가를 거두고 이것으로 실제 군역에 종사하는 군사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1. 배봉(拜峯)·노랑(露梁) 별장(別將)이 혹 휴가를 청할 일이 생겨 대장소에 보고하게 되면 대장은 이조와 병조에서 점련하여 아뢰는 예대로 계목에 점련하여 품지한 다음 휴가를 지급해 준다.

給暇

- 一. 都提調·提調·大將, 赴燕或奉命在外, 呈辭受由之時, 下直與入來肅拜單子, 依內閣例, 自本營書呈爲白齊.
- 一. 從事官及堂上·堂下將官受由, 竝以呈辭入啓爲白齊.
- 一. 將官·將校身病·親病, 限一朔, 限滿病不差, 則更爲呈辭, 而[將校則手本]覲親則遠道三十日, 中道二十日, 近道十日, 掃墳等各項由暇, 除往還留七日爲白乎矣. 若無故過限, 則該廳首稟旨, 論勘爲白齊.
- 一. 陞戶軍歸覲受由, 間年許送, 而除往還, 遠道十八日, 中道十五日, 近道十日. 而若過由限至二十日, 則發關促現, 還現後計其過限日字, 三日內勿論, 四日後每三日罰番二三日, 十日後每一日決棍一度, 過限料布, 亦爲還收爲白齊.
- 一. 在京將官, 毋論名節與常時, 或有掃墳之行, 則一舍以外呈由出去, 以內微稟出去.[前卿將官, 不用此例] 將校·軍兵, 除非經宿之地, 言送該廳[前卿將校, 不用此例, 軍兵告該廳將領及次知], 從便往來爲白齊.
- 一. 馬步軍兵中, 如有市業或手才者, 許其防番, 而防番時, 先告將領

後, 呈訴大將, 以爲粘啓爲白乎矣, 三朔內一次入番, 以嚴團束之意爲白齊.

- 一. 軍兵等遭故受由限百日, 病由限十五日爲白乎矣, 病不差則更加十日, 以至十次, 滿四朔則除案[涉疑疾雖四朔不爲除案]爲白齊.
- 一. 拜峯 · 露梁別將, 或有請由之事, 報于大將所, 則大將依吏 · 兵曹粘啓例, 以粘目稟旨給暇爲白齊.



32. 칙령(飭令)²²³

칙령

1. 경군京軍의 계령 10조戒令十條에, “군영의 기밀이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반호班戶에 내왕하면 안 된다. 수렴收斂을 하면 안 된다. 싸움을 하면 안 된다. 금복禁服[도포道袍 · 당혜唐鞋 등의 종류이다]을 착용하면 안 된다. 군장軍裝을 빌리면 안 된다. 노름을 하면 안 된다. 무뢰배들과 사귀면 안 된다. 두목頭目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거리에서 주정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무릇 이러한 10개의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작은 것은 장령이 스스로 결정하고 큰 것은 전보轉報하여 품처稟處할 수 있도록 한다.
1. 10개 조항의 계령을 군병들에게 널리 전하여 평소에 외워서 염두에 두도록 하되, 글자나 언문을 모르는 자는 말로 받아서 평소에 외우게 한다. 사습私習하는 날과 입번할 때 해당 장관 및 번을 거느리는 장령이 때때로 고강한 다음 불통한 자에게는 즉시 벌을 내린다.
1. 향군의 계령 11조에, “뇌물을 바친 자와 받은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와 그것을 본 자는 회시回示²²⁴하고 곤장 30도度を 치며 절도絶島에 유배를 보내고 본역本役에 충군을 한다. 사람을 찢어 들어가는 자와 반호에 출입하는 자는 법사法司에 이송한 다음 판결을 하여

223 칙령(飭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하는 명령이다.

224 회시(回示): 죄인을 끌고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유배 보내는 것을 순서대로 한다. 범법한 자, 공사公私에 청탁하는 자, 군장을 빌려주고 잃어버린 자, 송사를 좋아하고 월소越訴²²⁵하는 자, 주정을 부리고 싸우는 자는 작은 것은 장령이 스스로 결정하고 큰 것은 전보한다.”라고 하였다. 무릇 이러한 11개 조항을 향군에게 널리 전하여 평소에 외워서 염두에 두도록 한 다음 해당 장령이 때때로 고강하여서 불통한 자는 즉시 죄를 다스리고, 글자나 언문을 모르는 자는 말로 받아서 평소에 외우게 한다. 이 외에 번상番上·번하番下하는 때에 종종 간악한 짓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서 가벼운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전보한 다음 품처할 수 있도록 한다.

1. 장교와 군졸을 막론하고 본영을 빙자하여 비리호송非理好訟²²⁶하거나, 혹은 이웃을 괴롭히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에 해를 끼치거나, 혹은 남을 몰래 엿탐하여 여염집에 폐단을 일으키거나, 혹은 사사로이 총과 칼을 빌려주고 군마를 이용해 먼 길을 떠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장령 및 차지가 때때로 살펴서 가벼운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전보한 다음 품처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혹 은닉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이 추후에 드러나게 되면 장령

225 월소(越訴): 순서를 밝지 않고 곧바로 상급 관아에 소청하는 일이다.

226 비리호송(非理好訟): 소송을 하여 두 번이나 패소한 뒤에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소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소송 벌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 간주하여 처벌하는데, 이 법률을 ‘비리호송률(非理好訟律)’이라고 한다.



및 차지는 또한 엄하게 곤장으로 다스리고 태거한다.

1. 도군²²⁷은 그 기대^{旗隊}로 하여금 모두 기찰하여 체포하도록 하고 엄하게 곤장 30도를 친 후 군안에서 제외시킨다. 번소^{番所}에서 도주한 자가 있으면 형벌의 등급을 올려 엄하게 다스린다. 마군 가운데 마필을 가지고 도망간 자, 보군 가운데 군물을 가지고 도주한 자는 모두 군중에 회시하고 곤장 50도를 친다.
1. 장교와 군졸을 막론하고 본영에 편입된 자가 만일 모처^{某處}에서 도군을 보았는데 고하거나 잡지 않는 자는 도군과 같은 죄를 주되 곤장을 치는 경우에는 10도를 줄여준다.
1. 마보 군병의 사습^{私習}에 빠지는 자는 해당 장령이 조사해서 곤장으로 다스리고, 여러 번 빠지는 자는 곤장을 치고 군안에서 제외시킨다. 합동으로 조련하는 때에 빠지는 자는 군중에 회시하고 중곤^{重棍}으로 다스리며 군안에서 제외시킨다. 정기적인 모임을 당겨 정하거나 물러서 행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아서 빠지게 된 자는 사실을 조사해서 감안해주고, 통지하지 않은 두목은 형벌의 등급을 올려 엄하게 다스린다. 입번^{入番} 및 식대^{食代}²²⁸할 때 빠지는 자는 엄히 곤장을 치고 군안에서 제외시키고, 늦게 도착하는 자는 곤장으로 다스린다. 연좌율^{連坐律}은 죄를 범한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령 · 두목 · 군이 모두 정식으로 징계하여 다스린다.

227 도군(逃軍): 병역이나 부역을 피하여 달아난 군정을 말한다.

228 식대(食代): 공역(公役)을 치르는 사람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밥을 먹는 일을 말한다.

1. 마보 군병 가운데 부근에서 거주하는 자는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각각 총을 만들게 하여 관할하기 편리하게 한다. 통수統首는 그 가운데서 가려 정하고 통내에서 죄를 저지른 자는 평소에 살펴보다가 즉시 와서 고하되 만일 가려두고 고하지 않는 자와 범법한 자는 같은 죄로 여겨 엄히 곤장을 치고 군안에서 제외한다.
1. 사司 · 초哨의 서패가 입변할 때 공적인 일로 부리는 경우에는 각 해당 사 · 초의 명령을 듣고 군을 내어 쓰되 만일 공적인 일이 아닌데 내어 쓰게 되면 각별히 죄를 논한다.
1. 갑주甲冑와 관련하여 신건新件 가운데 10년 내에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20도를 치고, 구건舊件 가운데 7년 내에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15도를 치고, 혹 잃어버린 자는 군안에서 제외시키고 물어내게 한다. 조총을 습진하거나 혹은 시사試射할 때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해당 장령 · 차지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로 하여금 환급해 주도록 한다. 환도環刀 가운데 7년 내에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10도를 친다. 편곤鞭棍 가운데 5년 내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10도를 친다.
1. 총 · 칼 · 편곤과 각종 무기를 막론하고 혹 사사로이 내다 팔거나, 혹 낙인烙印을 농락한 자는 곤장 20도를 치고 군안에서 제외시키며 물어내게 한다. 적 때문에 잃어버린 자는 적간한 뒤에 날을 정해 물어내게 하고, 혹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린 자는 곤장 15도를 치고 물어내게 한다. 사사로이 남에게 빌려준 자는 점고할 때 드러나게 되면 곤장 10도를 친다. 무기의 장식을 깨지고 상하게 한 자



는 곤장 5도를 친 뒤 바로 고치도록 한다.

1. 매년 원행한 뒤에 향군을 놓아 보낼 때 무기·복색은 해당 차지·지구관이 장부와 대조하여 검사하고 도로 거둔다. 그런데 만일 잃어버리거나 깨지고 상한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은 해당 고을에 관문을 보내어 당사자에게 물어내게 하고, 깨지고 상한 것은 본영에서 고친다.
1. 본영의 군졸 가운데 만일 법사 및 각 영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각 영의 예대로 한 편으로는 진래²²⁹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징계하여 다스린다.
1. 감관의 임무는 지극히 긴급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맡기거나 하나라도 살피지 않음이 있으면 제조가 계목에 점련하여 죄를 논하여 다스린다. 전곡^{錢穀}과 관련한 문서와 장부에 혹 농간을 부린 폐단이 있으면 해당 감관은 번질^{反作}²³⁰의 율^律로 논한다.
1. 군병 가운데 요패^{腰牌}를 잃어버린 자는 곤장 10도를 치고, 깨지고 상하게 한 자는 곤장 20도를 치고, 바꾸어 착용한 자는 곤장 30도를 치고 군안에서 제외시킨다.
1. 전곡·갑병·문서와 장부 등의 일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든 막론하고 만일 품의하거나 아뢰지 않은 일이 있는데 먼저 새어나가게

229 진래(進來): 어느 관아에 딸린 예속(隸屬)을 체포할 때, 미리 그 까닭을 그 관아에 통지하는 일이다.

230 번질(反作): 아전들이 환곡(還穀)을 빼내어 돌려쓰고 이를 메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말한다.

한 자에 대해서는 군율을 시행한다.

1. 장관 · 장교의 통개筒箇 · 궁자弓子가 만일 각궁角弓이 아니고 기추궁騎蒱弓이면 대장은 먼저 곤장을 치고 태거시킨 뒤 계품啓稟한다.
1. 당상 · 당하의 장관 · 장교의 전립戰笠 · 영纓은 조밀화造蜜花를 사용하고, 당하의 장관 · 장교의 립笠 · 영은 수정水晶 혹은 조주造珠[말장이末將伊]를 사용한다.
1. 군병을 단속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연좌하는 법 보다 엄한 것이 없다. 한 대隊에서 1개월 내에 2인이 죄를 저지르면 대장隊長을 연좌하고, 한 기旗에서 1개월 내에 3인이 죄를 저지르면 기총旗總을 연좌하고, 1초哨에서 1개월 내에 5인이 죄를 저지르면 초관을 연좌하고, 한 사司에서 1개월 내에 10인이 죄를 저지르면 파총을 연좌한다.
1. 군병을 승급 또는 강등하거나 바꿀 때에 각종 군물을 10일 내에 만일 인계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엄하게 곤장을 치고 징계하며, 해당 기대충은 모두 곤장으로 다스린다. 새로 포함된 군병 가운데 기한 내에 즉시 거두어들이지 않거나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어 즉시 고하지 않는 자는 또한 곤장을 치고 징계한다.



飭令

- 一. 京軍戒令十條曰, “營機莫泄. 班戶莫通. 毋得收歛. 毋得鬪鬩. 勿着禁服[道袍·唐鞋等屬]. 勿借軍裝. 勿爲雜技. 勿交無賴. 莫侮頭目. 莫酗酒路.” 凡此十條, 一有犯者, 小則將領自斷, 大則轉報, 以爲稟處之地爲白齊.
- 一. 十條戒令, 傳布軍中, 尋常誦念爲白乎矣, 不文不諺者, 使之口受常誦. 私習之日, 入番之時, 該將官及率番將領, 時時考講, 不通者隨卽施罰爲白齊.
- 一. 鄉軍戒令十一條曰, “納賂徵餉有與者·受者, 偷人物件犯者·見者, 回示決棍三十度絕島, 仍本役充軍. 人物招引者, 班戶出入者, 移送法司, 照律定配挨次. 犯科者, 公私稱托者, 軍裝借失者, 嗜訟越訴者, 酗酒鬪鬩者, 小則將領自斷, 大則轉報.” 凡此十一條, 傳布鄉軍, 尋常誦念, 該將領時時考講, 不通者隨卽科罪, 不文不諺者, 使之口受常誦. 外此{此外}番上·番下時, 種種作奸者, 廉探查得, 輕而自斷, 重以轉報, 以爲稟處之地爲白齊.
- 一. 毋論校卒, 憑籍本營, 非理好訟, 或侵侮鄰里, 傷人害物, 或假托譏訶, 作弊閭里, 或私借銃刀, 遠出軍馬, 各該將領及次知, 隨時廉察, 輕則自斷, 重則轉報, 以爲稟處之地爲白乎矣. 如或匿不以聞, 追後現發, 則將領及次知, 亦爲嚴棍汰去爲白齊.
- 一. 逃軍則使其旗隊, 摠譏訶捉, 得嚴棍三十度除案. 在番所逃走者, 加等嚴治爲白乎旅, 馬軍之持馬匹逃躲者, 步軍之持軍物逃走者, 竝回

示軍衆，決棍五十度爲白齊。

一、毋論校卒，名編本營者，若見逃軍於某處，而不告不捉者，與逃軍同罪爲白乎矣，決棍則減十度爲白齊。

一、馬步軍兵私習闕到者，該將領查出棍治，屢次闕到者，決棍除案。合操時闕到者，回示軍衆，重棍除案爲白乎矣。期會之進定退行，不爲傳知，以致闕到者當者，查實量勘，不爲知委之頭目，加等嚴治。入番及食代時闕到者，嚴棍除案，晚到者，棍治爲白乎矣。坐律段，隨其犯者多寡，將領・頭目・軍，一依定式懲治爲白齊。

一、馬步軍之附近居生者，不拘多寡，各爲作統，以便管轄爲白乎矣，統首，自其中擇定，統內犯科者，居常探察，隨即來告，而若掩置不告者與犯者，同罪嚴棍除案爲白齊。

一、司哨書牌入番時，因公使喚，則以各該司哨，聽令軍出用，而若非公事出用，則各別論罪爲白齊。

一、甲冑新件之十年內破傷者，決棍二十度，舊件之七年內破傷者，決棍十五度，或闊失者，除案徵出。鳥銃之習陣，或試射時破傷者，待該將領・次知之報來，使之換給。環刀之七年內破傷者，決棍十度。鞭棍之五年內破傷者，決棍十度爲白齊。

一、毋論銃・刀・鞭棍，與各樣器械，或私自放賣，或幻弄烙印者，決棍二十度除案徵出。爲賊見失者，摘奸後定日徵出，或不善看守闊失者，決棍十五度徵出。私自借人，點考時現發者，決棍十度。器械之粧銹破傷者，決棍五度後，俾即修改爲白齊。

一、每年園行後，鄉軍放送時，器械・服色，該次知・知穀官，照檢選擇



爲白乎矣。如有闕失破傷，則闕失者，發關該邑徵出於當者，破傷者，自本營修改爲白齊。

- 一. 本營軍卒中，如有犯科於法司及各營者，依各營例，一邊進來，一邊懲治爲白齊。
- 一. 監官之任，至爲緊要，諉之下屬，一有不察，則提調粘目論勘。錢穀文簿，或有幻弄之弊，則該監官，以反作之律論爲白齊。
- 一. 軍兵腰牌闕失者決棍十度，破傷者決棍二十度，換佩者決棍三十度除案爲白齊。
- 一. 毋論錢穀·甲兵·文簿等事，如有不稟不啓，徑先宣泄者，軍律施行爲白齊。
- 一. 將官·將校，筒箇·弓子，如非角弓而騎蓐弓，則大將先棍汰後啓稟爲白齊。
- 一. 堂上·堂下將官·將校，戰笠·纓，用造蜜花，堂下將官·將校笠·纓，用水晶或造珠[末將伊]爲白齊。
- 一. 軍兵團束，莫嚴於挨次坐律之法。一隊一朔內二人犯科，則隊長連坐，一旗一朔內三人犯科，則旗摠連坐，一哨一朔內五人犯科，則哨官連坐，一司一朔內十人犯科，則把摠連坐爲白齊。
- 一. 軍兵之陞降遞易時，各樣軍物十日內，如不傳掌，則當者嚴棍懲礪，該旗隊摠，一體棍治。新入軍之限內，不卽奉受，而拘於顏私，趁不現告者，亦爲決棍懲礪爲白齊。

33. 곤치(棍治)²³¹

곤치

1. 도제조 · 제조는 장관 · 장교에 대해서 작은 경우에는 벌번²³²을, 큰 경우에는 품지하여 죄를 청한다. 군병 · 원역은 작은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큰 경우에는 점련하여 아뢴다[도제조는 계목에 점련하는 예가 없고 모두 품지한다]. 제조는 원역 · 구관^{句管}이 아닌 자에 대해서 말을 전해서 죄를 다스린다.
1. 대장은 장관에 대해서 작은 경우에는 벌번 혹은 대신 대례^{帶隷}를 벌주고, 큰 경우에는 품지하여 죄를 청한다. 지구관 · 장용위에 대해서는 작은 경우에는 벌번을, 큰 경우에는 품지하여 죄를 청한다. 교련관 · 각 소의 별무사 · 부료 무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한다. 전임 및 미부료 무사에 대해서는 품지하여 죄를 다스린다. 군병 · 원역에 대해서는 작은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큰 경우에는 점련하여 아뢴다. 원역 가운데 구관이 아닌 자는 말을 전해서 죄를 다스린다. 초관 · 지구관 · 장용위 가운데 진^陣에서 법을 어긴 자는 모두 먼저 곤장을 친 뒤 아뢴다.
1. 종사관이 군병에 대해서 해당 초관에게 말을 전하여 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원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주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또한 말을 전해서 죄를 다스린다. 요^料를 나누어 줄

231 곤치(棍治):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232 벌번(罰番):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는데 대한 벌로서, 정상적인 번(番) 이외에 더 서게 하는 번이다.



때 및 봉족²³³을 내려줄 때 원역·군병에 대해서는 모두 스스로 결정하여 곤장 5도를 친다.

1. 당상·당하의 장관 및 각 색^色의 차지·지구관이 관할하는 군병에 대해서는 곤장 15도를 친다.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을 전해서 죄를 다스리되 입직할 때에는 비록 주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정하여 곤장을 친다[당하의 장관이 출신·선기대에 대해서 벌번 혹은 말을 전해서 해당 장관이 죄를 다스리게 한다].
1. 당상의 장관은 해당 소^所의 무사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곤장 7도를 친다.
1. 지구관·교련관이 군병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곤장 7도를 친다. 출신·선기대에 대해서는 단지 벌번만 준다.
1. 장용위·패두·부료 패두가 거느리는 부하에 대해서 작은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해서 벌번을 주고, 큰 경우에는 진보하여 품처한다.
1. 각 초·색·기대총이 대^隊 소속의 군병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곤장을 치되, 기총은 10도를 넘기지 말고 대총은 7도를 넘기지 않는다.
1. 감관은 군병에 대해서 해당 초·색에 말을 전해서 죄를 다스리게 하고, 해당 색의 원역에 대해서는 작은 경우에는 제조에게 고하여

233 봉족(奉足): 보조자라는 뜻으로 평민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 출역하지 않은 여정(餘丁) 한두 사람을 정정(正丁)에게 주어서 집안일을 도와주도록 하였는데, 뒤에는 여정에게 재물만을 내게 하여 정정을 보조하였다.

죄를 다스리게 하고, 큰 경우에는 제조에게 고하여 점련하여 아뢴다. 해당 색의 고직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색의 경우에는 말을 전해서 죄를 다스리게 한다.

1. 합동하여 조련할 때 당일의 절차와 제도는 마땅히 주관하는 장령에게 위임하여 비록 다른 색의 군병일지라도 스스로 결정해서 곤장을 친다.
1. 차관差官·별무사는 무릇 행군할 때 있어서 만일 약속을 준행하지 않는 군병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해서 곤장 5도를 친다.
1. 진陣으로 거동하는 것 및 조련할 때 장령 가운데 절도를 어기는 자는 대장이 경중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여 곤장을 치되 모두 먼저 행한 뒤에 아뢴다.
1. 습진할 때 만약 별장이 임시로 중군으로서 행한다면 당일의 상황은 평소와는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조 교련관執操敎鍊官 및 차관 가운데 영수를 어기는 자는 대장에게 청한 뒤 죄를 논하여 다스린다.
1. 마보 군병이 각각 합동으로 조련할 때 집조 교련관 및 차관을 함께 보내는데 비록 혹 별장·파총에게 잘못을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잡아올 수 없으니 다만 대장에게 청하여 죄를 다스리게 한다.



棍治

- 一. 都提調 · 提調之於將官 · 將校, 小則罰番, 大則稟旨請罪. 軍兵 · 員役, 小則自斷, 大則粘啓. [都提調無粘目之例, 一體稟旨] 提調於員役 · 非句管者, 言送科治爲白齊.
- 一. 大將之於將官, 小則罰番, 或替治帶隸, 大則稟旨請罪. 於知穀官 · 壯勇衛, 小則罰番, 大則稟旨請罪. 於教鍊官 · 各所別武士 · 付料武士, 自斷. 於前衛及未付[料]武士, 稟旨科罪. 軍兵 · 員役, 小則自斷, 大則粘啓. 員役之非句管者, 言送科治. 哨官 · 知穀官 · 壯勇衛之陣上違制者, 竝先棍後稟爲白齊.
- 一. 從事官之於軍兵, 言送該哨色科治, 所管員役自斷, 非所管者, 亦爲言送科治爲白乎矣, 放料時及奉足上下時, 員役 · 軍兵, 竝自斷決棍五度爲白齊.
- 一. 堂上 · 堂下將官, 及各色次知 · 知穀官, 於管下軍兵, 決棍十五度. 非管下則言送科治爲白乎矣, 入直時, 雖非所管, 自斷決棍[堂下將官, 於出身 · 善騎隊, 罰番或言送該將科治]爲白齊.
- 一. 堂上將官, 於該所武士, 自斷決棍七度爲白齊.
- 一. 知穀官 · 教鍊官, 於軍兵, 自斷決棍七度. 於出身 · 善騎隊, 只罰番爲白齊.
- 一. 壯勇衛 · 牌頭 · 付料牌頭, 於率下, 小則自斷罰番, 大則轉報, 以爲稟處爲白齊.
- 一. 各哨 · 色 · 旗隊摠, 於隊下軍兵, 自斷決棍爲白乎矣, 旗摠毋過十度,

隊摠毋過七度爲白齊.

- 一. 監官之於軍兵, 言送該哨·色科治, 該色員役, 小則告于提調科治, 大則告于提調粘啓. 該色庫直自斷, 他色則言送科治爲白齊.
- 一. 合操時當日節制, 宜委於主管將領, 雖他色軍兵, 自斷決棍爲白齊.
- 一. 差官·別武士, 凡於行陣之際, 如有不遵約束之軍兵, 自斷決棍五度爲白齊.
- 一. 動駕陣上及操鍊時, 將領之違誤節度者, 大將從輕重, 自斷棍治爲白齊矣, 竝先行後稟爲白齊.
- 一. 習陣時, 若以別將權行中軍, 則當日體通, 自有異焉. 執操教鍊官, 及差官之違令者, 請于大將後, 論勘爲白齊.
- 一. 馬步軍兵, 各其合操時, 執操教鍊官及差官, 俱是差遣, 雖或有過別將·把摠, 不可拿治, 只請罪于大將爲白齊.

斷梃治為白乎矣並先行後 稟為白齊

一習陣時若以別將權行中軍則當日體通自有異焉執操教

鍊官及差官之違令者請于大將後論劾為白齊

一馬步軍兵各其合操時執操教鍊官及差官俱是差違雖或

有過別將把總不可拿治只請罪于大將為白齊

梟治

一都提調提調之於將官將校小則罰番大則稟 旨請罪軍
兵負役小則自斷大則粘 啓都提調兵結目之
例一體稟 旨 提調於負
役非句管者言送科治為白齊

一大將之於將官小則罰番或督治帶隸大則稟 旨請罪於
知穀官壯勇衛小則罰番大則稟 旨請罪於教鍊官各所
別武士付料武士自斷於前卿及未付武士稟 旨科罪軍
兵負役小則自斷大則粘 啓負役之非句管者言送科治
哨官知穀官壯勇衛之陣上違制者并先梟後 稟為白齊
一從事官之於軍兵言送該哨色科治所管負役自斷非所管

者亦為言送科治為白乎矣放料時反泰足上下時負役軍
兵并自斷決梟五度為白齊

一堂工堂下將官及各色次知知穀官於管下軍兵決梟十五
度非管下則言送科治為白乎矣入直時雖非所管自斷決
梟堂下將官於出身嘉驍隊
罰番或言送該將科治 為白齊

一堂上將官於該所武士自斷決梟七度為白齊

一知穀官教鍊官於軍兵自斷決梟七度於出身嘉驍隊只罰
番為白齊

一壯勇衛牌頭付料牌頭於率下小則自斷罰番大則轉報以
為 稟處為白齊

一各哨色旗隊總於隊下軍兵自斷決梟為白乎矣旗隊總母過
十度隊總母過七度為白齊

一監官之於軍兵言送該哨色科治該色負役小則告于提調
科治大則告于提調粘 啓該色庫直自斷他色則言送科
治為白齊

一合操時當日節制宜委於主管將領雖他色軍兵自斷決梟
為白齊

一差官別武士允於行陣之際如有不遵約束之軍兵自斷決
梟五度為白齊

一動駕陣上及操鍊時將領之違誤節度者大將從輕重自

棍治為白乎矣坐律既隨其犯者多寡將領頭目軍一依定式懲治為白齊

一馬步軍之附近居生者不拘多寡各為作統以便管轄為白乎矣統首自其中擇定統內犯科者居常巡察隨即來告而若掩置不告者與犯者同罪嚴棍除案為白齊

一司哨書牌入番時因公使喚則以各該司哨聽令軍出用而若非公事出用則各別論罪為白齊

一甲冑新件之十年內破傷者決棍二十度舊件之七年內破傷者決棍十五度或闊失者除案徵出為銃之習俾或試射時破傷者待該將領次知之報來使之換給環刀之七年內

破傷者決棍十度鞭棍之五年內破傷者決棍十度為白齊

一母論銃刀鞭棍與各樣器械或私自放賣或幻弄烙印者決棍二十度除案徵出為賊見失者摘奸後定日徵出或不善看守闊失者決棍十五度徵出私自借人點考時現發者決

棍十度器械之粧飾破傷者決棍五度後俾即修改為白齊

一每年團行後鄉軍放送時器械服色該次知和嚴官照檢還捧為白乎矣如有闊失破傷則闊失者嚴關該色徵出於

當者破傷者自本營修改為白齊

一本營軍卒中如有犯科於法司及各營者依各營例一邊追來一邊懲治為白齊

一監官之任至為緊要誅之下屬一有不察則提調粘目論勘錢穀文簿或有幻弄之弊則該監官以及作之律論為白齊

一軍兵腰牌闊失者決棍十度破傷者決棍二十度換佩者決棍三十度除案為白齊

一母論錢穀甲兵文簿等事如有不稟不啓徑先宣泄者軍律施行為白齊

一將官將校簡箭弓子如非角弓而騎箭弓則大將花棍汰後啓稟為白齊

一堂上堂下將官將校職笠纓用造雲花堂下將官將校笠纓用水晶或造珠_{伊末}將為白齊

一軍兵團束莫嚴於挨次坐律之法一隊一朔內二人犯科則隊長連坐一旗一朔內三人犯科則旗總連坐一哨一朔內五人犯科則哨官連坐一司一朔內十人犯科則把總連坐為白齊

一軍兵之陞降連易時各樣軍物十日內如不傳掌則當者嚴棍懲礪該旗隊總一體棍治新入軍之限內不即捧受而拘於顏私越不現告者亦為決棍懲礪為白齊

飭令

一京軍戒令十條曰營機莫泄班戶莫通毋得收歛毋得開關勿着禁服通犯唐律勿借軍裝勿為雜技勿交無賴莫侮頭目莫誦街路凡此十條一有犯者小則將領自斲大則轉報以為棄處之地為白齊

一十條戒令傳布軍中尋常誦念為白乎矣不文不諱者使之口受常誦私習之日入番之時該將官及率番將領時時考講不通者隨卽施罰為白齊

一鄉軍戒令十一條曰納賂徵賄與者受者偷人物件犯者見者回示決棍三十度絕島仍本役充軍人物招引者班戶出

入者移送法司照律定配挨次犯科者公私稱托者軍裝借失者嗜訟越訴者酗酒鬧閨者小則將領自斲大則轉報凡此十一條傳布鄉軍尋常誦念該將領時時考講不通者隨卽糾罪不文不諱者使之口受常誦外此番上番下時種種作奸者廉探查得輕而自斲重以轉報以為棄處之地為白齊

一母論校平憑藉本營非理好訟或侵侮隣里傷人害物或假托讖詞作弊閭里或私借銃刀逃出軍馬各該將領及次知隨時廉察輕則自斲重則轉報以為棄處之地為白乎矣如或匿不以聞迨後現獲則將領及次知亦為嚴棍汰去為

白齊

一逃軍則使其旗隊總讖詞捉得嚴棍三十度除案在番所逃走者加等嚴治為白乎矣逃軍之持馬匹逃縣者步軍之持軍物逃走者並回示軍眾決棍五十度為白齊

一母論校平名編本營者若見逃軍於某處而不告不捉者與逃軍同罪為白乎矣決棍則減十度為白齊

一馬步軍兵私習關到者該將領查出棍治屢次關到者決棍除案合操時關到者回示軍眾重棍除案為白乎矣期會之違定退行不為傳知以致關到者當者查實量勘不為和委之頭目加等嚴治入番及食代時關到者嚴棍除案晚到者

官壯勇衛則并給本仕守摠兩營教鍊官及兵書堂上軍官
駕前駕後三營別軍官換差知毅官則就本仕減三分之二
換差教鍊官壯勇衛則減三分之一三營別武士換差知毅
官則本仕勿論換差教鍊官壯勇衛則減三分之二教鍊官
壯勇衛換差知毅官則就本仕半減壯勇衛教鍊官相換則
通同計仕壯勇衛中自願移差教鍊官者就本仕減三分之
一為白齊

一閑散除本仕與閑散壯勇衛通同計仕而除本仕比壯勇衛
勤勞自別計仕時三分一加計殿令閑散壯勇衛十五朔還
勤則除本仕十朔後還勤
為白齊

給暇

一都提調提調大將赴燕或奉命在外呈辭受由之時下直
與入來爾拜單子依內閣例自本營書呈為白齊

一從事官及堂上堂下將官受由并以呈辭入 啓為白齊

一將官將校身病親病限一朔限滿病不差則更為呈辭而校將
本則手 親親則遠道三十日中道二十日近道十日掃墳等各
項由暇除往還留七日為白乎矣若無故過限則該廳首票
旨論勘為白齊

一陞戶軍歸親受由間并許送而除往還遠道十八日中道十
五日近道十日而若過由限至二十日則裁關促現還現後

計其過限日字三日內勿論四日後每三日罰番二三日十
日後每一日決棍一度過限料布亦為還收為白齊

一在京將官毋論名節與常時或有掃墳之行則一舍以外呈
由出去以內微 稟出去前帥將校不用此例 將校軍兵除非經宿之
地言送該廳兵書裁廳將領及次知 從便往來為白齊

一馬步軍兵中如有市業或手才者許其防番而防番時先告
將領後呈訴大將以為粘 啓為白乎矣三朔內一次入番
以嚴圍束之意為白齊

一軍兵等遭故受由限百日病由限十五日為白乎矣病不差
則更加十日以至十次滿四朔則除案詳提或雖四朔不為除案 為白齊

一拜峯露梁別將或有請由之事報于大將所則大將依吏兵
曹粘 啓例以粘目稟 旨給暇為白齊

地為白齊

一別武士私馬段各給添價錢二十兩為白乎矣還轉或汰去則本錢次傳掌以為立馬之資善家計精給發納為白齊

一各哨色上馬則每於朔末各該將領及次知點視後有無頃報于大將所以為粘 啓為白齊

一壯勇衛所持私馬無論新納與改立大將看品定限限則軍宜定給使之喂養調馴期於肥走而萬一有限後瘦瘠之弊當者棍汰牌頭決棍為白齊

一輜重上馬四十匹每匹添給官錢二十兩使之責立而一次上下之後雖致斃使渠擔當改立為白乎祿一年內六次則

無價使役六次外則依定式給料見是為白齊

一別武士善騎隊輜重上馬官添價條區別修成冊一件分置各該所一件留上本色以為這這修正之地為白齊

一母論將官將校新納馬看品時服色段具軍服舉行段馬為時間為白齊

一善騎隊中貧殘屢改馬匹者有濟焉 特給之 命自大將所分付別將令該將採察公論該哨旗隊總着保後轉報大將所則大將別為廉探考其虛實粘 啓為白乎矣如或循

私之弊從後現散則該將領啟 聞嚴處為白齊

給仕

一叅下知穀官教鍊官仕滿六百日後報兵曹付司果為白齊

一壯勇衛中各軍門還轉人若因 特教還屬則前仕通計為白齊

一將官將校之罪汰自闕復屬者服闋還屬者并前仕通計為白齊

一各廳久勤中服闋還屬者雖當首仕以副仕施行為白齊

一將校中以父子同廳移差他廳如或還差則前仕通計為白齊

一兵曹及三營教鍊官換差知穀官則就本仕半減換差教鍊

日為定為白齊

一善騎隊納馬改馬初限四十日再限十日三限七日為定各

哨色卜馬軍納馬亦同此例為白齊

一將校及善騎隊馬價以百兩內外為定為白乎矣如是定式之後若或優數加給欺瞞來納則犯者嚴棍汰去當該將領

及牌頭另加懲治為白齊

一軍馬試馳擇捧專取其能走而已雖或健實可合馳突是白良置俗稱步才之馬一切勿捧至於馳試時不入於蕩路者惟在來頭馴制之能否泰酌許捧為白齊

一各樣試射及試取時毋得換騎他馬自有定式馬匹之有頃

預為懸註於試記以為憑考之地為白齊

一未及納馬之前全然闕立事係疎虞雖借馬姑立毋至執頃

論罪為白齊

一春秋馬點大將主管設行馬之一肥能走者分等施賞賞格條有上痕瘦瘠者罰番或決棍為白乎矣並票賞格首舉行定

日喂養後取來看需如不肥澤則別般論罪為白齊

一善騎隊官馬每哨毋過三十匹以八年為限限內致斃者徵出改立為白乎矣因公致斃計其程過五十里俾上致斃者

所致斃者限滿致斃者并給添價錢五十兩使之改立仍作

官馬為白齊

一私馬因公致斃及再次致斃者給添價錢五十兩使之改立

依官馬改限以四年為白乎矣限內或還轉汰去則未馬還

納限後仍作私馬為白齊

一善騎隊官馬有病還納者給添價錢四十兩使之改立而一次受價後如非公致斃則更勿添給使渠責立仍以官馬

施行受價後若再次改立則以私馬施行為白乎矣既以私

馬施行則除案或還轉時勿為傳授為白乎祇病馬還納時

依還司僕例以外營大門為限為白齊

一官馬若瘦瘠體少散賣而自備添價改立者以六十兩為限限內如有還轉或汰去者自備添價外散賣本錢還納身故

者及限後勿論為白齊

一勿論軍馬卜馬新納後馬主處給價定日各該將領及次知

別為錄置當其定日招致馬主問其準據與否如未準給從

輕重勘罪後更為定日準給為白齊

一軍馬致斃者先告該將領次告大將所則大將使將校登時

摘奸詳錄毛色相準於馬案後使之改立為白乎矣官馬則

皮張現納為白齊

一善騎隊私馬致斃人中或有才藝出類而負不能改立者不待再次之限雖初次大將別般廩探後票旨給官馬馬才

哨納馬軍取才時居首最高者一體給官馬以為激勵之

刀鎧劍旗槍上下以上六技取三技難準三技文職未入為格則以三技許施

白齊

一各所各哨書字的取才則該將領以能兵書有文筆入試取
哨書字的則把撫備實預差轉報大將所則大將粘啓
哨官眼同試取則以可合者抄齊自

一八色書牌則該次知知般官以文筆試取微 票差定為白

齊

一鄉武士所在各邑下送兵書使之勸獎肄習沒卷後即報本
營教鍊官窠取才差定為白齊

一伺候軍陞元軍望報時該次知姓召載錄於名上以為憑考

之地為白齊

一額外壯勇衛及開散壯勇衛報仕時別取才每年五至或六
臘月分兩次設行而試官則大將主試參試官二員從事官
及堂上堂下將官中列書受 點備三員試取後開散之入
格者從久勤次第修報額外之入格而滿六朔仕者一體修
成冊移送兵書為白齊

一額外壯勇衛新差中如有已經初仕者已越將鬼取才者更
勿別取才四等試射時能射鐵箭一百二十步以上者賞
格粟 旨若蒙 除職承傳則亦勿赴試於別取才

為白齊

馬政

一哨官知般官教鍊官壯勇衛別武士善騎隊納馬則必有
閑隄馬改馬同土產馬體大健實者亦為許林 大將者
哨官知般官教鍊官雖無閑馬一體許林
品擇捧為白乎矣壯勇衛馬則每於中日監試將官試馳准
於漏水後轉報善騎隊馬則該將與別將先為看品試馳一
體轉報則大將仍請烙印因公論閣 為白齊

一母論將官將校軍兵新差後納馬日子定給三次而初次不
納則納馬後罰番二三日再次不納則決棍三次不納則決
棍除料量宜定限督納又為過限則嚴棍汰去為白齊
一將官將校納馬改馬同 初限二十日將校三 再限十日三限七

取才

一額外壯勇衛取才規矩段鐵箭柳葉箭小布騎驚武經七書

從自額五技中策首舉行為白齊

一和毅官取才窠則無論本營與他營必以可令人自該廳各薦一人兵學指南八編背講試取以優等入差定教練為白齊

一和毅官閑散窠則必以有地閑履歷人受薦為白乎矣如無可合者勿拘疊薦教練為白齊

一壯勇衛行伍窠取才規矩則木箭三天二百四十步伐小布一巡走一走伐騎驚一次力一力伐青龍刀柳葉箭一巡

上以兵學指南講陣粗以上五技取三技差定為白齊

一壯勇衛閑散取才規矩則鐵箭三天一百步或伐青龍刀木箭三

矢二百四十步伐小布一巡柳葉箭一巡騎驚一次武經七

書中自願一書五技取三技差定雖軍三技講本入格別勿

多則從納馬次第如有為白乎矣該廳受薦時必以有地閑

身手才藝可合者具三保捧軍署經大將後應試為白齊

一壯勇衛取才窠規矩則鐵箭三天一百十步柳葉箭一巡一

中片箭一巡一中騎驚一次一中兵學指南講陣粗以上五

技取三技差定難準三技鐵箭未入格則勿以三技許施為白乎矣自該廳受薦

時禁軍各番中如有年淺自願者具三保捧軍署於各技列錄署

經大將後應試依閑散窠取才例施行為白齊

一別武士取才規矩則柳葉箭片箭各一巡騎驚一次兵學指

南講陣試取者自願六兩取優等差定為白乎矣一次以武

藝為主二次以講為主武藝為主則只試講藝為白齊

一鄉武士能通兵書者別武士取才窠取才時亦為許赴為白

齊

一善騎隊取才時馬才則以上下以上入納馬填充別技則柳

葉箭一巡二中騎驚一次一中別技一次從自額上下以上

鞭驚六中四技取二技納馬填充為白乎矣本營軍有科者

從願許試巡軍不柳葉箭一巡二中騎驚一次一中交戰月

一將官將校軍兵之沒技者技藝起等者依定式施實見施為
白齊

一凡中日時雖蒙祭相值勿拘設行為白齊

一中日設行與頃 稟皆以文蹟舉行為白齊

私習

一善騎隊每朔三次內一次輪旗拜習一次該將領合三旗拜
習一次別將合三哨操練二十為白齊

一步軍各哨每朔三次內二次哨官各自率領拜習一次把總
合五哨操練五十為白齊

一八色軍及各所標下軍每朔三次排日各習其藝為白齊

一隆冬三朔至臘歲暑兩朔六上馬步軍私習並依例停止為
白齊

一上番鄉軍每三月初中日試放布陣設行於燕尾亭而該哨
官領率舉行為白齊

一牙兵則每朔一次以鳥銃試放於城外為白字矣私習停止
時一體停止為白齊

一馬步軍合操時該將領前期一日稟 旨舉行執操教練官

一員長望差出監操和毅官二員微 稟定送別武士段本
所外每一司式輪回恭俾為白字矣大將所則勿論服色則

別將把總平天翼佩劍將官將校並以軍服只佩劍為白齊

一善騎隊左哨馬才右哨別技使之全習而右哨之馬才左哨
之別技間多有之六臘月計劃時左右哨馬才別技居首各

一人抄出施賞柳葉箭騎寫一體拜習亦為施實為白齊

一馬步軍技藝每於四季朔各該將領各別考試後加鍊技數

列錄報來修正案冊為白齊

一步軍三哨每哨教師一名新鍊軍五名抄定除舊逐日拜習
祈寒感暑四朔段每朔十次為之其餘八朔課日鍊習為白

乎祿校卒教官三人 教帥三名 新鍊軍十五名黑心米段自餉色依式例上下
為白齊

一四等試射前仲朔母論能技十八技軍合試各技能技軍中

拋棄勢銳者降付十八技軍十八技軍中慣熟最勝者陞付
能技軍其餘稍優者減給其番次全不拜習身鈍手生者各

別懲治以為賞罰之地為白齊

捧舉案為白齋

一母論將官將校馬步軍兵直赴會試之類增式 殿試前臨時稟 旨定日子後依 書下規矩別為試取而

歌不心用此別入格則付 殿試分付兵曹捧承 傳不入格則初

試帖文現納文周送于兵曹以為相考舉行之地為白齋

一凡試射時試記及入格別單並自軍色舉行為白齋

一別設軍職祿二窠壯勇衛四等試射時入格第二人付護軍

第三人付司果為白齋

一凡大小試射畢試後試記自軍色粘連蹄印 啓下紙筒上為白乎矣如或遲滯則當該監官及該吏各別重勦為白齋

一間年大比較時鄉軍所在邑下送將官與地方官眼同試取

而水原則留守非大臣即崇品重臣武將本營將官以奉

命之人與之同坐自多相妨難便之端與本府中軍判官舉

行為白齋

一付料試射時如無鐵箭應試人則勿以柳葉箭矢數通計付

料遠射人各別求得而除留料米以為鐵箭遠射人施賞之

資為白齋

一額外壯勇衛之習射別將既已主管勸課鐵箭之能射百步

者別將親自試取後報于大將所懸錄步數於軍案及試記

以為四等試射時憑考之地為白乎矣其中如有屢年肄習

終未成就者鐵箭伐騎葛限三巾以上入格許赴小布為白齋

中日

一每三日入直將官將校及馬步軍兵中日試射設行時別將

主試外營入直把總參試別入直哨官直房入直哨官亦為

輪回參試為白齋

一規矩段哨官和營官統長教鍊官柳葉箭一巡壯勇衛喜騎

隊騎葛一次別技一次 壯勇衛開二次別技伐騎一夫一次善騎隊左哨開二次別技伐騎一夫一次

內入番各營軍技藝一次別入直及直房哨軍鳥銃三放試

取為白乎此外營哨軍技藝一次入直堂上將官試取北倉

入直軍技藝一次入直哨官試取後試記自大將所粘

為白齋

講為白齋

一能麼兒軍雖良人如有有根着好身子能通講俾者知設官教鍊官別武士書牌中具保族薦舉則大將把摠眼同抄擇依待并軍例定額錄置每於能麼兒講時中飭考講俾存勸獎廣選之意為白齋

一別武士講俾每朔該廳射會日同為設行每年六臘月計劃而賞罰段依知設教鍊官例為之為白齋

一將官射會每當威署特給大將之年老雖有處暑前始傳之命各廳則如例設行大將別將俱非年老則將官射會依式為之為白齋

試射

一四等賞試射每四季朔初一日大將以等試射當朔之意票旨朔日定下後前一日票軍令服名見詳條為白齋

一提調大將以下將官將校具我服壯勇衛軍服為白乎矣壯勇衛之秋等別技時善騎隊之冬等別技時俱為甲冑為白齋

一大前排待令子延生門外旗鼓待候於明光門外春秋時以旌入衛言武欄後以牙兵全數舉行馬步軍兵青陽門內札

駐大將率大前排俾頭跪迎從事官隨後無軍將領及前卿將官在大將後祇迎提調監官別付料壇下祇迎為白齋

一試官則提調大將從事官及時前卿堂上堂下將官受點恭試為白齋

一規矩則將官將校壯勇衛牌頭柳葉箭一巡閱良及弓矢入小布一巡試取出身弓矢柳葉箭壯勇衛殿春等騎萬一次秋等別技一次試取夏冬等柳葉箭三巡騎萬一次試取到善騎隊殿夏等柳葉箭一巡騎萬一次試取到冬等馬才或別技從自願一技試取為白乎矣春秋等臨時票旨舉行各哨色軍兵殿夏等技藝一次冬等馬銃三放試取巡牢則夏冬元等外春等加試技藝一次哨軍能技者每哨二十名式每等亦為加試一次八色軍中有願射者砲代許試十八般能技

者限十五名教官前期抄擇春秋等試射別為應試為白齋一監劃監的執鼓執鎗各差備以壯勇衛別武士付料武士舉行內外呼召訓練院舉行衛將所書貢十名軍士二十名冶匠九名并自軍色捧甘待令為白齋

一都提調陪旗手殿依各色軍例夏冬等許令赴試為白齋一賞格則加資直赴陞叙除職邊將除授護軍司果魚司僕馬帖等別單啓下院分付各該司祿案以應受人捧甘兵當標木自木簡箇弓箭以內弓房所在票旨取用木

布箭竹以餉色軍器色所在取用為白齋一額外壯勇衛鐵箭未滿百步者小布勿許赴試大元如有能

講射

一諸將官講射每朔三次隆冬歲暑每朔二次設行而柳葉箭十巡片箭

三巡二三四八九十月片箭一巡片箭兵學指南面講背陣堂上并五十

除講陣射則有賞無罰小布貫革間次輪行為白乎矣別將主試大將

時或監試為白齋

一和毅官教鍊官講陣每朔兩次設行而大將主試兵學指南

八編中抽姓背講未及肆習者參記布陣亦為試講統兵除

本仕牌將只面講背陣射則以小布十巡各該廳首監試為

白齋

一壯勇衛講陣每朔一次設行而取才人外面講背陣大將主

試而射則入番時以小布十巡每日設行出番時以騎為一
次別技一次砲放一次只中日設行年終計劃射講各為計劃居首
施賞居末施罰為白齋

一別武士射會每朔兩次設行而以小布十巡外營入直堂上
監試為白齋

一將官講射則年終計劃居首別單書啓知擬官教鍊官講

陣則每季朔計劃居首施賞居末論罰未准次則勿論年終都計劃

居首別為施賞居末論罰為白齋

一善騎隊射會隆冬感暑冬而至臘月外以柳葉箭三巡騎為

一次馬才一次別技一次逐朔為之教官監試春秋各抄射

技居首一人施賞為白齋

一各哨書牌能麼兒兵學指南每朔兩次旗隊總律法開卷四孟朔

各一次設行而元軍及待年軍中能通兵書者抄擇每於書

牌考講日同為試取待年軍則六臘兩等各抄居首一名直

陞元軍為白乎祿元軍與書牌通同計劃施賞為白齋

一旗隊總能麼兒行首所任知毅官主管舉行知毅官書牌及

元軍待年軍講會訓長知毅官主管舉行知毅官書牌及

居首減番居末罰番為白齋

一各廳射會依宣傳官廳例勿拘齋日為白齋

一射講之規不必盡用他營之例本營則雖堂下將官年滿除

肄陣

一肄陣以四孟朔初十日設行為白乎矣若有事相值則以二十日或三十日退行若鄉軍上番則一體恭操拜峯露梁兩鎮牙兵段徵發赴操票 旨舉行為白齊

一前一日大將以平天翼佩劔 稟軍令試射 為白齊

一服色段提調從事官監官別付料具戎服大將以下至將官將校具軍服統長壯勇衛善騎隊春冬則甲冑夏秋則軍服為白齊

一前排待令于延生門外旗鼓以清道圖擺列于明光門內馬步軍兵札駐于青陽門內大將從事官率前排跪迎于壇下

左邊提調監官別付料祇迎于壇下右邊前啣將官若進參則在大將之後為白齊

一大駕入軍門 陞壇後提調從事官監官別付料先行恭謁拜曲知穀官 稟小吡打開門後大將知穀官教鍊官衆現體軍升帳升旗聚官旗聽發肅靜掌號下營等事並大將啓稟行營以下知穀官 啓稟舉行為白齊

一行營分路疊陣方陣收營散操等節一依場操程式肄習馬之鶴翼陣也陣步軍之五行陣玄武六花陣馬步軍五相追擊亦依第記詳習為白齊

一軍兵之月三行操場操之合鍊分鍊乃是各營同規而本營之每月旬習初以輪旗中以輪哨終以合鍊則其所鍊習非

此各營之博而不精而今則騎步已成一營之制兵總亦過五千之數則不可不行合軍操場之法臨時稟 旨舉行為白齊

調裝該將領亦令前期下送于聚軍處為白乎矣或畫俸所或某邑某

處器械軍服則知般官亦為照檢領往使之分給陪應軍衛某處解嚴放送等

一拜陣時拜掌牙兵露梁牙兵徵裝赴操照時稟旨行關各

該鎮將使之率領來赴為白齊

一外營入直軍除令稟無軍物解入時十名以上則入直哨

官營無事轉報時解入名數及時日措語添入以為憑信之地為白齊

犒饋

一歲首則闕內入直軍兵犒饋時本營內入直及外營入直將校軍兵只當日出入番一體犒饋為白齊

一陵園行幸後隨駕將校軍兵設犒饋而依他營例以乾

犒饋舉行為白齊

一城內外動駕時隨駕將校軍兵有特教則給饒氣次

經宿時有特教則饋粥而或以乾饘上下為白齊

一犒饋每貢人名散炙一串重五斤白餅三箇第一斗熟太三

合盞三夕明太一尾酒三盞為白齊

一乾犒饋每貢人名各錢二錢七分饋粥各錢五分饒氣次錢

三分為白齊

一犒饋則提調大將以下將官將校貢役軍兵并為磨鍊饋粥饒氣次與犒饋有異將官勿論為白齊

一隨駕軍校貢役饋粥饒氣次區別衛內外磨鍊上下衛內五分衛外三分饒氣

結陣陣上而有衛內外軍兵一體饋粥之命如陵行

園行之時則除非陣外待令者并以衛內側上下允係陣

外待令之類無論城內外舉動又無論饋粥與饒氣雖有

衛內外并為之命勿為舉論為白乎矣壯勇衛則係是侍

衛之將校雖在衛外以衛內施行當入衛內之人或

出衛外衛外之人或入衛內并從實施行為白齊

一動駕時將官將校軍兵等到未到實數各該將領轉報大將
所以為入 啓為白齋

一行幸時拜率別將率牙兵二旗留守于本鎮為白牙矣若值
東郊 動駕時則別將率旗鼓祇迎 沙阿里 通衢伏

兵一處後峰斥堠一處以牙兵將率領舉行 詳見該鎮條 駕過地
方後並待 令票罷送為白牙於若西郊 動駕當日還

宮時則留鎮斥候伏兵並置之為白齋

一城內外 動駕時參陣實數算子及軍餉也貢役成冊區別
衙內外修正 啓下後如有加減之事即為付標饋粥與橋
饋時照此磨鍊上下為白齋

一宮城扈衛時各營皆有信地而本營則無元信地臨時稟
旨舉行為白齋

徵叢

一每年 園行時前期行關於外使以前司軍機 臨時 徵叢
定監色率領來待于露梁越邊該將領 北總哨官 自京下送使之

領軍為白牙矣軍服器械則和般官照檢領往使之分給後
仍為後廂 大駕還至露梁 行宮待 令票放送器械軍
服和般官落後遂收為白齋

一外使所管外營一司軍每年 園行時外使稟 旨調叢前
期待令與隨 駕軍令并環衛於水原 行宮待 回鑾以
令票仍即解嚴為白齋

一陵行時 駕過地方所在鄉軍臨時稟 旨行關徵營使之

一上番軍入接於外營公廨樂鑼各種自該色上下為白齊

一上番軍所着軍服鐵笠一應器械並自本營措備當番時出給下番時還納而下番當朔初一日各其領軍哨官同出郊

外南交江頭東至茶基硯西至慕華館點考以送為白齊

一上番時旗隊總巡點後來待 差備門外單子間 安下番時亦同此例為白齊

一鄉軍抄定時不善舉行如有公私賤冒入之事則道臣守令以下論勘一依陞戶抄上時例自本營草記請勘為白齊

一鄉軍上下番時器械服色從事官與該色監官及該次知眼同抽柱摘奸有無頭自大將所粘 啓為白齊

陪扈

一城內 動駕時提調大將從事官進恭於百官班知般官教鍊官除本仕牌將 衛內陪扈壯勇衛百人

若未滿數則前中充數付料武士未付武士中如有自願者一體充數別抄頭局分左右作行城外則

槍鉤軍尾局以五馬隊作行為白乎夫大將率領陪扈旗鼓既臨時稟 旨舉行為白齊

一城外 動駕時提調從事官依班次圖陪扈監官別付料既槍鉤軍攔後外陪扈別隨 駕將官及統長知般官各差備

教鍊官除本仕牌將既攔後內陪扈馬步軍既壯勇衛尾局以五馬隊三隊平行各該將領率領作行為白齊

一動駕時槍鉤軍以哨軍中輪四三十名 擡後軍殿座 若並為

舉行時只槍鉤哨官稟 旨長望差出與教鍊官一負一體檢飭攔後則以該次知知般官率領中飭只攔後舉行之時則哨官一負長望差出知般官教鍊官不為舉行為白齊

一城內外 動駕時別隨 駕將官稟 旨長望差出為白齊

一城外 動駕時班次檢飭將官一負知般官一負教鍊官一負稟 旨長望差出壯勇衛二人亦為擇定一體檢飭為白

乎於柴馬草次知將官一負軍糧次知知般官一負時隨行亦為長望差出為白齊

一經宿 行幸時守 官把摠一負稟 旨差出如無時任前帥為之率

別武士二人書字的一名標下軍六名前排 行次 畫則壯勇衛

廳夜則通化門內留待管轄建陽以東為白齊

一城內外 動駕時則守 官監官一負稟 旨長望差出知般官一負自該廳分排并守 官經宿 時同付料牌頭率付料武士代直於壯勇衛廳為白齊

一城外 動駕經宿時則各處代直與各差備柴馬草次知 察將門待令并以前仕還轉及納馬入中長望稟 旨差出當日還為白

乎矣外營代直以把摠哨官各一負別武士武士各一人替直各所武士則知般 官隨代負隨 駕外老殘軍兵并留營如不足則

以壯抄軍量宜加定為白齊

為待令傳令費傳等事專管舉行為白乎矣別武士則晝直夜出為白齊

一壯勇衛牌頭一人率壯勇衛三十五人入直該廳立馬則每日二匹輪回立待於丹鳳門宣仁門外為白齊

一別武士二人率內入直禁衛軍十名入直於建陽門把門等節依節目舉行為白齊

一哨官一負率哨軍二十名鄉軍上番則鄉軍五名京軍十五名入直於集禮門把守等節專管舉行為白齊

一別將把總中一負入輪哨官一負知穀官一負別武士一人率哨軍三十名鄉軍上番則鄉軍一旗京軍十名書牌各一名帳幕軍六名

別將入直則後所標下軍四名○把總入直則後所標下軍三名庫直一名軍士一名入直於外營為白齊

一善騎將領軍哨官中一負入輪付料武士二人率善騎隊二十名文馬中日八匹初終日六匹哨軍十名入直於直房鄉軍上番則鄉軍五名京軍五

所標下軍一名加入為白乎矣宮牆巡綽則入直哨官及付料武士二人分更舉行若善騎將入直則以外營入直哨官督行為白齊

一無軍哨官一負率塘報手五名哨軍六名入直於北倉守直警巡另加嚴飭為白齊

一都提調陪旗手巡警燈籠軍通同磨鍊每三日六名輪回入番該所為

白齊

一提調陪旗手巡警燈籠軍通同磨鍊每三四名入番該所為白齊

一大將所教鍊官二負別武士二人付料武士一人率巡軍各七名燈籠軍二名牙兵三名陪旗手四名每三日入番該所為白齊

一從事官陪旗手巡警通同磨鍊每三日二名入番該所為白齊

一各處入直將官將校軍兵等省記各該將領及次知修正着卿報于大將所則自大將所粘啓為白齊

一各處直所房北倉有無事每三日轉報則大將粘啓建陽門每日轉報則月終都粘啓為白齊

番上

一鄉軍上番以一哨兩朔為例自九月始番至二月終番為白乎矣秋冬二番以右後司輪回徵番春一番以前左司一朔式輪回徵番為白齊

一徵番則每前期三朔初一日自軍色行關畿營使之知委該邑前一月晦日京中逢點當月初一日立番為白齊

一前司則水原既陞留府且兼外使不為管轄於畿營直關外使使之親執點考後以從事官領付為白齊

一上番兩朔之間遭故有頓者發時發關知委代定仍為上番若至終朔望後則勿為上番為白齊

時以為印冊肄習之地為白齊

形名

一大旗幟司哨旗隊認旗之制度方色並依圖式造用為白齊
一招搖旗黃心黃邊畫七星雲氣桿高一丈九尺飾纓頭朱絡
雞尾 行幸時肄陣時用以召大將為白齊

一肆關旗黃心紅邊大書肆關二字較藝旗黃心紅邊大書較
藝二字每於大 殿座本營舉行時出用為白齊

一內使認旗黃心紅邊雙黃帶手旗黃心五色聯帶書壯勇內
軍司命為白齊

一統長認旗一面黃心黃邊黃帶只肄陣時出用壯勇衛左右
列旗二面 左藍心黃邊 右白心黃邊 行幸時大比較時肄陣時賞試射時

出用為白齊

一號令旗幟肄陣時大比較時夏冬等試射時三十八面畫數
出用 行幸時春秋等試射時以二十面出用壯勇衛殿才
時以入番軍十六名出用為白齊

一吹鼓手大旗幟全數出用時以四十二名舉行其外以折半
二十名舉行為白齊

一本營軍制倣用國初之制及禁營初設時別將承接之例中
軍不為設置是白如乎若值大將合操之時別將當行中軍
之事手旗段依龍席將左右將時例以純黃色無字號定式
貫耳令箭亦為造給而令箭錄只刻營號為白齊

入直

一監官一貢率書吏一人庫直一名使令文書直房子各一名
入直該廳每日早朝收接各所文書票 旨判下仍察畫仕
為白齊

一統長一貢除本仕牌將三貢入直該廳應行事務出納舉行
為白齊

一知穀官二貢率牢子八名巡令手八名吹鼓手十名細樂手
二名大旗手十六名燈籠軍四名牙兵五名書牌各一名入

直該廳畫仕知穀官一貢每日待開門入來當日公務與入
直知穀官同為舉行教鍊官二貢 一貢直房 出夜直 別武士一人亦

軍器

一有軍不可無器械有器不可無犀利九軍器製造之不如法者自有其罪各該工匠姓名錄置冊子器械亦藏于該處其出用之時隨其有頃考其年條查得該匠從重嚴治以示重軍物之意為白齊

一馬步軍所持銃刀別成案冊一件內入一件留上大將所一件留上該庫有闕即時這這修正為白乎矣環刀則刻壯字及重幾斤刀長幾尺銃則刻壯字及重幾斤長幾尺製造月日字號第次俾杜換易之弊為白齊

一馬軍官授軍物段短鳥銃環刀火藥五兩鉛丸三十箇長箭五十箇

箇片箭十五箇筒兒鞭棍油彩步軍官授軍物段短鳥銃火藥二兩鉛丸五十箇衝竹丸囊耳藥筒細繩席針油彩火兵則加授角耳肩擔各色標下軍則只授銃刀藥丸衝竹油彩則與兵軍同牙兵則加授山行刀藉足鐵吹鼓手各所吹手則加授吹打差備細樂手則加授樂器為白乎矣毋論馬步各色軍所受軍物次次傳授如有闕失者即為徵出以給為白齊

一堂上堂下將官官授軍物段鞭棍朱絡兵學指南和教官教鍊官別武士官授軍物段鞭棍朱絡貝纓和藥鍊官則無兵學指南次次傳授為白乎矣闕失者并徵出為白齊

一壯勇衛官授軍物段甲冑校子弓長箭十五箇片箭十五箇筒兒

短鳥銃火藥五兩鉛丸三十箇鞭棍朱絡油彩貝纓傳授等節

依將官例施行為白齊

一新件甲冑限十年舊件限七年而限前破傷者科罪見飭令徵出限外則以他件換給為白齊

一弓箭銃刀槍棍等器姑無定限而因公破傷者俾上破傷者待該將領轉報換給為賊見失者借入闕失者并科罪見飭令徵出為白齊

一鄉軍每隊鳥銃二柄式達授使之習故上番時仍為持來為白齊

一兵學指南板六十陣圖板八十武藝通志板二百十剗劍藏

一 堂上將官有闕則大將稟 旨舉行堂下將官則該廳所任
來告監官卽為轉 稟各廳將校有闕則該廳稟 旨舉行
為白齋

一 監官有闕未差之時或因公出他受由之時則假監自該廳
長望差出別付料則監官中稟 旨兼察知穀官則亦自該
廳長望板稟 旨差出為白齋

一 藥房鍼醫有闕未差之時 勅駕相值則內局醫官中稟

旨兼差畫真寫字官則內閣差備待令中亦為兼差為白齋
一 拜峯露梁別將受由之時則假將差送自大將所稟 旨舉
行為白齋

軍籍

一 軍案者一軍之版籍所係至重不可疎忽印出作冊隨印套
署者重其事也封置各所者防其奸也況本營事體與他自
別修正時一字一劃無或擦改付標時一日一時毋或差違
以存軍籍至嚴之意為白齋

一 軍案統案馬案各以四件二件 內入 騎四條正 一件大將

所上一件知穀官廳上為白乎矣 內入件則自大將所每
朔一次修正入 啓又一件仍卽請出次次修正以來則軍
色監官考準入 啓大將所件及知穀官廳件各哨色書牌
這這修正而知穀教鍊官次和着檢為白齋

一 軍籍及腰牌並書年歲容貌疤記及保族入姓名入屬年月
母或相左為白乎矣 腰牌無父名 老除時以此相準以為除籍之
地為白齋

一 軍案則將官將校馬步軍兵及各色待年軍并錄統案則壯
勇衛未付武士馬步軍兵并錄馬案則哨官以下將校戰上
馬并錄為白乎矣不善修正致有執頭則各該書字的輕則
決稅重則決稅除案當該監官和穀官教鍊官軍色書吏亦
為分輕重論勘為白乎矣每式年一并改修正為白齋

一 鄉軍案一依京軍案例自該邑修正一件留置該邑一件報
于畿營則自畿營更為修正上送本營與京軍案同為入

啓為白乎矣式年改都案時亦依此例舉行為白齋

一 母論京鄉軍有頃代定不待式年之限隨卽付標修正為白
齋

一 軍案馬案每於四等試射時並為待令軍與馬使之憑驗為
白齋

一 鄉軍登科後修正未付案為白乎矣以鄉未付書之為白齋

白齋

一畫員寫字官掌繕寫圖畫之事凡係入 啓冊子印札繕寫

之役旗幟施彩等事專當舉行為白齋

一監官之所掌每年臘月提學哨官之領軍和轅官之次知教鍊官之

差官並以六臘月換掌監官長或書入哨官知 能為白齋

一書吏掌文書餉色則各其所掌捧下會計京外文牒無不句

管而可考者一一分勝於冊子其他年限制例前例之悲後

考據者一體詳考舉行為白平祿軍色則軍政所管大小文

簿試射放時試冊試軍軍案馬案統案及料准成冊等各項

文書專當舉行會計色則餉色書吏中劃出二人一年六朔

式輪回舉行為白齋

一餉色書吏庫直換掌段每年七月初一日列書各所掌劃出

於餉色提調軍色書吏既無各庫分掌只軍案料準救療等

色劃出於軍色提調輪回舉行為白齋

一書吏二人庫直一名魚差忠廳本營錢穀之在該廳者均管

舉行為白齋

魚寮

一餉色提調有闕或奉 命在外受由下鄉之時則軍色提調

魚寮為白齋

一大將有闕則虎符傳令牌段遭轉則親納于故院罷削則使

入直將校發時封納手旗令箭印信軍籍依各營例教鍊官

舉行為白齋

一大將或奉 命在外之時則虎符傳令牌段往復故院奉

特旨舉行印信軍籍等舉行依各營例為之為白齋

一從事官有闕或奉 命在外受由下鄉之時則假任以堂下

將官中長望票 旨差出為白齋

憑信之地為白乎祿申飭各哨色即為會錄俾無遺漏之弊
為白齊

一監官掌出納文簿傳通 命令凡係 啓稟文書無不照檢
為白乎矣捧納時當日晝仕監官書某色餉色軍色軍需色某

日某時於紙邊後署署 判下後亦為署後邊以重事面
為白乎祿分掌各庫每年輪回而糧餉色則錢穀去來大小

文簿專管舉行鄉軍色則鄉軍接濟資係式例專管舉行會
計色則各所會計都錄抄簿專管舉行軍色則軍案及各樣

軍物器械服色等文書專管舉行為白乎祿此外各庫隨其
兼帶一體照檢為白齊

兼帶一體照檢為白齊

職掌

一餉色提調掌錢穀各所會計大小粘目無不句檢為白乎祿
各樣軍需之拮据諸道屯田之察飭亦為句檢京外關牒單
記回 啓等事主官舉行為白齊

一軍色提調掌軍務戎器各種之捧下會計本邑所管大小粘
目京外關牒單記回 啓等事一依餉色例無不句檢舉行為
為白齊

一從事官既兼軍餉色錢穀捧下軍物磨鍊無不專管舉行是
白如乎凡係磨鍊文書酌量多寡如有意見紙尾論列軍物
器械旗幟軍服之新造者一省品後使之刻識踏紬以為

一別付料掌叩籌各所捧下會計各哨色物力所管文書無不
考准為白齊

一額外壯勇衛掌傳 命信箭差備本營試射時 殿座時因本

營事 殿座時傳 命差備二人信箭差備二人長望劃出專當舉
行為白齊

一和穀官即軍務次知軍中所管大小 啓稟臺上執操等事
專當舉行為白齊

一藥房鍼醫掌軍校看病救療之事軍校中藥料之不能自力
辦備者這這製給必待大將所題給文蹟舉行為白乎矣調
治藥物外凡係北劑之事係時急者不待文蹟即為上下為

以辭墜反面之義還往皆以單子問 安承 批而退為白齊

儀節

一提調之於大將資級相等則抗禮路上相逢則大將讓路隔等則大將先拜路上相逢則回馬大將雖秩高於提調亦為抗禮別將把總善騎將進前拜則坐答哨官和毅官壯勇衛牌頭楹外拜則坐受教鍊官壯勇衛別武士楹外拜下廳立言語呼汝為白齊

一大將之於別將把總善騎將進前拜則坐答哨官和毅官壯勇衛牌頭楹外拜則坐受教鍊官壯勇衛各所別武士以下楹外拜下廳立言語呼汝為白齊

一從事官之於提調大將用各司堂卽例別將把總哨官互相

抗禮和毅官教鍊官壯勇衛進前拜則坐答各所別武士以下進前拜則坐受路上相逢則回馬為白齊

一別將把總把總於別將若隔等進前拜則別將答拜互相抗禮哨官於別將雖非該司進前拜則坐答路上相逢則下馬善騎將於把總進前拜則答拜路上相逢則回馬和毅官教鍊官壯勇衛大將所別武士進前拜則坐答各所別武士楹外拜則坐受路上相逢則下馬該所武士楹外拜下廳立言語呼汝為白齊

一善騎將之於哨官先拜則答拜於和毅官先拜則答拜路上相逢則回馬為白齊

一哨官之於各廳將校別無相關互相敬待為白齊

一和毅官藥房鍼醫之於教鍊官壯勇衛先拜則答拜於各所別武士以下先拜則坐答為白齊

一壯勇衛牌頭付料牌頭之於各其率下進前拜則坐答為白齊

一教鍊官之於各所別武士用和毅官之於教鍊官例為白齊

一監官別付料之於都提調提調只新 除日刺現於大將既非屬官新 除後往現於堂上將官以下視資級互相敬待於和毅官教鍊官壯勇衛先拜則答拜於別武士以下先拜則坐答為白齊

參謁

一都提調提調從事官新 除日以時服進詣 差備門外單

子問 安承 批而退為白齋

一大將別將把總新 除日并以戎服來現而大將現於櫺內

別將把總現於櫺外為白齋

一善騎將監官哨官額外壯勇衛別付料新 除日并以戎服

來現而善騎將監官現於簷階哨官額外壯勇衛別付料現

於月臺為白齋

一知穀官教鍊官壯勇衛牌頭盡負寫字官藥房鍼醫新差日

并以平天翼佩劔參謁於月臺下壯勇衛別武士付料牌頭

亦以平天翼佩劔參謁於庭中為白齋

一冬至正朝除夕 誕辰都提調提調大將以下皆行參謁之

禮而提調從事官時服大將別將以下將官將校戎服分東

西定班次後 餉色在東 軍色在西 即呈問 安單 各廳單子 前期修正 參謁臨

時提調大將以下各班以下參謁而提調大將於櫺內從事

官別將把總於櫺外善騎將拜奉別將監官於簷階哨官別

付料統長於月臺和穀官教鍊官藥房鍼醫盡負寫字官於

階下壯勇衛別武士以下於庭中為之為白齋

一參謁時行禮節次段提調從事官以下監官別付料盡負寫

字官以次先入其次大將別將以下各廳將官將校以次行

之為白齋

一每朔朔望問 安時大將別將以下各廳將官將校 提調從事官無

之制 只平天翼先定班次後單子問 安承 批而退為白

齋

一壯勇衛每番初日 差備門外參謁一依禁軍參謁舊例宣

傳官轉 稟待發落退歸直所為白齋

一問 安前一日大將微 稟舉行若值慶賀別問 安之時

則都提調提調大將往復傳當後亦為微 稟舉行為白齋

一提調大將以下將官將校母論時前御陞資或遷轉則肅拜

後又自本營單子問 安或奉 命出外受由下鄉之時則

一軍兵有闕則以伺候軍立役次第連六次陞付次以除案軍之入於別錄者陞付次又以伺候軍連六次陞付次以下馬

再次致覽軍陞付周而復始為白齊

一各哨色書字的有闕則該將領次知以馬步軍兵中有文筆

通兵書者取才抄擇報于大將所則大將粘目差定哨書字班字

論實額差大將
更為考議試取為白齊

一新付七斗軍限六朔肄習技藝中日考試而技入格者仍令永付全不成樣者決棍除案為白乎矣若有身手贅力才藝之可用者則勿拘六朔之限許令仍置使之申飭肄習為白乎祿別待并則技藝代以兵書限沒卷試取能磨兒軍則六

朔之內亦於中日考講而略以上者仍令永付全不成樣者亦為決棍除案為白齊

一除汰軍每於月終查其罪犯輕重考其餘汰月日分等粘

啓入於待窠填充秩者各哨色有闕間還屬入於出送各

營秩者步軍則每於春秋抄出捧甘許屬各營馬軍則該營

取才臨時捧甘許赴入於拔去秩者間年歲未該將領次知

抄報大將所大將更為斟量仍與分揀區別粘 啓為白齊

一軍兵腰牌上圓下方三處烙印北字以篆字書之 懸袂一依

各營例而懸袂如非本營案付又以本營軍中懸保人同為

刻識為白齊

一軍兵等入屬之前出入班戶作妻班婢者從後現裁則懸保者決棍除案入屬後冒犯者保人勿論為白齊

一待年壯抄時大將與領軍將領各哨別將善射左右將四司

例走之三走以上力之三力以上而技中取一技而走之銅

盡力之鐵環別為描處使之行用為白乎祿外此有根着好

身手者通兵書有文筆者兩技外別為試取壯抄成冊中各

技入格懸錄入 啓馬軍待年則察用破敵衛及捉席甲士

取才之規騎萬鞭萬旗槍馬才走力六技中取一技而有根

着身手者不拘此限為白齊

一壯抄及諸色待年軍中有膽氣喜砲放者抄定牙兵待年為

白乎矣無論公私私獵有能捉納猛席者初再次施賞見施

次該色有闕陞付為白齊

一司吹手與凡軍有異有難從次第陞付毋論壯抄與待年軍

抄擇其差備喜欢者填充為白齊

磨鍊舉行爲白齊

軍蹄

一每日知穀官受出 差備軍蹄頒布內入直後出給外營則
外營入直哨官自 關門外受去傳于入直堂上將官則將
官膳出四件二件使入直別武士分送于提調大將二件則
待直房北倉兩處入直軍之持來該將領刻名箭相考後出
給營中則口傳頒布爲白齊

一都提調既有扈衛廳軍蹄勿爲舉行爲白齊

一軍蹄受去時外營入直哨官或有公故相值則入直別武士
代行爲白齊

一城內 動駕經宿時外營入直哨官來待作門外受去 陵

行經宿時教鍊官受去傳于大將則大將膳書頒布陣中

則外營入直哨官受
差備軍蹄頒布如例爲白齊

抄定

一每式年陞戶二十名 已酉訓局所管京畿各
邑二十名移屬本營 七月行關畿營
知委各邑仍令各哨色儲關待九月抄上點考充額爲白齊
一陞戶抄上時若不喜舉行致有生頭則點退更抄重則道臣
推考該倅拿處次知座首與監色利配輕則只監色決棍懲
治爲白齊

一待年軍則本營軍兵與各營軍兵于校中有根着健實者良
族中身手根着可合者並令許入而錄置之後若有公私賤
現教之弊則該將領次知懸保旗隊總并科罪 見勅
令條 別待年
則將校于校及武藝廳族屬中雖未長成亦爲許入爲白齊

一治所庫
大廳七間半房一間○廳二間○軍士舊所一間○工匠閤十間○書庫一間○

舊所六間房二間○木手間四間○鑄鐵二庫舍六十六間十間半○

工匠閤七間木手間四間○鑄鐵二庫舍六十六間十間半○

匠閤六間木手間四間○鑄鐵二庫舍六十六間十間半○

織物庫六間木手間四間○鑄鐵二庫舍六十六間十間半○

閤半○庖庫三間○私庫五間○大門一間共九十九間半

北倉廩中初○以資建大廳十五間○退三間○提學官吏起之所挾

大廳七間半房二間○廳二間○退三間○退三間○哨官直所八間

半房一間半○廳四間半○連堂七間半神堂一間半軍兵

舊所五間房二間○廳二間○庫舍一百十八間半六間○私庫

十九間火着
打邊閤六間
貴後家舍二十二間庫直家十六間○軍士家六間

月廊三

閣門三間門共一百九十一間半

符信

一各營大將或佩 命台或佩密符而本營使事面自別微用

國初古制佩帟符傳令牌爲白齊
一印信四顆段一顆刻以壯勇營三字用於判下文書一顆
刻以壯勇營餉色提調之印提調用之一顆刻以壯勇營印
大將用之一顆刻以壯勇營從事官印從事官用之爲白齊
一令票藏于大內城內外動駕時軍兵去就其他入直將
官以下中日赴試時計諸
時同外營代直時軍兵
出
時同和毅官啓
請出用祇受後登時還納爲白齊
一城內外動駕時令票次知和毅官各務差備記中一軀

名為白齊

一四司把總標下軍一百二十名戊申初十二名○巳酉加五十二名○癸丑加五十六名
每司各三十名書牌二名卜馬軍一名的加一名前司標下
以水原軍抄定為白齊

一善騎將標下軍十八名戊申初十名○辛亥加六名每哨各六名
為白齊

一善騎隊三哨三百四十五名每哨一百十五名書牌各一名
左哨以馬才抄定中右哨以技藝抄定丁未初二十七名○癸丑加一百十五名為白齊

一中司五哨六百十五名每哨一百二十三名丁未初前一哨○戊申加中後

二哨○癸丑書牌各一名卜馬軍九名以京軍子校及待并
軍抄定為白齊

一前左右後司二十哨二千五百四十名每哨一百二十七名
戊申初一哨○巳酉加一哨○書記能磨兒各一名卜馬軍
庚戌加八哨○癸丑加十哨○前哨五哨水原○左司五哨
九名厨役一名分在京畿各邑○前哨五哨

平中哨石哨分在兩邑後哨六十四名右司五哨前哨楊州左哨
司五哨○前哨後哨依定式輪回上番為白齊

一伺候軍五十二名以壯抄立役哨官廳十九名知鞍官廳九
名統長廳二名教鍊官廳二十名壯勇衛廳二名而元軍有
關則從次第陞付為白齊

一工匠弁兵二十六名屬之治所都邊首一名以可堪檢率者
擇差為白齊

一輜重卜馬軍四十名以有根着閑丁抄定添價立馬後見馬旗
摠一名自其中擇差牌頭一名七色牌頭中兼差為白齊

一別中司見官標下軍五十八名以鎮底民抄定牙兵三哨三
百八十一名亦以附近屯民抄定為白齊

一別後司見官標下軍二十三名以鎮底民抄定牙兵二哨二
百二十二名亦以附近居民抄定為白齊

一別牙兵將見官標下軍二十三名以鎮底民抄定牙兵一哨
一百二十名亦以附近居民抄定為白齊

廳舍

一壯勇營丁未初○以梨堤內大廳二十四間東方二間坡房
間○廳十二間半○退七

間○授調大將堂起之所外大廳十二間廳十間東大廳
六間三間○從事官堂起之所軍器大廳八間半東方一間
間○廳四間半○射亭六間三間○退三間六隅亭

一間草堂上將官直所十三間半廳三間退四間二間半
間○馬房一間○馬廄哨官直所十間連二間廳二間○

馬廄二間○房二間○知鞍官廳十六間連二間廳二間○
馬廄一間○前廳一間○別武士廳十七間房二間廳二間
間○門一間○虛間四間○馬房書牌番所八間堂上所書

一額外壯勇衛之列取才入格人中如有未越薦者雖仕滿待其越薦依例報仕為白齋

一母論壯勇衛之閑散額外入屬本營者勿赴將鬼取才已有定式額外之未入格於取才而登科人雖已減下之後許令應試於本營而報仕一款依額外內禁衛例待六朔報仕為白齋

一額外壯勇衛之已越取才未及報仕而見汰者使之呈訴本營受題往付於兵曹以為除取才直赴內禁衛雖或仕滿未越取才而見汰者勿論為白齋

軍制

一馬步軍以善騎隊左中右三哨步軍五司各五哨并兵六哨合三十四哨各色標下軍八百三十九名為制善騎隊三百四十五名京軍六百十五名鄉軍二千五百四十名伺候軍五十二名工匠牙兵二十六名糧重下馬軍四十名拜峯牙兵二百四十五名古城牙兵四百三十九名露梁牙兵一百四十四名兵總共五千二百四十五名為白齋

一軍子一百十八名壬寅以訓面技藝軍十五名移屬御役
番加五名○庚戌加九名○辛戌加五名○戊申加二名○己巳加十五名○癸丑加三十八名內入番四十六名大將所四十三名都提調所十名餉色提調所七名從事官所

五名書牌二名卜馬軍五名為白齋

一巡令手一百十五名壬寅以訓面技藝軍十五名移屬御役
己酉加五名○庚戌加九名○辛戌加五名○戊申加二名○己巳加十五名○癸丑加三十八名內入番四十六名

大將所三十九名都提調所十名餉色提調所八名從事官所五名書牌二名卜馬軍五名為白齋

一吹鼓手九十五名丁未加二名○癸丑加四名○庚戌加二名內入番八十八名書牌二名卜馬軍五名為白齋

一大旗手一百名丁未加二名○癸丑加四名○庚戌加二名內入番九十三名書牌二名卜馬軍五名為白齋

一塘報手六十六名戊申加十六名○辛戌加十三名火箭軍十名魚

別破陣二十三名大將所陪旗手二十名賁役魚差九名書牌二名卜馬軍二名為白齋

一礮籠軍六十名戊申加十六名○庚戌加九名○辛戌加六名○癸丑加二十九名內入番二十六名都提調所十名餉色提調所五名大將所十五名書牌二名卜馬軍二名為白齋

一礮募軍五十名丁未加十五名○戊申加四名○庚戌加二名○癸丑加二十五名書牌二名卜馬軍七名為白齋

一牙兵五十七名丁未加二十名○戊申加三名○辛戌加三十名內入番三十二名

大將所二十名書牌二名卜馬軍三名為白齋
一別將標下軍四十名辛戌加三十八名書牌三名卜馬軍二

兵曹為白乎矣如未滿四十五朔之限則勿許報仕為白齊
一壯勇衛久勤二窠每都目從次第備三望修送兵曹漢江別
將亦從久勤次第備三望修送兵曹為白乎矣連來後還付
壯勇衛未仕為白齊

一壯勇衛閑散窠久勤則禁御營騎士久勤中副末薦一窠內
一窠移屬本營每都目一人式從次第還轉為白乎矣鐵箭
百步未入格者勿許報仕為白齊

一額外壯勇衛仕滿六朔則自萬人雖未經禁軍取才者與宣
薦內禁衛及額外內禁衛通敕自兵曹擬望於初仕為白乎
矣鐵箭如未滿百步則雖過六朔勿許報兵曹為白齊

一別武士久勤以減額三內禁軍一番正領久勤窠移屬與時
存正領通敕還轉而今則別武士倍增於設始之初正領有
減於七番之時其久勤此前稍近三內移屬之久勤既還屬
於該番正領其代前仕通計之久勤一窠移屬於別武士使
之每都目還轉為白齊

一監官別付料從次第輪回見差送古城食使為白乎矣前期亦為白齊

一訓禁御三營教鍊官各一窠壯勇衛中從久勤次第限十五
人或十以可堪者窠首差送守摠兩營教鍊官各一窠以
各廳將校中前仕待令武藝聽一體窠首差送為白齊

一節目事知二窠移屬本營以壯勇衛中兼差為白乎矣事知
則除本仕為白齊

一訓禁御三營別武士各一窠雖是壯勇衛差送之窠舉皆不
顧移屬付料廳一次從科榜次第一次從付料久勤差送為
白乎矣前卿將校還將連來之人元無本廳勤勞計其還仕
日子差送若未付而遭故者通計前仕為白齊

一軍器寺別破陣中火砲禁軍六窠內二窠移屬本營以塘報
手取才差送為白齊

一營教鍊官閑散二窠應邑百里內武士中兵曹將中除出
一窠作為別武士取才窠別武士營在自監營通同試取以

為陞差為白齊

一都提調既兼扈衛大將軍官亦以該廳軍官移差佩傳令牌
久勤成冊修報時以壯勇營都提調軍官成送該曹為白齊
一水原鄉武士中將校子校來歷分明者依京軍門行伍之隨
地聞薦到例守部而薦無碍越薦每都改或間改水原窠一
入收用事定式施行為白齊

一本營事體自別毋論堂上堂下將官他營母得移擬為白齊
一額外壯勇衛及閑散壯勇衛當初入屬取才時若有越百步
之人更勿別取才額外則待六朔仕滿閑散則待久勤居首
直為修報為白齊

色一人軍兵為白齊

一庫直十三名丁未初一名○戊申增二名○己酉增二名○庚戌增一名○辛亥增一名○壬子增二名○癸丑增一名

四名增以有根着人差定為白乎矣餉色三名○庫直一名○別

庫治所各二名軍需色鄉軍色柴炭庫各一名以上軍軍器色

器械色火車庫各一名兵軍為白齊

一大廳直一名都房子四名癸丑初一名○丁未初一名○丁未初一名○丁未初一名壯勇衛廳書記二名庚戌增一名○辛亥增一名○壬子增二名○癸丑增一名

一弓矢人二人初己酉工匠都邊首二名戊申初一名○癸丑初一名

一使令四十名丁未初七名○戊申增三名○己酉增二名○庚戌增二名○辛亥增三名○壬子增二名○癸丑增一名

差以弓矢器械精造者差定為白齊

一驅從十四名詩令驅從十名○餉色軍色各二名○兩裝直二名○別將從事茶母二名○各一名依幕直一名軍餉色依幕直一名○別將從事茶母二名

定為白齊

一割藥軍二名文書直十二名餉色五名○別庫二名○軍色五名自各該色差

定為白齊

一房子十五名軍士二十五名使喚軍二十名堂上所房外軍士各一名○將官廳房子軍士各二名○別將從事茶母二名○知教官廳房子二名

定為白齊

一和穀官教鍊官久勤各一實每都目從次第各以三望修送

名○教鍊官廳房子一名軍士二名○食主社監軍士一名○額外壯勇衛廳軍士一名○壯勇衛廳房子五名軍士二名○別武武廳房子軍士各二名○材料武士廳房子一名○餉色軍士二名○軍需色鄉軍色軍器色藥房器械色員軍士二名○別庫治所使喚軍各十名

為白齊

一營營無監色以該營教鍊官二入營吏二入差定水原府兼

監色庫子以該府將校一人書吏四人官奴一名軍士一名

舉行為白齊

遷轉

一訓鍊僉正判官主簿各一案如設作為哨官邊兒案初出六

者擬主簿已經主簿者擬判官已經判官者擬僉正而僉正

案則宜薦外母得差擬雖有法文丁酉節目以後副薦僉正

已多其例本營事體自別母論宣副薦通謝擬望為白齊

一恭外哨官仕滿十五朔後依備邊即陞六例自本營單記陞

擬主簿恭上則僉正判官主簿案隨其履歷修報為白齊

一吏批末仕一案作為哨官久勤以已出六人及准朔人通謝

計朔以首仕人依內三廳末仕例單望修成冊以送為白齊

一和穀官教鍊官久勤各一實每都目從次第各以三望修送

三窠鄉未付二窠馬醫一窠稟 旨差定自大將所傳令將
牌依教練官例舉行為白齊

一付料武士三窠以元料窠屬之牌頭所任十窠以壯勇衛前
仕及閑散納馬未付出身行伍出身並試射許赴一窠以鐵
箭遠射人許赴二窠以鄉武士試射許赴自大將所傳令將
牌依別武士例舉行為白齊

一拜峯鎮牙兵將自本鎮望報大將所差定傳令古城鎮牙兵
將自本鎮差出後牒報為白齊

一關西啤川郡多有本營屯田又有古城牙兵事多相關依他
軍門例作為本營自辟窠使之專意照檢為白牙突哨官中

稟 旨差送為白齊

一母論堂上堂下將官傳令及差帖祇受來現而若傳者非其
人又或受者徑先來待則該廳所任論勘為白齊

一堂上堂下將官新差後姓名薦名及 啓下月日據甘兵曹
修正官案為白齊

一從事官若以罷散人差下則依惠廳即廳例冠帶常仕之意
草記散料自本營上下為白齊

一堂上將官若以罷散人擬望則其名下以罷散懸注入 啓
若以削職人 特教差下則亦以削職懸注入 啓如無叙
用之 命而循例 啓下則以新差將官某方在罷散

或制

中何以為之之意草記時任將官若因本職坐罷

或制而只

有將官仍任之 命則一體草記稟 旨為白齊

員役

一書吏十六人 庚戌初六人○辛亥增四人○壬子增四人○癸丑增四人○ 以有文筆勤幹

人受薦擇差為白牙突餉色三人軍需色三人別庫二人鄉
軍色一人軍色七人為白齊

一書寫三人 辛亥初二人○壬子增一人○ 以善寫解文人受薦擇差如書吏
例為白牙突餉色二人軍色一人為白齊

一待令書吏三人朝報書吏一人 己酉初 以政院書寫及待令書
吏中煎差舉行為白齊

一書頁七人 己酉初一人○庚戌增一人○辛亥增一人○壬子增一人○癸丑增一人○ 以有根着
人擇差為白牙突治所二人 關啟 藥房將官廳各二人軍器

踏 內印巡令手費傳為白齊

一別付料以幹事解壽人勿拘資級該廳及監官廳受薦入
啓差下奉 教差帖踏餉也提調印巡令手費傳為白齊

一藥房及鍼醫母論局方與方外以術業精明人稟 旨差出
奉 教差帖踏餉也提調印巡令手費傳為白乎矣藥房則

雖移差內局仍為兼帶為白齊

一畫員寓字官以 差備待令人中稟 旨兼差奉 教差帖
踏餉也提調印巡令手費傳為白齊

一別中司把總以監官別付料輪回差送而監官二次別付料
一次以此輪回
自本營從入仕次第備三望移送兵曹入 啓受 點而差

帖踏 內印巡令手費傳為白齊

一別後司把總以前啣及出身閑良中應為副末薦人自本營
備三望移送兵曹入 啓受 點而差帖踏 內印巡令手

費傳為白齊

一別牙兵將以將校中樞探可合人自本營備三望移送兵曹
入 啓受 點而奉 教差帖踏大將印巡令手費傳為白

齊

一從事官及堂上將官新 除後如無職名自本營捧甘兵曹
付軍職為白齊

一各營中軍之設置蓋為承接驛令而國初則大將直為承接

舉行禁營初設時別將亦為承接舉行而不為別設中軍是

白如乎本營軍制多倣國初之制中軍不為設置為白齊

一本營軍制既倣南軍營司之制不用北軍部司之法千總不
為設置為白齊

一知穀官以閑散七窠取才五窠行伍五窠自該廳稟 旨差
出而奉 教差帖踏大將印巡令手費傳為白齊

一統長以本營行伍中可令人差出付諸知穀官額外除本仕
母論閑散行伍亦以可令人差出付諸教鍊官額外而並自

該廳稟 旨舉行奉 教差帖踏大將印巡令手費傳為白
齊

一教鍊官以閑散三窠取才三窠行伍取才十窠別定四窠自
該廳稟 旨差出自大將所傳令領傳
令解為白齊

一壯勇衛以閑散二十窠取才三十窠行伍出身取才五十窠
武藝出身四十窠 自該廳稟 旨差出而牌頭別為差出屬

之摠外牌頭雖以閑散差
出以行伍施行為白乎矣閑散窠則以有地閑身

手膂力可令人取才窠則以方外人中兵書弓馬鍊熟者及
時仕禁軍之年少自願者並自該廳受薦取才行伍窠則以

武藝出身及本營馬步出身取才差定奉 教差帖踏大將

印巡令手費傳為白齊

一別武士以行伍取才二十二窠武藝廳八窠未付武士取才

差除

一都提調以大臣中時帶扈衛大將入例兼而自吏曹單付

啓下為白齊

一餉色提調

單色別兼

以時任戶惠堂自吏曹備擬受點而如未滿三員則以曾經戶惠堂入啓請通擬為白齊

一使以曾經將臣以上入差除而做扈衛大將差出之規從

事官往告政院自政院入稟奏特旨舉行而依御營使

稱大將之舊例營中文牒以大將稱辦仍兼軍色提調亦為

例兼備堂而新除傳令安實後知穀官貴傳為白齊

一從事官以蔭官曾經郡守以上有地處履歷入自本營備擬

受點以軍餉色從事官稱辦為白齊

一別將以曾經捕將及都監中軍禁軍別將入自本營受薦為大將

薦入啓差下單付而傳令踏內印教鍊官貴傳為白齊

一把摠以嘉善兵使至曾經防禦使人自本營受薦為大將

入啓差下單付而雖邊地履歷入中如有地望者特教

除拜則不拘此式仍用防禦使履歷直擬開任一稟以水原

居堂上武弁有履歷之人依右例差出而傳令踏內印教

鍊官貴傳為白齊

一善騎將以曾經邊地及內外將履歷入自本營受薦為大將

將薦入啓差下單付而差帖踏內印巡令手貴傳為白

齊

一哨官以曾經堂下正三品以下及有薦出身入自本營受薦

自大將以下

至哨官薦舉入啓差下單付前司五稟以水原居有薦前

御朝官叅上叅下出身通擬差出而差帖踏內印巡令手

貴傳為白齊

一額外壯勇衛依禁軍額外三營勸武軍官例將家子校與地

閱表著者及如有身手膂力出類之人別將抄擇就議大將

大將擇取粘啓除本仕隨行而差帖踏

內印巡令手貴傳為白齊

一監官以幹事人勿拘資級自該廳受薦入啓差下而差帖

取才
馬政
給仕
給暇
飭令
棍治

官職

都提調一員初癸丑提調二員戊申初〇使一員乙巳初癸丑
使從事官一員癸丑別將一員癸丑把總五員戊申初
增二員乙酉增一善騎將三員丁未初一額外壯勇衛十
二十五員增七監官四員戊申增十二別付料二員丁未初
五員辛未初藥房一員初己酉鍼醫一員初壬子畫員一員初丁未寫字官
一員初戊申別中司把總一員古別牙兵將一員癸丑別後司把總一
員初癸丑

將校

知穀官十七員丁未初十一除本仕七員乙巳初四教鍊官二十員戊申初七
壯勇衛一百二十人左右列各五十人牌頭二人戊申初二
別武士三十六人戊申初二付料武士十六人丁未增八
馬醫一人初壬子

壯勇營大節目卷之一

目錄

建置

官職

將校

差除

員役

遷轉

軍制

廳舍

符信

軍號

抄定

叅謁

儀節

職掌

兼察

軍籍

軍器

形名

入直

番上

陪扈

徵發

犒饋

肄陣

講射

試射

中日

私習

壯勇營大節目一

部	史	部
類	政	書
番 号	2 - 3369	
冊 数	3 - 1	

1413
12
3-1

部	史
類	政
番 號	
冊 數	3
備 考	召 2005

壯勇營大節目

卷一

원문

壯勇營大節目

卷一

原文